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Ⅱ)

2020. 9.

기 획 재 정 부
보 조 사 업 평 가 단

목 차

제1부 서론

■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10

■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14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14
4.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15

■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23
2.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23
3.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24
4. 2020년 평가단 구성	27
5. 평가 절차	29
6. 평가 기준	31

제2부 평가결과 분석

■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35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35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36

■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37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40

■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52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52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1. 기획재정부	61
2. 교육부	10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9
4. 외교부	221

5. 법무부	229
6. 행정안전부	237
7. 문화체육관광부	289
8. 농림축산식품부	533
9. 산업통상자원부	671
10. 보건복지부	779
11. 환경부	1035
12. 고용노동부	1185
13. 여성가족부	1239
14. 국토교통부	1347
15. 해양수산부	1411
16. 중소벤처기업부	1525
17. 국가보훈처	1563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629
19. 방송통신위원회	1647
20. 공정거래위원회	1665
21. 금융위원회	1673
22. 소방청	1683
23. 문화재청	1697
24. 농촌진흥청	1705
25. 산림청	1733
26. 특허청	1761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보건복지부

119구급대지원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
검역관리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권역별심뇌혈관센터설치지원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노인단체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시설확충
다함께돌봄사업
모자보건사업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등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신종감염병입원치료병상확충유지
어린이집확충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정착비및시설운영지원
음주폐해예방관리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장사시설설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단체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제대혈공공관리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혈액안전관리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119 구급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2021년) · 119구급대 지원 보조사업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와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 장비 교체·보강하는 예산으로 병원 전단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을 담당함. 이는 119 구급대 예산지원을 통한 기반확충 사업임. · 시민에게(재외국민 포함)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며 응급의료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됨. · 노후 119구급차량에 대한 교체·보강은 법적인 근거와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음. · 119구급대 지원사업은 여러 보건, 의료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정상추진으로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음. 법령과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5. 29., 2019. 8. 27.>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医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 2020. 2. 28.] 제21조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119구급장비 확충 등 구급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동일한 목적과 연계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며 이에 국민의 안전요구과 생활안전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119구급대 지원의 필요성도 근거가 있음.
- 농어촌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대책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기대 상승하였으며, 119구급차 보강 및 전문구급인력 확충 등 촘촘한 구급망 구축으로 농어촌 임산부(다문화 가정 등) 산부인과 진료 이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장려 정책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119구급대 지원은 노후 구급차 교체보강,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의료지도의사 운영비,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복사업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예산지원을 통한 기반 확충으로 시민에게(재외국민 포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권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며 119구급차 교체 보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하지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등이 매년 누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3-4년 차에는 가시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전국 구급차는 1,586대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이상 12만km 내용 연수와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고장이 잦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지자체와 5:5 매칭 보조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노후차 교체 보강의 필요성이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구급활동은 1일 8,013회 출동 1일 5,150명 이송 총 출동건수는 2,924,899건, 이송건수는 1,843,105건, 이송인원은 1,879,725명으로 평균 4% 증가하였음.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 순환 회복률은 10.6%로 심정지 이송 환자수 30,595명 중에 회복된 환자수는 2,587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18개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로서 보조율은 50% 매칭으로 시도에 교부하고 있어 충분한 자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조건을 부과하여 결정통지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적정성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 체계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지방소방본부)의 보조사업 실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등 상시 감독(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차년도 기금 배분 패널티 적용 등 실시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으며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산회계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사용 계획, 집행, 결산등 조회와 데이터 관리 등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조금에 대한 확인 관리 연계(e-호조(지자체) - e-나라도움(중앙) - d-brain(기재부)) 모니터링이 이뤄짐.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조건을 부과하여 결정통지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보고를 받고 불용액 및 발생이자를 정산하여 납부받고 있음.
- 자체 사업관리에 노력을 기하고자 매년 교부신청부터 실적 보고서까지 제출받아 결산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119구급대 지원 보조사업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와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교체·보강하는 예산으로 병원 전단계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예산 지원을 통한 기반확충 사업임.
- 국민 모두에게(재외국민 포함)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며 응급의료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됨.
- 농어촌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대책 강화로 의료지원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119구급서비스는 부상·질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19접수 단계부터 의료상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지도, 의료기관, 약국정보 제공, 환자이송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금 사용목적에 부합됨.
- 노후 119구급차량에 대한 교체·보강은 법적인 근거와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음.
 - * 내용연수(5년이상 12만km이상) 경과된 119구급차 :
18개 시·도 소방본부 300대 × 120백만원 = 36,000백만원
- 또한, 119구급대 지원사업은 여러 보건, 의료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상추진으로 권고함.

3-2 정책 제언

-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노후된 감염관리실 교체 필요함.
 - 코로나19등 감염병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음압 특수구급차 보강 필요함.
 - 코로나19 감염병 이송환자 이송 들것 보강 역시 고려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감염병예방 관리 및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7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2021년) · 본 사업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이며, 그 외 감염병은 별도 예산항목으로 지원중임.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진드기 개체 수도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매년 봄~가을에는 '살인진드기에 의한 환자발생 및 사망' 관련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한 부분임. · 현재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역시 치명적인 결과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은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주로 농촌지역 농작업 활동시 진드기에 노출 위험이 높아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비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되어 있음.
- 감염병 관련 예산은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기금)” 외에도 “감염병예방관리(일반회계)”, “신종감염병 대응·대책(기금)”, “국가결핵예방(기금)”, “에이즈 및 성병예방(기금)”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으로 특화된 사업이며, 기타 감염병은 별도 예산항목으로 지원함
- 다른 감염병을 포함할 경우 해당감염병 지원 타 사업예산과 중복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이며, 그 외 감염병은 별도 예산항목으로 지원 중임
- 다른 감염병을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다른 감염병 관련 사업내용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발생 집중관리지역 확대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임.
- * 다발생 집중관리지역 확대('18년 50개소→'19년 73개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3급 감염병으로 다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유사,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별됨.



- 감염병의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므로 보조사업의 형태가 아닐 경우 국가에서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이며, 그의 감염병은 별도 예산항목으로 지원중임
 -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진드기 개체수 증가, 진드기 주요 서식지에서의 농작업인구 고령화, 도시인의 주말농장, 체험활동 및 등산객 등 야외활동 인구 증가로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고위험군 및 비농업인 대상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사람간 전파가능성이 보고되고 있고, 치명률이 다른 감염병보다 높아(12-47%. 2013-2018년 기준) 관리가 필요함
- 재원 소요는 대부분 지역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짐.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주로 농촌지역 농작업 활동시 진드기에 노출 위험이 높아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비농업인까지 확대 지원 예정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항에 근거하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내부지침에 의거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시 보조사업 추진 수행기관(민간, 지자체)에 별도의 내부지침 통보
 - 예산집행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동 교부조건 및 법령 위반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환수,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아래의 두 부분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음.
 - (지자체경상)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분기별 실적보고(1, 2, 3분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이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하고 있음
 - (민간경상) 사업수행과 관련 월별 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간실적점검 및 최종사업실적보고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평가 시 부정수급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부정수급 원천적 차단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이며, 그 외 감염병은 별도 예산항목으로 지원 중임.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진드기 개체 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매년 봄~가을에는 ‘살인진드기에 의한 환자발생 및 사망’ 관련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
- 현재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은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주로 농촌지역 농작업 활동시 진드기에 노출 위험이 높아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비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외 다른 감염병을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다른 감염병관련 사업내용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검역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2021년)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비·대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 평시에 투입되는 자원은 적정하지만 효과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사업은 「검역관리」 세부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위기상황 대비·대응에 최소한의 준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존속은 인정됨. · 하지만, 현재 제안되는 진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저질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에 따름.
-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보조사업은 검역단계에서 해외감염병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등 증상 발현자에 대하여 원격지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함.
- 현재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입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시, 질환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 원격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감염병 유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특성상,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매년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여, 증상발현 등으로 원격 의료서비스 수행을 하지 않으므로 정량적 수치(상향 또는 하향 목표)를 통해 평가받는 것에 무리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국립검역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 전파 차단을 직접 수행하므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등 상황 미발생에 따라 원격진료시스템 미운영으로 최소 운영비만 지출.
- 예산이 15백만 수준으로 많지 않으나, 평시와 위기상황의 균형적인 예산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의 특성상 원격진료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즉각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하여 감염병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 특정상황에서 안전과 질병 예방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의 절차를 포함하여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공모절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내부 규정을 통해 연초 사업 추진계획(추진 세부내용, 예산 집행내역 등을 포함)을 수립하여 차년도 연초에 결산보고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적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18년도에 수립한 추진계획 및 실적과 관련한 서면 점검과 모의훈련 등에 참관하여 진행상황을 현장 점검함으로 본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 내용의 위반 확인 등을 시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비·대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 평시에 투입되는 자원은 적정하지만 효과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사업은 「검역관리」 세부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위기상황 대비·대응에 최소한의 준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존속은 인정됨.
- 하지만, 현재 허용가능한 진료가 제한적임. 따라서, 기저질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2021) 및 사업방식 변경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권역별 설치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 자본보조(10억원)의 순감에 따른 감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를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의 달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성과 중심 지표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함.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저조로 인해 병상가동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현재 권역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 기관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정규모·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 사회 내 의료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은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로 <모자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제32조에 자녀의 출산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구속하고 있음.
- 국정과제 46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로 명시되어 있음.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2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고위험 산모 신생아통합치료 센터 지원사업”에 두 개의 내역 사업(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저출산,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서는 고비용, 저수익 사업인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병상 수를 줄여 적자를 모면하려 하는 상황이므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현재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구축은 자본 보조 20개소 설치예정임. 동 시설이 2020년 설치 완료되므로 2021년부터 설치비는 순감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1년부터 동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조사업은 계획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보조사업의 정책 목표(산모 신생아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 감소)는 성과를 기반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가동율)는 투입을 기반으로 측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성과지표는 2017년 이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2017년 96.9%→2018년 87.9%→2019년 88.1%).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모성사망비 감소)의 성과가 제시되지 않음(통계상의 문제로 2019년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다만, OECD 국제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 모성사망비는 OECD 7.8명, 한국 11.3명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OECD 5.3명, 한국은 2.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2018년 기준).

○ 보조사업의 정책 목표는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인데, 2018년 기준 국제통계를 확인한 결과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세부사업의 정책 목표는 ‘산모 신생아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제시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목표는 ‘모성사망비 감소’이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가동률’임.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관련성이 낮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나,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어려움.
- 건강보험 수가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가 어려움.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이며, 간접 수혜자는 고위험 산모, 고위험 신생아임.



- 직접 수혜자는 선정된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며, 간접 수혜자는 고위험 산모 및 고위험 신생아로 수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임. 그러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수혜자의 대상 범위는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모든 내역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100%임.
 - <모자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상급의료기관으로 한정되므로 ‘권역 심뇌혈관센터 설치비’와 ‘권역 외상센터 설치비’ 사업과 같이 보조율이 100%라고 기술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예, 상급의료기관 수, 지역별 분포 등).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은 신규 선정 기관의 시설공사 미완료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으로 실집행율이 90% 미만임.

1-5 사회적가치 실현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기여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
 - 현재 제시된 투입 중심 지표 보다는 성과 중심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안내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안내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문 및 홍보자료, 선정평가 결과 보고 공문 등의 실적 자료를 제출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안내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안내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요청, 현지점검 계획 등의 실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보조사업의 집행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안내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안내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 규정에 따른 방지 노력, 자체 적발 이력, 외부 적발 등의 실적이 제출되지 않아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외부회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보조금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실시간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회계검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 사항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제출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 회계검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 사항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으나,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권역별 설치(자본보조, 10억원)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보조 감축이 필요함.
- 국비 100% 보조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책무성 등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최근에는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단순히 수가의 가산, 운영비의 추가 지원 등의 재정적인 요소 외에 근본적인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분만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등을 활용한 지역별·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의 방식과 결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과지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이며 이는 적절한 성과지표이며, '18년 9.6% 목표에 10.3% 달성하였고 '19년 14.1%에 16.7% 달성하였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건축비 지원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없고 국고보조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2019년은 공모하였으나 선정된 지자체가 없어 집행률이 65.7%에 불과해 향후 연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사업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함. ·본 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 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는 등 향후 집행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응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하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의거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와 보조사업과의 직접적으로 연계됨.
 - 대통령 공약 II-2-3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돌봄·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임.
 - 국정과제 42-5는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이므로 권역어린이재활병원확충,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어린이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는 국정과제의 목적에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필요한 사업임.
- 성과지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이며 이는 적정한 성과지표이며, ‘18년 9.6% 목표에 10.3% 달성하였고 ‘19년 14.1%에 16.7% 달성하였음.
- 보조사업의 정책목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원을 통한 아동재활치료의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으로 관련 상위 프로그램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과 관련 국정과제와 공약사업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수익성이 낮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은 어려움.
 - 소아대상 재활치료는 전문치료사의 전담치료가 필수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이 커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임(현재 민간 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운영).
- 장애인의 재활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있으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화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사업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장애아동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요가 충분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 사업추진 절차도>

단계	주요 내용
지침개발 및 사업대상 선정 지원	사업지침 개발(개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사업대상 선정 평가 지원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시설 / 장비 부문
	수정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심의)
	시설설계 / 장비계획 적절성 검토(심의)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사업수행상황 검토(주기적)
	사업완료 실적보고 검토, 현지점검
	성과지표 개발(개정)
	성과분석 및 평가(완공시)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은 건축비 위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실제 사업예산으로 실효성이 높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 사업비 1억 원은 3인의 인건비, 운영비(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경상경비 비중이 높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 2019년은 공모하였으나 선정된 지자체가 없어 집행률이 65.7%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장애아동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안내 지침에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사업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안내 지침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수행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안내 지침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전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안내 지침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일부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지연되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이며 이는 적절한 성과지표이며, '18년 9.6% 목표에 10.3% 달성하였고 '19년 14.1%에 16.7% 달성하였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건축비 지원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없고 국고보조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하지만 실행률이 65.7%에 불과하므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
-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사업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상황 이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공모방식을 변경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술 지원 및 운영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의 근거, 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는 등 향후 집행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응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2021년)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사용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용내역을 건별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므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구급차 및 자가용을 이용한 내원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 증상발생 후 센터도착 소요시간은 국가적 차원의 응급의료관리체계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구조대원의 증상인지능력, 타병원경유여부, 전문센터로의 즉각이송 등)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권역센터와 지역센터간 협업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은 비교적 뚜렷한 편임. 법령은 대부분 지원해야 한다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늠되어 있음.
- 심뇌혈관질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①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②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③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④사업과 관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⑤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관련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심뇌혈관질환법 제10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①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과 같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심뇌혈관질환 ②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역학조사의 시행 및 관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함('17.5월)
 - * (대상 질환) 심장질환(심근경색 등 허혈성질환, 심장정지, 심부전, 부정맥),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 종전에 개별사업 위주로 수행되어 왔던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 추진함(법 제4조)
 -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른 연도별 세부집행계획 수립·시행함(「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뇌경색의 경우 응급실 도착 후 60분내 정맥내 t-PA 투여건수가 사업초기 37건에서 8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t-PA투여율 역시 70%대에서 2017-2018년 80% 중반대로 증가하는 등의 센터 지정에 따른 조기처치 중재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됨.
- 심뇌센터 운영평가 항목으로 t-PA 실시건수(기준: 20건 이상)를 점검하며 사업초기인 각 센터 지정년도 대비 '19년에 2배 이상 건수 증가(지정 5년이 경과된 11개 센터 기준)
- OECD 보고서(Health at a Glance 2017)에서는 “심정지가 왔을 때 환자의 빠른 이송, 근거 중심 의료적 중재, 전문치료기관, 조기 처치가 빠를수록 30일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하면서,
 - “2006년 한국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한국이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전문의료서비스 제공하면서, 응급실 도착시간부터 카테터중재시간까지의 평균대기시간이 ‘10년 72.3분 → ’11년 65.8분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치명률도 낮추게 되었다”며 한국의 심뇌혈관관리센터가 조기처치에 기여하였음을 언급함.
- 심뇌혈관질환 중증발생 후 센터도착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권역센터 자체노력으로서 권역 내 의료기관 및 응급센터 등에 대한 정기교육 추진 등 권역센터의 예방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심뇌혈관질환은 응급의료체계안에서 국가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이 인정되어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권역 내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비와 진료체계, 예방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심뇌혈관질환의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근거(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 급성심장정지 생존률 등) 제시 필요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사업의 핵심은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당직체계 운영에 있으나, 후속사업의 경우 개소당 총사업비가 ('17)1,800백만원 → ('18)500백만원 감축됨에 따라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고난이도 기피과의 전문의 확충 및 당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센터 사업의 운영평가를 통해 필수인력 채용, 심뇌혈관질환 관련 시설·장비 유지(시설장비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설장비 심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현장 및 서면심사), 권역 센터의 운영 및 예산집행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
- 지원예산의 적정성 유무는 현재 추진 중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파악 예정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19.11월 복지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이 어려워 분절적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구조를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 1)지역의료자원 육성을 위해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각이송이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 2)지역의료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권역협의체(권역책임의료기관-권역센터(심뇌 등)) 및 70개 지역협의체(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센터)를 구성하여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함.
- 이와 같이, 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진료권 단위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과 함께 생명과 직결된 필수요료를 어느지역에서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업으로 판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심뇌혈관질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운영기준이 있으며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선정의 적정성을 지님.
- 즉 선정평가 항목(필요성, 수행현황, 계획타당성, 적극의지 등)을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p.69)에 권역센터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지방종합병원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서 충족시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및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집행관리를 시행하고 이에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24시간 상주당직비,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사용처가 명확한 편임.
- 매년 응급의료기금에서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최근 부정수급 발생사례 없음.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사용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복지부 담당자가 내역을 사용건별로 증빙 첨부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음.(국고보조사업전용카드사용하여 내역이 바로 시스템으로 전송됨)
 - 만약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규격 및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행하는 전문진료, 입원, 퇴원, 교육 등의 과정에서의 환자 개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여부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 본 사업은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별 건강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단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적정시기에 적절한 전문진료를 받아 사망률과 장애 이환률을 낮추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므로, 서비스 만족향상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사용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용내역을 건별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므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구급차 및 자가용을 이용한 내원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증상발생 후 센터도착 소요시간은 국가적 차원의 응급의료관리체계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구조대원의 증상인지능력, 타병원경유여부, 전문센터로의 즉각이송 등) 권역심뇌질환센터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
- 또한, 권역센터와 지역센터간 협업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3-2 정책 제언

- '16년 제정된 심뇌혈관질환법에 의거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18~'22)에 의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역단위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14개 권역단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중이나, 환자수, 골든타임(2~3시간)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의료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산간지대, 섬지역 등에 거주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이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월)에 따라 권역 내 중진료권을 설정하여 역량을 갖춘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지원 이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는 등 사업효과성이 인정되나, 외부환경에 영향도가 높은 편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18년 점유율 42.45%)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드사태 그리고 최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의 외부변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 ·수출국 다변화 등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 또한, 온라인 홍보활동 등 코로나 사태로 촉발되는 수출지원 활동의 제약에 대비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화장품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장품법 제33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보조사업만을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전제적인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일반적 내용에 가까움

< 화장품법 >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사업,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4-3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계획들과 정책적 맥을 같이하고 있음
 - 정부는 그간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16년)”, “화장품 산업 종합 발전계획(‘17년)”, “(K-뷰티)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19년)” 등의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동 보조금 사업은 그간의 종합대책들에서 발표된 정책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됨
 - *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12) :현장수요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 K-뷰티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K-뷰티 클러스터 구축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화장품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별 수출·인허가절차, 국가별·인종별 피부 정보,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정보를 제공함.
- 생산설비 공동이용, 기술지원, 화장품원료의 재배·가공·인증시스템 구축 및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이 해외시장 정보제공, 국가별 피부 특성은행 구축, 원료 안정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방향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고 수출 진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거시지표에서 ‘18년 화장품 수출은 63억불로 전년대비 26.5% 증가 되었고, 최근 5개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 또한 34.9% 성장함.



-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18년 점유율 42.45%)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드사태 그리고 최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의 외부변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 화장품 수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구체적인 정량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업 성과지표인 '세계 주요 도시별 피부특성은행 DB구축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사업 디자인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내역사업별 예산규모가 동일하거나 소액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치가 일부 감소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설정이나 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명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국가별피부특성은행 구축사업 및 실용화	실험실공동시설활용 및전문인력양성사업	중소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사업
'19년 실적	48개국 해외시장 정보조사	3개국 피부특성 조사	4,144항/ 7종 분석 38회/1,497명 수료	판매장 3개소 운영 팝업부스 4개소 운영
'19년 예산	1,983백만원	1,200백만원	1,016백만원	1,140백만원
'20년 목표	55개국 해외시장 정보조사	2개국 피부특성 조사	4,000항/ 8종 분석 35회/1,320명 수료	판매장 3개소 운영
'20년 예산	2,083백만원	1,200백만원	1,016백만원	1,140백만원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화장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타 보조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에서도 사업중복에 대한 지적은 없었음
- 동 보조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화장품 제조기업, 화장품산업종사자와 화장품학과 재학생 등으로 간접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17~'19년까지 16,573명 정도로 파악됨.
 - 전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의 97%(12,673개사 중 12,292개사, '18년 생산실적기준)가 생산 실적 50억 미만의 전국단위의 중소기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 [만족도 조사 결과] 해외시장정보제공 : 92.9%,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 : 82.0%, 현장전문인력 양성(교육) : 85.5%
-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지는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체계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 최근 5년간('14년~'18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CAGR) : 수출 : 34.9%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에 의거하여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실험실 공동시설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외화장품판매장 개척지원은 보조율 100%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천연물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은 50% 보조율로 설정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의 불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음
- 화장품 수출품 증가율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중장기 추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상황변화 (예: 사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외부 영향에 따라 화장품 수출품 증가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예산추산근거가 제시될 필요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화장품산업은 기업간 규모 격차가 크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시장정보와 및 국가별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기여가 인정되는 편임.
- 화장품 산업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가치사슬 구조변화 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처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인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 동 보조사업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10년 재단법인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민(19개 업체)·관(보건복지부, 경기도, 오산시)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동 사업 시행주체로 확정하여 매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관의 성격이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민법32조에 의해 설립) 재단법인 성격인 관계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을 위한 운영규정(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결과, 회계결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을 추진 중임
-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 사업의 경우 별도의 운영 매뉴얼(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 사업비 검증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 공고 및 신청 접수, 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계약 체결,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 중간평가, 사업완료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 잔금 지급 등 집행 단계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및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보조금 사업 집행내용에 대해 매년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거쳐 결과를 보고 있으며, 매년 11월 사업관련 세미나를 통해 사업결과물의 성과 공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특별한 사업관리 노력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화장품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러 범부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임.
- 화장품산업의 경우는 해외 안전관련 규제 충족 등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보조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음.
- 최근 5개년 화장품 수출이 연평균 수출 증가율 또한 34.9% 성장하는 등 동 보조사업이 직·간접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나, 최대 수출국인('18년 점유율 42.45%)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변수(사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2 정책 제언

- 현재, 동 보조사업 내 여러 내역 사업의 정량목표가 중소기업 위주의 화장품 수출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지원의 양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지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 추진 상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출국가 수 또는 수출 다변화 정도'등의 신규지표 추가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 현장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산화장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인허가 절차 등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중소기업 등의 수출 촉진하고 국가별·인종별 피부정보와 화장품 원료의 국내의 안전정보 등의 구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신종 코로나(COVID-19) 사태로 물리적인 수출 진흥 활동 등에 제약이 예상되는 바, 온라인 마케팅 등 보완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노인단체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7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은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고 국제협력사업이 사업비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비해 재정 지원 규모가 과대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개별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단체들의 사업 수행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국제협력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감축된 예산으로 다수의 노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운영하도록 재편해야 하며,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함. 또한 각 내역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조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을 내역사업으로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 국가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37조 제4항에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의2에 따르면 경로당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는 있음. 다만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의 근거는 없음.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노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명확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및 경로당 냉난방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명확함.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37조, 제37조의2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 위하여 지역별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내역사업 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은 국정과제 43-4-2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기능확대’와 연계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 중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는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13년도에 16개 광역별로 설치됨.
- 성과지표는 사회활동 참여 노인 수와 기능확대(프로그램) 경로당 수이며 사회활동참여 노인 수는 ‘18년의 목표치는 ‘17년 실적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적정하며, ‘19년의 경우 ‘18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전년 대비 예산 감소에 따른 공모사업 수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임.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19년 예산이 ‘18년 대비 감액(972→810백만원)되어 공모사업 수가 감소(17개 → 12개)하여 ‘19년 사회활동 참여 노인 수의 목표를 ‘18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동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3년치(‘16~‘18년) 평균실적보다 7.5% 상향설정함.
 - 기능확대(프로그램) 경로당 수는 전년도 대비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한 경로당의 수로 ‘19년에 처음으로 성과지표에 포함되었으며 이 지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임.
- 하지만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별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회활동 참여 노인 수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세 가지 내역사업의 실적이 포함됨.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집행액 대비 실집행액이 2017년 99.9%, 2018년 99.9%, 2019년 100%로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음.
- 동 보조사업 중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기능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노인단체를 지원할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지원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적절한지와 그 지원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노인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정은 정확함.
 - 인구고령화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노인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46.7%, 사업비는 53.3%로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고,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협력사업(국제교류협력강화 및 해외지부교류 활성화)이 사업비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문제가 나타남.
 -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약 40명*), 시도 연합회(16개, 150여명) 및 시군구 지회(245개, 1000여명)로 구성되며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급 인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직원 14명임.



<'19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 집행내역>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합계	1,868,000	1,834,716	
경상비	소계	888,877	869,126	
	인건비	725,361	720,993	중앙회 기획운영본부 등 직원
	운영비	163,516	148,133	중앙회 운영비
사업비	소계	979,123	965,589	
	1. 노인의 날 기념행사	43,000	42,983	노인의 날(매년 10월2일)
	2. 노인생활소식지	70,000	66,110	연 2회(회당 67,500부) 발행
	3. 지역 네트워크 교류사업	20,000	20,000	지역사회 노인단체들과의 교류 : 특강 및 간담회(연 4회)
	4. 1:3 세대공감 콘서트	20,000	20,000	어르신, 청소년 대상 50명씩 연 10회
	5. 국제교류 협력강화	36,000	36,000	노인복지 선진지 및 신설 해외지회 방문
	6. 사무처장·사무국장 직무교육	11,720	11,475	270명 대상 4시간 직무교육(연 1회)
	7. 총무국·총무부장 직무교육	11,720	11,235	270명 대상 4시간 직무교육(연 1회)
	8. 해외지부교류 활성화	140,000	138,020	20개 해외지회에 대한 지원
	9. 제8회 전국노인건강축제	148,700	148,648	연 1회, 6종의 경기종목에 대한 종합 경기(선수 1,500명 참석)
	10. 제19회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35,376	35,376	연 1회, 선수 450명 참석하는 경기
	11.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380,000	373,489	경로당 활성화사업 평가, 경로당DB 관리, 경로당광역센터 직원 역량강화, 경로당 활성화 자문위원 운영 등
	12. 노인교육원 운영	62,607	62,253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심의 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 단체별 경상경비 비율에 편차가 심함.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은 16개 시도를 통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8.9%, 운영비·사업비는 41.1%를 차지하여 경상경비 비율이 높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 보조율의 경우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경우 100%이며,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높이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함.
- 다음 표에 제시된 '19년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단체 자체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없더라도 각 단체 유지를 위해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019년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연 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천원)	자부담 (천원)
		합 계	810,000	121,487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100,000	10,000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하는 노인학대예방 공익캠페인 '나비새깁'	50,000	5,000
3	한국장례협회	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진흥사업	80,000	8,511
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인지도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화 교육사업 (AIP실현을 위한 치매친화 노인복지관 기능재편 2단계)	90,000	10,000
5	한국효문화진흥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삼대가효' 체험 프로젝트	70,000	30,000
6	효 문화지원본부	전국 "효도"가족 100쌍 찾기	50,000	20,000
7	대한노인회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 '노인 갈등관리 강사 양성 교육'	100,000	10,300
8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인식개선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령)장(애인)의 뷰티풀 라이프"	60,000	6,076
9	행복실버교육연구회	찾아가는 '몸, 마음, 머리 지키미' 사업	45,000	5,600
10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일하기좋은 재가노인 복지시설(GWP) 만들기	30,000	6,000
11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노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생애말기 동반자 프로그램 "생애말 소원노트 작성지원 및 구술자서전 발간"	40,000	4,000
12	한국은빛희망협회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	50,000	6,000
13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9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45,000	-

- 지자체 경상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50%이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율은 서울 10%, 지방 25%로 산정하였는데 타 사업에 비추어 볼 때 보조율은 적절한 편임.
- 내역사업 중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씩 증가하는데 이미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아 예산이 적정하지 않은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추계의 증가세는 가파른 것으로 판단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한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 증가하는 경로당 수 및 양곡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6%씩 증가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2019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노인복지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9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등의 자체규정을 마련함.
- ‘19년부터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은 사업의 선정·심의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해 사업 관리단을 통한 자문 및 컨설팅 등 지원하며,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회계 및 행정,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후 결과를 환류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음.
- ‘19년 현장평가 시, 사업 기관 중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부적정 집행(계획에 없는 연공용역 진행, 약 1,600만원)에 대하여 ‘19년 집행 정산 시 반납토록 조치함.
- 다만 대한노인회의의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음.
- 모든 내역사업에 대한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으나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노인보건복지전문가 4-5명으로 구성)에서 전문가별로 2~3개 기관을 담당하여 세부사업 평가(사업수행 및 회계관리 등), 사업관리 및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및 정책 제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정수급 관련 사업관리를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21~'23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및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46.7%, 사업비는 53.3%로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고, 국제협력사업이 사업비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문제가 나타남.
- 사회활동 참여 노인 수와 기능확대(프로그램) 경로당 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개별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단체들의 사업 수행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심의시에만 사업비의 구성이 적정한지 판단함. 다만 '19년부터 사업관리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사업관리단에서 공모시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등의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단체에서 이를 준수하여 적절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 내역을 관리하고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을 감축한 후 다수의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며, 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조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의 사업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양질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만 선정한 후 각 단체의 사업 수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현재와 같이 사업관리단을 지속 운영하면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임.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단체 공모시 각 사업의 성과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체 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사업을 관리해야 함.
- 궁극적으로 본 사업의 보조금이 노인단체의 유지가 아니라 노인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본 사업은 수행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단기가사서비스 및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의 집행율이 '18년 기준 81%로 낮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19년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6개 내역사업을 '20년부터 통합 운영하기 시작하여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19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율은 32.9%로 '18년의 33.6%보다 오히려 낮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업운영의 경직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에 '20년부터 전담사회복지사가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각 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사업성과 달성에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 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구성됨.
-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하며, 제27조2는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 내역사업수행의 구속력이 있음.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및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의 경우 구속력은 없으나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경상 보조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민간경상 보조 사업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어 '20년부터 기존 6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함('20.1월 시행).
- 기존 사업: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기존 6개의 내역사업의 보조율은 서울은 50%, 지방은 70%로 서울과 지방의 보조율에 차이를 두어 적정하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보조율은 100%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과지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율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종합만족도('19년 추가)로 적절하지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개별 성과지표는 설정되지 않아 이 사업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19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율은 32.9%로 '18년의 33.6%보다 오히려 낮다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이는 연도별 '19년 이용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8년 41,365명(서울 3,429명, 지방 37,936명), '19년 47,686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1인당 매월 27시간 또는 36시간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일부 서비스 수혜자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비스를 받아야 해서 수혜자 수가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19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종합만족도의 목표달성도는 107.6%로 목표를 추가달성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금이 적절한 정책수단이며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크지 않지 않음.
-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하여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과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8년 단기가사서비스 및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의 집행율이 81%로 낮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19년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6개 내역사업을 '20년부터 통합 운영하기 시작하여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경우 우울감, 자살생각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19년 기준 예산은 26.8억으로 115개소 지원)이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3.4억으로 10개소 지원)으로 그 사업비를 받는 기관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 사업들도 통합되어 문제점이 '20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19년 운영비는 '18년에 비해 60.7% 증가하였으나 이는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2차) 발표에 따른 사업추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이전비용 증액, 기존민간단체 지원사업이었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센터 보조금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적절함.
- 지자체 경상 사업의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로 서울과 지방의 보조율에 차등을 주어 적절하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보조율은 100%로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책자)에서 사업기관 선정의 규정이 포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책자)에서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용도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사전승인이 필요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함.
 - 수행기관은 정산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증받은 보고서를 제출 및 정보공시를 해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책자)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가능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 관련 외부적발은 0건이나 자체적발은 '17년 141건이고 '18년 152건으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수행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율이 낮아 '20년부터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이처럼 사업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개별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18년 단기가사서비스 및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집행율은 81%로 낮았음.
- '19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율은 32.9%로 '18년의 33.6%보다 오히려 낮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운영의 경직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20년부터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19년 이용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8년 41,365명(서울 3,429명, 지방 37,936명), '19년 47,686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1인당 매월 27시간 또는 36시간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일부 서비스 수혜자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비스를 받아야 해서 수혜자 수가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못했음.
- 이에 '20년부터 전담사회복지사가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중점돌봄군: 월 16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3-2 정책 제언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각 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사업성과 달성에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필요할 보호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함. · 성과지표는 노인학대신고증가율이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자체가 없음.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 수 등이 적절한 성과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20년 기준 약 12억원을 지원(이 중 3.5억이 인건비)하고 있으나 노인인권보호 사업이나 홍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관리 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의 사업수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업비로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수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의 제1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속력이 있고, 동 법 제2항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하나 국고보조에 대한 당위성은 없음. 동 법 제39조의 19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제39조의 19 3항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고보조의 근거도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제39조의19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 등과의 관련성은 낮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필요한 사업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관리 및 조정, 학대노인의 단기보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함.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사업과 피해노인의 보호 관련 사업을 함.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사업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노인학대예방사업 연구·개발·평가 - 노인학대예방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관리, 대외자료 제공 ●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보호(쉼터)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관리 - 업무수행지침 제작 및 배포 - 상담원 심화 교육 ● 관련 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전국 홍보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전국적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운영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관리위원회 운영 ●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 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등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자료: [표 2-7]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201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p.15).

- 각 사업별의 '18년 집행율은 98% 이상이며 '19년 집행율은 100%임.
- 성과지표는 노인학대신고증가율 한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함. 또한 동 성과지표는 노인학대신고가 증가하는 경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인학대를 줄이는 것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라면 성과지표 자체가 적절하지 못함.
- 특히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20년 기준 약 12억 원을 지원(이 중 3.5억이 인건비)하고 있으나 노인인권보호 사업이나 홍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관리 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의 사업수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노력은 부족하므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 수 등이 적절한 양적 성과지표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수익성이 없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이 어려워 보조사업은 필요하며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없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그 가족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수는 증가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요가 충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상경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각 단체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바 보조금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의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비율 산정하여 보조율은 적정함.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은 국고에 의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조율은 100%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조하는 것이 타당함.
 -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은 50%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50%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및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됨.
- 다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재단이 가장 적합한 기관인지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과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사업실적 등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p.43.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운영 및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 다만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업비로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예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규정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적발이력은 없지만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500개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설장, 종사자 및 이용자의 노인인권 의식, 인권침해 경험·목격실태 등을 3인1조 조사단(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수조사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존재함.
- 성과지표는 노인학대신고증가율이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자체가 없음.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 수 등이 적절한 성과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20년 기준 약 12억 원을 지원(이 중 3.5억이 인건비)하고 있으나 노인인권보호 사업이나 홍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관리 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의 사업수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업비로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예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국고보조의 상당부분이 경상경비로 사용될 여지가 큼.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수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은 기관의 사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또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방식 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예산 집행수준이 저조하고, 성과지표의 역할이 미흡함 · 건축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예산 집행 수준 저조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성과 평가 및 사업 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 사업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자체 수요 및 여건이 반영된 사업 조정이 필요함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신규 지표(노양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 건수 등)을 도입하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 요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요양 수요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11년 11.0%에서 2020년 15.7%로 증가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요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국정과제에 해당되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은 아님
 - 국정과제 43-3번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과 연관되어,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치매 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특성을 가짐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재가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내역사업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기 어려움
- 특히,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병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지원보다는 부족한 간병인의 추가 확충이 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해당 내역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당장 사업 수정을 하기 보다는 차기 평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43.1%, 9.2%, 17.9%로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성을 보임
 - 건축공사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한 사업 기획 및 실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전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 시설이 일부 지역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님비(NIMBY) 문제와 지자체 사업 참여 부족 등의 현실 문제에도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특히, 2017년 보조사업 평가와 2018년 국회 결산에서도 예산 집행 실적 미흡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2019년 예산 실행률이 17.9%에 그치는 등 본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실집행액)			
2017년 (결산)	21,337	19,697	18,007 (8,497)	-	1,690	43.1%
2018년 (결산)	85,908	85,908	79,389 (7,900)	-	6,519	9.2%
2019년 (실적)	117,738	117,738	116,677 (21,066)	-	1,061	17.9%

- 본 사업의 성과지표(장기요양기관 이용률,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2019년부터 신규지표(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로 대체되었으나, 해당 지표의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지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2017년 94.4%, 2018년 93.6%로 저조하였는데, 신규 대체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 지표에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지표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 결과가 계측되기에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단위사업	목표	90	90.3	신규지표 대체	이용률=이용자수/인정자 수*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
		실적	85.0	84.5	신규지표 대체	
		달성도	94.4	93.6	신규지표 대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단위사업	목표	92.2	93.2	신규지표 대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 / 100 (백분율 대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만족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
		실적	97.1	96.9	신규지표 대체	
		달성도	100	100	신규지표 대체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요양 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은 민간부문에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노인요양(재가) 시설의 입소(이용) 노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시설을 필요한 고령자가 이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174억 원에서 2020년(계획) 86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330-03)	17,374	78,737	115,875	86,00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330-01)	-	-	-	300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320-01)	-	-	-	94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나름의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 조정이 상당 부분 필요함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효행률이 43.1%, 9.2%, 17.9%로 매우 저조한데,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2017년 평가 및 2018년 국회 결산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사업 관리 주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구조상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 가능하기에, 사업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제시되어 있고, 단기(0 ~ 3년), 중기(3 ~ 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목표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근거 추가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노인 요양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령자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정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 다만,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실질적인 결과 관리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적인 사업관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2017년 보조사업 평가와 2018년 국회 결산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함

3-2 정책 제언

-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저조 문제는 건축공사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업 구조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수행 및 관리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사업이 시설 건축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건축사업 공정률 등을 반영한 예산 구조로 보완하여야 함
 - 지역 내 님비(NIMBY)와 지자체 사업 참여 의지 촉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장기요양기관 이용률,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2019년부터 신규지표(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로 대체되었으나, 지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지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였는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2020년 신규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지표는 성과 계측에 한계가 있기에, 해당 만족도 항목에 “입소노인 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대처나 응대(태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다함께돌봄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돌봄에 대한 국가지원의 타당성은 명확하나 사업계획 및 성과에 있어 개선이 요구됨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이 크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아동수에 있어 그 성과가 미미함 ·센터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기존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본 사업의 목적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역시 고민될 필요가 있음. 현 수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수(명)’와 같은 산출지표도 적절하다고 보여짐. 또한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돌봄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신학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며 제3항에서는 국가의 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네 가지 내역사업 모두 동일 법령에 근거하나 법령 및 규칙의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 문제 및 아동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정과제 '48-3-9: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해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지원단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사업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19년 총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의 약 61.2%가 설치비이고, 33.1%는 인건비, 5.6%는 사업지원단 운영비임
- 사업 초기인만큼 센터 설치에 사업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적절함
- '19년 예산 편성 시 운영비는 별도 편성되지 않았음. 센터 이용료를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적절한 계획이 아니라는 국회 지적을 반영하여 '20년 예산에는 운영비가 편성됨
- 성과지표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수(개소)이며 '20년 성과계획서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및 국민 참여 및 소통 지표가 추가 설정됨
- 사업운영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적절한 성과지표라 판단되나 상기 지표 외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수(명)'와 같은 산출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19년 목표 개소수는 150개였으며 173개 센터 설치로 목표치를 달성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충족되지 못한 초등돌봄수요 20만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학교를 통해 10만명에 대한 추가 돌봄을 지원하되, 나머지 10만명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돌봄에 대한 국가적 보조의 필요성이 명확함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이며 간접 수혜자는 센터 종사자임
- '19년 실적은 직접 수혜자(이용아동) 2,968명이며 간접 수혜자(센터 종사자) 514명임
-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사업들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미미하고 사업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 본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사업들이 운영되는 과정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므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비교적 낮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설치비 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기준보조율 50%(서울 30%)을 적용하며, 사업지원단 운영비는 별도의 기준 없이 100% 보조율을 적용함



- '18년 실집행률은 60.1%로 인건비 지원의 실집행률은 40%, 설치비 지원의 실집행률은 80%임
- '19년 실집행률은 6월 말 기준 17.5%이나 대부분의 센터가 하반기에 집중 개선되는 점('19년 상반기 42개소, 하반기 131개소)을 고려할 때 '19년 전체 실집행률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시행 초기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이 크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음. 사업 계획 수립 → 저조한 실집행률 → 예산 감축 → 사업 계획 변경의 과정들이 반복되는 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단, 저조한 실집행률의 주요 원인이 인건비 편성에 있음을 파악하고 인건비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정('18년 12개월, '19년 10개월, '20년 3개월)한 부처의 관리 노력은 인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다함께돌봄사업 계획 및 안내서,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공모계획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자체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토대로 보조사업 집행결과 점검 절차,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시 관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적발 후 조치 기준은 있으나 부정수급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기 및 기준,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설명회, 영상회의,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집단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운영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합리성이 낮음
 - 지침 변경을 통해 수탁자격의 기준을 완화(「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완화하여 학교, 장학재단 등을 포함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센터 설치를 의무화(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해당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고 감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연차별 사업 계획이 변동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가 요구됨
- '20년 현재 수요조사 결과 지자체 제출건수가 목표 대비 94%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초등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봄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신학기에 맞추어 개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의 사업운영 내용('20년 2월 24개소 설치)을 보면 이러한 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현재 본 사업은 센터 확충에 집중되어 있음. 사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서비스 인력 교육과정 개발, 교육 운영, 홍보, DB 구축, 현장점검 평가지표 개발, 컨설팅 매뉴얼 개발, 효과성 연구, 만족도 조사 등)이 정비되고는 있으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됨
 - 이러한 내용 외 기존 관련 사업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참조하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돌봄 관련 사업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에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 등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음. 사전에 적정 인건비 수준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모자보건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내역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 동 세 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최근 3년 주요 내역사업들에서 실행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도 반영됨. 또한 부정확한 대상자 파악 등 재정추계의 합리성도 낮아 감축을 판정함. 단,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행행률 개선 여건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에 한해 감축으로 판정함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행행률이 52.6%, '18년 실행행률이 49.7%, '19년 실행행률이 58.9%(잠정수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행행률이 53.0%, '18년 실행행률이 41.7%, '19년 실행행률이 61.0%(잠정수치)이며 두 사업 모두 대상자가 과다 추계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안내’를 통해 제시되는 중복수급 방지 사항의 내용과 형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산부 관련 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임산부 DB의 공동구축 및 활용, 관련 기관간 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임
 - 제3조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 역시 동법에 근거하고 있음
 - 산전산후건강관리: 제9조, 난임부부지원: 제11조, 임신부의 날 개최 및 배려캠페인: 제3조의2,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제10조의2, 인공임신중절예방등 사업: 제12조1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3조, 산후조리원 평가 및 감염·안전 관리: 제15조의6 제1항, 제15조의19 제1항
 - 내역사업에 따라 법령 및 규칙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음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및 건강관리를 통해 차세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모성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함.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난임부부지원 내역사업과 국정과제 '48-2-3: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가 연관성을 가짐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7가지로 사업별 내용 및 보조유형은 다음과 같음



명칭	보조유형	목적 / 목표
산전산후 건강관리강화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임신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및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난임부부지원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임신·출산 지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및 정서적 지원
임산부의날개최 및 배려캠페인	민간경상	공식행사(출산친화유공자 포상) 및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강의 등 축하행사 및 전국 지하철 및 보건소를 통한 임신부배려 캠페인 및 홍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지자체경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사업	민간경상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 계획 임신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피임교육 및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자체경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산후조리원 평가 및 감염·안전 관리	민간경상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각 내역사업들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업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됨
- 단, 산후조리원 평가 및 감염·안전 관리 사업의 경우 현재 운영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본 내역사업의 사업명은 평가 및 감염·안전관리인 반면 사업내용은 컨설팅(평가지표 등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명과 내용 간에 차이가 있음.
- 또한 본 내역사업의 목적이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컨설팅 방식에 대한 효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이러한 사업내용과 방식이 지속된다면 본 내역사업은 보조금 지원필요성이 매우 낮음. 그러나 모자보건에 있어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의 중요성, '22년부터는 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컨설팅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점,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진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21년에도 본 내역사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도(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상자 만족율(%)이며, 주요 내역사업인 난임부부지원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규모를 반영했다고 판단되며 대표성이 있음
- 네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모든 '19년 신규 지표로 일부 사업은 목표달성률이 341.6%까지 나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17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령임산부가 급속히 늘고 난임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형태가 적절함

< 난임진단자 현황 >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73,650	177,039	198,197	205,297	201,946	201,589
남성	28,391	29,863	37,731	42,473	43,305	44,797
여성	145,259	147,176	160,466	162,824	158,641	156,792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산전산후건강관리강화 사업은 임산부이며,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인공임신중절 예방등 사업은 일반국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산후조리원 평가 및 감염·안전 관리사업은 산후조리원임. 청소년 산모부터 임산부, 일반 국민까지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의료비 지원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은 지속적으로 살펴 봐야 할 문제임
 - 모자보건사업안내를 통해 중복수급 방지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내역사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Q&A의 형태로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내용 및 형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122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 100%를 적용하였으며,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서울 30%, 지방 50%를 적용함. 일반적인 기준 보조율이 적용됨
 - 내역사업별로 실행행률의 차이가 있음. 대체로 교육 및 행사 관련 사업들은 실행행률이 높은 반면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실행행률이 낮은 특징이 있음



-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89.9%, '18년 실집행률이 40.8%, '19년 실집행률이 70.8%(잠정수치),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52.6%, '18년 실집행률이 49.7%, '19년 실집행률이 58.9%(잠정수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53.0%, '18년 실집행률이 41.7%, '19년 실집행률이 61.0%(잠정수치)임
- 해당 내역사업들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역시 '17년 실집행률이 85.0%, '18년 실집행률이 49.7%, '19년 실집행률이 73.0%(잠정수치)로 나타남.
- 이러한 저조한 실집행률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도 반영된 바 있으며('18년 평가결과 미흡) 핵심사업평가, 국회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음
- 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사실혼 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을 차등적용하여 향후 실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짐

○ 재정추계의 합리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신청률이 '19년 35.8%, '20년 49.1%로 설정되어 있음. 반면 성과목표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의 목표치는 '19년 19.0%, '20년 20.5%로 설정되어 있음.
- 이러한 차이가 측정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본 사업에 지원 가능한 모집단을 기준으로 정확한 신청률 파악 및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예를 들어, 본 내역사업의 '17년 수혜자수는 6,899명, '18년 수혜자수는 7,677명, '19년 수혜자수는 10,910명인 반면 예산 편성 내역의 지원대상 추계는 '17년, '18년 8,440명, '19년 16,259명, '20년 14,411명으로 지속적으로 과다 추계되고 있음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자가 과다 추계되고 있음. 본 내역사업의 '17년 사업수혜자는 743명, '18년 561명, '19년 460명인 반면 예산 편성 내역의 지원대상은 '17년 1,000명, '18년 1,000명, '19년 700명, '20년 700명으로 적용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별도 규정없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7조), 보조사업자 공모(제9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2조)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공모결과 및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계획 수립, 심사요청, 보조사업대상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의 절차를 준수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통해 집행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교부결정통지서와 함께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정수급 대응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며,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제42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보조사업 7건 모두에 대해 정보 공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기준(제41조)을 갖추고 있음.
 - 최근 3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최근 3년 주요 내역사업들에서 실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18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바 있음
-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89.9%, '18년 실집행률이 40.8%, '19년 실집행률이 70.8%(잠정수치),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52.6%, '18년 실집행률이 49.7%, '19년 실집행률이 58.9%(잠정수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실집행률이 53.0%, '18년 실집행률이 41.7%, '19년 실집행률이 61.0%(잠정수치)임
- 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실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사업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모자보건사업안내를 통해 제시되는 중복수급 방지 사항의 내용과 형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임신부 관련 지원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관련 DB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기관 간의 통합과 같은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보건의료정책 개발지원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감축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나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현재 의학분야의 연구를 장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지향에서 아직 구체성이 떨어짐. ·연구개발비 관리에 보다 관심이 요구됨. 즉, 합리적인 과제비선정, 적절한 과제관리 및 절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국내 타 한림원 지원사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지표(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은 일정부분 인정됨.
- 「의료법」 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는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둔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다각도에서 파악함으로써 미래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건의료쟁점 및 현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독립성, 자율성 및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미나·포럼 등 11개 부문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래의학의 방향 제시와 한국 의학의 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유도하고,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9년에는 변화되는 사회 보건환경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정책개발위원회에서 진행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의료법」 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따라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부분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을 통해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아직 포럼이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이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한국 보건의료 R&D 연구용역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필요성은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 내실화를 증명해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지원 예산은 한림원의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전체 한림원 예산의 40~50% 수준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을 위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는 등 정기적 학술연구 활동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합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의료법」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항에 따른 직접지원으로 이뤄져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없음.
- 매년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한 차년도 사업계획 마련, 국고보조금의 탄력적 교부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의 관리는 이뤄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일부 발췌하여 그 적정성 등은 해당 없음.
- 사업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평가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법인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 발생 사유, 해당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을 통해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의 근거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감축으로 판정함.
- 현재 의학분야의 연구를 장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지향에 있어 아직 구체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비 관리에 보다 관심이 요구됨. 즉, 합리적인 과제비선정, 적절한 과제관리 및 절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 타 한림원 지원사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성과지표(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국내 타 한림원 지원사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지표(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함 ·7개의 내역사업을 현재의 2개 성과지표로 대표하기 어려움 ·추가적인 성과지표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복지 대상자에게 상담과 복지자원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례관리사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사회적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정과제 17-1번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17-3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연관이 있음
 - 사례관리사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관련 국정과제에 기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방문 건강관리, 중독관리 통합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구분되어 있어 대체로 적절함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2020년 1월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개편되면서 별도 세부 사업으로 재이관됨
- 본 사업은 2018년 신규 도입사업으로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은 98.6%와 97.9%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 예산의 실행 수준이 다소 하락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집행 잔액의 상당수는 내역사업별 사례관리 종사자의 인건비로 종사자 결원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자체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	-	- ()	-	-	%
2018년 (결산)	234,653	234,653	234,653 (231,353)	-	-	98.6%
2019년 (실적)	269,032	269,032	269,032 (263,413)	-	-	97.9%

- 본 사업의 성과지표(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는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본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계측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추가적인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지표 대신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의 성과를 계측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내역사업)	목표		91.3	91.5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 의사 등 (총 8개 항목-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실적		91.5	91.75	
		달성도		100.2%	100.3%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내역사업)	목표	-	72	72.5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20문항) 점수
		실적	-	72.3	1월 초 산출예정	
		달성도	-	100.4%	-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사례관리사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7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통합사례관리, 취약아동, 방문건강, 의료급여, 자활사례, 노인 돌봄기본, 정신건강) 예산 일부를 통합한 이후 2018년 신규 통합사업으로 본 사업을 구성하였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중독의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공공복지 수요층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8년 2,347억 원에서 2020년(계획) 1,339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2020년 예산 감소는 내역사업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2020년 1월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통합되어, 해당 예산의 감축이 발생한 결과임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①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지자체보조)	-	233,976	268,068	133,719
통합사례관리사 지원(330-01)	-	16,043	16,303	17,122
자 활 사 례 관 리 (330-01)	-	1,423	1,693	1,740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0-01)	-	100,475	132,610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330-01)	-	66,200	66,738	58,826
의료급여관리사 (330-01)	-	16,255	16,588	17,044
방 문 건 강 관 리 (330-01)	-	30,090	30,588	35,349
중독관리통합지원 (330-01)	-	3,490	3,548	3,638
②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민간보조)	-	677	964	207
통합사례관리사 지원(320-01)	-	56	56	62
드림스타트 사업지 원단 운영(320-01)	-	621	908	50
방문건강관리 (320-01)	-	-	-	95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내역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인데,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보조 수준을 더욱 세분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현재는 일부 내역사업에서 서울과 지방으로 차등화하고 있으나 지방 지자체별로도 재정 자립도 수준에서 큰 편차가 발생 중임)
- 본 사업은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제시되어 있고, 단기(0 ~ 3년), 중기(3 ~ 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목표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대체로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돌봄 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의미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어 선정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집행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등 내부사업별 사업 업무 지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조사업 실적을 주기적으로 통해 확인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등 내부사업별 사업 업무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관리의 적정성이 인정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매년 각 지자체별 최종 사업 정산결과 보고 내역을 확인 하는 등 자체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 모든 내역사업별로 매년 각 지자체별 최종 사업 정산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로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복지 대상자에게 상담과 복지자원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례관리사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본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가 미흡함
 -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의 특성 상 대상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등의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예산의 실집행률 수준은 높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내역사업별 사례관리 종사자의 인건비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돌발 상황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집행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2개 성과지표(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만으로 7개 내역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에 신규 성과지표 도입 및 조정 등이 필요함
 - 현행의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지표는 성과 측정의 객관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하여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대체인력이 기존 인력의 효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함 ·대체인력 파견에 대한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성과지표 등에 대한 개선을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참여, 경조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업무 공백을 줄이고, 안정된 시설 운영과 종사자의 휴식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체인력이 기존인력을 100%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차 또는 병가 활용 여건이 열악한 것에 대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해당 문제점은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에 대한 관련 사업 자체를 개선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정과제 17-2-2번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관이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대체인력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구분되어 있으나 내역사업간 통합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대체인력 명절휴가비는 2020년에 신설된 명절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비법정수당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기보다는 인건비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2018년 신규 도입사업으로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은 81.4%, 92.4%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시·도별로 대체인력지원센터 계약 후 인력채용 공고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한 결과로 추후 사업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8년 (결산)	4,225	4,225	4,224 (3,440)	-	1	81.4%
2019년 (실적)	5,125	5,125	5,125 (4,735)	-	-	92.4%

- 본 사업의 성과지표(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활용율)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활용율” 지표에 대한 실적은 2018년 100.9%, 2019년 115.5%로 우수한 수준이나, 단순히 대체인력의 파견 실적만 계측하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인력 이용자의 만족 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활용율(%)	세부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목표	-	80.8	85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별 대체인력 파견실적 자료 취합(매월)
		실적		81.5	98.2	
		달성도		100.9	115.5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지원, 대체인력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움.
- 대체인력 지원 대상이 조리서비스 종사자와 돌봄 직접서비스 제공자로 각각 조리원 자격,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자격이 요구되고 있어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나 범위가 충분히 크기 않은 문제점이 확인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사회복지사, 조리원 등)로 설정되어 있는데, 돌봄 종사자의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는 사업 특성상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569,104 명) 대비 실수혜자 규모(연인원 기준 20,826 건)가 크지 않음
 - 또한, 잠재적 수혜자인 직접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8년 42억 원에서 2020년(계획) 57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대체인력 인건비 (지자체경상보조)	-	4,079	4,999	5,573
대체인력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	114	114	117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81.4%, 92.4%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일정 지연에 대한 대응책이 강화되어야 함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 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을 개선(종사자 확충 등)할 경우 신규 사업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 소비와 관련 내역사업 예산(대체인력 운영지원)에 대한 지출 등을 줄일 수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시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공급하여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인정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및 직장 내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함
 - 다만, 본 사업으로 생성되는 대체인력 자체의 경우 임시직 특성 등으로 인해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의 향상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임시직 대상자들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고급인력이기에 문제가 더 심각함
-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회적 가치(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실제 기여하는 정도가 독자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체인력 운영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부처 통합 규정 또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 대체인력지원센터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 선정 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함. 선정 이후 운영 위탁 계약서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하며, 지침 내 운영체계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여 운영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지침)을 갖추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사업수행 및 집행 상황을 e나라도움 및 유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에 보조금 집행, 정산, 정보공시, 부정수급 대응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등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매달 실적점검자료 및 반기별 현장점검(매년 상·하반기)을 통해서 채용현황, 채용현황 등 점검하고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 교부결정을 통해 보조금 교부조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중앙 및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임시 인원인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수분 제고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한계가 있음.
- 추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활용율” 지표는 대체인력의 파견 실적만 계측하여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3-2 정책 제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공급하는 현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20일 한도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대체인력의 전문성이 기존 종사자를 따라가기 어렵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대체인력 자체의 직업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다만,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인력의 추가 확보 문제와 2022년부터 발생하는 기타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의 예산 감축보다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도 진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활용율”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성과지표(대체인력 이용자의 만족 수준 등) 도입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8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1.8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2021년)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에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은 동 예산을 활용하여 평시 음압시설을 완벽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집행(유지보수, 폐파필터 교체, 훈증소독 등)함으로써 위기 시 적절한 음압시설 공간에서 신종감염병 등 환자의 격리치료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 동 사업은 평시에는 신종감염병 대비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평시 한계편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만, 최소한의 음압시설 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상황 시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추가 전파 등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 가능함. · 또한, 평시에도 매년 메르스 등 의심환자를 300명 넘게 격리입원 치료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 등에서 지원 하여야 하는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근거는 확보됨.
- 동법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및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 및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음압시설의 설치 내용 등 정의하고 있으며, 제64조, 제65조, 제68조에서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주체를 정의함
- 평상시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시 적절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필수적인 국고보조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음압시설 유지에 드는 전반 비용을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보조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실제집행률이 높을 뿐 아니라 목표하는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내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사업이 신종감염병 관련 격리 목적 등 유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업주체 및 보조사업자의 유형이 다르고 격리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통합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사업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29개소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지원 사업임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사업은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밀접접촉자를 검사·격리·관찰하기 위한 국제공항 내 검역소(3개소)에 국가격리시설 구축 및 운영하는 직접 사업임



- 특히,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의 수혜보다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 손실이 큼에 따라 공중보건의 공공성을 갖는 의료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개소당 대략 80백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유지 관리 및 운영비 등 집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평시 20% 대기병상 유지 및 메르스 등(의심)환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격리수용에 따른 병원수익 손실 대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낮은 편으로 보여짐.
-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전국적 이슈가 있을 때는 재정지원이 유동성있게 지원되어야 할 부분임.
 - 그동안 대부분의 예산이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표 보조세목인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실행행률이 평균 95% 이상 집행되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한 효과 및 실적이 좋은 점 등 감안할 때 예산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나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동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신종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여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이에 대한 관리는 운영구조 제 4조, 제 3조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76페이지에 근거, 해당 보조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선정평가위원회 거쳐 선정된 이후 지정형 보조사업의 형태로써 부정수급 개념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유형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집행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서면 점검 등 수행하고, 점검 주기에 맞도록 시스템 내 목적 외 사용 등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집행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서면 점검 등 수행하고, 점검 주기에 맞도록 시스템 내 목적 외 사용 등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에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은 동 예산을 활용하여 평시 음압시설을 완벽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집행(유지보수, 해파필터 교체, 훈증소독 등)함으로써 위기사건에 적정한 음압 시설 공간에서 신종감염병 등 환자의 격리치료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 동 사업은 평시로 볼 시 신종감염병 대비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평시 한계편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만, 최소한의 음압시설 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상황 시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추가 전파 등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 가능함.
- 또한, 평시에도 매년 메르스 등 의심환자를 300명 넘게 격리입원 치료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어린이집 확충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본 사업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 등을 고려하는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목표 설정은 타당하나, 세부 내역상으로는 신축, 리모델링, 장기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분 전략 수립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누적 실행률('16 ~ '17년)이 80%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과다 예산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누적 실행률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함. ·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사업목표설정과 세부내역별 예산배분기준과 전략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누적 실행률을 고려한 최종 집행률이 80%대인 점을 고려하는 경우 과다 예산편성 해소를 위한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단가 현실화, 방식별 예산배분 전략 수립, 누적 실행률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설치에 관한 규정임.
- 동 규정은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보육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공공보육시설 취약지역 위주로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임.
 - 특히 '19년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이 28.2%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임을 고려하는 경우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별로 사업기간, 예산투입기간이 상이하여 이를 반영한 정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도 실제 누적 실적행률이 현액 대비 80%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
 - 다만,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각 방식별로 예산지원기간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방식별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예산 배분 전략 수립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는 경우 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고보조율을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보조금 교부 결정시 상대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할 수도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국적 수요가 높은 상황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최저기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유사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으나,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등 설치사업이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은 기존시설의 증개축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중복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7세 인구가 '20년 대비 '25년은 18만 명 감소하는 등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나 지원방식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사업규모는 향후 인구구조변화 등 여건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인구추계에 따르면 1~7세 인구의 경우 '20년 대비 '25년은 1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임.
- 특히 시설 투자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자 감소시 매몰비용 등으로 예산 손실이 예상되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된 시설의 활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누적실집행률을 고려해도 최종 집행률이 80%대인 점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것은 타당함.
- 보육사업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 지침을 통해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현지 점검 절차 및 규정,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 다만 누적실집행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종 집행률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는 경우 예산 조정을 하거나 또는 실집행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와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등의 실시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관련 사항,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고려하는 경우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특히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이 3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신축, 장기임차 등 보육시설 확충방식별로 예산소요비용, 수요감소시 매물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시행방식별 예산 배분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저출산 등으로 아동인구가 단기적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과잉투자나 유휴시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수요전망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요구됨.
- 아울러 누적실집행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종 집행률이 80%대 수준이므로 과다 예산편성 해소를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시 단가 현실화, 확충 방식별로 예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지역별 아동인구추세 등을 반영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예산배분, 확충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태분석 및 기초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낮은 집행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사업 추진 실적(누적 실집행률 등)을 중앙에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의 변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19년까지 미집행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지만 '19년 11월에 개선한 시스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향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사업의 수혜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맞는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성과지표에 수혜자 수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양적 측면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출산비용지원대상자 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출산자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 다양한 인적속성을 가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내역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복지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에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 강구해야 한다고 하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의 구속력은 있지만 국고보조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7조 >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내역사업 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장애인 모성권 보장에 포함될 수 있어 구속력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지원사업과 출산비용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여성장애인이므로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며, 본 사업은 국정과제 42-4(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장애인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강화)와 관련되어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출산비용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되기 적정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존재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다면 여성장애인 개인에 의해 전적으로 부담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지원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부담 완화에도 효과적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직접수혜자 수는 17년 1,404명, 18년 1,219명, 19년 1,281명(잠정치)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질적으로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기관과 규모는 적정한 편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19년까지 미집행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지만 '19년 11월에 개선한 시스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향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정책대상자인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동 사업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년 예산집행률이 90.9%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11월과 '19년 11월에 사업대상자 발굴 등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시스템 개선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방문 신청('16.12월)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17.11월) 가능하도록 조치
- 온라인 신청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누락자의 경우 '행복e음 장애인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발굴 후 신청 안내('19.11월)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증대('19.11월)

- 내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내역사업 중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만족도를 설정하였으나 '19년 성과지표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만족도는 질적영역을 평가하는 지표이나 양적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 참여자수가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음. 실제 교육지원사업 참여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음.
- '18년에 86.8점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년 만족도 목표를 80점으로 설정함.
- 실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참여자 수는 '17년 116천명, '18년 107천명, '19년 107천명으로 '17년 대비 '18년 및 '19년의 참여자수가 감소하였고 '20년은 87천명으로 계획 중이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구분	상담	사례 관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	자조모임
	연인원 (명)	연인원 (명)	프로그램 (개)	연인원 (명)	연인원 (명)	연인원 (명)
2017	22,416	4,773	421	69,880	8,499	11,050
2018	25,928	5,062	412	60,160	7,267	8,780
2019	19,257	3,147	414	68,208	7,994	8,248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을 설정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였으나 '18년 달성율은 83.7%, '19년 달성율은 90.9%에 불과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은 '출산비용지원인원/출산비용지원대상자(예산기준)*100'으로 계산되며 예산기준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여성장애인수 대비 실제로 몇 명이 지원받았는지를 의미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크게 유사 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음.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정책과 중복되며, 출산비용지원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정책과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정책들은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되어 차별화됨.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과 출산지원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큰 사업이므로 민간 등에서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범위가 광범위함.
- 여성장애인은 출산한 여성장애인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임신부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내역사업 발굴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 1인과 상담사 2인의 인건비를 지급해 사업비 중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적절함.



- 인건비는 관리책임자(190~200만원), 상담사 2명(140~150만원*2명) 수준으로 높지 않음.
- 관리책임자는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여 수행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별도의 행정비용 발생하지 않음.
- 지자체 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등 타 장애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음(서울 50%, 지방 7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책자에서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한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보조사업 집행점검 기준 및 정산, 반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자체 사업에 대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필요성은 크지만 사업의 운영방식은 개선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의 경우 '19년까지 미집행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지만 '19년 11월에 개선한 시스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향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정책대상자인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동 사업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년 예산집행률이 90.9%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11월과 '19년 11월에 사업 대상자 발굴 등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사업의 수혜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적절한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성과지표에 수혜자 수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양적 측면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출산비용지원대상자 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출산자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 다양한 인적속성을 가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내역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함 ·사업수혜자가 성과결과의 일부에 해당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함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나, 최근 관련 법안 통과가 예상되기에 해당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됨
- 사업의 추진근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법령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1996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영주 귀국 동포에 대한 비용 지원을 결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었고,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외통위를 통과(2020. 3. 4.)하였음

구분	현행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내용	사할린한인 특별법안 내용
대상	사할린동포 1세 및 배우자, 장애인 자녀	사할린 동포 1세 및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지원 내용	항공료, 집기 및 비품, 임대주택 보증금, 특별생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현 수준 유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현재와 같이 지침을 통한 특례 적용)

- 본 사업의 목적은 강제징용으로 이주한 사할린 한인들이 귀국하여 고국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입소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지원사업, 대창양로원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짐.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모두 100%로 우수한 사업 예산 집행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입소 시설 2곳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용이한 구조를 가짐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집행액)			
2017년 (결산)	1,381	1,381	1,381 (1,381)	-	-	100%
2018년 (결산)	1,193	1,193	1,193 (1,193)	-	-	100%
2019년 (실적)	1,518	1,518	1,518 (1,518)	-	-	100%

- 본 사업의 성과지표(수혜자 만족도)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수혜자 만족도” 지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2017년에는 99.4%로 매우 높았고, 2018년과 2019년은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 다만, 성과실적에 대한 목표가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동안 92 점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2020년 사업부터 해당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또한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입소시설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약 3,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본 사업의 수혜자인 입소시설 이용자 약 100 명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수혜자 만족도(점)	단위사업	목표	92	92	92	평가항목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등 5단계로 구성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실적	91.5	92	95.6	
		달성도	99.4%	100%	103%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입소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민간 공공 부문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중기적 관점에서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2019년 말 2,690 명) 중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요양시설 또는 양로시설 입소를 위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규모가 연 15억 원 수준으로 크기 않기에 사회적 공동복지기관(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 특히,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의 경우 일본 적십자사가 1994년부터 운영 지원을 해오다가 2015년에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해당 시설이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이고, 대창양로원의 경우 2020년 사업 예산규모가 1.4억 원 수준으로 사회적 공동복지기관의 사업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반면, 대상자의 요양시설 또는 양로시설 입소 수요를 지역의 공공 요양시설 등에서 수용하는 방안은 수혜자의 언어장벽 문제 등으로 적절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를 지나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배우자, 장애인 자녀(국내 체류인원 2,690명)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고령화 등으로 수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14억 원에서 2020년(계획) 1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330-01)	1,381	1,193	1,518	1,595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설운영비 지원 규모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요양시설 거주자는 1인당 연간 13백만 원, 양로시설 거주자는 1인당 연간 1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강제징용으로 이주한 사할린 한인들이 귀국하여 고국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의미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지원사업과 대창양로원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세입, 세출에 대한 사용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관리됨
 - 지자체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반납 등의 조치 규정을 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집행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재무회계 등이 관리되고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강제징용으로 이주한 사할린 한인들이 귀국하여 고국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입소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근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령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외통위를 통과(2020. 3. 4.)하였음
- 다만, 사업 대상인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과 대창양로원의 경우 시설 소유자나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공동복지기관 등 민간 부문에서의 자체적인 사업 수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 “수혜자 만족도” 지표의 성과 목표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 결과 계측을 위한 만족도 조사의 대표성이 미흡함

3-2 정책 제언

-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과 대창양로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공동복지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적십자사가 1994년부터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해오다가 2015년에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해당 시설이 대한적십자사의 소유로 자체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 대창양로원은 2020년 사업 예산규모가 1.4억 원 수준으로, 사회적 공동복지기관의 지원 부담이 크지 않음
- 사업의 성과지표가 목표 설정, 성과 결과 계측을 위한 조사 대상 조정, 2019년 성과결과 제시 등 성과지표의 도입 및 관리 전반에 걸친 보완이 필요함
- “수혜자 만족도” 지표의 목표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목표 수준 조정이 필요함
- 만족도 조사 대상자 중 시설 이용자의 비중이 3%에 불과한 문제를 개선하고, 2019년 성과 실적을 제시하는 등 성과지표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음주폐해 예방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2021년) · 음주폐해예방사업에서 달성한 실적을 통해 시민들은 음주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성인·청소년의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관대한 음주문화와 음주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도입을 요구가 있음. ·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목도되므로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되나,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마련 후,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나아가 궁극적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보다 큰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국민에게 음주의 해로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절주운동을 실시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에서 건강생활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3항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사업의 목적은 4대 중독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수정 및 조정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물질(알코올, 마약) 및 행위 중독(도박, 게임)은 공통적인 병리적 특성과 기전을 공유하고 있어 여러 중독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관리 필요함
 -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범죄와 가정과파 등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야 함.
- 국정과제 아젠다로서의 연관성은 낮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교육·캠페인·모니터링 사업과 직접 수행하는 중독 예방 홍보(공익광고 제작·송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들의 체감도(인식도)를 온라인설문조사로 파악하고 있음. 타부처에서도 시민들의 체감도를 온라인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국가 유일의 사업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의 특성상 시민들의 관심도는 낮을 수는 있으나, 음주폐해의 심각성과 정책·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또한, 다른 건강문제(금연, 비만 등)에 비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에 고위험음주자가 매년 최소 3~4%의 감소 효과를 보일 때,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재정과의 연관이 보이지 않음.
- 기초조사 보고서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요구하였는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언급되어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떻게 공헌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실시하여('19년부터 3년 계약)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음주폐해 예방·홍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적정성 있음.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민관단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88호, '16.9) 제 2장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5조~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공고, 선정기준, 공모, 보조사업선정위원회 구성, 적격성 심사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합한 것으로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의견교류 등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88호, '16.9), 제3장 보조사업 집행 관리 제26조~제28조에서 보조사업 집행점검과 집행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내역사업별 부정수급 방지와 자격검증 항목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음주폐해예방사업에서 달성한 실적을 통해 시민들은 음주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성인·청소년의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관대한 음주문화와 음주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도입에 그 요구가 있음.
-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목도되므로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되나,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마련 후,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나아가 궁극적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보다 큰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취약계층과 음주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근거를 제시할 것.
- 음주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마련한다면 정책의 활용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국비 100% 보조사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개선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이라는 세부 사업의 명칭이 모호하여 보조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방식이 한계가 있음. ·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근거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 지자체경상정보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 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령의 구체성과 구속력이 매우 높음.
- 내역 사업의 정책 목표에 따르면 법률의 근거는 제17조에 해당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

제16조(재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이며,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의 정책 목표는 단일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45-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포함되며, 지역·질환·연령 등 환자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포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기간 및 규모는 적정함.
- 내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응급의료기관(402개소) 중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0호)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별도 보조금 지원),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의 등급(A,B,C)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 때 A등급은 30%, C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등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음. 2019년 기준 A등급은 121개소, B등급은 209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82.0%임.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
 - 2018년 및 2019년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여 예산 집행율은 90% 초과함.
 - 성과지표는 적정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함.
- 보조사업은 주요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함.
 - 2022년까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확대하여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평가 후 재지정(3개소) 및 추가 지정(2개소)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와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는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조사업은 의료취약지인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의료기관이며, 실수혜자는 응급환자임.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임. 그러나 실수혜자는 응급 환자로, 시간민감성이 높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모든 국민이 언제든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잠재적 수혜자로 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낮은 원가 보전율과 수익률로 인하여 투자와 보상의 연결고리가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보조율은 100%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122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 사업과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혀 매년 예산을 정하고” 있음.
-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과 추계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분은 다소 높은 편임.
 -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 지출되고 있어 단기(3년)는 매년 3% 인상, 중기(3~6년)는 2.5% 이상, 장기(7년~)은 2% 인상되는 것으로 재정소요액을 추계함.

1-5 사회적가치 실현(3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응급실 이용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8,217,847	8,688,588	9,336,326	9,320,027	9,494,316

자료: 국가응급진료정보망(중앙응급의료센터), 매년 말 기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건수 집계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는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주요 지표가 개선됨.

지표	18년(%)	19년(%)	개선(%p)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9.7	82.8	3.1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율	97.5	97.6	0.1
최종치료 제공률	87.1	90.4	3.3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포화지수	68.0	65.6	2.4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장비 등)을 심사하여 충족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임.
- 기준 보조율이 100%이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음.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제시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에 근거하고 있음.
- 사업 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요재산 정보 공시 현황도 제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외부 적발 기록이 1건 있으나, 내부 적발 이력은 없음.
-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결정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시 'C'등급으로 보조금 수급 배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인 '남양주 ○○병원'은 A등급이었으나 부정행위 적발로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필수영역 미충족, 일반지표2 중 평가결과 5등급 2개 이상, 최종 점수 60점 미만, 부정행위 적발'의 경우 C등급으로 판정되며, C등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이 국고 100%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직접 수혜자’로 응급환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사업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해당 부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의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응급의료기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이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이라는 세부사업 명칭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인식의 오류라고 판단됨. 자칫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인식의 오류는 보조사업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보조금 배분, 부정수급 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이라는 세부사업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해당 부서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를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거나, 세부사업명을 ‘응급의료기관 평가’ 혹은 ‘우수 응급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동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사업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차등 지원 폭의 확대를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7.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3.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단계적 폐지(2021년) - 응급의학전공의는 동 사업(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학 이외의 전공의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병렬 구조의 사업 방식이었으나, 일반회계의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동 사업도 단계적 폐지(2021년)를 추진 중임. 당초 계획한 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적절함. · 법적 구체성과 구속력이 약하고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실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응급의학과 수련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함(외부기관 지적사항). 성과지표(응급실 이용 만족도)의 실적도 감소하였음. · 기피학과인 응급의학 전공의를 양성하여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응급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인 내역사업(수련보조수당지원)의 법령의 구체성과 구속력은 약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일부 있고, 국정과제 등과 연관 관계가 적음.
 - 보조사업은 프로그램(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의 정책 목표 중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실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위사업에도 ‘중증응급질환 등의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 세부사업과 내역 사업의 목표는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 지원 사업으로 축소되었음. 응급 진료 인프라 구축에서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 연관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국정과제에 제시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단일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의 기간 및 규모가 적정함.
-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되었으나, 성과지표의 수정이 필요함.



- 현재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응급실 이용 만족도’이며, 목표 대비 실적은 100%를 달성하고 있음(2019년 기준). 그러나 동 사업의 정책 목표가 응급의학전공의가 이탈하지 않는 것이므로, 성과지표는 ‘응급실 이용만족도’ 보다는 ‘응급의학 전공의 유지율’ 혹은 ‘이탈율(하향지표)’가 적절함.

○ 보조사업이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임.

-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증가한 실적은 긍정적이나, 동 사업의 단위 사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 보다는 응급의학에 대한 상대가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응급의학 전공의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이 폐지된 다른 기피과목 진료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됨.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명확하나 그 대상은 매우 협소함.

- 직접 수혜자의 범위는 명확하나 수혜자 범위의 정도는 협소하고 사업 폐지시 다른 재정 손실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낮음.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을 감축하고 있어 매년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질적임.

-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조금은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게 지출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집행율도 90% 이상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122호에 근거하여 보조율은 100%임.
 - 2017년 이후 실집행률은 90% 이상임.
- 재정소요액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추계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축을 적용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은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이며, 에 제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수련보조수당 지급기관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지정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항목으로, 민간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민간 사업자의 선정은 「전공의 수련의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6)에 근거하여 대한병원협회 내 사무국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단일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 업무 수행 중인 이해관계자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라도, 민간 사업자 선정과 조건, 제재조치 등에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동 사업의 경우 단계적 폐지가 이미 계획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한 조치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유인기제가 없었으리 것으로 사료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
-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에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기 보다는 공문을 통해 일년 단위로 정산하고 있음.
- 동 지침에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준수하고 있으나,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 등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다만,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 공시는 실시하였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규정은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에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2017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결과 감축으로 결정되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예산 편성 계획 없음.
-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 폐지를 유지하고 2022년 사업 폐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3-2 정책 제언

- 기피학과인 응급의학 전공의를 양성하여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응급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지속적인 불용의 증가에 따라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할 때 사업방식의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후 불용이 지속된다면 감축하는 것이 적절함.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 운영 및 사업 관리 개선을 통해 불용액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안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진료 및 입원 기능 수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방식과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보조금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과지표(분만취약지가입인구비율)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변경이 필요함.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중보건의(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법령은 구체성과 구속력이 있으며, 의료취약지 지원사의 구체성과 구속력은 다소 약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34조>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은 제33조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의 정책 목표는 국정과제(48-2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와 연관성이 높음.
- 내역 사업 중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는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선정·지정하여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를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교부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권 강화”를 위한 사업임.
- 내역 사업 중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48-2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에 명시되어 있어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기간 및 규모가 대체로 적정함.
- 각 사업별 기간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내역사업이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으며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수,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계획이 미흡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지표로써 ‘이용자 만족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성과지표의 달성도 역시 높지 않음(18년 89.4%).
- 보조사업이 단위사업의 정책 목표와 및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단위사업의 정책 목표(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의료공공성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의료 취약지와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외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이 타 부처(행정안전부)에서 자본보조를 받은 경우가 있으나 유사중복사업에 해당하지는 않고, 타 부처 사업의 수혜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미집행했으므로 재정의 누수는 없다고 판단됨.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ICT를 활용하여 의사가 부재한 섬, 벽지 등에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임.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명확하나 그 대상은 협소함.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수혜자는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및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이고, 간접 수혜자는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으로 사업의 수혜자는 명확하나 협소함. 사업의 폐지시 다른 재정 손실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직접 수혜자가 의료취약지 주민으로 수혜자가 명확함. 그 대상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나,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가 높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은 운영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경상경비가 실제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시설·장비 및 협진수가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기준보조율은 없으며,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실적행율이 82.7%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예산 편성 당시 목표로 했던 사업 참여 기관 및 협진 건수 보다 실제 참여 기관 및 협진 건수가 낮아져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이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의 비협조, 의사협회의 불참여 의사 등 정책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 외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과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난 3년간 불용액이 거의 없고 실행률도 90% 이상임.
- 다만, 기준보조율이 있는 사업과 비교·검토하여 보조율을 설정한 일련의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움.
- 단기, 중기, 장기별 재정 소요액의 추계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추계방법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분만 취약지 및 의료 취약지 확대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과거 대비 증가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개별 지원 사업안내서에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그러나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절차는 제시된 사업안내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
- 개별 지원 사업안내서에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현지 점검에 대한 공문을 첨부하였음.
-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인할 수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규정이 다소 미흡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적발 이력이 없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기록은 없으나, 실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불용이 있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불용액은 3년 평균 5% 미만으로 크지 않으나 2019년 9.0%로 증가하였고,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불용액은 3년 평균 10%를 상회하나 최근 감소하는 추세임.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자체 매칭사업(50%)의 특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의 경우 공중보건의(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협회, 공중보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보조금 외 다른 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안내서에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기능 중 ‘신종플루 등 감염병 발생 시 진료 및 입원 기능 수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시설·설비, 인력의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함.
- 사업안내서에 제시된 바는 보조율 및 재정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행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임.
- 보조금을 통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외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재정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시범사업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사시설 설치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1.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사업방식 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 예산의 실행행률 미흡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성과지표의 효용성이 떨어짐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도 실행행률이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성과지표가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충분하게 계측하지 못함 · 실행행률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 감축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조정 및 사업의 기본 전략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장사법 제3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책·정보 제공 및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처리를 위한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장사법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장사정책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사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장사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는 화장수요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화장률이 2011년 70% 수준에서 2018년 86.8%로 증가하는 등 화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43.9%, 76.3%, 82.4%로 이번보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 장사시설의 특성으로 민원 발생 등의 제약 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한 사업 기획 및 실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31,305	31,305	31,305 (13,730)			43.9%
2018년 (결산)	20,659	20,659	20,659 (15,784)			76.3%
2019년 (실적)	43,867	43,867	43,867 (36,156)			82.4%

- 본 사업의 성과지표(화장률,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화장로 개보수율)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중 “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성과만 계측하고 있어,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화장률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화장률” 성과지표는 큰 의미가 없기에, 지자체별로 화장률이 저조한 지역의 개선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도입하거나 최근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장사방식(자연장 등)에 본 사업이 기여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지표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만족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화장률	단위사업	목표	82.0	83.6	87	화장률=(해당연도 화장자수/ 해당연도 잠정 사망자 수) × 100 * 19년 화장률은 19.9월 기준 잠정치임(19년 사망자수 통계청 공표 후 확정치 산정)
		실적	84.6	86.8	87.9*	
		달성도	103.2	103.8	101.0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사업	목표	77	78.4	79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응답별 점수에 응답자 수를 각각 곱하여 합계를 산출한 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눔 $\frac{\sum(\text{응답별 점수} \times \text{응답자수})}{\text{전체 응답자수}}$
		실적	77.9	76.2		
		달성도	101.2	97.2		
화장로 개보수율	단위사업	목표			90	(당해년도 완료 화장로개보수 수/지자체 국비지원 화장로개보수 수)*100
		실적				
		달성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연장 등 새로운 장사 수요에는 민간 부문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여 민간 사업의 유치 가능성이 있음
 - 화장시설의 경우 2018년 기준 사설시설은 1 개소에 불과하여 나머지 58 개소가 공설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민간부문의 사업 진입이 어려움
 - 다만, 자연장의 경우 2018년 기준 공설 59 개소, 사설 70 개소로 민간사업의 자연장 사업 진입 가능성이 높아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장사시설을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289억 원에서 2020년(계획) 43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장사시설 설치 지원(지자체자본)	28,942	17,713	40,841	43,637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2,363	2,946	3,026	3,076
장사제도 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사업추진비)	183	166	180	180
① 장사시설 설치	31,488	20,825	44,047	46,893
② 장사시설 설치 (보조사업)	31,305	20,659	43,867	43,713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예산 실행행률 수준의 개선 여부에 따른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이 43.9%, 76.3%, 82.4%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 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적정수준까지 실행행률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기(0 ~ 3년), 중기(3 ~ 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목표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매장 문화로 인한 분묘 증가를 억제하고 화장과 자연장 중심의 친자연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고지원 기본방향에 따라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지원 기본방향에 따라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용역비 등 지방비 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작용함
- 특히, 2019년부터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신규 신청 지역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사지원센터 위탁업무는 연장평가를 통한 재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함
- 위탁사업기관 공모시(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162호'16.3.10)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년간 위탁기간 연장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함
- 외부위원이 포함된 연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실적을 평가라고 재위탁을 결정하고 있어 절차의 객관성이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수행 및 집행 상황을 e나라도움 및 유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다만, 사업 예산의 실행행률이 저조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실질적인 결과 관리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에 보조금 집행, 정산, 정보공시, 부정수급 대응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등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지자체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실집행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진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인정됨
 - 실집행 부진 지역의 2차년도 사업비를 신청액에 비해 감액한 사례가 있음
- 민간보조금 교부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 정기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등 사업관리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장사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지 않고,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함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속해서 화장시설 중심의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국민의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 예산의 실행행률 부진 문제는 민원 발생 및 지자체 협업 수준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예산을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최근 3개년 예산 실행행률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에, 2023년 예산 규모 확정 시기에 실행행률 달성 수준을 감안하여 예산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의 성과지표가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성과지표의 폐지 및 신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도입하여야 함
 - 화장률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화장률” 성과지표는 의미가 줄어들었기에 지역별 화장률을 분석하여 저조한 지역의 화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지표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만족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연장 등 친자연적인 장사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사업의 방향 검토가 필요함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기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하거나, 기존 장사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CBR 인력확충 사업은 목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4.8%로 매우 낮아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방식 변경과 목표조정이 필요함. - 비용 대비 낮은 예산 지원 및 엄격한 시설기준 등으로 인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자체가 저조하여 기존 목표인 '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이 어려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이 기존 목표인 '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이 어렵다면 개소당 보조금 규모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맞추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신규 지정시에 지역별 기존 의료기관의 분포와 간접수혜자 수를 고려해야 하며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신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연도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 CBR 인원 수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를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임.
 -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간 협업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임.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하여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 다만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두 가지 내역사업의 경우 동 법률 제7조 제1항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거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정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력은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국정과제 42-5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과 관련된 사업 중 하나로 동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장애인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는 국정과제의 목적에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년까지 19개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18년에 1개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3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년에 3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였고, '20년에 4개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계획 중이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존 누계 목표: ('18)3개 → ('19)6개 → ('20)10개 → ('21)14개 → ('22)19개 (시도별 1개소, 서울·경기는 2개소)



- CBR 254개소 인력 확충의 경우 '19~'22년에 총 254명 확충 계획이므로 매년 평균 63.5명 채용이 필요하여 '19년 60명 확충되었다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임.
 - * 보건소 CBR사업 인력확충 계획: ('19) 60명 → ('20) 60명 → ('21) 60명 → ('22) 74명
- '22년까지 48개 건강검진기관지원사업의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18년과 '19년에 각각 8개소가 지정되어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19년까지 28개를 지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20년에도 11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므로 '20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총 27개가 지정될 수 있어 기존의 '20년 목표인 48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음.
 - * 기존 누계 목표: ('18)8개 → ('19)28개 → ('20)48개 → ('21)70개 → ('22)100개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전반의 성과를 건강검진의 예방의료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추세를 고려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이나 추가 지정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건강검진기관의 수가 낮아 수검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18년 56.3% 수검률 목표에 54%로 달성(목표달성율 95.9%), '19년 57.3% 수검률 목표에 47.8% 달성(목표달성율 83.4%)하여 목표달성율이 낮아짐.
 - 동 사업은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재활체육 서비스 등 '18~'22년까지의 제도 신설과 전국 인프라 확충이 목적이고 이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년까지 장애인 주치의 및 재활체육 서비스의 2개 사업만 진행되었고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음.
- 보조사업의 주요 정책목표와 관련 공약사업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임.
 - 관련 국정과제는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이며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18~'20)'가 동 사업에서 진행 중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크게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이 없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권역재활병원은 건축비 지원 사업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기관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으나 사업목적이 명확히 구분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의 경우 보건소 CBR 신규 인력 채용의 부진으로 '19년 집행률이 82.9%로 낮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존 개소당 5.2억원(인건비 3.1억, 운영비 2.1억, 국고보조금 50%), 신규 개소 2.6억원(인건비 1.6, 운영비 1억, 국고보조금 50%)
 - CBR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확충에 대한 예산은 전액 인건비 지원이나 이는 사업 특성이 따른 것으로 불가피함.
- '19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지원은 비용 대비 낮은 예산 지원 및 엄격한 시설기준 등으로 인해 공모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 집행률이 54.8%로 매우 낮음.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소당 114백만원(국고보조금 50%)
 - 기존 목표인 '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이 어려움.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업 목표가 충실히 달성된다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한 편임.
 -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갖추고 있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적발이력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CBR 인력확충 사업은 목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4.8%로 매우 낮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방식 변경과 목표조정이 필요함.
 - 비용 대비 낮은 예산 지원 및 엄격한 시설기준 등으로 인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자체가 저조하여 기존 목표인 '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이 어려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개소당 지원 보조금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3-2 정책 제언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자체가 저조하여 기존 목표인 '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이 어렵다면 개소당 보조금 규모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맞추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신규 지정시에 지역별 기존 의료기관의 분포와 간접수혜자 수를 고려해야 하며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신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연도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 CBR 인원 수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를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애인단체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차년도 지원단체 선정시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단체에서 이를 준수하여 적절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장애인단체가 인건비 비율을 낮추고 자부담 인건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 시 투입비용의 적절성 항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특화사업은 시각장애인중앙센터지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 인권지킴이지원센터운영 및 수어통역센터중앙지원본부운영으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국고 보조의 법적근거는 명확함.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장애인단체지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단체 특화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임.
-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35개 장애인단체(비영리 재단법인 3개 포함) 중 27개 장애인단체(비영리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상당수의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음.



- 특화사업은 각 사업 당 한 개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 지회 및 시군구 지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각 특화사업 별 사업수행주체는 시각장애인 중앙센터지원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운영의 경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임.
- 장애인단체 예산은 7,111백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예산이 동결되었으나, '20년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운영예산이 신규로 반영됨(2.3억 원).
 - '19년 기준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6,221백만 원이며 기존 4개의 특화사업 지원예산은 890백만 원임.
- 성과지표는 장애인단체 평가점수로 적절하며 '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 설정은 적합하고 성과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장애인단체 평가점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실적(70%)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30%)를 평가한 점수임. 평가결과를 당해연도 예산배분과 연계하여 장애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단체 사업은 집행액 대비 실집행액이 2017년 99.9%, 2018년 99.9%, 2019년 100%로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되는 장애인단체의 사업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장애인단체를 지원할 다른 정책수단은 없음.
-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직접 수혜자는 장애인단체이며 최종 수혜자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정은 정확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개 단체 평균 2.3억 원이 지원되며 ‘19년 전체 단체 평균 기준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47.8%(2.3억 원 중 1.1억 원)는 사업비이며 나머지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이므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이는 비영리단체 지원이라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 보조율은 100%이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특성 고려 시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이 마련됨.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지표·매뉴얼은 조직영역과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영역에서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적절성, 사업환류의 적절성,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만 평균 공모에 지원한 단체의 대부분이 선정되어 있어 평가 자체가 엄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자체평가를 통해 '19년 3개 사업 및 '20년 4개 사업에 대하여 각 5백만 원 감액조치 하고, 성과향상이 높은 사업에 대해 증액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18) 신청 : 27개 단체, 88개 사업 → 반영 : 26개 단체, 86개 사업
 ('19) 신청 : 29개 단체 94개 사업 → 반영 : 27개 단체, 87개 사업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 등에 대한 본 보조사업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정은 미비하지만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사업관리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수행 및 집행상황을 e나라도움 및 유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등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2개년도 평가 미흡시 보조금의 삭감 조치를 하여 '19년 3개 사업 및 '20년 4개 사업에 대하여 각 5백만 원 감액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통한 관리는 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차년도 지원단체 선정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단체에서 이를 준수하여 적절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개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특화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전년도 사업평가의 결과가 당해연도 사업시행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특히 엄밀하게 관리한 필요가 있음.
- 장애인단체가 인건비 비율을 낮추고 자부담 인건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시 투입비용의 적절성 항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야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장애인에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크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교부사업의 실행률은 80% 초반으로 낮으므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보다 세밀한 사업진행과 관리가 필요함.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원품목 수가 '19년 기준 30개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품목을 확대해야 함. ·연초에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조기기 지원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여 연말 미집행액 발생시 소액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고보조의 구속력은 없지만 장애인보조기기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은 장애인생활안정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와의 연관성이 뚜렷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포함하며 장애인보조기기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부사업(지자체경상) :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보조기기 교부
 - 사례관리(지자체경상, 자본) : 각 시도별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평가,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진행함.
 - * (서비스 제공 과정) 의뢰(지역기관 연계) →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 보조기기 체험 또는 점검 및 소독·세척 서비스 → 정보제공 → 사후관리
- 교부사업의 실행행율이 80% 초반으로 낮아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당 배분액이 평균 500만 원의 소액이며 보조기기의 신청자가 많더라도 보조기기 단가의 편차(5~150만 원)가 커서 때문에 소액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더라도 실행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은 있으나 연말에 미집행액을 대기 장애인의 소액 보조기기 구입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없음.
- 성과지표로 기관당 평균 사례관리 수혜자 수와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하여 적정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였음. 다만 만족도의 목표는 ‘17년 92.3점, ’18년 94.2점으로 설정되었는데 ‘18년부터 조사 방식을 변경하여 ‘18년 달성도는 82.9%에 불과하고 이를 반영하여 ‘19년 80점으로 하향설정되었음. 이는 과거 3년간의 달성도가 평균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조사문항 등을 수정한 결과로 보임.
 - 기관당 평균 사례관리 수혜자 수는 ‘전국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자 수/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수(중앙센터 제외)’로 계산됨.
 - 만족도는 ‘18년부터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한 무작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은 보조기기를 통한 일상생활능력 증진이라는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유사중복사업이 있지만 타 부처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지급대상, 지급품목 등을 달리하여 중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험급여사업은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
-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급사업은 의료급여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임.
- 직접 및 간접 수혜자의 유형, 범위 및 수혜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음.
-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대상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사례관리의 경우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인력(간접 수혜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명확함.
- 교부사업은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의 경우도 시군구에서 교부결정 전 해당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적절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례관리는 센터 운영의 특성 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경상경비 비중이 높음.
- '18년 기준 지역센터 1개소당 평균 이용자 수가 728명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보조 기기센터 지원규모는 2억원(지방비 1억원 포함) 수준임(종사자 수 기관당 5명).
- 사업별 보조율 산정기준은 적절한 편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2019년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침’이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규정으로 적합함.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보조율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적절한 것을 판단됨.
 - * 교부사업(서울 50%, 지방 80%), 사례관리사업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9년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침’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등의 자체규정을 마련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규정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으나 보조기기 신청 등록시 행복e음을 통해 타 교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달 중복 여부를 복지부에 통지하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사후조치하도록 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장애인에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크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교부사업의 실행행율은 80% 초반으로 낮으므로 실행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보다 세밀한 사업진행과 관리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원품목 수가 '19년 기준 30개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품목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유사한 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 연초에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조기기 지원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여 연말 미집행액 발생시 소액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연내 집행률은 50~70% 수준으로 낮고 사업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1년 사업비를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후부터 사업비를 매년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의 경우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동액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내부사업의 관리가 적정하지 못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단계에 맞추어 사업비를 연차별 분할 교부하고 사전 설계를 통해 착수를 앞당기는 등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신축 및 증축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또한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판매시설이 계약 대행한 중증장애인생산물 수의 계약 금액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포함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및 공립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으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함.
-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하여 비용 보조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58조, 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 동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재활시설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의 확충·지원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및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님비현상으로 '17~'19년 집행률이 70~80% 수준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처는 실집행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부처예산 편성 시 '19년 182.9억원에서 '20년 127.3억원으로 자체 삭감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경우 '17년 117.8억 사업비를 49.9% 집행, '18년 95억 사업비를 53.7% 집행, '19년 153억 사업비를 71.7% 집행하여 연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18년의 경우 집행률이 53.7%에 불과하지만 '19년에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예산 미집행이 43억원 발생하였고 '20년 사업비(156억)는 오히려 '19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중 2~3천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사후관리 지원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집행률은 100%임. 이는 본 사업의 시행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상적인 지원을 위탁한 것으로 적절함.
- '19년 신규사업인 공립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의 사업비 전액은 시설 설계비인데 집행률이 0%로 연도별 건립계획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과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만족도,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비율 및 기능보강지원 직업재활시설 매출 증가율(신규)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성과지표는 적절한 편이며 각 성과지표의 목표를 대체로 달성함.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성과지표가 없어 사업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은 없고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낮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정이 정확한 편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중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은 해당기관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상경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기타 내역사업의 대부분은 시설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임.
-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액은 센터별로 같지만 지역별 판매액에 큰 차이가 있음. 해당지역의 공공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편차가 큰 것은 실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반증함.
- 장애인거주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과 공립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의 보조율은 50%, 장애인의료재활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의 보조율은 30%,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의 보조율은 40%로 설정되어있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민간경상사업의 보조율은 100%이며 이는 사업 지원을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공하는 비용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이 일정부분 포함됨.
-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시설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규정이 일정부분 포함됨.
-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자체사업의 규정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편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연내 집행률은 50~7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아 '21년도 사업비를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후부터 사업비를 일정수준 감축해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넘비현상으로 '17~'19년 집행률이 70~80% 수준으로 낮아 '20년도에 부처에서 예산을 자체 삭감하였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의 경우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동액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내부사업의 관리가 적정하지 못함.

3-2 정책 제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부지확보 및 공간 기획, 설계, 인허가 등에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단계에 맞추어 사업비를 연차별 분할 교부하고 사전 설계를 통해 착수를 앞당기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신축 및 증축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판매시설이 계약 대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포함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애인의료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동 사업은 지자체에 장애인의료비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이들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저소득장애인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이 증가해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장애인의료비 예산은 '18년 227억 원, '19년 430억 원(이 중 '17년과 '18년 미지급액이 143억 원) 및 '20년 358억 원으로 이 중 42억 원은 '18년도 정산결과 추가된 미지급금을 제외한 실제 '19년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316억 원으로 10% 증액됨.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민간경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계산방식을 체계화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 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무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급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 편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급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장애인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뚜렷하지만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과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19년 기준 장애인의료비지원 430억 원 및 위탁수수료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위탁수수료가 과대 산정되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저소득장애인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이 증가해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의료비 예산은 '18년 227억 원, '19년 430억 원(이 중 '17년과 '18년 미지급액이 143억 원) 및 '20년 358억 원으로 이 중 42억 원은 '18년도 정산결과 추가된 미지급금을 제외한 실제 '19년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316억 원으로 10% 증액됨.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료비지원의 성과지표는 장애인의료비 수급자에 대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 '17년과 '18년 목표는 동일하게 83.5점이며 이를 대체로 달성하고 있음.
 - '17년 실적은 82.7점으로 99.0%, '18년 실적은 83.9%로 100.5% 달성함.



- 위탁수수료 지원은 의료비를 지급대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없음.
-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에서 수시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함.
-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 자체는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정책목적에 충분히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장애인 중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는 보조금 지원 이외에는 다른 정책수단이 없고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낮음.
-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저소득 장애인 중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규모의 추정이 정확한 편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7~'19년 보조금의 집행률은 100%로 보조금의 대부분은 직접 의료비 지원이지만 위탁수수료는 전액 행정경비로 그 책정방식이 불투명함.
- 위탁수수료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업무 대행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19년 기준 위탁수수료 300백만 원과 시스템 개발비 218백만 원이 포함됨.
- 동 보조사업 중 의료비지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87에 따른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 동 보조사업 중 위탁수수료는 보조율이 100%임.
- 중장기 재정추계는 지속되는 미지급액 해소와 증가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중 지자체 보조사업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위탁사업자로 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한 것은 다음 표의 법령에 의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타당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자체 사업에 대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없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없음.
- 현재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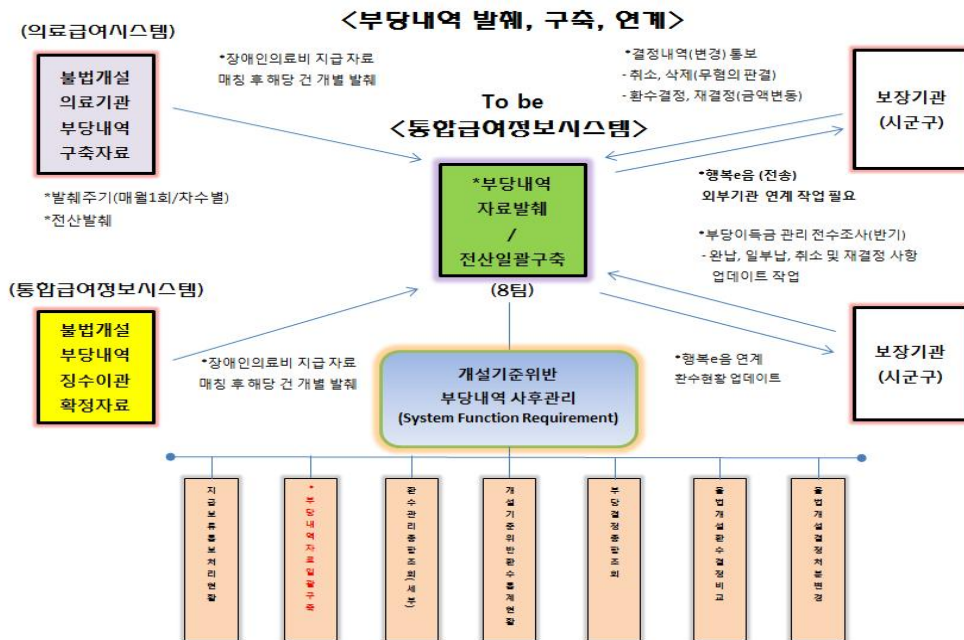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의료비 지침에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해서 규정함.
- '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장애인 의료비 부정수급액 미환수가 지적됨에 따라 '18년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짐
- '18년 자체적발 276건, '19년 자체적발 136건이며 외부적발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외부적발건수보다 자체적발 건수가 높아 자체 사업관리의 노력이 적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이득금 내역(현지조사 결과 및 개설기준위반)을 총괄적으로 기초의료보장과로 통보해 오면, 그 중 장애인 의료비의 부당내역만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지자체에 장애인의료비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이들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계산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저소득장애인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이 증가해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의료비 예산은 '18년 227억 원, '19년 430억 원(이 중 '17년과 '18년 미지급액이 143억 원) 및 '20년 358억 원으로 이 중 42억 원은 '18년도 정산결과 추가된 미지급금을 제외한 실제 '19년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316억원으로 10% 증액됨.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계산방식을 체계화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장애인일자리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크나, 성과지표에 장애인일자리 만족도와 중증장애인 참여율만 포함되어 일자리의 양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없음.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20년 기준 9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나 적정수준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를 평가할 성과지표도 없어 이들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일자리 지원 사업의 보조율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서울의 보조율은 30%이고 지방의 보조율은 50%로 차등을 두어 적합하지만,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의 보조율이 80%로 높는데 그 근거가 없음. ·향후 확보된 사업비에서 제공할 계획인 일자리 수 대비 연도별 실제 제공한 일자리 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수행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해서 관리해야 함. 또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 보조율의 조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는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다만 본 사업에 따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법령상 국고 보조의 근거는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안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속하며 미취업 장애인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므로 경제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는 한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세부유형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및 특화형일자리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일자리 세부유형 >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일자리	특수교육연계형	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주 20시간	월 56시간 (주 3~4일)		주 25시간 (일 5시간, 주 5일)	
참여기준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미취업 안마사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33개 직무		안마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노인요양기 관 및 시설
월 급여	1,795,350원	897,660원	481,040원		1,145,700원	1,125,290원
참여현황	6,190명	2,125명	12,444명		860명	777명

- 사업비는 '17년 823억 원, '18년 957억 원 및 '19년 1,20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9년의 예산 증액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된 공공형 일자리 수도 증가함.

* 장애인일자리 수: ('17년)17,352명→('18년)17,352명→('19년)19,852명

-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 만족도와 중증장애인 참여율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동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가 가장 궁극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예산이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향후 확보된 사업비에서 제공할 계획인 일자리 수 대비 연도별 실제 제공한 일자리 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경상보조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를 평가할 성과지표도 없어 이들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업무수행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도 필요함.
- 본 사업은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생활안정이라는 상위 프로그램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금 지원 이외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우며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어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높은 편임.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명확하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및 직접수행 사업비로 구성됨.
 - '19년 기준 자치단체경상보조는 1,201억 원, 민간경상보조는 6.7억 원, 직접수행은 2천만 원 규모임.
-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으로 구성됨. 운영비는 인건비에 따른 4대보험비, 수행기관의 교통실회, 사무용품비, 다과비 등이며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임.
- 민간경상보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전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9인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 (일자리 개발 및 정책지원) 신규 직무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2개, 3개월), 직무 매뉴얼 개발,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장애인일자리 협의체 운영, 장애청년 및 대학 설명회, 신규 배치기관 개발, 연구용역
 - * (일자리 사업 지원) 위탁기관(장애인개발원) 담당자 인건비, 현장모니터링, 우수참여자 선정 및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 일자리 홍보, 만족도 조사
 - * (일자리 교육 지원)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교육자료 제작, 정보기술자격 교육
- 직접수행 사업비는 지침 인쇄, 국내 여비, 차년도 사업 설명회 운영 관련 비용임.
-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보조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서울과 지방의 보조율에 차등을 두어 적합함. 다만 다른 일자리 유형에 비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의 보조율이 80%로 높은 근거가 없으므로 보조율 조정이 필요함.
 - *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 서울 30%, 지방 50%
 - * 복지 일자리 : 서울 30%, 지방 50%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 : 서울·지방 80%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서울 30%, 지방 5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애인일자리안내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장애인일자리안내서’에서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일자리안내서’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출입국, 사망, 장애정보 변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수급사례를 적발하고 있음.

* 부적정 수급사례: (‘17년)25건→(‘18년)27건→(‘19년)23건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 만족도와 중증장애인 참여율이나 확보된 사업비에서 제공할 계획인 일자리 수 대비 연도별 실제 제공한 일자리 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경상보조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를 평가할 성과지표도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사업비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급하는 6.8억여 원(‘20년 기준, 이 중 59.1%가 인건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일자리 지원 사업의 보조율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서울의 보조율은 30%이고 지방의 보조율은 50%로 차등을 두어 적합함. 다만 다른 일자리 유형에 비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의 보조율이 80%로 높은 근거가 없음.

3-2 정책 제언

- 향후 확보된 사업비에서 제공할 계획인 일자리 수 대비 연도별 실제 제공한 일자리 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해서 관리해야함.
-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20년 기준 9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나 적정수준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를 평가할 성과지표도 없어 이들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바 이들의 업무수행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해서 관리해야함.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의 보조율이 80%로 높은 근거가 없으므로 보조율 조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제대혈공공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의 실집행율(3년 평균 71.2%)과 성과지표 달성율(3년 평균 76.0%)을 고려할 때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2016년 제대혈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감소하여 예산 대비 성과가 낮으며, 출산율 감소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 달성이 낮고,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 동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부정수급관리 등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업 예산의 불용은 사업 관리 문제임. 동 사업이 국고보조 100%로 이뤄지는 사업 이므로 사업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제대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격 제대혈 기준을 높여 기존보다 적은 양의 고품질 제대혈을 보관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보조에 대한 법령의 구체성은 높고 구속력이 있음.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의료공공성 강화이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내역 사업의 정책 목표는 동일함.
- 적정 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를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 및 바이오산업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목표를 위해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국정과제 등의 연관관계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별 기간 및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함.
-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대혈 불법 사업 관련 부정적 인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치를 높게 잡았으며 예산 규모는 2018년 이후 감액하였음.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으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보조사업은 기증제대혈은행 지원을 통해 기증제대혈을 수집·보완하고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난치성 환자에게 공급하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제대혈공공관리사업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며, 제대혈 공공관리체계구축을 위해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임.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간접 수혜자는 전 국민으로 광범위한.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이지만,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난치성질환 환자에게 간접적으로 수혜를 줌.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소수이지만, 누구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정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비로 지원되고 있음.
 - 기증제대혈 보관에 소요되는 총 관리비용을 건당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율은 국고 100%이며, 기준 보조율 여부 및 보조율 산정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순수한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므로 국가 전액 지원의 현행 보조율이 적합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을 실현’하고 있음.
 - 환자 이식 및 연구용 제공 등의 실질적인 성과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보조사업의 시행공고,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동 규정 제4조③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1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을 마련(3호)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미흡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지속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사업 평가 사후 조치, 보조사업 집행점검,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동 규정 제4조③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1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을 마련(3호)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미흡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기록은 없으나, 적발 이력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없음.
- 매년 정산과정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제대혈정보센터에 제대혈은행이 적격제대혈 정보를 매 건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불용액과 성과지표 달성 미달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관리가 미흡함.
- 보조사업의 실행률은 3년 평균 71.2%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 불용의 사유가 3년 모두 “일부 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법사용 등으로 제대혈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제대혈 기능 및 보관 실적이 감소한 것을 들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저하에 따른 예산의 불용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국비 100%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동 사업의 속성상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기증제대혈은행별 실적 점검(2019년) 및 기증제대혈은행 간담회 개최, 홍보 지속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일상적인 수준의 환류만 실시하여 사업 관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연도	2017	2018	2019
실행률	68.9%	68.5%	76.4%

- 또한 추가적인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계획은 과년도에 달성해 보지 못한 높은 수준의 성과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

연도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계획
기증제대혈 수집·보관 실적	1,975	1,873	2,000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복지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기증제대혈 보관수(unit)이며,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역시 미흡함.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증제대혈 보관 목표(unit)	3,000	2,790	2,200
기증제대혈 보관 실적(unit)	2,168	1,975	1,873
달성도(%)	72.3	70.8	85.1



- 출산율의 저하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출산율의 감소로 제대혈 모집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대혈 불법 사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 확대를 계획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부서에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이식적격 기증제대혈을 확보하여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식 부적격 제대혈을 바이오분야 연구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이는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음을 뜻함.

3-2 정책 제언

-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방식 개선 필요
 - 특정시기 가임기 부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면, 전 국민 홍보 방식보다 출산 의향에서 출산 이행으로 전환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이식부적격 제대혈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기증제대혈 등을 추적·관리·효율적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현행 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예산의 불용이 지속되므로 예산 감축이 필요하나, 이미 2020년에 예산 감축을 하였으므로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함. · 중증외상전문진료센터의 전담인력이 외상센터에서 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단순히 인력 추가를 위한 재정 확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중증외상전문병원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헬기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에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동법 제21조(기금의 사용) 3. 응급의료 제공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에 해당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은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이라는 세부사업에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민간자본)과 운영지원(민간경상)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 전문 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핵심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체계 구축 및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실 환경 조성을 통한 응급의료 질적 향상) 및 단위사업의 정책 목표(응급실 질적 수준 개선, 3대 중증응급질환(심혈관·뇌혈관·외상)의 진료인프라 구축, 농어촌 취약지 및 소아 등 취약질환군 응급의료 인프라 가동)의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강화 중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 사업별 기간은 적정하나 규모는 개선이 필요함.
- 17개 시도에 권역외상센터 17개소가 선정되었고, 14개소가 공식적으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조사업은 계획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보조사업은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크게 개선함.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를 조기에 달성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나,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용이 높음.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가 등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방식에 근거한 사업의 운영이 필요함.
- 최근 산재 중증환자 적정 치료를 위해 외상환자 관리료 등 급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건강보험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외상환자 관리료·전문의 진찰료 신설, 외상전담전문의에 의한 수술시 가산 확대 등 개선하였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모든 내역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100%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실행률은 70% 미만으로 외과계 전문의 인력 부족, 수술실·중환자실 간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권역외상센터 의료 인력에 충원의 어려움이 있음.
- 이는 보조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던 결과로, 이미 2020년 예산액을 하향 조정하였음.
- 연차별 소요예산은 의사인건비와 간호사 인건비, 외상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비 및 평가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연도별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차별 인건비의 증가분(3%)에 대한 근거, 평가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지급 지침>, <응급의료기금 사업계획 미이행 관련 업무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일부 항목의 경우 지침에 세부 항목이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실적 자료와 중요재산 정보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권역외상센터 평가안내서>, 국고보조금 관련법 및 기타 관리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및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실적이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의 자체적발은 37건이며, 복지부 및 중앙센터가 적발한 실적임. 이로 인한 35억원 환수 조치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통해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999백만원 회수, 회계검사를 통해 21백만원 불인정하는 등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으나,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용과 전문 분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담전문의의 비외상 진료 차출, 전담 당직 위반 등 민간 병원의 수익 구조에 따른 부적절한 지출 행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절한 지출 형태를 선제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였음.
- 그간 예산편성을 연차별, 일률적으로 편성하여 과다계상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편성시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함(감축). 이러한 대응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성과 및 추이를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7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었음. 즉 사업의 시작년도에 비해서 지역 사회에서 외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헬기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증’과 ‘이송’에 대한 개념 및 원칙 확립이 필요함.
-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증외상진료체계 대책을 마련하였고(2018), 시행 중이나 성과가 미미함. 예를 들어 전담전문의는 2018년 175명에서 2019년 186명으로 증가하였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0.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상의 비효율이 존재함.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장애인재활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척수장애인 재활교육프로그램(일상복귀, 척수장애인활동가 양성교육) 및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점자, 보행교육) 참가자 수로 구성되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전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및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없어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실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매년 분양하는 장애인보조견 두수보다 훈련받고 있는 보유견수가 4배 정도 많다는 비효율이 존재하므로 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훈련견수를 관리해야 함.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여부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여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만 사업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법령은 없어 국고보조의 당위성은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40조 1항, 제53조, 제54조 1항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를 반영한 국정과제 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님.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내역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20년 75개소),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1개소),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1개소),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1개소)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1개소)으로 구성되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정보제공·상담부터 체계적인 자립훈련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임.
-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사업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1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나 11개 지회에서 사업 수행 중이며, 중도시각장애인훈련 지원 사업도 한국시각장애인협회 1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나 50여개 지회에서 사업 수행 중임.
- 보조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한국도우미견협회에서 사업 수행 중이며,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사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 수행 중임.
- 이러한 지원은 실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척수장애인 재활교육프로그램(일상복귀, 척수장애인활동가 양성교육) 및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프로그램(점자, 보행교육) 참가자 수로 구성되며 '17년~'19년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하지만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전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및 장애인보조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없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은 없고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낮음.
-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내용의 일부 중복성이 있지만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차이로 규모 및 이용자 차별성이 뚜렷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하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정이 정확한 편임.
- 장애인보조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분양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견이 20두 이하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보유견수와 분양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연도별 보유건수(연말 기준) 및 분양두수>

(단위 : 두)

연도	보유건수	분양두수			
		합계	시각	청각	지체
2017	74	19	1	10	8
2018	77	18	1	13	4
2019	65	16	2	9	5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은 해당기관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상 경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는 사업특징으로 인하여 불가피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은 40%로 적절하나,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운영 지원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은 민간경상으로 보조율이 100%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율은 50%로 시설 당 10억 이상이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센터 당 지원금이 1.5억 수준으로 지자체 차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40%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임.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 기관이나 센터는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부 장애인에게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음.
- 각 1개소를 지원하는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보조조건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사업 중 장애인보조조건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을 제외한 3개의 사업은 공모를 통해 복수의 단체가 지원하였지만 1개소만 선정됨.
- 자체사업의 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이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만을 준용하고 있으나 자체사업에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별도 규정이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금 반환, 전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음.
- 중요재산 관리 및 정보공시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규정은 없음.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이력이나 자체적발이력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있음.
- 단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애인재활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이는 척수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일상복귀, 척수장애인활동가 양성교육) 및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프로그램(점자, 보행교육) 참가자 수만 포함되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전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및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는 없어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경우 현재 매년 분양하는 장애인보조견 두수보다 훈련 받고 있는 보유견수가 4배 정도 많다는 비효율이 존재함.
-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여부를 담보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사업을 각 1개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해야 함.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 지원 및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의 사업은 각 1개 기관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주로 그 기관 근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임. 실제로 단체의 지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 지원 및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사업을 제외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기관당 지원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운영기관 수를 2개 이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 경우 장애인보조견 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그 수를 관리해야 함.
-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전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 및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운영지원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자립생활 훈련 지원 건수 등 자립생활과 관련된 지표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수로, 보조견훈련기관사업은 전체 훈련받는 장애인보조견 두수 대비 분양두수 비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조정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6.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일부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불용이 있는데(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정책 대상은 상이하나 지역 사회의 보건-복지 자원들을 연계하고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다수의 사업이 존재하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서로 다른 5개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보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취약계층 지원, 비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할 등이 충실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병원 단위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보조로 <보건의료 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대부분의 내역 사업은 법령이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특히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영주적십자병원지원 사업은 법령의 구체성과 구속력이 매우 높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7조, 20조, 22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



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확충이라는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내역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지역거점공공병원임직원직무교육, 영주적십자병원지원,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성됨.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강화(45-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과 관련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각 내역 사업별 기간 및 규모는 대체로 적정함.
- 영주적십자병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건립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되 향후 20년간(17~37) 임대료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고 있어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설정하지 않음. 특히 17~19년까지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예산 편성시 임차료로 변경하여 다른 BTL 사업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11.)에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역할 및 책무성을 위해 공공보건프로그램과 임직원직무교육,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
 - 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한 성과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음.
- 보조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운영평가 및 미흡기관 대상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지원 외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만성질환 군 환자 등이나 간접 수혜자는 의료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 국민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적십자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직무교육,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 사업의 보조율은 100%임.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직무교육,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은 <공공보건의료법>21조에 근거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적십자병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 국고지원은 없으며, 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된 적십자병원의 공익적 기능수행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여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보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7조, 20조, 22조>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제시되어 있으며, 소요 재정 추계를 위한 시나리오도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매우 컸으나 2020년 선정결과에서는 초과 신청하여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과년도 불용 추이를 고려하면 2020년 실집행 결과를 검토한 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량 근거를 충분히 제시함.
- 직접적 효과가 크고 과거 대비 증가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 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함.
- 민간 보조의 사업자(대한적십자사) 선정에 대한 절차는 제시되지 않음. 법에 근거하여 당연 지정이라고 해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간보조 사업자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사업 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요재산 정보 공시 현황도 제시함.
- 민간 보조의 사업자(대한적십자사)의 집행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 보조사업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규정이 미흡하며, 내·외부 적발 기록이 없으나, 적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으나, 세부사업 내 목적과 성격이 다른 일부 내역사업들의 조정이 필요함.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혈압·당뇨환자등록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서비스주체와 중증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자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엄밀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임. 대상자별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주체별로 구분할 것인지,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내역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이들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3-2 정책 제언

-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서비스주체 및 중증도, 대상환자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분리하는 방식이 지역 사회 내 전달체계의 여건이 상이함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정책 대상은 상이하나 지역 사회의 보건-복지 자원들을 연계하고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다수의 사업이 존재하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서로 다른 5개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보건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일부 내역사업(의료인력 파견 및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예산은 부족하여 조정해서 운용하고 있음. 내역 사업별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적인 불용액에 따른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의료취약지에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는 인프라 확충 및 인력 파견에 대한 불용액이 지속될 것임.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의료인력 파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두 내역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1년에는 사업 예산의 총 규모는 유지하되 내역 사업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이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인력 및 장비 등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와 거점-의료취약지 간 연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 협력 구조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은 민간경상, 지자체경상보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음.
- 내역 사업의 수행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정 지원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법률의 구속력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 보조사업은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에 네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취약지 의료인력 파견,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취약지 응급영상판독지원의 네 개 내역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강화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중 45-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 사업별 기간 및 규모는 대체로 적정함.
 -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 사업은 동일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비해 2019년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취약지 응급영상판독지원사업은 예산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였음.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를 ‘군(郡) 및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에서 응급의료 접근성이 반영된 기준으로 변경(‘17.3/유예기간 2년 후 ’1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취약지역이 종전 110개에서 99개 지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혜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였음. 실적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기준 변경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의 정책 목표(협진 실적)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협진실적	2017	2018	2019	2020
건수	936	1,028	1,814	2,521

- 전반적인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은 적정하나 내역 사업간 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사업은 계획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음.
 - 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의료인력과전 및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불용 예산 1,317백만원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예산으로 조정하였음.
 - 이러한 금액은 세부사업의 총 예산(24,705백만원) 대비 5.3%에 불과하나,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인력·의료기술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취약지 국민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 외 다른 정책수단의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외에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취약지 사업의 가산 등의 방식으로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취약지인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실 운영기관임. 간접 수혜자는 취약지 주민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의료 취약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임.
- 응급의료 취약지를 ‘군 및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에서 응급의료 접근성이 반영된 기준으로 변경(2017년3월~, 유예기간 2년 후 201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취약지역이 종전의 110개에서 99개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함.
- 응급의료 접근성은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때 취약지로 지정하고 있어 2015년 국회 결산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모든 내역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100%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 100%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특히 행정 취약지와 달리 의료취약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도 중요함.
- 취약지 의료인력 파견사업은 2017년 이후 실집행액이 증가하였으나, 파견된 간호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상승(5천만원→6천만원)으로 인한 실집행액은 증가함.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축되고 있고, 응급영상판독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의료인력 파견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두 내역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1년에는 사업 예산의 총 규모는 유지하되 내역 사업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이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 감축이 필요함.
-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이 구분해서 제시되지 않았고, 소요 재정 추계를 위한 시나리오가 단순히 인건비 3% 인상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부서는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 근거하여 해당 99개 취약지역에 소재한 모든 응급실 운영기관으로, 의료인력 파견,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 등의 내역 사업은 그 중 희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해당 부서는 응급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는데, 보조방식을 변경 (지방자치단체→응급실 운영기관)하거나, 의료취약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한 경상보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응급의료취약지가 보건복지부고시로 명확하게 선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부서의 표기상의 한계로 해석되며 실질적인 사업의 한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침>,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사업 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요재산 정보 공시 현황도 제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운영 지침>, <응급의료기금 회계검사> 등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공문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회계검사 시 불인정 조치 5건 조치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1점)

- 응급의료기금 회계검사에서 불인정 처리 5건을 적발하였으며, 반납 처리하는 등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으나, 지속적으로 초과집행되는 내역사업(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과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역사업(취약지 의료인력 파견) 간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며,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의 추가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예산 편성은 정확한 산출 근거에 기반을 두므로 지속적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다만, 현재 불용된 예산이 초과집행되는 내역사업으로 조정되고 있으므로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 역시 인력 파견 등 효과성에 한계가 나타난 사업을 감축하는 대신,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은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취약지 응급영상판독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경우 파견을 보내는 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으로 미스매칭이 존재함.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의료취약지에 개별 사업별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시 인력 및 장비 등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와 거점-의료취약지 간 연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취약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당초 보조율 100%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파견, 원격협진 등 기존의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간 재정지원방식의 현황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성과 지표가 투입 또는 비용에만 의존하고 있어, 최종정책수혜자인 장애인들의 후생 개선에 미치는 실제적인 성과가 성과지표에 들어가도록 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개발원의 사업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주제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여론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장애인 복지 선도기관으로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와 제29조의2에 의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운영의 근거가 명확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범위는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2, 3항에 나열되어 있음.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

(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2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지원과 세부사업이자 내역사업인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과의 목적 및 목표상 연관성이 뚜렷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성과에대한 평가가 필요함.
- 2020년 1월 제출된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B등급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건수, 정책 활동 건수, 정책반영 건수를 합산하여 작성한 성과지표를 이용하고,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 다만, 본 보조사업의 성과 지표의 경우, 정책연구, 정책활동 등의 질 보다는, 갯수나 투입에만 의존하여, 최종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정책연구사업, (2)장애인 직업재활사업 (3) 장애인편의 증진 사업을 대상. 이 중 (2)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경영평가 시 장애인 취업인원수, 취업유지율, 일자리 사업 만족 등 장애인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사용되고 있음.
 - 반면, 본 평가사업의 대상인 (1)의 경우 일반 장애인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연구주제로 선정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경영실적평가 지표로 ‘장애인 정책 연구 결과 확산 실적’ 등 보다 광범위한 지표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본 보조사업의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에는 활용되지 않음.
 - 각 정책연구나 정책활동, 정책 반영 사례가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지표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기관이 장애인복지증진을 목표로 설립/운영되는바, 일반적인 장애인 교육훈련에 추가하여, 조사연구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양성하고 향후 인턴쉽 및 신규채용에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의해 장애인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활동 지원 및 국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정책연구기능과 관련해서 다른 경제, 사회, 복지, 노동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고, 해당 주제는 일부 연구 중인 바 이들 기능에 대해 중복의 여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선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로 추진되거나, 장애인과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책연구활동과 관련한 양적 지표는 양호하나, 이들 정책연구가 최종 수혜자인 장애인 사 용되었다는 증거가 미약함.
- 특히,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 언론이나 여론형성에서의 가시성(visibility)이 부족하여 장애인 복지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차별성과 선도성이 체감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궁극적인 정책 수혜자는 등록장애인들로 수혜범위가 넓어 보조사업이 최종 정책 수혜자의 후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한다면 수혜자의 범위는 넓다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정책연구 예산이 필요하므로 100% 보조율은 적정함.
- 다만, 2019년 집행액 기준으로 총 8,057백만원 중 인건비가 5,506백만원으로 68%에 해당 하여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음.
- 단기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간 기초연구 갯수나 인증건수 등 모두 투입에 기초한 지표에 기반하여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업비는 10~20%, 현재 중장기적으로 인력 순증을 포함하여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7%~15% 증가시킬 계획임.
- 그러나, 이러한 투입의 증가가 장애인의 취업률 증가, 소비구매력 증가, 사건사고 빈도 감소와 같이 장애인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장애인 복지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표를 예산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의 성격상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궁극적인 수혜자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긴밀한 관련이 있음.
- 원내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2020년 현재 8.14%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대비 2.4배를 고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상 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근로자 비율 >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근로자	317		304		365		380	
장애인근로자	16		18		23		31	
중·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7	9	9	9	10	13	13	18
실제 고용 비율	5.04%		5.92%		6.30%		8.16%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 선정 근거는 명확함.
- 사업계획서 검토, 심의과정이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 회계규정, 경영공시규칙 등에 따라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된다고 판단됨.
- 불성실공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과 보조금 교부 공문 및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이력도 과거 3년간 전무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익명제보시스템, 청렴옴부즈만, 법무감사팀 신설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바,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적인 준비를 선제적이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으로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보고 역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
-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활동이 최종정책수혜자인 장애인들의 후생을 증대한다는 직접적이고 계량화된 성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사업의 성과지표처럼 장애인의 후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표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최종수혜자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정책연구의 수, 정책 활동의 수 등 투입지표 대신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세부 사업내역을 재검토할 중장기적인 필요가 있음.
-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 언론이나 여론형성에서의 가시성(visibility)이 부족하여 장애인 복지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차별성과 선도성이 체감되지 않음.
 - 사업계획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주제들을 우선순위화(prioritize)로 추진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장애인 복지 선도기관으로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명	한국 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시 산출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사업은 한의약산업 중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전후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의약산업 전후방을 활성화시킬 방향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향후 한의약산업 전후방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전략(안)”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사업 운영과 사업방식의 변경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한의약육성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기초하고 있음.
- 제13조에 한국한의학진흥원 설립과 6항에 지원에 관련 조항이 있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며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로 광범위하게 제시됨.

<한의약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제13조(한국한의학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부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구축으로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심추진기관으로 육성임.
- <한의약발전 정책지원사업>, <한의약글로벌 인프라구축사업>, <한의약정보화사업>,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 <한약재유통지원센터(BTL)지원사업>, <우수한약제제발굴 및 사업화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음.
- 한의약 의료서비스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국민의 73.8%가 이용경험이 있으며, 한의약 보장성강화, 한약재 안전성확보 및 한의-의과 간 협진 등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를 전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는 인정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연구 성과
 - ② 한의약 해외교류 확대를 위한 한의약세계화 지원단 구성·운영
 - ③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한의 진료 표준화를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및 보급·확산
 - ④ 한약의 임상·비임상 연구활성화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 ⑤ 한의약 소재의 천연물질, 생물전환 대사체 확보를 통한 소재은행 구축과 산업화 지원
 - ⑥ 토종 한약재 등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 ⑦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개발 지원
- '19년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종전 한약에 제한된 업무영역이 한의약 기술전반으로 확대되었음.
- 201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개선(지지)과 과학화 및 표준화 성과에 대한 확산에 노력을 요청받았으며, 한의약산업화 촉진콘텐츠사업 예산이 국회 증액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별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보조사업의 행정비용은 고유사업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집행을 하고 있음.
 - 한의약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에 근거하여 지정 교부사업자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의 알권리적 측면에서 사업추진 성과 및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국민 홍보를 위하여 사업성과의 신문기사, 광고, 학술논문발표, 박람회 홍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
- 지역사회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간접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정 보조금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중간 및 연차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미달할 시, 사업을 중단토록 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고금 교부절차, 집행, 정산 등을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에 근거, 집행단계 중점 점검사항이 이뤄지고 있음.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에 근거, 집행단계 중점 점검사항 이행되고 있음.
 - [첨부2] 별첨 7.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첨부2] 별첨 8.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류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체계를 마련함.
- 본 세부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연 4회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음(관련 문서 : [2018]한의학산업과-322호, 1387호, 1969호, 2574호 / [2019]한의학산업과-209호, 979호, 1446호, 1751호)
- 교부금 교부를 연 4회로 분할하여 교부함으로써 이행실적에 따른 교부금 교부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사업자의 정산, 공시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민간보조사업자의 자체관리(감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첨부2] ‘한국한의학진흥원 운영지원’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111쪽)/ [첨부2] 한국한의학진흥원 2019년 자체감사 결과보고(189쪽)/ [첨부2] 법인연구비카드 집행내역 모니터링 결과보고(195쪽) 자료를 통해 사업관리와 예산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국한의학진흥원 운영지원 및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한의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기업, 대학 등과 협업하고 있고,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별로 목표와 실적에 견줘 달성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시 산출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한의약산업은 한약재,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한 의료용구와 한의의료, 한의약 정보서비스 등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 및 이와 연계한 전후방 산업을 의미하고 있으나,
 -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사업은 한의약산업 중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전후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의약산업 전후방을 활성화시킬 방향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향후 한의약산업 전후방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안)”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사업 운영과 사업방식의 변경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해외환자유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다양한 언어권의 의료코디네이터 육성에 기여 했으나 사업의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 ·‘의료관광’이라는 전체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수혜그룹에 대한 재정부담도 유도할 필요 ·예산투입을 지속적으로 늘이거나 보다는 정밀한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 민간부담 증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의 추진근거가 되고 있으며, 제13조와 제21조는 각각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동법 제13조와 제21조의 예산지원 근거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동 법령이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근거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이 간접적으로 국정과제 34번(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과 관련되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내 의료관광 관련 세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은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는 계속사업으로,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은 ‘09년 부터, ‘보건산업 잡포털 및 전문인력 관리’는 ‘15년부터,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10년 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언어권의 의료통역 전문인력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육성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사드사태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꾸준히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증가해 왔으며, 기존의 중국·일본 환자 이외에 신남방·신북방 및 중동 환자도 지속 증가 추세임.
- 의료통역능력검정 등 보건산업전문인력 수혜인원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잡포털 일자리 교육실적 등 투입적 측면에서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유지되어 왔음
- ※ 잡매칭 지원 성과 : (‘17) 125건 → (‘18) 126건 → (‘19) 262건
- 그러나, 여전히 중화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략적 유치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일반적인 잡포털이나 통역인력 육성사업과 달리 동 사업은 의료관광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측면에서 여타 인력육성 사업과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유치대상인 해외환자와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이며, 잠재적 수혜자는 의료업계 종사자 및 해외환자 유치지역의 쇼핑·관광 업체들로 상당히 광범위한 수혜자 그룹을 설정하고 있음
- 그동안, 유치해외환자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다양한 언어권의 통역전문인력 등이 육성되는 등 양적인 규모의 성장이 있었음.
- 그러나 ‘의료관광’이라는 전체 생태계내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지, 어떻게 각 주체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할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는지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잡포털’은 보조율이 100%이며,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강화’는 보조율 50%로, ‘전문인력양성’은 국고와 자체수입(의료교육비)으로 추진 중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위탁수행의 형태로 보조율 100%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중 교육사업과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유치기반강화 사업은 지자체·민간의 자부담율을 높이고 있음
- ‘전문인력양성’은 국고 외 자체수입(교육비)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고 외 수입 비중은 작은 편임.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을 통해 ‘의료관광’이라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민간(주요 수혜그룹)의 매칭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속사업을 전제로 ‘21년 이후의 재정 추계를 제시하였으나 연도별 예산 확대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단계적으로 민간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어떤 수혜집단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 지자체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확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이 해외 컨퍼런스 개최, 인력육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지원 등에 기여했으나, 동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무리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보건산업전문 인력양성 및 잠포털’은 동법 제13조와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강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자부담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평가 시 우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향상을 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만을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부처 통합 규정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과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예산집행 점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시 중간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사용잔액 및 이자액의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사업 수행 종료 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잔액 및 이자액을 명시한 별도 정산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강화’ 사업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 외에 중간보고서 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병행함으로써 입체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정산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점검, 연차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과정도 상당수 차지하는 바 지원기관에 대한 회계점검외에 부정 교육수급자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회계감사 등 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원기관에 대한 부처의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과 근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내 의료관광 관련 세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편임.
- 동 보조사업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다양한 언어권의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육성되고 비수도권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어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중화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략적 유치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그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노력(교육평가, 관리시스템 등)도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지향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간 조율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3-2 정책 제언

-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유치건수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의료관광에 관한 전반적인 생태계가 일정 수준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투입을 선형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정밀한 효과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을 도출하여 전체 사업 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단순히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보다 언어-진료과목-비용부담 등의 교차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개선점을 발굴할 필요

- 현재, 교육비 일부 부담 외 국비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으로 민간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민간/지자체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고민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외에 정부지원이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톨(예: 조세, 바우처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민간에서도 자부담을 늘여갈 수 있도록 수혜자 그룹(예: 관련협회, 기관 등)의 참여(예: 기금 조성)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보건복지부
사 업 명	혈액안전관리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예산 감축(2022) 및 사업방식 변경 - 예산 감축은 NAT(핵산증폭검사장비) 사업 종료(2021년)에 따른 예산 순감으로, 예산 총액(10,012백만원) 및 종료 예정 내역 사업의 예산(6,789백만원) 규모를 고려할 때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암·중증질환 증가로 수혈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수급 전략이 필요한 상태임. - 보건복지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헌혈의 집 신축 및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헌혈의 집 신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근거는 객관적이고 공간적인 실증 분석에 기초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 헌혈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어 헌혈에 대한 관심 촉구 및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집행-관리 방안이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혈액안전관리사업은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지며, 혈액원 보조에 대한 법령의 구체성은 높고 구속력이 있으나, 헌혈의 집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체성 및 구속력은 미흡함.
-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을 의미함.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경우 산하에 18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제2항 >

제4조(헌혈권장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2 >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③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⑤헌혈격격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공공보건의료확충이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내역 사업의 정책 목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혈액안전관리사업은 프로그램이 공공보건의료확충으로 헌혈환경을 개선하여 헌혈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국정과제 등의 연관관계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사업별 기간 및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헌혈의 집 신설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확보함.
 - 2004년 수혈 감염사고 발생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 ‘혈액안전 종합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혈액안전관리체계 핵심장비가 일시 전면 도입되었으며 바이러스 초기 감염자에게 혈액의 수혈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NAT 검사 장비가 일시 도입됨.
 - 이에 따라 2018~2022년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총 21대 핵산증폭검사 장비가 20년~21년까지 지원 예정임.
 - NAT 장비의 예산은 2020년 12대 6,78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2021년 9대 5,094백만원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에 비해 2021년 소요 예산의 감액(1,695백만원)에 따른 예산 감축은 16.9%이며,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으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헌혈자 수는 당초 계획에 비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임. 헌혈은 주로 10~20대에 의존하고 있으나, 10~20대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임. 최근 헌혈자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성과지표를 중장년층 헌혈자수로 변경하였음.
 - ‘과실에 의한 부적격 수혈용 혈액제제 폐기율’은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보조사업은 주요 정책의 목표 달성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혈액안전관리사업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며,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기관에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임.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민간 기관이지만, 간접 수혜자는 헌혈할 의향이 있는 전 국민과 혈액이 필요한 전 국민이므로 광범위함.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국고 100%이며, 기준 보조율 여부 및 보조율 산정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2004) 계획 중 혈액관리체계의 안전성 개선에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의 보조는 국고 지원으로 결정되었음.
 - 실집행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사업종료 시점에서 집행 완료는 이뤄지고 있음. 이는 헌혈의 집 설치 지원 사업이 입찰 및 적격심사 기간 소요, 혈액원 노후장비교체(구입)지원의 입찰 과정 등으로 실제 장비 대금집행 후 실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임.
 - 2020년 노후장비 교체는 NAT 핵산증폭검사장비 12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당초 21대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9대의 장비 교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예산 소요는 2021년에 종료될 예정임.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헌혈의 집 신설 및 노후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축 중임.

1-5 사회적가치 실현(1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혈액관리기본계획 수립 TF 추진」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 혈액사용량 적정관리를 위해 수혈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수혈감시체계 확대 등의 실적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현혈의 집 설치사업 안내 지침>이 있으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규정 제4조 ③항에서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1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3호)을 제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국고지원 현혈의 집 설치사업 안내 지침>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사업 평가 사후 조치, 보조사업 집행점검, 정산보고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 제4조 ③항에서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1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3호)을 제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현혈의 집 설치사업 지침>에 일부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기록이 있으며(예,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특정 감사 결과 보고), 실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내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이 있음.
 - 2020년~2024년 혈액안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노후장비(NAT 핵산증폭검사장비)의 21대 교체가 계획되었으며, 2020년에는 12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1년에는 9대의 장비 교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1년에 완료될 예정임.
 - 2020년 예산요구자료에 따르면, NAT 장비의 예산은 2020년 12대 6,78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2021년 9대 5,094백만원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에 비해 2021년 소요 예산의 감액(1,695백만원)에 따른 예산 감축은 16.9%이며,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순감, 5,094백만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높으나, 재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의 관리 방식 변경이 필요함.
 - 헌혈의 집,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는 중기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수행되어야 하나, 중기 계획과 예산 편성의 미스매칭 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
- 기준 보조율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고, 사업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노후장비 교체 및 헌혈의 집 설치는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재정 투입 규모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실증적인 근거로 헌혈 집중 대상을 청년층에서 3,40대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헌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초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헌혈의 집 위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
노후상수도정비(제주)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생태경관보전지역및특정도서관리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지원
습지보전관리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위해우려매립시설오염확산방지및안정화
자연보전단체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친환경청정사업지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낙동강수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
환경보건기반강화협력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성고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효과성이 제한적이므로 세부사업, 내부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 필요함 (사업방식변경)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인제시의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외부단체 대상으로 DMZ 및 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토생태네트워크라는 세부사업과 연계성도 부족하며,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효과성이 낮아 사업방식변경 필요함 ·하나의 위탁기관(한국DMZ평화생명동산)을 통한 지역 기반 홍보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국가 보조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생태통로 설치사업으로 제45조, 제54조제4호에 따라, 국가생태탐로조성사업은 제38조, 제54조제3호, 도시소생태계조성 사업은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 또는 예산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규정은 DMZ 생태계보전을 위해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함이며, DMZ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은 동법 제54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홍보사업은 법률의 목적과 포괄적으로 연계됨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보전·복원하고, 이를 도시단위까지 확산하여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태계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함.
- 도시소생태계조성 및 백두대간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은 국정과제 59-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의 실천과제들이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실천과제들로 국가의 주요 정책방



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자연환경정책의 기본계획으로서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핵심 생태축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생태축 보전·복원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현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자연자원을 국민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국가생태탐방로조성, 도시소생태계조성,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보전·복원하고, 이를 도시단위까지 확산하여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태계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내역사업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사업도 DMZ의 우수한 생태계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한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봄
- 다만,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DMZ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국토생태네트워크”의 성과지표로 “도심생태휴식공간조성개소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가 힘들며 게다가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집행건수로 사업성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효과를 알 수가 없음.
- 세부사업, 내부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 필요함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도심생태휴식 공간조성개소수	세부사업	목표	109	134	174	Σ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도시소생태계 누적개소수)
		실적	109	136	176	
		달성도	100	101.5	101.1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보전·복원하고, 이를 도시단위까지 확산하여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태계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단,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인제시의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외부단체 대상으로 DMZ 및 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토생태네트워크라는 세부사업과 연계성도 부족하며, 현재 사업운영 방식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효과성이 낮아 사업방식변경 필요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어, 환경부의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보조율을 사용하고 있음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은 우표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금으로 국고 보조 100%가지고 있으나, 기준보조율과 비교하여 과다하며 재원분담을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함으로써 재원부담의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내역사업 모두 불용액과 이월액이 없으며 실집행률이 높은편임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90% 이하(3년 평균 실집행률 85.7%)로 나 타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는 지자체 비용부담능력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자 공모,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여 적정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예산교부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예산교부시 사업계획 검토는 물론 집행실태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아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보전·복원하고, 이를 도시단위까지 확산하여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태계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함.
- 본 보조사업은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국가생태탐방로조성, 도시소생태계조성,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가 힘들며 게다가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집행건수로 사업성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효과를 알기가 어려움

3-2 정책 제언

- DMZ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인제시의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외부단체 대상으로 DMZ 및 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토생태네트워크라는 세부사업과 연계성도 부족하며,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성이 낮아 사업방식변경 필요함
 - 하나의 위탁기관(한국DMZ평화생명동산)을 통한 지역 기반 홍보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함
 - 지자체의 부담을 제고나 국고보조금액 예산을 조정하여 그 예산을 활용하여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가 운영 필요해 보임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집행건수로 사업성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효과를 알 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 내부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가한 국민이 받은 직접적인 혜택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경상사업의 경우 수혜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후변화적응의 경우 내역사업간 중복성이 발견됨. · ‘쿨링’사업을 제외하면 직접 수혜자의 규모와 수혜정도를 평가할 근거가 불분명함. 본 보조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적응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불분명함.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았던 과거에는 교육·홍보·컨설팅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국민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 필요. ·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적응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감축·적응사업)’을 ‘기후변화적응사업’으로 통합·관리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국고지원 감축과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법적 근거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의 법적 근거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제2항 >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법적 근거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고보조를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제1항 >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 제1항 >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법적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5항 >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적응 대책의 시행(녹색성장위원회)’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산업부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이 인정됨.
-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내역사업 - 저탄소 생활실천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자체경상),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지자체경상),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지자체자본), 지역특화 취약성개선사업(지자체자본), 쿨링 & 클린로드 구축 사업(지자체자본) -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반면, 이를 제외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구체성이 미흡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 「61.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정과제 61번 과제의 목표는 ①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②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임.
 - 본 보조사업은 61번 과제의 세 번째 내용에 명시된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과 연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3개의 내역사업이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9년 또는 11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그에 따른 수혜자가 제한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6개의 내역사업 중 3개가 교육, 공모사업추진, 컨설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확대에 기여한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 보조금 총액 중 국민 일반의 기후적응 역량개선에 대한 기여가 명확치 않은 이들 3개 내역사업에 사용된 비중은 2018년 85%(결산), 2019년 38%(결산), 2020년 64%(계획)로 내역사업의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보조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보조유형)	세부내용	사업 기간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계획
저탄소 생활실천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성)	생활분야 CO2감축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트양성, 공모사업추진	‘10년 ~	1,842	1,883	1,895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자체경성)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온실가스진단 및 컨설팅	‘10년 ~	2,120	2,120	2,000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 (지자체경성)	지역 거점별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운영 비용)	‘12년 ~	493	480	500 (493)
적응 선도사업 (지자체자본)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	‘17년~	760	800	800
취약성개선 시범사업 (지자체자본)	도시재생연계모델, 물순환 도시연계 모델	‘19년~ 20년	-	1,700	1,700
쿨링 & 클린로드 구축 (지자체자본)	쿨링 로드 시범사업	‘19년	-	4,750	-

- 기초보고서(6페이지)는 본 사업이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상중하 중 상)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한 가지 내역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본 사업전체가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는 미흡한 면이 있음.
- 취약성 개선시범사업의 경우 개발된 도시모델의 숫자로 성과지표가 제출되었으나 다른 내역사업의 경우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성과지표(건수, 참여자수, 인식의 변화, 기후적응사업 건수 등)가 불분명함.
- 기초보고서(5페이지)는 2018년과 2019년 성과평가로 ‘2019년 88.7%가 온도저감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 이는 ‘쿨링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로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됨.
- 특히 100%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된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의 경우 지원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점차 성과가 확산되기 보다는 정체 또는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환경부 제출자료 중 ‘2017-2019년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 성과표’ 참조).
- 이는 본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 비해 기후변화나 적응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수준이 높고 다양한 홍보매체나 민간부문의 컨설팅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특히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홍보사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방문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관련 Youtube 홍보영상의 조회수가 100 수준인 것이 시사하듯 홍보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 근거가 약함 (아래의 표 참조).

[표] 2017-2019년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성과

구분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컨설턴트 양성		1,601명	1,415명	1,426명
	컨설팅 수행실적		51,301개소	49,592개소	48,242개소
	온실가스 감축량(3개월)		2,784	1,836톤	2,824톤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단체		25개	8개	22개
	온실가스 감축량		1,191톤	-	46톤
그린오피스 보급사업	그린 터치	보급대수	17만대	12만대	4만대
		감축량	4,393톤	3,144톤	2,328톤
	그린 프린 터	보급대수	9만대	2만대	1만대
		감축량	2톤	1톤	0.5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지원가구		1,500개소	1,200개소	4,001개소
홍보·캠페인	시기별 캠페인 및 기업연계사업		시기별 사업	시기별 사업	시기별 사업
	온라 인 홍보	홈페이지 방문자	32만명	24만명	19만명
		블로그 방문자	83만명	82만명	75만명
		페이스북 회원	4만명	4만명	4만명
		트위터 회원	7만명	7만명	7만명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교체사업	참여 아파트		28개소	34개소	-
	조명교체 수량		36천개	27천개	-
	온실가스 감축량		11,681톤	9,279톤	-

- 국민인식인 높아진 점 등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고, 상위 정책목표인 기후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춤으로써 국민일반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기후적응역량개선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과 유사함.
 - 기초보고서(9페이지)는 본 사업이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 유형,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적응효과 창출 및 확산사업으로, 건축물 등의 에너지절감 및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감축-적응 공동편입사업인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과 구별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두 사업의 성격과 불일치함.
 - 환경부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front/waterEasy/policy03_02.jsp, 2020년 1월 25일자)에 제시된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운영 내실화 및 지원 확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제 구축,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보급,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개소 및 지원액 확대로 본 사업의 기후적응역량 개선과 유사함.
- 본 사업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역량이 개선되었을 경우 사업에 참여한 실수혜자는 물론 지자체의 기후대응역량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잠재적 수혜자 규모가 광범위할 수 있었으나 본 사업은 교육·홍보·컨설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의한 효과성도 불분명한 상황임.
 - 보조금의 50% 이상이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에 사용되면서 실수혜자의 규모가 제한적임.
 - 기초보고서(11페이지)는 본 사업에 의해 정부-지자체-기업-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또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혜택 전체를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협력체계 및 기후환경네트워크나 교육·홍보·컨설팅 사업 참여자가 받은 실질적인 수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확산효과로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국비 50% 지원)가 제시한 기준보조율과 산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예산 규모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국고보조 (백만원)	총 보조금	5,255	11,845	6,895
	지자체 보조	3,413 (50%)	9,950 (50%)	5,000 (50%)
지자체 부담 (백만원)		3,413 (50%)	9,950 (50%)	5,000 (50%)
민간 부담 (백만원)		0	0	0
합계		8,668	21,795	11,895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업방식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었다는 증거는 미흡하나 본 사업 자체는 본질적으로 기초보고서(15페이지)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가진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 근거를 제시했음.
- 지자체보조의 경우 사업자가 지자체로 적정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경우에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및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적정성 관련 논란의 여지는 적음.
- 다만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따른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특히 ‘관’이 포함된 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민·관·기업의 거버넌스 조직으로 2008년부터 활동해온 단체로 환경부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유일한 단체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유일한 사업자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기초보고서는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통합규정이나 관리지침(인정안됨) 이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예산집행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환경부는 집행부진 지자체에 대한 집행독려, 실행상태 및 현장점검, 예산 적정 집행여부 점검, 분기별 사업수행보고서 작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기초보고서 24페이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온난화가 진전되며 개인, 기업, 지자체,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후적응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효과성이 모호하고 수혜자의 범위가 제한된 내역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보조사업자 선정에서의 경쟁제한 등의 문제점을 노정할 바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 ‘쿨링’사업을 제외하면 직접 수혜자의 규모와 수혜정도를 평가할 근거가 미흡하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적응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약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약하지만 기후관련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 규모의 축소보다는 기후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국민인식이 낮았던 과거에는 교육·홍보·컨설팅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그간 국민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교육이나 홍보사업보다는 온실가스 저감이나 적응역량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내역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사업방식 변경 필요.
- 기후적응사업의 경우 내역사업간 유사성이 존재하는 바,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적응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감축·적응사업)’을 ‘기후변화적응사업’으로 통합·관리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감축과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노후상수도정비(제주)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실행행률이 낮아서 사업의 수요와 집행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정책목표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 2018년에는 실행행률이 52.9%에 불과하였고 2019년에는 군특에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실행행률이 80.5%에 그쳤으며, 성과지표(누수율)은 환경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실행행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축하고 국고보조금이 예산대로 교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법적 근거는 수도법 2조와 75조에 마련되어 있음
 - 특히 제75조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수도법 >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정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59-4 통합 물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음
 -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목표, 목표집행액, 실제집행액, 목표설정근거 등이 단계별로 제시되지 않음(표1-2-1 및 ‘202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의 관련 작성지침 참조)
 - 제주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 수행된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에 제시된 상수관망 정비의 편익(7-13쪽 이하)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이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생산량 절감, 하수처리 비용,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감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성과지표로는 누수율만 제시되었는데 사업의 목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자체평가 총평) 그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 또한 누수율 또는 유수율 측정이 제주도의 상황만을 나타내도록 관리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정과제와의 관련성은 명확하나 프로그램 등 정책상위수준의 목표달성에 이 사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음(표1-2-3)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대상 사업과 유사성이 더 높으므로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이 평가대상사업의 노후 정수장 개량(재건설, 통합건설)은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평가대상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원수의 품질 등의 문제로 개량시에 막여과시설(고도처리시설)등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초조사보고서에는 비목구성이 제시되지 않아서(표1-4-1) 그 구성의 적정성과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실집행률이 부진하여 정책의 필요성, 추진체계 등에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 2018년에는 실집행률이 52.9%에 불과하였는데, 단 이 경우 사업개시 첫해로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발주 후 설계 계약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한 가지 이유로 판단됨
 - 2019년에는 균특예산 부족으로 국고예산의 일부 미교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집행률이 85%에 그쳤다는 것은 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예산편성된 교부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좋은 물 공급은 환경개선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임
- 유수율의 향상은 물자원 이용의 강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진행중인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방지를 위한 별도 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표 2-3-1)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중 ‘VI.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의 ‘3.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 및 점검’에 점검결과 조치의 종류와 기준등을 밝혀두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모니터링 기준,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다른 규정들은 확인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기할 추가적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표 2-4-1)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의 수요와 공급체계 모두에 문제가 있어 보임
 - 2019년 군특회계에 국고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예산체계 내에서 이 사업을 위한 자금 교부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 상위정책 목표와의 관계설정, 성과지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상위 프로그램의 정책목표 달성에 평가대상 사업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감축할 것
- 환경개선과 수돗물 품질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국고 교부가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출 것
- 보조율의 법률 또는 시행령상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중장기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미흡해 보임 ·중장기재정추계에 정책의 편익과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지표(누수율)는 정책목표 중의 하나인 깨끗한 수도물 공급의 달성 정도는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중장기 시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과 효과를 명확히 정의하여 그에 맞게 사업체계를 구성하고 성과지표를 수도물 품질측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법적 근거는 수도법 2조와 75조에 마련되어 있음
 - 특히 제75조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정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59-4 통합 물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음
 -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목표, 목표집행액, 실제집행액, 목표설정근거 등이 단계 혹은 연차별로 제시되지 않음(표1-2-1 및 ‘202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의 관련 작성지침 참조)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16년 기재부)등을 참고하여 사업 목표, 목표집행액, 목표설정 근거를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래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중장기 재정추계(기초조사보고서 표1-4-4)가 당초 추진계획의 토대가 되었던 2016년 기재부의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연구용역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는 누수율만 제시되었는데 사업의 목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자체평가 총평) 그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정과제와의 관련성은 명확하나 상위 프로그램 목표달성에 이 사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음(표1-2-3)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대상 사업과 유사성이 높으므로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이 평가대상사업의 노후 정수장 개량(재건설, 통합건설)은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평가대상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원수의 품질 등의 문제로 개량시에 막여과시설(고도처리시설)등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장기 재정추계(기초조사보고서 표1-4-4)에서 ‘목표’로 예산집행액만 제시되고 사업추진내용 및 편익과 효과 측면에서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2015년 수행된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에 제시된 상수관망 정비의 편익(7-13쪽 이하)을 참고하여 이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생산량 절감, 하수처리 비용,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감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현재 중장기 재정추계(기초조사보고서 표1-4-4)의 2020년 이후 수치는 2016년 기재부의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연구용역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추진계획이 크게 변경된 근본적 이유는 2019년 노후상수도 정비 시급성 필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따라 ‘20년에 잔여대상지를 일괄 착수하여 조기완료(∼’24년)를 목표로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768 2016 기재부 연구용역과 현 중장기 재정추계상의 국고보조금 규모

연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합계
2016기재부 연구용역	2,510	2,225	1,937	1,827	1,833	1,899	2,005	1,472	474	16,182
현 중장기 재정추계	4,580	4,331	5,009	3,181	825	-	-	-	-	17,926

- 단,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6년 추계에 비해서 약 1700억원 증가하게 된 근거를 밝혀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 시간계획의 변화가 2015년 시행한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행했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지도 밝혀 줌으로써 계획의 대폭 변경의 근거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 설정에 법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임(표1-4-3)

-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유사한 ‘28.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의 보조율은 70%(표 1-3-1)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하고 대규모인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상의 근거가 없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좋은 물 공급은 환경개선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임
- 단, 유수율의 향상은 물자원 이용의 강도를 낮추므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진행중인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방지를 위한 기본적 규정은 갖추고 있으나 매우 상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됨(표 2-3-1)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중 ‘VI.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의 ‘3.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 및 점검’에 점검결과 조치의 종류와 기준등을 밝혀두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모니터링 기준, 부정수급 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다른 규정들은 확인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기할 추가적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표 2-4-1)
- 자체 부정수급 적발 실적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회적 편익과 효과면에서 중장기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음
 - 중장기재정추계에 정책의 편익과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산규모만 제시되었음
- 성과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미흡해 보임
 - 정책목표는 크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양적 측면)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질적 측면)인데 누수율이라는 성과지표는 후자를 반영하지 못함
 - 누수율의 설정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함

3-2 정책 제언

- 중장기 시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과 효과를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재정추계가 당초 사업추진계획의 토대가 되었던 2016년 기재부의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연구용역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를 수돗물 품질측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정비사업을 통해서 달성된 내부 이물질 제거 정도 또는 수돗물의 먹는 물 사용비용 등을 추가적 지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양적인 측면의 성과지표로 누수율보다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대상 지자체들의 우수율 값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보조율의 법률 또는 시행령상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비점오염저감사업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실집행률이 6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중장기 재정추계의 구체적 목표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실집행률이 낮은 사유로 사업부지 매입 협의지연,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지연, 설계보완에 따른 지연, 민원 등에 의한 공사중단, 관련부서 협의지연 등 유사한 사유가 반복되고있으며,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으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편익과 효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계별 재정추계도 제시되지 않음 · 실집행률을 참고하여 예산을 감축하고 중장기 재정추계를 충실히 하되 특히 사업의 편익과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마련되어 있음
 - 특히 69조에 보조의 근거가 명확히 언급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연간 766억 원 규모(2020년도 예산기준)의 대규모 사업인데 단계별 목표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사업의 예산규모뿐 아니라 각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오염저감량이나 환경질을 나타내는 지수 등이 목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사업의 상위계획인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나 ‘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12~’20)’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목표나 그 달성을 통한 사회적 편익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비점오염저감에 대한 투자소요액이 추산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목표나 사회적 편익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임
 - 그러므로 기재부 ‘환경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고려사항들(특히 2절 재정 투자의 성과와 한계)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차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21~’25)’(2020.7. 완료 예정)를 통해서 중장기 및 연차별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서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저감량이 의미가 있지만 수질의 유지나 개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출량 등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국정과제인 ‘통합 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원방식으로는 보조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비점오염의 특성상 직접수혜자를 정밀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해당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그 유역에서 취수되는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주민들로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실집행률이 60%를 조금 넘어서 저조함
 - 2017년 이래 3년간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업부지 매입 협의지연, 관련부서 협의지연, 설계보완에 따른 지연 등’으로 동일함
- 보조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13번에 일반은 50%, 비점오염관리지역은 70%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음
- 단기, 중기, 장기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예산규모가 아니라 편익, 효과 등)와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가능성은 일단 인정됨
 - 농경지에 과다살포된 퇴액비, 고랭지밭 토사, 야적된 가축분뇨, 타이어마모 등이 하천에 유입하는 것을 저감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정량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규정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2장, 4장, 5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규정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2장-IV 집행관리’에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2장-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에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적이지는 않음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관리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별 분기단위 집행점검과 반기별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중장기적 달성 목표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편익과 효과가 수량화되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실집행률이 60% 수준으로 매우 낮음
 - 그 사유로 사업부지 매입 협의지연,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지연, 설계보완에 따른 지연, 민원 등에 의한 공사중단, 관련부서 협의지연 등 유사한 사유가 반복되고 있음
- 현재의 성과지표는 정책목표 달성의 일면만을 보여줌
 -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저감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일차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수질의 유지나 개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실집행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동 세부사업은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평가대상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연차별 기대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재부 ‘환경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고려사항들(특히 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3차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21~’25)’를 통해서 중장기 및 연차별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이 낮게 발생하는 사유로 든 문제점들, 즉 관계기관간 협의, 인허가, 설계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비점오염저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개정(’18.10 및 ’20.02)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 하반기에 그 개정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
- 평가대상사업 추진지침의 개정은 평가사업 자체의 유치에만 영향을 주므로 수계의 상류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유치 동기가 큰 여타 환경부 사업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하천유입 저감량에 더하여 전체적 수질의 유지 개선에 대한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DB 활용의 수혜자가 명확치 않고 DB 활용성 제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 필요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는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내역사업 내 외부활동조사나 구축된 DB의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변경 필요함 ·기존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제고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수를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감소된 분은 새로운 내역사업 ‘야생생물자원 활용 및 유지관리’로 편성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등록 DB 활용성 강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비용 대비 DB 구축 효율적 기술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3.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대역 및 분량 확대로 생물자원의 활용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방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나고야의정서 대비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산업 지원에는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생물다양성 관련기관은 박물관, 식물원, 수목원, 대학교 관련센터 등 표본, 개체, 종자 등 생물자원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내역사업의 성과지표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DB 구축건수로 되어 있어 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DB가 활용에 유효한 상태인지 질적 완성도를 알 수가 없으며, DB를 활용하는 수혜자의 이용도(%)나 활용만족도와 같은 지표가 결여 되어 있어 DB구축의 보조사업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알 수가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DB 구축건수(건)	보조사업(내역)	목표	-	75,000	95,000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DB 구축건수(건)
		실적	97,438	93,940	99,250	
		달성도	-	125%	104%	

-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는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외부활용조사나 구축된 DB의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에서 기존 실시한 기탁·수탁·분양·대여 통계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않은 상황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의 생물자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수혜자 혜택이 보조사업 기관에게 일어나며 게다가 구축된 DB에 대한 외부활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혜자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 향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비용 대비 DB 구축 효율적 기술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필요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민자경상보조로 100% 보조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역 상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 사용이 대부분인 사업이므로, 예산의 70% 이상을 정보 입력을 위한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에 실효성에 문제는 없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 사업자 선정하여 선정관리는 적절한 편임
 - 매 연초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민간의 생물다양성관리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1개월간 공모하여 국고보조 신청서(DB 구축 목표 점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관, 외부 교수 등 5인 이상)를 통해 기술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목표 DB 점수를 토대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보조금 교부액 결정,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최종 교부하는 평태로 선정이 적절성이 높음
 - 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해 DB 구축의 비용 효율화, 혁신적으로 DB 구축방법 개선 등의 사업자 선정의 인센티브 조항을 만들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운영관리 지침」규정을 근거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을 높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운영관리 지침」을 통해 생물다양성관리기관의 운영 실태와 보조금 사용 관련 DB 구축 내용에 대해 현지 점검하고 있어 적정성은 높으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미비함.
 - 별도의 부정수급심의 제도를 마련하든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수립 등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대여 및 분양 확대로 생물자원의 활용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내역사업의 성과지표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DB 구축건수로 되어 있어 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DB가 활용에 유효한 상태인지 질적 완성도를 알 수가 없으며, DB를 활용하는 수혜자의 이용도(%)나 활용만족도와 같은 지표가 결여 되어 있어 DB구축의 보조사업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알 수가 없음
- 본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의 생물자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수혜자 혜택이 보조사업 기관에게 일어나며 게다가 구축된 DB에 대한 외부활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혜자의 범위를 알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은 높은 편임

3-2 정책 제언

-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는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내역사업 내 외부활용조사나 구축된 DB의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변경 필요함
- 기존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제고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수를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감소된 분은 새로운 내역사업 ‘야생생물자원 활용 및 유지관리’로 편성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등록 DB 활용성 강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비용 대비 DB 구축 효율적 기술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생물자원보전시설(330-03)),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지자체보조사업인 생물자원보전시설 집행을 저조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 감축 및 이의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생물자원보전시설지원사업은 3년 평균집행율이 38% (42.9%('17), 28.2%('18), 42.9%('19)로 매년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처의 집행을 따른 사업관리 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감축 필요함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내 '철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습지보전 관리” 세부사업의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종지 보상” 과 야생물식물보호 및 관리 세부사업의 “철새보호사업”을 본 세부사업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사업”으로 흡수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31조, 제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사업은 동 법률 제37조, 인제우체류 복원사업은 동 법률 제58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31조에 구체적이며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중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3. 삭제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6의2. 역학조사,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전시교육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의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당함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합일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사업,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사업, 인제우제류 복원사업(종료사업)으로 내부사업 사이에 유기적 연계성과 업무 간의 정합성이 높은 편임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의 지표의 경우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으로 한정된 개체의 복원률로 제시되어 있어 내역사업들의 효과로 달성했다는 개연성이 부족함. 특히, 지자체 경상보조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내역사업의 효과는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제에 따른 교차준수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움
-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의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 보전 중수(중)	보조사업(내역)	목표	360	430	440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보호 야생동·식물 증식복원 개체수(누적)
		실적	341	430	443	
		달성도	100.3	100	103.0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보조사업(내역)	목표	62.0	80.0	95	[Σ(반달가슴곰·여우·산양 야생 개체수/최소존 속개체군의수*100)]/3 *반달가슴곰·여우 50개 체, 산양 100개체
		실적	74.3	92.6	98.6	
		달성도	119.8	115.7	103.8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국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허나, 생물자원보전시설 건축비의 경우 증식복원 관련 연구시설을 제외한 단순 전시체험 시설 등의 개보수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혜택이 시설 소유자에게 발생하므로 보조사업 통한 운영이 타당하지 않으며 용자 방식을 통해 재원 조달의 용이성을 강화함이 필요함
- 타보조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으며, 1차적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와 보조사업자이지만 2차적 수혜자는 국민전체가 되므로 수혜 범위가 큰편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경우 지자체경상인 경우 50%, 민간경상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자본 보조인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경우 50%의 국고보조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 전시체험시설 등의 건축소요비의 경우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용자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자체보조사업인 생물자원보전시설(330-03)의 경우는 집행률이 42.9%(2017), 28.2%(2018), 42.9%(2019)로 3년 평균 38%로 매우 미진함
 - 동 보조사업의 낮은 실행률의 사유가 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사업 인·허가 지연, 사업 부지 확보 지연,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향후 재발의 개연성이 높은 편임
 - 허나,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사전심사 절차 강화,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관리 점검, 집행률에 따른 자체적 사업비 삭감조치 등으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생물자원보전시설 내역사업의 재정 감축을 '21년으로 한정하고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생물자원보전시설 국고 보조사업 운영방식 개선방안(생물다양성과, '20.3) >

구분	사업 추진 절차
현행	①차년도 사업신청→②지원대상 및 규모결정→③예산안 편성 및 결과통보→④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⑤국고보조금 교부
개선	①차년도 사업신청→②사전 체크리스트 작성→③관련 행정절차 이행계획 제출→④관련 전문기관 검토→⑤예산안 편성 및 결과통보→⑥국고보조금 교부 신청→⑦사업집행 점검, 차년도 감액수준 결정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사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은 높으며,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는 환경부 통합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그 적절성이 낮음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의 경우 매년 지자체로부터 설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선정 검토가 가능한 외부전문기관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선정의 적절성을 개선해야 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사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있으나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는 환경부 통합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그 적절성이 낮음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비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집행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시행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준용하고 있지만, '17년부터 '19년까지 자체적발 건수는 0건이나 기회재정부에 의해 외부적발 건수는 1건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별도의 부정수급심의 제도를 마련하든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수립 등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사업은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 실적이 자체적발 실적보다 많아 가점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전시교육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의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당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사업,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사업, 인제우제류 복원사업으로 내부사업 사이에 유기적 연계성과 업무 간의 정합성이 높은 편임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의 지표의 경우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으로 한정된 개체의 복원률로 제시되어 있어 내역사업들의 효과로 달성했다는 개연성이 부족함. 특히, 지자체 경상보조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내역사업의 효과는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제에 따른 교차준수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움
-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원사업은 3년평균 집행율이 38%(42.9%(‘17), 28.2%(‘18), 42.9%(‘19)로 매년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허나,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관리 점검, 집행률에 따른 자체적 사업비 삭감조치 등으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생물자원보전시설 내역사업의 재정 감축을 ‘21년으로 한정하고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내 ‘철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습지보전관리” 세부사업의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 과 야생물식물보호 및 관리 세부사업의 “철새보호사업”을 본 세부사업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사업”으로 흡수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의 지표의 경우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으로 한정된 개체의 복원률로 제시되어 있어 내역사업들의 효과로 달성했다는 개연성이 부족함.
 -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 생물자원보전시설(330-03)의 경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강화, 집행률 부진 사업 예산 감액기준 마련 등 실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의 사업방식변경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보조사업은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국고보조의 타당성은 높으나 일부 내역사업(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의 실행행위를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지자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 100%가지고 있으나 불용액과 이월액이 크며, 사업신청 부족으로 실행행율이 30% 이하로 매우 낮아 재정규모 감축과 집행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함 ·사업신청 확대를 위해 現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외 마을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까지 확대하고, 사업계획 검토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지원 등 지침개정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국가 보조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음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은 제54조제2호,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제54조제3호에 따라 예산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은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함.
-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복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하므로 국정과제 59-1(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와 연계성이 높으므로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설치으로 구성되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됨.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은 생태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생태마을 홍보 관련 시설 설치 등 생태마을 보전·관리 활동에 지원 사업임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국가보호지역 지정면적 확대’와 ‘보호지역훼손지복원 면적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역사업의 결과로 지정면적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미약해 보임
 -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필요함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국가보호지역 지정 면적 확대	단위사업	목표	11.2	15.5	16	국가보호지역면적/육상 국토면적(100,284km ²)*100
		실적	11.6	15.6	16.6	
		달성도	103.6	100.6	103.8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면적 증가율	단위사업	목표	신규	14.5	19.1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내 복원면적/훼손지면적*100
		실적	신규	17.4	20.6	
		달성도	신규	120	107.9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해당지자체 또는 민간의 보조사업이 필요함
 - 하지만, ‘19년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잔디블럭 설치나 마을 표지석 설치 등 생태복원과 생태마을 홍보 등 목표와 직접관련 사업으로 신청되고 있는 문제가 존재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어, 환경부의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보조율을 사용하고 있음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는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지자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 100%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크며, 사업신청 부족으로 실집행율이 30% 이하로 낮으므로 사업방식 변경등 집행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함
 - 사업신청 확대를 위해 現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외 마을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까지 확대하고, 사업계획 검토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지원 등 지침개정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는 지자체 비용부담능력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자 공모,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여 적정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예산교부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예산교부시 사업계획 검토는 물론 집행실태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아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함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해당지자체 또는 민간의 보조사업이 필요함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지자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 100%가지고 있으나 불용액과 이월액이 크며, 사업신청 부족으로 집행행율이 30% 이하로 매우 낮으므로 집행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함
 - 사업신청 확대를 위해 現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외 마을로 한정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까지 확대하고, 사업계획 검토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지원 등 지침개정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생태마을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수록된 지침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이 필요해 보임
 - **(사업방식개선)** 생태마을 개소수가 감소 추세이므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공모, 예산범위 안에서 개소수 및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용, 사업계획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집행점검강화)** 유역(지방)청에서 매월 집행을 확인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 사업신청 제한 등 페널티 부여
 - **(환류체계구축)** 사업완료 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용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신청 시 차등지원에 반영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 측면을 보았을 때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실질행위를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함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2년 평균 실집행률 35.8%, '17년 및 '19년 20% 이하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동 사업의 신규사업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 지연사유들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을 관리 필요함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 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보조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를 활용하여 관리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제41조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의 목적은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현명한 이용정책으로 전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함
- 국정과제 59-1.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와 연관이 있어 국가 중요 정책방향과 합치되나 구체성은 결여 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내역사업들의 목적 및 내용이 상호 연계성이 높은 편임
-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 이전의 13년 대비 생태관광객 증가율로 생태관광 소득액 증가율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허나



- 제시한 보조사업 성과지표인 관광객 증가율, 관광소득 증가율은 4개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변화의 추이이지 설정 목표 대비 달성률에 대한 자료가 아니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현재 성과지표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개선의 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생태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도 추가 설정 필요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체험 및 관련 시설 조성, 주민협의체(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중점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허나, 에코촌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관광사업과의 차이를 알 수가 없는 환경보전, 생태계 서비스 지불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아 볼 수가 없어 환경보전에 대한 비전과 수요예측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령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 근거하여 현행 보조율 50%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총 3개의 사업 중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2년 평균 실집행률 35.8%, '17-'19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12.5~206.9%로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재정지원의 감축 및 면밀한 집행률 관리가 필요함
- 허나,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표와 같이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과 에코촌 조성사업은 실집행율에 따라 재정지원의 감축을 시행중이며,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18	1,300	279	21.5
2019	1,000	500	50.0
2020	1,000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17	2,000	322	16.1
2018	1,250	2,597	206.9
2019	935	117	12.5
2020	-		



- 또한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은 없고 설계 완료(밀양 생태관광센터) 또는 설계 중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인 사업으로 집행 지연사유를 해소하였으므로
- 사업의 연속성 및 적정 공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또한, 실집행율 저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집행률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및 재정 패널티 부여하고 신규사업은 지자체 부담인 부지 확보 시 국고 지원, 사업 첫째 설계비 만 편성 등 사업방식을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 신청을 통하여 지자체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에코촌의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부처내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율, 집행방법 등 세부적인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3년차에 재지정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보조사업 집행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인 (사)한국생태관광협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노력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는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시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실적 및 부진사유 검토 및 차년도 예산에 삭감 반영하여 집행의 적정성이 높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지자체에서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감독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생태관광지역에 생태관광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추진을 점검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의 목적은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현명한 이용정책으로 전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관광기반 구축 등의 내역사업의 경우 법령과 사업의 연계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내역사업들의 목적 및 내용이 상호 연계성이 높은 편임
 - 현재 성과지표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개선의 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생태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도 추가 설정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2년 평균 실행률 35.8%, '17년 및 '19년 20% 이하의 실행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동 사업의 신규사업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 지연사유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사업의 연속성 및 적정 공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 및 면밀한 집행률 관리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 보조사업 관리에 있어 보조사업 실행률이 부진한 지자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를 활용하여 관리감독이 진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점검 및 패널티 부여 등 재정 효율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실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심사)** 생태관광 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사업 신청 시 사업 타당성, 예산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추진 계획 수립 필요함, 예를 들어, 내역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연도별 투자계획(사업 첫째 설계비만 반영, 설계 진행시 공사비 지원 등) 등을 포함 사항으로 지정이 필요함
- **(사업 진도율 관리)** 집행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요인의 해결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미해결 시 부정적 요인 해소계획 징구하고 해결 시 차년도 사업비 반영 필요함
- **(집행관리 강화)** 사업 수행상황 보고(분기), 집행점검반 운영(반기), 집행부진사업 특별관리 등 시행하며, 전년도 이월액 과다사업 및 장기 미집행사업은 집행부진 해소방안 징구 및 이행 여부 현지 검사·확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재정패널티 부여)** 사업수행상황보고를 검토하여 집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차년도 예산 감액 조치 및 사업기간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사업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명확히 하고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강수계 수질의 부분적 개선에 기여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지원기준이 되는 ‘오염물질 95%이상 삭감’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지가 불분명하고, ‘오염물질 삭감률’이라는 성과지표가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질적으로 동일해서 그 의미가 제한적임 · 추가적 기준 적용시 수계전체에 미치는 수질개선 효과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비용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대상 공공정수장 하류의 오염물질 수준 등을 추가적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조의 2에 기준 이내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에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국정과제 중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연관성이 인정됨
 - 해당 국정과제의 목표 중의 하나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 조성'이 제시된 바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오염물질(COD)을 연간 약 200톤 삭감하고 있으며, 보조대상 공공정수장들이 위치한 구간 상류보다 하류에서 측정한 BOD가 감소하는 폭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므로 일차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홍릉천과 잠실 측정소 사이의 BOD 감소치 폭이 다음과 같음
 - * ('16년) 0.8mg/L → ('17년) 1.9mg/L → ('18년) 3.3mg/L → ('19년) 3.4mg/L
- 오염물질 삭감률 지원기준인 '95% 이상'이 일반적인 '법적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원기준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계전체의 수질개선과 식수 공급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성과지표로 오염물질 삭감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임
 - 보조대상 공공정수장 하류의 오염물질 수준 등을 추가적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자체 시설의 운용에 대한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로 판단됨
- 단, 소수 배출지점에서 오염을 낮추는 것이 전체 수계 주변 주민들에게 어떻게 편익을 제공하든지 보다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슬러지운반비를 지원금 산정방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한강수계법 시행령 17조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용비용은 그 비용의 30% 이내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실제 지급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영비와 연간 사용된 운영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30% 이내를 지원하고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한강수계 상류지역 BOD(잠실 측정소)가 2016년 1.6 mg/L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0mg/L가 된 것으로 보아 수질개선에 기여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됨

< 한강수계 상류 BOD 측정자료 >

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측정소	수심	BOD(mg/L)
20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0.5	1.6
20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0.5	1.2
20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0.5	1.1
20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0.5	1.0

자료: 환경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이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관련 규정으로 기초조사 보고서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들고 있으나 (표2-2-1) 이는 전반적 기금 관리에 관한 것이고 평가대상사업의 보조대상자에 대한 집행현황 점검, 사업자의 보조금 정산, 반환, 회계감사에 관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이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관련 규정으로 기초조사 보고서에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들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이 보조사업의 시행자만에 대한 자체적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표2-4-1에 제시된 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실태 평가는 이 특별회계전반에 대한 점검이고 이 보조사업에 집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한강수계 일부의 수질개선에 기여했을 개연성은 인정됨
- 단, 지원기준인 ‘오염물질 95%이상 삭감’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편익을 가져오는지가 불분명함
 - 지원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지켜야하는 수준에 비해서 지원대상자가 이 지원기준을 지켰을 경우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 편익이 있는지를 환경공학, 경영학, 경제학적 관점을 통합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임

3-2 정책 제언

-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추가적 기준 적용시의 수계전체에 미치는 수질개선 효과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조대상 공공정수장 하류의 오염물질 수준 등을 추가적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습지보전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습지보전 관리 및 이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수혜자인 국가와 지자체가 어민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이는 생태관리계약제의 일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의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함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은 명목은 습지보전 및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보조 사업이나 실제적으로 내역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훼손지 복원 위주의 사업 강조 필요함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매우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습지보전법」 제22조의 2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은 ①우포늪 어로행위제한 보상지원, ②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③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내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는 약함

< 습지보전법 제22조의2 >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생물다양성, 생태경관 가치 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59-1(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우포늪 어로행위제한 보상지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역사업 구성이라고 판단됨
-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전에 허가를 득한 내수면어업 허가자(12명)에 대하여 우포늪 철새도래기(4개월)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어업 손실액 보상함.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기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사업은 훼손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국가보호지역 지정면적 확대’와 ‘보호지역훼손지복원 면적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역사업의 결과로 지정면적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미약해 보임
-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필요함

<습지보전관리의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국가보호지역 지정 면적 확대	단위사업	목표	11.2	15.5	16	국가보호지역면적/육상 국토면적(100,284km ²)*100
		실적	11.6	15.6	16.6	
		달성도	103.6	100.6	103.8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면적 증가율	단위사업	목표	신규	14.5	19.1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내 복원면적/훼손지면적*100
		실적	신규	17.4	20.6	
		달성도	신규	120	107.9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은 명목은 습지보전 및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보조사업이나 실제적으로 내역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훼손지 복원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부처에 따르면 훼손지복원 사업은 습지 생태복원을 비롯해 보전·이용시설 설치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는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로 소명하는 바,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계 기능을 보전하는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훼손지 복원 사업을 강조하는 형태로 추진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습지보전 관리 및 이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수혜자인 국가와 지자체가 어민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이는 생태다양성관리계약제의 일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의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우포늪은 연간 약 10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생태관광 명소로서 일반국민을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며, '18년 대비 '19년 1만명의 탐방객 숫자가 증가하여 우포늪 생태계 보호를 통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어, 환경부의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보조율을 사용하고 있음
-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규모가 한정적이며, 3년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구별 지원단가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정액(2억원)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 모두 불용액과 이월액이 없으며 실집행률이 높은편임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90% 이하(3년 평균 실집행률 85.7%)로 나타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는 지자체 비용부담능력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자 공모,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여 적정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호지역 관련 국고보조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예산교부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예산교부시 사업계획 검토는 물론 집행실태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아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은 ①우포늪 어로행위제한 보상지원, ②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③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내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는 약함
- 공통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역사업 구성이라고 판단됨.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부정수급 관리는 적정하게 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습지보전 관리 및 이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은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수혜자인 국가와 지자체가 어민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이는 생태다양성관리계약제의 일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의 내역사업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 고려 필요함
-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은 명목은 습지보전 및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보조 사업이나 실제적으로 내역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훼손지 복원 위주의 사업 강조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설정이 매우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야생물식물보호 및 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본 보조사업은 야생생물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나 철새사업의 경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철새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긴급조치 뿐만 아니라 ‘철새보호’라는 목표에 체계적이며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행행률이 3년 평균 실행행률 39.0%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자연사유 해소로 ‘20년말 준공 예정이므로, 향후 같은 문제의 재발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 보완 필요 · 전체 세부프로그램과 야생동물구조 사업을 제외한 내역사업의 포괄적인 효과를 알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내역사업의 목표 역시 단순한 사업의 실행 건수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철새보호사업의 경우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역 사업과 함께 통합관리 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58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사업은 동 법률 제58조의2,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사업은 동 법률 제58조에 구체적이며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허나 철새보호사업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생물다양성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취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매우 약함(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있으나 국고 보조 지원의 근거는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관리 함으로 건강한 자연 생태계 보전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당함
- 내역사업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국정과제 59.-2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합치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사업,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사업, 철새보호사업으로 내부사업 사이에 유기적 연계성과 업무 간의 정합성이 높은 편임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상 야생동물 구조 개체수”로 설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7년 9830건에서 19년 1281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률도 100%를 넘고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전체 세부프로그램과 야생동물구조 사업을 제외한 내역사업의 포괄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내역사업의 목표 역시 단순한 사업의 실행 건수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의 경우 예방시설 지원, 사체처리, 차단울타리 설치 건수로 실적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또는 생태계서비스 증가 등의 결과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철새보호사업의 경우, 긴급구조 조치에 따라 철새의 개체수, 종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보조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야생생물 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은 사실상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국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단, 철새사업의 경우에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역 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순히 긴급조치 뿐만 아니라 ‘철새보호’라는 목표에 체계적이며 다른 내내역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의한 세부규정에 따라 적절하며 유동적인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효행률이 3년 평균 실효행률 39.0%으로 나타났으나 ‘19년 지연사유 해소됨. 단 향후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단,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17~19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효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 북부센터 설치 지연(부지선정 민원 등)으로 인한 사항이며 현재 지연사유가 해소되어 실시절계 진행중이며, ‘20년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

<신규설치 예산 실효행 현황>

지원연도	지자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13	대전광역시	500	500	100	-	-
2015	서울특별시	500	499.4	99.88	-	0.6
	전라남도(국립공원공단)	500	500	100	-	-
2016	광주광역시	500	483	96.6	-	17
2017	인천광역시	500	495	99	-	5
	경기도(북부)	500	-	0	500	-
2018	경기도(북부)	500	-	0	1,000	-

- 기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노후시설 증·개축(국고 50%), 운영비 지원예산(국고 30%)은 평균 실효행률이 97% 이상으로 실효행 저조 우려가 있는 신규설치 사업 종료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향후에도 같은 문제에 의한 집행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운영에 보완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제10조,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위한 보조금 관리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해서 대체로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임.
 - 매년 야생동물 구조센터 사업계획서 등 검토에 따라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준수함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침(19.6월 개정)」에 의거, 센터별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연간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집행 관리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 높음
 -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 사업은 '11년부터 보조금의 집행업무인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집행관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여 집행점검 등의 기능 강화하고 있으며, 년 1회 이상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인력·시설 운영, 구조실적 및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 높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집행업무(보조금 교부, 정산 및 집행관리 등)를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여 집행점검 등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실적 심사 진행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관리 함으로 건강한 자연 생태계 보전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당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사업,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사업, 철새보호사업으로 내부사업 사이에 유기적 연계성과 업무간의 정합성이 높은 편임
- 본 보조사업은 야생생물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나 철새사업의 경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3-2 정책 제언

- 철새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긴급조치 뿐만 아니라 ‘철새보호’라는 목표에 체계적이며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예: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철새보호사업의 경우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역 사업과 함께 통합관리 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함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효행률이 3년 평균 실효행률 39.0%으로 나타났으나 ‘19년 지연사유 해소됨. 단 향후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방안 마련 필요함
 - 기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노후시설 증·개축(국고 50%), 운영비 지원예산(국고 30%)은 평균 실효행률이 97% 이상으로 실효행 저조 우려가 있는 신규설치 사업 종료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전체 세부프로그램과 야생동물구조 사업을 제외한 내역사업의 포괄적인 효과를 알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내역사업의 목표 역시 단순한 사업의 실행 건수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 기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정부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될 필요가 있음 · 예산 실행행률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예산 실행행률은 2017년 25.8%, 2018년 98.8%, 2019년 67.5% 수준임 * 시차연도인 2017년 사업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2019년은 통학차량 제조사의 공급문제로 예산실행행률 제고에 현실적인 한계 발생 · 차량기술의 변화, 시행효과 등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의 지속적인 개정을 권고함 -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향후 차량기술 발달 및 판매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0. 24.>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 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목적의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에 해당되고,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과도 부합함



구분	내용	사업명	정책 연관성 설명
국정과제(58-4)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4-3)인 학교 실내체육시설 설치지원(교육부) 및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 환(환경부)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야할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친환경 연료인 LPG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기간과 규모가 적절함
 -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중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하여 친환경연료차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전체 수요에 기반하여 보조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설정하고 있음
 - 차량판매 환경의 변화로 2019년 사업의 성과가 당초 목표치에 비해 68.5%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함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보조사업(내역)	목표	800	1,800	2,27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수
	실적	206	1,768	1,557	
	달성도	25.8%	98.2%	68.5%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수함
 - 어린이 통학차량 중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사업추진방식이 바람직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으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학차량 소유주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이며, 잠재적 수혜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국민 전체가 해당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노후 경유차량이 LPG차량으로 전환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하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 50%씩 보조하는 방식임
 - 예산 실효행률은 2017년 25.8%, 2018년 98.8%, 2019년 67.1% 수준임
 - * 시작연도인 2017년은 대국민 인지도 미흡 및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실효행률이 낮았으며, 2019년은 어린이 통학차량 제조사의 공급문제(트랜스미션 제조업체 단산)로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예산실효행률이 낮음
-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수요를 기반으로 중기사업 물량을 산출하고 있음

< 연차별 보조 대상차량 대수 >

(단위 : 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이월 대수	47,108	47,938	51,455	41,697	29,150	18,267
당해년도 차량도래 차량	6,830	6,559	5,153	6,597	8,021	3,595
대상확대 물량*	0	8,958	1,089	856	1,096	1,332
계(당해년도 사업물량)	53,938	63,455	57,697	49,150	38,267	23,194
중기 사업 물량	6,000	12,000	16,000	20,000	20,000	20,000

- * 대상확대 물량 배정 : 어린이사설스포츠타치시설 차량대수(14,776대, 추정치)를 차량별로 반영
- 차량대수 : 사설스포츠타치시설(9,844개소) 당 차량 1.5대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14,776대)
- ※ 근거 : 전국 어린이통학차차시설 61,096개소가 88,910대 보유 ⇒ 평균 1.5대)
- 연도별 차량대수 : '21년 14,776대의 61% ⇒ '22년 7% ⇒ '23년 6% ⇒ '24년 7% ⇒ '25년 9%
- ※ 근거 : 전국 어린이통학차차량 88,910대의 차량별 분포비율 인용('20년 61% ⇒ '21년 7% ⇒ '22년 6% ⇒ '23년 7% ⇒ '24년 9%)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기준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율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 기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종합 평가결과 ‘정상 추진’이 요구됨
 - 예산실집행률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예산실집행률은 2017년 25.8%, 2018년 98.8%, 2019년 67.5% 수준임
- * 시작연도인 2017년 사업은 사업추진 기간부족, 2019년은 통학차량 제조사의 공급문제로 예산실집행률 제고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함

3-2 정책 제언

- 차량기술의 변화, 시행효과 등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의 지속적인 수정을 권고함
 -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노후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향후 차량 기술 발달 및 판매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차 등 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지원최대금액 상향 조정 등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명함. · 배출권거래제 참여 폐기물 부문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저감 설비투자 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폐기물 부문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는 지원기업수가 제한적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보조금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함. · 기업당 지원규모를 키워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폐기물 부문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고보조 보다는 배출권거래제내 민감업종에 대한 지원정책과 온실가스 저감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표관리제 대상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내역사업-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은 다수의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단 법적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며 국고 보조를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 ①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시행령 제44조 >

제44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 ② 정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4조(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제4조(기관별 역할) ⑦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산하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 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폐기물·수도 부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민간 자본보조)과 목표관리제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감축설비 도입(지자체 자본보조)을 지원하는 것임.
- 본 사업의 상위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지원대상 기업이나 지자체의 만족도)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의 기여가 타당함.
- 따라서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내역사업 중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은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지원’은 감축보다는 ‘적응사업’으로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정책과의 중복성도 큼.
- 지자체 자본보조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2013년~)과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적응사업(2017년~2021년)’으로 나누어져 제시되어 있으며, 2단계(2022년~2031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에만 현재 규모의 보조금(1,500백만원)을 10년간 집행할 계획임.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적응사업은 건축물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지원’과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집행할 이유가 불분명하며,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할 경우 상위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인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사업의 기간이나 규모가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포함한 기업의 감축활동이 시장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가진 시장기반 감축정책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제도 안착이 필요한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필수적인 정책이었으나 3기(2021-2025)에도 지속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취지에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또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업체당 보조금 규모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업체의 신청건수가 적었고 그 결과 저감투자 유인 효과 역시 미미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조금 집행율이 낮았고(2017년 55%, 2018년 87%, 2019년 39%), 결과적으로 내역사업이 의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나 온실가스 감축유도 목적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17년		'18년		'19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합 계	36	27	30	26	56	30
환경부	3	3	4	4	6	6
산업부	25	16	17	16	26	16
농림부	8	8	9	6	13	8

출처: 환경부

[그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기업수(위)와 평균 지원금액(만원)



출처: 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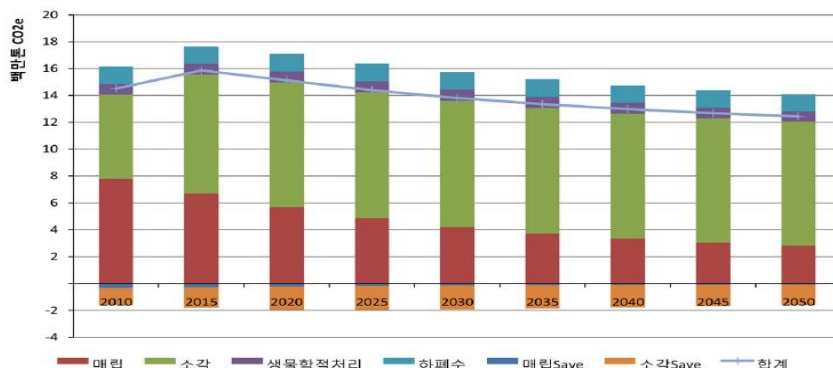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모든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민일반을 간접적 수혜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 사업처럼 폐기물, 공공부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단, 본 사업처럼 유사한 국고보조 사업이 존재하고, 지원범위나 직접적 수혜 범위가 좁은 경우 유사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은 목표관리제 대상 지자체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나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음.
 - ‘기후변화적응사업(2017년~2021년)’ 역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과 유사한 면이 발견됨.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인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의 경우 그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성을 감안할 때 현 지원방식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포함한 기업의 감축활동이 시장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가진 시장기반 감축정책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제도 안착이 필요한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필수적인 정책이었으나 3기(2021-2025)에도 존속되는 것이 거래제 도입취지에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2019.7.24.)’에 따르면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아래의 그림 참조)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여 목표감축률(28%)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바, 3년 연장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국고보조에 의해 폐기물부문의 감축시설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그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기업수(위)와 평균 지원금액 (만원)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고보조를 50%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국고 보조금 내역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지자체	국고 보조금	1,834백만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50%	50%	50%
	지자체 부담	1,834백만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50%	50%	50%
민간단체	합계	3,668백만원	4,000백만원	4,000백만원
		100%	100%	100%
	국고 보조금	500백만원	1,293백만원	1,293백만원
		50%	50%	50%
민간단체	민간단체 부담	500백만원	1,293백만원	1,293백만원
		50%	50%	50%
	합계	1,000백만원	2,586백만원	2,586백만원
		100%	100%	100%
국고 보조금 총액		2,334백만원	3,293백만원	3,293백만원

-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비용(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은 민간 자본보조의 경우 0원, 지자체 자본보조의 경우 110백만원/연간이 소요되어 그 규모는 크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연관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두고 이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상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및 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분기별 상황 점검, 집행결과 검토 및 정산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집행이 적정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두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실태, 진행상황 및 실행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이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발은 동의되는 목표이나 해당 부문의 저감투자가 부족했던 원인은 무엇인가에 따라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 중 건축물 부문에 대한 보조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자체의 목표관리제 적응력을 높이고 폭염이나 한파에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한 만큼 국고보조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폭염이나 한파에의 대응력 제고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상위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함.
- 그러나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시급한 바 상위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낸다는 전제 하에 2023년까지 국고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및 공공부문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원기업수가 작고 감소하는 추이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활동이 시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 본질적으로는 정부 지원없이도 추진가능한 사안임. 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상의 지원정책이 실행 중에 있음.
- 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가 도전적인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국고보조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본 사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과 공공부문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효과성이 의심되는 바 지원상한(3억원미만)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단계적폐지(2022년말) · 본 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지역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사안임. ·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현재의 사업기간 (6년, 2022년 말 종료)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됨. ·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재난예방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큰 만큼,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사업의 진척율이나 폐기물 매립장에 의한 식수원 오염가능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치중인 제천 왕암동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침출수처리 등 안정화 사업을 국고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재난 예방 및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제25조의2에 의해 포괄적이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방치중이었던 제천 왕암동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은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성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예방조치가 필요한 환경오염사고에 해당함.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법 제 25조의 2 2항에 제시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이하 "국가기반체제"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폐기물 매립시설이 방치되며 인근 환경은 물론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식수원을 오염할 가능성이 있었던 바 국고보조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9년 현재 사업 진척율은 63%로 목표(4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애초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결과로 사업의 조기완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19년 현재 진척율은 '진행된 사업량(공사 기성 집행액)/전체 사업량(공사 기성 집행 계획액) = 6,186백만원 / 9,779백만원 = 63%'로 계산되었음.
- * 분자의 6,186백만원에는 국고보조 뿐만 아니라 지방비가 포함(50:50).
- 2018년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제3자에 의한 경매 낙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사업 실적 역시 0%로 2018년 목표치인 10%를 완수하지 못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부처는 2019년 목표치를 40%로 낮게 설정하였음.
- 2019년 사업진척도(63%)가 목표(40%)보다 높아 사업의 조기 완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임.

[표] 세부사업(보조사업)의 세부내역

안정화사업	기간	사업내용	목표	목표집행액	실제집행액	목표설정 근거
1단계	'17년	매립시설 안정화	-	500	0	
2단계	'18.1.1~12.31	매립시설 안정화	최종복토, 침출수 처리	1,930	2,430 (전년 이월)	실시설계내역
3단계	'19.1.1~12.31	매립시설 안정화	최종복토, 침출수 처리	712	712	상동
4단계	'20.1.1~12.31	매립시설 안정화	최종복토, 침출수 처리	1,131	-	상동
5단계	'21.1.1~12.31	매립시설 안정화	침출수 처리	309	-	상동
6단계	'22.1.1~12.31	매립시설 안정화	침출수 처리	307	-	상동

출처: 기초조사보고서 8페이지

[표]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 진척율(단위: %)	보조사업(내역)	목표	신규	10	40	(진행된 사업량/ 전체 사업량)×100
		실적	-	0	63	
		달성도	-	0	150	

출처: 기초조사보고서 8페이지



- 방치된 매립장 시설에 대한 안정화조치가 완료된다면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이 목적으로 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 환경재난의 경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지자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환경사고에 의한 재난예방조치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로 정부개입이 필수적이며 중복가능성도 없음.
- 실수해자는 인근 주민과 제천시민(불안감 해소, 악취제거)으로 규모는 제한적이나 수해의 내용이 확실하며, 잠재적 수해자 역시 수도권 국민(식수원의 안전성 확보)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수해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율 50%를 준수하고 있음.

< 국고 보조금 내역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국고 보조금	1,930백만원	712백만원	1,130백만원
	50%	50%	50%
지자체 부담	1,930백만원	712백만원	1,130백만원
	50%	50%	50%
합계	3,860백만원	1,424백만원	2,262백만원
	100%	100%	100%

- 지자체의 문제가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조가 타당할 수 있으나 문제를 일으킨 지자체에 대한 보조라는 점에서 보조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초보고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원주청에서 약 5년간의 先안정화 사업 후 제천시가 인수)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음.
- 다만, 재난예방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지자체(제천시)의 책임여부를 평가(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방치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파악)하여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유사한 사건 발생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안의 국고보조율은 80% 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 시 지자체의 매립시설 복구 책임 등을 검토 하여 50%로 조정된 바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한국환경공단의 '클린검사관제도'에 의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감사자로 임명하여 2019년 8~12월간 3차례 보조사업 현장 및 서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검사기간이 짧고 구체적인 서류점검의 내역이 밝혀져 있지 않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2020년 2월경 동년 5-6월 사이 부정수급방지 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실행은 방치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오염물질이 확산되며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조치로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사안임.
- 현재 보고된 안정화 사업 진척율(63%)이 목표(40%) 보다 높은 듯 보이나 이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목표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임. 특히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기간 (6년, 2022년말 종료)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재난예방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큰 만큼, 본 사업의 효과 및 진척율 계산이 지자체(원주청, 제천시 등)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지역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사안임.
- 재난예방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지자체(제천시)의 책임여부를 평가(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방치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파악)하여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유사한 사건 발생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자연보전단체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생태관광협회 사업 이관에 따른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지원되는 재정규모에 비해 행정비용이 과다하므로 사업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변경 필요 · 한국자연공원협회를 제외한 법정단체들은 인건비, 임차비 등 경상경비가 사업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사업의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낮아 보이므로 국고교부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중 축소 및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예산범위내 단체간 지원규모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생태관광협회의 경우 세부사업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생태관광자원 관리와 함께 국고보조를 운영하는 것이 성과증진에 효과적이라 판단됨(사업방식변경)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자연보전단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자연공원법」 제81조 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자연이라는 공유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서,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며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 확산됨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국민신탁지 등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을 관리하고, 시민 교육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에 기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매년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 교부하고 있어 적정하며 내용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와 부합됨
 - 4개 법정단체별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모두 상이하여 차별화되어 있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자연자원 현지조사 및 학술연구, 홍보지 발간 중심임.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 및 보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중심임. 한국자연공원협회는 자연공원 홍보, 도립·군립공원 실태조사 등 인식 증진 및 보호활동 중심임. 생태관광협회는 생태관광지역 및 탐방프로그램 조사연구 및 생태관광 대외협력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비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사업을 추진 중.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식,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한강하구 습지 탐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음
- 19년 보조사업평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 사업계획 상 실적 집계가 아니라 보조단체들의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
 - 비법정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보호현장선포식은 40년 넘게 행사성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단 한번도 정량 또는 정성적인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이 행사의 ‘모든 국민의 자연보호 동참’ 실질적 기여 평가 한적이 없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자연보전단체 사업에 보조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에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보조혜택을 받는 단체들(1차적 수혜자)의 활동은 지속가능하나 지금 운영실태 상 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상태에서 2차, 잠재적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파악하기는 어려움
- 특히, 생태관광협회의 경우 세부사업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으로 사업을 세부내역을 이관하여 연계관리하는 것이 성과증진에 효과적이라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한국자연공원협회를 제외한 법정단체들은 인건비, 임차비 등 경상경비가 사업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사업의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낮아 보임
- '19년 생태관광협회는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세금 등으로 80% 이상을 사용하며, 사업비도 보조사업의 혜택효과가 적은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거의 없음

<2019년 한국생태관광협회(국고보조금) 산출예산서>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율
총 계		70,000,000		100%
1. 생태관광 운영관리비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18,000,000	임차료 및 관리비	
	세금 등	40,000,000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도시가스요금 등	
	소 계	58,000,000		83%
2. 생태관광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총회 및 이사회	1,500,000	장소대관, 식비, 다과비 등	
	회의비	1,000,000	장소대관, 식비, 다과비 등	
	연대 사업 및 행사비	3,000,000	생태관광지역 연대 사업, 생태관광 관련 행사 참가비 등	
	기타 교통·통신	3,500,000	출장비, 여비	
	소 계	9,000,000		13%
3. 국제회의 참석 및 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	3,000,000	국제회의 참석 등	
	소 계	3,000,000		4%

-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도 대부분 각 국민신탁지 감시원의 인건비로 사업비를 대부분 활용함
- 한국자연환경보전 협회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60%를 차지하지만, 역시 단순 경상경비가 39%를 차지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공모사업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18.4) 및 자연보전단체 민관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18.6)에 따라 사업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함
- 법정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자연보전단체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등에 따라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등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하고 있음
- 하지만, 자연보전단체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의 평가 결과 미흡의 경우에도 다음 감산점으로만 반영하고 있어 다음 회기에 사업공모가 가능하여 환류체계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 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정산절차 등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현장 확인 등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함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 국고보조 목적사업외 집행금지,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한 적 없으나, 이는 실제로 현장 활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자연이라는 공유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서,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며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 확산됨
- 매년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 교부하고 있어 적정하며 내용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와 부합됨
- 보조혜택을 받는 단체들(1차적 수혜자)의 활동은 지속가능하나 지금 운영실태 상 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상태에서 2차, 잠재적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파악하기는 어려움
- 한국자연공원협회를 제외한 법정단체들은 인건비, 임차비 등 경상경비가 사업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사업의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아 사업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낮아 보이므로 국고교부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생태관광협회의 경우 세부사업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생태관광자원 관리와 함께 국고보조를 운영하는 것이 성과증진에 효과적이라 판단됨(생태관광협회 사업 이관에 따른 감축이 필요함)
- 또한, 국고교부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중 축소 및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예산범위내 단체간 지원규모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사업방식변경)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0.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추가성이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체의 역진성 및 형평성 위반 우려가 존재함. · 과거 소비량과 현재의 소비량을 비교하여 지급되는 탄소포인트가 수혜자가 실제 행한 친환경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애초에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던 가게나 기존 사용량이 큰 가게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축성과를 많이 낸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 부담이 큰 반면 해당 지자체가 받는 편익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도 큼. · 제도자체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① 참여가구수가 상당하여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고, ②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제도가 가계부문의 저감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③ 전력과 수도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은 가운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대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④ 부처의 개선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1회 연장하되 에너지과소비 가게나 실질적인 감축노력이 없었던 가게에 부여되는 탄소포인트 분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국고보조 규모를 삭감할 것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보조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내역사업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구체성이 미흡함.
-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달성을 위하여 비산업 부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나 본 보조사업이 이에 최적화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 보조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유일한 내역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를 지원(50%)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의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연간 약 57억원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참여 1가구당 지원액이 2018년 기준 1,933원(기초 보고서 14페이지에 제시)에 불과해 가구가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즉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은 미미했을 것으로 예상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의한 CO2 감축량은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함.
 - 환경부는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7년 78.4(만톤 CO2), 2018년 80.7(만톤 CO2), 2019년 108(만톤 CO2)로 추정하고 해당 년도의 목표인 70(만톤 CO2), 80(만톤 CO2), 81(만톤 CO2)을 매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환경부가 보고한 감축실적이 보조사업에 의해 달성되었다거나 한번 포인트를 받은 가계가 절감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했다고 추정할 증거는 불충분함.
 - 보조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실시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마다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소비량이 감소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한번 신청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함(7만원에서 상향 조정).
 - 다른 요인(온난화로 인한 겨울철 난방수요 감소, 실시항목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량 감소, 휴가 등)에 의해 실시항목의 사용량이 줄어들어도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해두면 손해볼 것 없다는 온라인 정보가 말하듯 보조사업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불충분함 (추가성 불확실).
-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국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과 탄소포인트 참가가구(참가가구 전체와 해당 기간 인센티브 지원가구)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탄소포인트 제도의 역진성이 발견되었으며, 탄소포인트 참가가구가 에너지사용량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
 - 탄소포인트제도 참가 또는 인센티브 지급단위가 '호'가 아닌 '가구'인 만큼 전국 통계 역시 가구당 전력사용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동등한 비교에 해당함. 즉, 탄소포인트 참가 가구의 가구당 전력사용량(A)이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가구당 전력사용량(B)를 전국의 가구당 전력사용량(E)와 비교하는 것이 동등한 비교에 해당함.
 - 이를 기준으로 보면, 탄소포인트 참가 또는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A/E > 1$), 2016년 하반기의 A/E값인 1.25와 비교할 때 2017~2019년 상반기의 A/E 값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가구당 전력소비량이 클 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비참여 가구보다 많이 쓰는 전력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정량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냄.



< 탄소포인트 참여 가구와 일반 가구의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 비교 >

(단위 : kwh)

구분		'16하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전국	전국 호당 주택용 전력사용량*** (C)	389	367	387	377	412	376
	전국 호당 주택용 전력사용량* (D)	397	372	393	380	418	378
	전국 가구당 전력소비량** (E)	232	216	229	219	241	215
탄소 포인트제	참여 가구당 전력소비량*** (A)	291	307	310	298	278	289
	감축 가구당 전력소비량*** (B)	253	275	289	249	244	236
비교	A/D	0.73	0.83	0.79	0.78	0.66	0.76
	A/E	1.25	1.42	1.36	1.36	1.15	1.34

* 한국전력 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 전국 주택용 전력소비량을 고객(호)수로 나눈 값** 한국전력 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https://bigdata.kepco.co.kr>), 가구당 평균전력소비량 (강원도, 충청북도 제외)

*** 환경부 제공. B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 서울특별시가 제외된 결과 C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나 큰 차이는 없음.

- 과거 실시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소비량이 작아 감축여력도 적은 저소득층이나 평소 자발적으로 실시항목에 대한 소비량을 줄여온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역진성이 우려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바, 수혜자의 수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탄소포인트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일반국민으로 2017년 751,600명보다 많은 수의 국민(2018년 813,063명, 2019년 892,876명, 2020년 819,000명)이 본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은 바 있음.
-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환경 캠페인으로서의 장점은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① 에너지 및 물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해당 공공요금에 반영하거나, ② 온실가스의 경우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비산업부문의 실시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소비량 절약을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③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건물 리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비산업부문의 감축실적을 배출권



거래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시장에 판매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실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금전적 보상을 기반으로 비산업부문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와 유사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상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감축실적간의 직접적 상관정도가 높아지며 모니터링의 부재, 행정 비용 증가, 감축실적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 본 보조사업의 주요 문제점이 해결 가능함.
- 경기연구원(2010)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기준사용량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비율이 가계 32.7%, 민간단체 60.5%로 단체 가입자의 감축비율이 2배 정도 높았음. 민간단체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임.
-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2023년까지 소규모 상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고, 전력 및 물가격 현실화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문의 저탄소 친화적 행태변화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본 보조사업이 가진 한계(실질적인 저감노력과 탄소포인트 보상간의 상관관계 미약,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 수요관리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처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 50%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예산 규모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국고보조 (백만원)	4,851	5,542	5,933
지자체 부담 (백만원)	4,851	5,542	5,933
민간 부담 (백만원)	0	0	0
합계	9,702	11,084	11,866

- 본 보조사업은 연간 평균 54억원의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부담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임.
- 탄소포인트 참여 1가구당 인센티브 지급액이 2018년 기준 1,933원(5,542백만원/287백만가구)인데 비해 1가구당 행정비용은 138원(396백만원/287백만가구)으로 7.1%의 행정비용을 발생했음. 이는 다른 방식으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대신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사회적 손실로 볼 수 있음.



- 기초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실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량(CO2톤) 당 인센티브 지급액을 계산하면 2018년 기준 12,022(원/CO2톤)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상쇄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적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가구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 것도 아님.

<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감축량 대비 인센티브 지급액 >

구분		2018(실적)	2019(목표)	2020(목표)
탄소포인트제 관련 CO ₂ 감축 목표(만톤CO ₂)		80.7	81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백만원)	국고보조	4,851	5,542	5,933
	지자체 부담	4,851	5,542	5,933
감축량당 인센티브 (원/CO2톤)		12,022	13,684	

- 본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가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실시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본 질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 현재 가계부문의 전력사용량 증가나 수도사용량 증가는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 및 수도가격 때문이다.
- 탄소배출이나 물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력·수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가계부문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것이 일반적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초보고서(15페이지)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와 본 보조사업과의 관련성이 약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기초보고서(1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실행항목에 대한 소비 감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실행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적고 그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논란도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유인 제공이라는 정책수요에는 부응하나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감축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탄소포인트 참가가구의 행태가 일반 가구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할 정량적 근거가 없으며(비효과성), 전기나 물의 대량 소비자가 포인트를 받을 가능성과 여력이 크며(역진성),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승자의 저주효과 또는 형평성 위반)에서 보조사업을 유지할 명분은 약함.
- 탄소포인트 참가가구들의 전력소비량이 평균이 전국 가구 평균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사업시행 이후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규모 사용자의 에너지소비가 일시적으로라도 감소하면 저탄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절약이라는 적극적인 행태변화가 없이 발생한 일시적인 저감행태에 대해서도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추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역진성과 '행태변화-탄소포인트 간 상관관계'를 높이기 위해 부처가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역시 상당한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90%에 미달하는 실집행율 역시 본 보조사업이 가계부문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함.
- 실집행율은 2017년 75%, 2018년 88%로 낮는데 부처는 폭염과 한파 등의 이상기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저하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참가가구수가 커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함. 차후 참가가구수가 더 증가할 경우 이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만큼 가계를 포함하여 비산업부문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한 것도 현실임.
-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며 대형 배출업자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강제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가계를 포함한 비산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산업부문에서의 감축만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 또한 본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함.
-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저탄소사회 로드맵에 수요관리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대체할 이렇다 할 수요관리 정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환경부가 현행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용역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노력에 대해서만 탄소포인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실행항목에 대한 지출비용 삭감이 해당 항목에 대한 소비 삭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행항목(전력, 수도 등)에 대한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제도를 정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인하고 본 보조사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이상적임.
- 단, 배출권거래제가 2023년까지 소규모 상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고, 전력 및 물가격 현실화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문의 저탄소 친화적 행태변화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본 보조사업이 가진 한계(실질적인 저감노력과 탄소포인트 보상간의 상관관계 미약, 역진성, 가계부문 저감활동에 적극적인 지자체일수록 고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 수요관리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처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정리하면, 본 보조사업을 1회 연장하되 환경부가 계획 중인 실질적인 감축노력이 없었던 가계에 부여되던 탄소포인트 지급비용을 줄이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감축(20%미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정함.
- 제도 실시 이후 실집행율이 2017년 75%, 2018년 88%로 매년 90%이하였던 만큼 삭감에 따른 부처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환경부
사업명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달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함 ·지자체의 수요는 존재하고 있으나 집행상의 문제로 실집행률이 80%에 이르지 못하고, 성과지표(이해관계자 사업평가도,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률)가 주관적이거나 사업 관리와 관한 것임 ·수계 상류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기본적 타당성은 인정되고 지자체의 신청액도 예산액을 20~30% 초과하는등 수요 존재는 분명하므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사업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할 것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사업의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 3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 구속력이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와의 연관성도 인정됨
- 프로그램은 ‘4대강 유역관리’이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의 목표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에 친환경 청정사업이 유치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목표는 ‘매년 상수원 관리지역 등 규제지역에 친환경 청정 사업 23건 발굴, 유치’로 구체적인 편입(기초조사보고서 표1-2-1)
- 성과지표가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사업평가도는 주관적인 지표로서 보조적 성과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질오염 최소화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유도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률'은 성과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음
-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감소 효과나 청정산업체의 매출규모, 종업원 수 증가 등의 지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프로그램, 국정과제 등과의 기본적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업이 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만큼 기여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유사중복사업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성격상 보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가 직접 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용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과 관련해서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 단, 한강수계법 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정된「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는 보조율을 '60% 이하'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친환경 청정사업의 실적행률이 80%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집행률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집행액)			
2017년 (결산)	19,181	19,181	19,181 (14,492)	-	-	75.6%
2018년 (결산)	17,238	17,238	17,238 (13,257)	-	-	76.9%
2019년 (실적)	19,181	19,181	19,181 (10,479)	-	-	54.6%

자료: 환경부 기초조사자료



- 그 사유로 2017년부터 3년간 동일하게 ‘민원, 사업계획 및 실시절차 변경, 행정절차(사업별 관련 신고·허가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집행 지연’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그 시행단계에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예산 및 지자체 요구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A)	지자체 요구액(B)	부족액(B-A)
2017	19,181 (25개 사업)	22,951 (29개 사업)	3,770
2018	17,238 (20개 사업)	22,232 (25개 사업)	4,994
2019	19,181 (23개 사업)	24,143 (28개 사업)	4,962
2020	24,181 (24개 사업 선정)	31,355 (39개 사업)	7,174

자료: 환경부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경제 공헌’과 ‘환경 지속가능 보전’이라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인정됨
- 2014년 시행된 ‘수질개선 기여도 평가연구용역’과 같은 연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실제 기여도를 엄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을 위한 규정은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의 여러 사항에 대한 규정은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음
 - 집행점검 기준 정산,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관리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집행 중과 완료 후에 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포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선정 시 점수를 차등부여하는 등 추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기본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지자체의 수요도 상당히 존재함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청정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상류 지역의 경제발전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질 보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이 자발적 협력을 높일 수 있음
 - 2017년 이래 지자체의 신청액은 예산액을 20~30% 정도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집행률이 저조함
 - 그 사유로 매년 ‘민원,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행정절차(사업별 관련 신고·허가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집행 지연’ 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달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함

3-2 정책 제언

-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집행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행정절차와 관해서는 관련 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필요해 보임
 - 사업선정단계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정도에 따른 배점을 높이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 중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률’은 성과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함.(사업시행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감소 효과 및 청정산업체의 매출규모, 종업원 수 증가 등의 지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2014년 실시한 ‘수질개선 기여도 평가’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대안으로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KEI)의 성과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효과 관련 지표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즉, KEI의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수질오염저감율 및 고용창출, 방문객수 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낙동강수계)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보조적 성격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톤당 수거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쓰레기 발생 감소 정책의 틀 아래에서 이 사업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용구조가 단순노동 이용중심임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평가대상사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 톤 당 단가를 절감함으로써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6호, 시행령 제36조 제12호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6호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지정에 대한 시행령으로의 위임 규정이고, 시행령 36조 12호는 다시 시행령에 정한 사업들이외의 사업지정을 운용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임
- 프로그램, 단위사업과의 연간관계는 분명함(표 1-1-2)
 - 4대강유역관리-기타수질개선폰지원의 하부 세부사업임
- 국정과제와의 관련성도 인정됨(표1-1-3)
 - 단, 기초조사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는 포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며 그 하부의 16번~41번 과제 중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 하부의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에 속한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세부내역이 단계별 기간별로 제시되지 않고 ‘매년’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는 2017년 이 기금 사업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인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지적, 즉 ‘매년 반복되는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음.



- 쓰레기 저감 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정밀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낙동강 수계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를 강수량과 강우특성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판단됨
-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 저감 정책과 협업이 된다면 향후 같은 강우조건에서도 성과지표 목표치 자체가 하향조절되고 예산도 절감될 여지가 있을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17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기금)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체계를 개선해 갈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체계가 형성되어가는 과도기 동안에는 평가대상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금사업이 아닌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과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지역이 낙동강 수계인가 여부만 다른 것으로 보임
- 단, 별도로 집행되는 낙동강 수계사업은 지방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적 관리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의 목적상 규제나 용자보다는 보조가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20년 기준 총예산 규모가 지방비 포함 29억원인데 수거목표량이 8천톤(표 1-2-1)이라면 수거 톤당 36만원임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이 톤당 약 8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이투데이 2019.10.03)과 비교할 때 해양이 아닌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단가는 절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일자리 당 인건비가 5.9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단순노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건비 비율 69%를 상정하면 2020년도 전체사업비 29억 중 20억원이 인건비이며 다른 한편 고용효과 34,000명(표 1-3-4)임
 - 단순노동 위주가 아닌 전문적 인력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도 정책의 부차적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1차적 목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기 때문임
- 보조율의 설정근거는 보조금법 시행령 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7항에 정해져 있음(표 1-4-3)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개선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등의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전체 일자리 중 취업취약계층 선발의 비율이 2019년의 경우 36,493명 중 22,643명으로 62%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을 위한 규정들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을 위한 규정들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등을 통해서 관리를 위한 규정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통상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 적정 이행여부 점검, 관련 장비 등의 필요수량 확보 및 적정 운영 · 관리 여부, 부유쓰레기 적정 수거 및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적발 등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쓰레기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는 정책체계 속에서 이 사업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단순노동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3-2 정책 제언

-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사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평가대상 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조적 역할을 부여해 갈 필요가 있음
- 톤당 수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하천·하구 쓰레기관리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 수거 쓰레기의 구성에 맞는 수거 방식의 고안, 단순노동력을 최적화된 장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관명	환경부
사업명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쓰레기 발생 감소 정책과 결합이 부족하고, 투입인원 대비 사업비에 절감 여지가 없는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쓰레기 발생 감소 정책의 틀 아래에서 이 사업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순 인건비의 비중이 64%로 높고, 하천하구 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평가대상사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량 당 단가를 절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물환경보전법 69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상위 프로그램은 수질보전 및 관리로서 평가대상사업과의 관계는 분명함
- 국정과제 중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시되었으나 이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일자리 지원 강화는 아니라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세부내역이 단계별 기간별로 제시되지 않고 ‘매년’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는 2017년 평가의 지적, 즉 ‘매년 반복되는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음.
 - 쓰레기 저감 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정밀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 등 생활쓰레기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다른 한편 4대강 하구의 경우 초목류가 대부분(68%~97%)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생활쓰레기 저감과는 별도로 초목류 쓰레기의 발생억제 대책과 초목류 쓰레기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를 강우량과 강우특성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판단됨
 -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 저감 정책과 협업이 된다면 향후 같은 강우조건에서도 성과지표 목표치 자체가 하향조절되고 예산도 절감될 여지가 있을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금사업인 낙동강 수계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과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지역이 낙동강 수계인가 여부만 다름
 - 단, 별도로 집행되는 낙동강 수계사업은 지방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별도 관리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의 목적상 규제나 용자보다는 보조가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직접적 수혜자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지자체 주민 중 취약계층, 그리고 간접적 수혜자는 수계별 지역민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인건비 비율이 64%(표 1-4-4 아래의 자체평가 총평)인데 이를 절감하고 더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이 톤당 약 8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이투데이 2019.10.03)과 비교할 때 해양이 아닌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단가는 절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임
- 2019년 고용효과가 132,473 인·일(환경부 자료)이므로 총 사업비 175억원의 64%를 인건비로 가정하면 8.5만 원/[인·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려움
 - 4.7만 인·일의 취약계층 고용효과도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적 목표는 환경개선이므로 이를 위해서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고용효과(2019년)

총인원(인·일)	참여실적	
	취약계층	장년층
132,473	46,975	107,669

자료: 환경부

- 보조율의 설정근거와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이 사업이 명시적으로 별도의 호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 단, 12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률 또는 정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물환경보전법 31조, 69조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전체 일자리 중 취업취약계층 일자리가 아래와 같이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18년 실적	‘19년 실적
전체 일자리	496명	442명
취업취약계층	170명	157명

주: 인·일 단위를 전업(25일/월x12)로 나눈 수치임

자료: 환경부 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의 기준 등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정해져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을 위한 규정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음 -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을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기, 기준, 절차, 부정수급심의회 등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별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보고된 바 없음(표2-4-1)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2017년 평가에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음.
 - 쓰레기 저감 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점을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 등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근본적 하천, 하구 쓰레기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대책의 큰 틀 속에서 평가대상 사업의 역할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반영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면서 비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3-2 정책 제언

-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평가대상사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 4대강 하구의 경우 초목류가 대부분이므로 생활쓰레기 저감과는 별도로 초목류 쓰레기의 발생억제 대책과 초목류 쓰레기 특성에 맞는 수거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거 단위량 당 예산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재 수립 중인 비용절감 사업방식 및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제3차 하천·하구 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24)」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 수거 쓰레기의 구성에 맞는 수거 방식의 고안, 단순노동력을 최적화된 장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환경기초 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명함.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국고투여 대비 효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배출권거래시장이나 REC 시장을 통해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대체함이 타당함. 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여력의 확보가 시급한 만큼 본 사업을 연장하되 국고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기초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실적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량(CO2톤) 당 소요되는 보조금(예산)을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내구연한을 25년으로 가정해도 톤당 172,000정도로 배출권가격에 비해 훨씬 높음. ·투입사업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 하는 사업임.
- 동 법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이용, 보급을 장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지자체 자본보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본 보조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시설을 설치할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3020 재생에너지 로드맵’,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주요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함.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9-2030) >

□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태양광, 소규모 풍력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별로 적합한 탄소중립 방법론 개발, 시범사업 추진 후 탄소중립 프로그램 본격 추진 (환경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반면 관련 법규나 법정계획에 사업방식(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고로 직접 보조하는 자본보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되어 있다는 근거는 부족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1단계로 2030년까지를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맞춰 총 5,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30년까지를 1단계로 설정한 것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고려할 때 합리적임.
- 설정된 사업규모는 2030년까지 총 5,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국내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할 때 과도한 목표로 보기 어려움.
- 기초보고서(10페이지)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CO2 절감량(톤)으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CO2 절감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지표임.
- 기초보고서(9페이지)는 2017~2018년동안 본 사업에 의해 감축된 CO2량(톤)이 2017년 9,417톤, 2018년 10,015톤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각각 113%, 122%)했다고 보고했음.
- 기초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실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량(CO2톤) 당 소요되는 보조금(예산)을 계산하면 2018년 262,307(원/CO2톤), 2019년 기준 419,873(원/CO2톤)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배출권가격의 8~10배에 달함. 향후 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 보조금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감축량 대비 인센티브 지급액 >

구분		2017	2018	2019
온실가스 감축량 (톤CO ₂)	목표	7,800	8,200	11,000
	실적	9,417	10,015	11,020
사업비(백만원)	국고보조금(예산)	2,777	2,627	4,627
	총사업비	5,554	5,254	9,254
감축량 당 비용 (원/CO ₂ 톤)	보조금 기준 ¹⁾	294,892	262,307	419,873
	총사업비 기준*	589,764	524,614	839,746

1) 국고보조금(예산)/CO₂ 감축목표, 2)총사업비/CO₂ 감축목표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내구연한을 20년, 25년, 30년으로 가정해도 온실가스 감축량당 국고보조금이 각각 215,340원/tCO₂, 172,009원/tCO₂, 143,196원/tCO₂으로 배출권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감축량 대비 인센티브 지급액 >

내구연한	20년	25년	30년
발전 총량(kW)(A)	444,192,769	556,088,811	667,984,852
국고지원액(원)(B)	44,861,000,000	44,861,000,000	44,861,000,000
1kW당 국고지원액(B/A)	100.99	80.67	67.16
CO2감축량(tCO2)(C) ¹⁾	208,326	260,806	313,285
감축량 당 비용 (원/CO2톤)(B/C)	215,340	172,009	143,196

1)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 발전량(MWh)×발전부문 배출계수(0.4690). 이 계산식은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18.4. p.14 참조
출처: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비용-효과 분석 관련자료 (1차 대면심사 후 제출자료).

-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형성된 탄소비용 대비 감축비용이 높아 효과성이 떨어짐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시한 향후 개선방향*이 연장사업기간 동안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연장평가 기간 중 사업부서는 사업선정시 투입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지도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것 보다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기물부문의 대형 배출시설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에 매도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배출량이 작아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자발적 시장참여자로 등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적용대상과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유인하게 하고 본 사업을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의 이행이나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본 보조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지자체이며 수혜의 내용 역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명확함.
- 보조사업의 잠재적 수혜자는 화석연료 저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전 지구적 기후위기 완화의 혜택을 받는 일반국민이 될 수 있어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 50% 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예산 규모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국고보조 (백만원)	2,627	4,627	6,550
지자체 부담 (백만원)	2,627	4,627	6,550
민간 부담 (백만원)	0	0	0
합계	5,254	5,254	13,100

- 본 보조사업은 연간 평균 46억원(2020년의 경우 65.5억원)의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고보조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비용은 1억원으로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미만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기초보고서(1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7년 4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운영관리지침(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신청지침(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을 두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위한 부정수급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 않음.
 - 신청지침 7번(예산의 집행관리)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6조(보조금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납부)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2018년 4월에 마련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집행을 부진, 미정산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용도외 사용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6월 이후 매월 또는 수시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통해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2023년 연장평가 시 배출권거래제 적용과 별도로 지자체 폐기물 관리시설내 신재생에너지 생산투자에 대한 국고보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하나 진척속도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임. 민간부문주도로 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이 바람직하나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도 필요한 사안임.
- 본 사업은 주민협오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의 유희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화석기반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인정됨.
- 그러나 본 사업에 의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투입된 국고보조비나 총 사업비에 합당한 수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기초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실적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량(CO2톤) 당 소요되는 보조금(예산)을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내구연한을 25년으로 가정해도 톤당 172,000정도로 배출권가격에 비해 훨씬 높음.
- 향후 투입사업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배출권거래제나 REC 시장을 통해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대체함이 타당함.
- 그러나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여력의 확보가 시급한 만큼 본 사업을 1회 연장하되 국고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수적임.
- 투입사업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환경보건 기반강화 협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명함. ·본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12개 센터에 나누어 지원됨에 따라 사업의 상위목적 달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본 사업을 통해 환경질환에 대한 조사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질환 조사지원, 코호트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주요 사업이 연구나 교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보건 기반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환경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건의 가진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 만으로 적정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 환경보건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됨. ·센터별 역할을 특화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규모와 보조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사업보다는 환경위해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진단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역사업인 환경보건센터의 운영과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사업은 환경보건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6조 1항에, 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20조와 제26조 3항에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환경보건법 제26조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제26조 3항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등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대학교, 국공립 및 민간병원, 출연기관 등)의 운영비 지원은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관련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7년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음.
- 2017년 평가에서는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음.



- 주요 지적 사항은 홍보가 센터 소재 지역의 소수에게만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어 주요 결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 2018년 이후 본 사업은 센터 소재 지역 중심 교육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음.
- 본 사업을 통해 환경질환에 대한 조사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질환 조사 지원, 코호트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연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환경보건 기반강화에의 가시적 성과는 분명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의해 설립된 환경보건센터가 환경성 질환(소아암이나 선천성 기형,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과 환경유해인자(중금속), 환경사고(유류, 유해가스) 등에 관한 조사 지원·연구·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등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된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했으며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기능이 다양화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는 정량지표에 의해서만 평가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사업 실적건수와 보건서비스의 정성적 기여에 대한 평가가 부재함.
- 현재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환경보건센터의 연구개발사업 달성도 (센터별 연구사업 실적건수/센터별 연구사업 계획 건수, 50건, %),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실적 (환경보건콘서트, 환경보건의동학교, 건강나누리캠프,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사업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받은 사람과 가구 수)로 구성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환경보건은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본질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센터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임.
- 본 사업의 실수혜자는 환경성질환자로 숫자는 제한적이나 환경질환 예방에 기여할 경우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는 넓은 사업일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실제 기여 정도가 법령이 정한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특히 현재의 사업방식(50억미만의 국고보조금을 12개의 민간단체 및 출연기관에 나누어 지원)으로 사회에 적정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주로 병원 등 민간대상·공익목적의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국고 보조율 50% 대신 70%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의 대부분은 자체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소속 병원이거나 출연기관으로 국고지원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은 구축효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지정에 따른 간접 편익(논문수 증가, 빅데이터 구축, 인지도 제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70%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국고 보조금 내역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지자체	국고 보조금	283백만원 70%	303백만원 70%	303백만원 70%
	지자체 부담	121백만원 30%	130백만원 30%	130백만원 30%
	합계	404백만원 100%	433백만원 100%	433백만원 100%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3,408백만원 70%	3,636백만원 70%	3,636백만원 70%
	민간단체 부담	1,461백만원 30%	1,560백만원 30%	1,560백만원 30%
	합계	4,869백만원 100%	백만원 100%	백만원 100%
국고 보조금 총액		3,691백만원	3,939백만원	3,939백만원

- 본 사업은 50억미만의 보조금을 12개의 환경보건센터에 나누어 지원(센터당 연간 3억원 수준)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환경보건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환경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이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의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두고 관리하고 이어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는 적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집행지침(「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의 사업비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변동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부정수급시 조치내용(보조사업 취소, 환수)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2017년과 2018년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센터에 대한 환수, 감액, 시정 조치하였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보건센터 보조금 부정집행 및 인센티브 미흡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대한 조치로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적 집행에 대한 감정 강화 및 센터 교육 실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높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는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두고 부정 집행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3건, 2018년 4건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찾아내 주의 및 환수 조치 하였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최근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소규모인데다 12개의 센터로 나누어져 지원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자의 대부분은 자체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소속 병원이거나 출연기관으로 국고지원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은 구축효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지정에 따른 간접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편익을 고려하여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70% 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센터유형 및 잠재적 간접 편익, 사업대상 등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이 환경보건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센터의 수를 줄이거나 센터별 역할을 특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처럼 환경보건센터가 지역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센터가 하나도 없어 센터 지정에 있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제외한 11개의 센터는 서울(고려대안암병원, 서울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인천(인하대병원), 울산(울산대병원), 충청도(단국대의료원, 태안보건의료원), 강원도(강원대병원), 제주도(제주대병원), 경상남도(동아대학교), 경상북도(순천향대구미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 경기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센터는 서울이나 인천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라남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연구를 담당할 센터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임.
- 환경보건센터의 환경정의 실현 또는 환경관련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위해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의 환경 진단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환경부
사 업 명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2.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즉시폐지 · 사업집행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역의 민간단체 회원이나 사업장 환경관리사등의 활동은 이해상충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지역의 안면(顔面)사회적 특성상 단속의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낮은 활동비 단가로 인해서 감시활동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임 · 즉시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환경법규관련 단속의 양적 충분성, 질적 전문성, 집행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평가대상사업의 법적근거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상위 프로그램은 ‘환경행정지원’으로 환경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정과제 57번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와 간접적 연관성은 인정됨
 - 그 과제의 목표는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이므로 평가대상사업은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단,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법률의 강화등으로 환경감시의 시행의 중요성 증대는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비의 내역은 2019년의 경우 90%가 활동비이고 나머지가 교육홍보비로 합리적으로 판단됨



- 이 평가대상사업(단위사업)이 속한 세부사업인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의 성과지표가 단순한 진척률로 되어 있어서(아래 표 참조) 정책의 목표달성정도나 지표 목표의 야심도 정도등을 나타낼 수가 없음

< 세부사업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의 성과지표 및 달성실적 >

(단위: %)

성 과 지 표	구 분	'17	'18	'19	'20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추진	목표	100	100	100	100	진척률 지표	사업내용의 월별 이행 여부 (진척률 지표)	보고문서 등
	실적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			

자료:환경부

- 지자체의 지도점검 업소수 대비 민관합동 점검 업소수의 비율은 14%(2018년)으로 지자체의 환경감시에 양적으로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도점검 인력은 2018년 말 기준 853명으로, 1명당 지도점검 업소수는 52개인데, 민간감시활동 참여자는 약 1,800명으로 지도점검 인력을 양적으로 보충하는 효과가 있음

< 민관합동 점검 업소수 >

구 분	지도점검 업소수	민관 합동 점검 업소수	점검율(%)
'18년	44,562	6,315	14
'17년	49,727	5,942	12

자료: 환경부

- 그러나, 민간감시활동 참여자가 약 1,800여명으로 일인당 지급액이 4.3만원에 불과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활용이 어려워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관합동 점검업소수는 2018년 기준 6, 315건인데 2019년 민간합동 점검에 의한 위법사항 적발건은 223건으로 점검활동당 적발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참고로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2017년 12.6%, 2018년 18.4%였음
- 이러한 적발률의 차이는 안면(顔面)사회적 성격이 있는 지역 특성에도 기인할 수 있음



< 민간감시단 현황 및 활동 실적 >

감시단 현황		순찰 등 자체감시실적			지자체 합동단속 실적		국고보조 (백만원)
단체수	인원수	계	계도	위법	참여인원(명)	위법사항 적발건	
83	1,860	3,005	3,005	-	1,841	223	80

자료: 환경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환경을 감시하는 활동은 용자 등의 다른 정책수단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민간단체 회원이나 사업장 환경관리사등의 활동은 이해상충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감시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잠재적 수혜자는 명확하고 광범위하지만 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혜택이 실현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활동비 비중이 90%인데 이는 평가대상 내역사업의 성격상 문제가 되지 않음
- 보조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상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별도의 보조율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음(표 1-4-3)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중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이해상충의 문제로 인하여 가치 실현에 기여를 확신하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환경부의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16년)에 보조사업에 관련자의 이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3조), 보조금 교부절차와 조건(4조)을 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16년)에 집행관리와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지침에는 보조금 사용기준(5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6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8조),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점검(9조)에 관한 규정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16년)에 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환경부가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 1 회 이상’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충분한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16년) >

제9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환경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2. 그 밖에 환경부가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는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적발이력은 보고된 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기할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파악되지 않으며 그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환경감시 활동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역의 민간단체 회원이나 기업의 환경관리사의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양적 점검률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속의 질을 보여주는 적발률 제고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집행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16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평가대상 내역사업은 즉시폐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됨
 - 환경법규관련 단속의 양적 충분성, 질적 전문성, 집행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일자리아정자금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다만,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협소하고, 최근 2년간 예산집행률이 75%에 미치지 못하여 독립된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불분명함. · 다만, 단기적으로 내일배움카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여타 사업으로 이관이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축을 추진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기대가능성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타 사업과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리랜서 등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가입 가능성 여부와 가입할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관련 협회 혹은 기업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임.
- 기초조사보고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 제 1항 제 7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를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동 법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한정하여 훈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아, 법령상 근거는 있으나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 사업
8.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본 보조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훈련비 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 전체가 훈련비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음.
- 국정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훈련비 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각 1,000명을 교육훈련 할 목표로 예산이 계상 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개년도 연속 총예산액 대비 72%, 73%에 그쳐, 보조사업의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됨.
-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으로 성과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 기초조사보고서 자체평가 총평에 따르면 훈련참가자수가 2018년 1,541명, 2019년 2,100명으로 예상 목표 인원 연간 1,000명을 상회함.
 - 훈련 수료율, 훈련후 취업률 증가 등의 지표가 제공되지 않아 성과 평가는 어려우나, 훈련 참가자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정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프리랜서가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현 보조사업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의 수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2019년 기준 19개, 2020년 기준 17개)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2,586명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훈련비 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2020년 기준 훈련생 1인당 679,830원으로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됨.
- 2020년 현재 훈련 프로그램은 광운대학교 등 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훈련생 교육비 전액(100%)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집행률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72%, 73%에 그쳐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지 못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특이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광운대학교 등 17개 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교육훈련수료생을 대상으로 ‘훈련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관적인 지표에 더하여, 훈련생의 취업률, 임금 등 객관적인 노동훈련 지표를 추가로 수집하여 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를 점검하고 정산, 반환, 회계감사 등을 집행하는 것 역시 상기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자체 혹은 외부 적발된 사례는 없음.
- 보조사업자의 수가 12개에 그쳐 현장 방문 모니터링 (20회방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현장방문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임
 - 그 외 특기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관련 협회 혹은 기업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임.
- 기초조사보고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 제 1항 제 7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 제6호를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동 법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한정하여 훈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아, 법령상 근거는 있으나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보조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훈련비 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 중 100%가 훈련비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단위사업, 세부 사업 간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음.
-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각 1,000명을 교육훈련 할 목표로 예산이 계상 되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2개년도 연속 72%, 73%에 그쳐 예산의 과다 책정의 우려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하나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중복의 여지가 존재함.

3-2 정책 제언

- 프리랜서는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해당 보조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라 형평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나 교육 참여자의 수가 적어,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내일배움카드 등의 프로그램에 프리랜서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에게 훈련비를 100% 보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비부담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는 비교적 구체적이거나, 최근 3년간의 실행행실이 대체로 저조하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이 117,505백만원으로 2019년대비 약 40%가 이미 감축된 상황으로 추가적인 감축은 필요해 보이지 않음. · 보조사업 성과지표로 기존의 훈련 참가자들과 기업들의 주관적인 직무능력향상도에 더하여 객관적인 성과 지표들을 보조사업 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부서의 인력 배치, 충원, 및 업무 교육 개선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감시감독과 관련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을 목표로 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지원, 전략분야 인력양성지원, 지역산업맞춤인력양성체계지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비를 지원하는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지원은 2020년부터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4개 내역사업만을 평가함.
-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고용보험법 >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0. 2. 8.,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4. 삭제 <2010. 12. 31.>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3.>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 20.>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법령들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 보조사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비교적 구체적임.
- 동 보조사업(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인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에 속하며, 일학습병행공동센터를 제외한, 4개 내역사업 모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므로 세부사업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밀접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컨소시엄 사업은 훈련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 어려운 협약기업의 사업주가 해당기업의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로 위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각 사업별 특징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주요 특징
대중소 상생	유사사업군, 동종업계, 협력사 관계에 있는 우선지원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 등에서 훈련 운영
전략 분야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 등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체계구축을 위해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략적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지역산업맞춤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 인력·훈련 수급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위기 등 지역현안 해결을 지원

- 각 내역 사업별로 차별적 훈련 제공을 위해 매년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3개의 내역 사업이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차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로 훈련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기업현장 복귀 1개월 후 현업적용도, 직무능력 효과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 지표에 더하여, 객관적인 통계(예: 생산성, 매출, 임금 등)에 기반한 성과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생산성, 매출, 임금 등의 지표는 경기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훈련 참가 기업(실험군)뿐만 아니라 유사하지만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대조군)을 동시에 조사하여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동일 프로그램내 연관사업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내일배움카드,’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이 있음.
- 이들 프로그램과 달리 본 보조사업은 중소기업 종사자를 특정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고, 대중소상생, 전략산업, 지역산업맞춤형으로 편성되어 훈련의 내용과 방법에서 구별됨.
- 보조금 수혜자는 2019년 기준 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 62개소, 전략분야인력양성관련 78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69개소, 공동훈련비 지원 2개소가 있음.
- 2019년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약 19만명이나, 최근 3년간 훈련참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최근 고용보험기금 감소(‘18년도 93,531억원→’19년도 78,301억원)로 인한 요인이 있어 직업훈련사업 자체 규모가 감소(사업주훈련 ‘18년도 약 620만→’19년도 240만, 내일배움카드 ‘18년도 약 17만→’19년도 15만)한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총예산액중 각 내역사업의 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2017년 23.7%, 2018년 26.7%, 2019년 36.7%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예산의 절대금액이 감소하였으나 (‘17년 1,982억→’18년 1,771억→’19년 1,174억),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지급비용이 (‘17년 470억→’18년 472억→’19년 431억) 소폭으로 변동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예산규모에 맞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 운영기관 보유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참여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운영기관이 직업훈련과정에서 지출하는 운영비, 훈련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비 등 사업비 80%에서 전액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이에 운영기관이 본인 부담을 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제공할 유인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관리 감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매년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에 부응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자격에서 취소되거나 인건비, 훈련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훈련기관 본인 부담이 최대 40%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성과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향상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예산액의 실행행률이 저조함.
 - 2017년 86%에서 2018년 99%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다시 81%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 재정추계로 2020년에서 2023년동안 연 117,50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사업비 불용액 문제는 2017년 국고보조금사업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과 2019년 예산편성에서 각각 전년대비 10%, 30% 감액하였음.
 - 2019년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실행행률이 다시 81%로 하락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높지는 않으나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특기할 사항은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사업자 자격요건, 공고내용, 신청 방법, 심사기준 등을 운영기준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조금을 용도의 사용한 센터들이 적발되었으며 2017년 국고보조금평가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음.
- 이러한 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이 실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사업 지원을 악용하려는 지원자들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현황과 점검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에 따름.
-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동시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중임.
- 보조금 반환 등의 사후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집행 불인정 사례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평가하여 제제를 가하지 않고 보조금만을 회수한 문제점이 발견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에 따름.
-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체 적발은 부정수급액이 827천원에 그치고 있으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더 위중함.
- 별도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동안 진행한 감사에서 2017년 사업연도 동안 사업비에 인정되지 않는 지출을 한 공동훈련센터가 4곳에 이름.
- 동 감사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 결과 [별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불인정 금액 발생 공동훈련센터 명세"와 같이 최근 3년간(2015 ~ 2017년) 2회 이상, 백만원 이상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공동 훈련센터가 32곳(854,385,856원)으로 확인되는 등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위반이 재발되는 것으로 보고됨.



-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회계위반이 재발하였던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제재조치 실시 및 추가적인 조치로 재발방지를 위해 성과평가 반영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실시하였음.
- 다만, 부정수급문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상기 2-2, 2-3 항목에서 설명하듯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지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상 근거는 비교적 구체적임.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훈련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훈련 수료율 등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어있음.

3-2 정책 제언

- 기존 성과평가 지표에 더하여, 중소기업의 능력 증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통계지표(예: 매출, 이윤, 생산성, 임금)가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과관계에 기반한 엄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모색되어야 함.
-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악의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 업무 훈련 등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동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을 권고함. ·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 및 목적상 타당성이 높고, 정책 목표상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혜대상자의 범위도 광범위 함. · 최근 2년간 직업훈련생 수료율 감소로, 예산 집행률이 최근 2년간 90% 미만이나, 2020년 예산액이 2019년대비 약 49%감축되었고, 21년부터 26년까지의 예산액 추계도 소규모 증가된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지는 않음. ·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의 질 개선, 훈련생 선발 방법 개선 등의 개선 방안과, 통계적 기법에 기초한 인과적 정책효과를 성과평가 지표에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한국폴리텍의 직업교육훈련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10조), 동법 시행령(7조, 11조)에서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확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0조 >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7조 >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4항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1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3항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018, 2019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 강화,’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상응하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중인바 정책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임.
- 다만, 프로그램별로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하여, 훈련에 참가한 실험군에게 미치는 인과적 정책효과가 계산되지 않아, 정책 목적에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최종수혜자인 직업훈련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 지급에 사용되고 있어,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폴리텍은 직업훈련생들의 수료율, 취업유지율, 취업률, 훈련생채용사업주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의 경우 직업훈련생들의 수료율을 성과지표로 사용 중임.



- 직업훈련생들의 수료율이 최근 80%대로 감소하여 심층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수료율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학사운영의 내실화’같은 조치와 더불어, 한국폴리텍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 한편, 위의 낮은 성과는 훈련의 필요가 적은 지원자들을 학생으로 입학시켜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훈련자 선정에서 선정요건기준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도 있음.
- 정책목적 달성 기여도의 경우도 훈련인원 수라는 투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보조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통계적 기법에 기초한 성과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인과관계에 기초한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 대비, 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취업률, 임금, 취업유지율 등의 궁극적인 정책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보여야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보조사업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이므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고 다른 보조 사업과의 중복성이 보이지 않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직접 수혜자는 해당기관 교육훈련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전직, 실직, 구직을 앞두고 있는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혜자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보조사업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이므로, 경상경비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2017-2019)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평균 90%를 상회함.
- 예산액의 경우 2017년 8,890백만원에서 2019년 8,467백만원으로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 예산안의 경우 40%가 삭감된 5,110백만원에 그침.
- 중장기 재정추계내역은 2021년 5,272백만원, 2022년 5,446백만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 5,32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홍보,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 취업애로계층 맞춤형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보조사업은 교육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폴리텍은 보조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바, 보조금 사업자 선정 규정 등 적용규정이 없음.
- 이러한 규정 부재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특단의 우려점은 보이지 않음.
- 한국폴리텍은 출연기관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나,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시 보조금사업으로 승인 받음.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을 한국폴리텍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한국폴리텍에 재출연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특기할 만한 우려점은 발견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폴리텍의 자체 감사규정 및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관리중임.
- 보조사업 집행결과는 캠퍼스별 정산액을 법인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캠퍼스별 사업집행결과는 감사규정 및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점검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 반환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공시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 보조사업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 집행상 특기할 만한 우려점은 발견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한국폴리텍은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지는 않으나, 자체 감사규정 및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외부적발건수는 없으나, 자체감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7건 적발하였음.
- 동 부정수급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대 지급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착오이며 착오 방지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한국폴리텍이 자체 정기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처리 하였음.
- 외부적발 없이 자체감사로 부정수급을 발견한 점으로 볼 때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 및 목적상 타당성이 높음.
- 보조사업의 세부목적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과 관련한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수혜자는 지원금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개인들 모두가 잠재적인 교육훈련생이므로 수혜자 역시 광범위 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 예산 중 교육훈련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00%라 재정규모의 적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3-2 정책 제언

- 해당 보조사업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이므로 기능인력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실집행률이 2017년 98%에서 2018년 89%, 2019년 88%로 낮은 수준으로 시계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훈련생의 수료율 역시 시계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인과관계에 기초한 엄밀한 정책의 효과평가를 위해서는 훈련인원 수라는 투입 기준의 성과목표 대신,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 대비, 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누리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통폐합(2023년)을 권고함. · 본 보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중복적인 사업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하여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 기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되, 이후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통폐합을 논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제14조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6개 특성화고등학교(8개 학과), 신입생 300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음. · 중장기적으로 학과운영이 본격화되면, 성과 지표로 수료 학생들의 취업률, 취업지속률, 임금 등 최종수혜자가 얻는 후생과 직결되는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6개 특성화고등학교(8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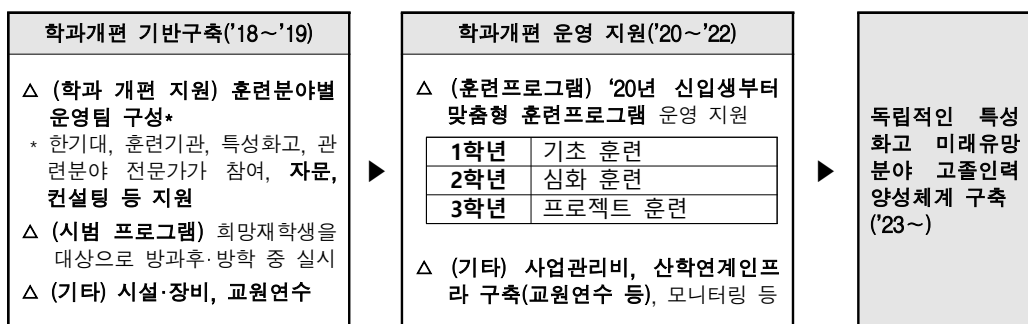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4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제14조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직업훈련과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해당 직업훈련을 특정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에 제공해야하는 구체성이나 강제성은 없음.
- 단위사업에서 설정한 능력개발지원의 목적과 고졸 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동 세부사업과의 관련성은 상당히 높음.
 - 내역사업역시 세부사업과 동일하여 상호 관련성이 높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19-4)’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천 과제 목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국정과제에는 밀접하게 연관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8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역사업만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18~19년은 학과 개편 기반 구축 단계로 시설·장비비, 교원연수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20~22년은 학과개편 운영 지원 단계로 훈련프로그램(협약 훈련 기관), 사업관리비 등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하여, 해당 특성화고가 '23년부터는 독립적으로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중임.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직종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수'이며 2018년 및 2019년 목표 8개를 100%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표는 투입에 기반한 지표로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유망 분야 고졸인력이 동 보조사업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교원연수에 예산의 12.5%가 배정되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교원연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적정한 질의 교원연수가 이루어지는지, 교원의 실력을 교원연수 전후로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필요함.
- 2020년부터 적용할 교육 수료율 뿐만 아니라 (2020년예산안 기준 80%를 목표로 정하고 있음), 학사운영이 본격화 될 경우, 졸업생들의 취업률, 취업유지율, 임금 등의 실질적인 지표가 성과 지표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동 과정이 학생들 취업이나, 기업의 인력 확보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조사되지 않아 상위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불분명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20년 예산 국회 환노위 부대의견과, 2020년 예산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서 중복 가능성이 대두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통폐합이 요구됨.
- 중소기업부의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5431-301)’, ‘인력유입 인프라조성’사업 및,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이 본 보조사업과 관련성이 높음.
- 동 사업과 상기 기술한 연관 사업간에 중점 목표 등에는 차이성이 보이나, 궁극적으로 일 반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기 보조사업과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프로그램은 현재 8개 특성화고등학교를 1차 수혜자로 하고 있어 사업의 실수혜자나 잠재적 수혜자는 명확하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단독 보조사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은 제한적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수연수에 160백만원, 실습기자재 관련비용 680백만원이 사용되어 총예산 1,280백만원중 65%를 차지함.
- 2019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160백만원)와 사업관리비 (160백만원)이 사용되어 간접비용의 비중이 높음.
- 해당 보조사업은 300명의 학생을 훈련할 예정이므로 수혜학생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인당 400백만원에 육박함.
- 최근 2개년간 실집행률은 96%를 상회하여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특기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2019년 세부운영지침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상 특기할 만한 우려사항은 없음.
- 다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홍보기간이 짧아, 지원 고등학교의 수가 적었고, 이 결과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가 2개 프로그램(4개학과)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정되었음.
- 보조사업자의 수가 적은 만큼, 특성화고들간의 상호 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복 사업자 선정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업 홍보 및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사업자해당 사업 홍보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자>

연번	학교명	신규학과명(학급수)
1	서울문화고등학교	IoT(사물인터넷)과(2)
2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스마트설비과(2)
3	서울공업고등학교	바이오화공과(1)
4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창작과(2)
5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컴퓨터특허과(2)
6	삼일공업고등학교	사물인터넷과(2)
7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빅데이터정보과(2)
8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스마트제어과(2)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2019년 세부운영지침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집행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 사후관리 역시 상기 운영지침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집행관리나 사후관리의 제도적 측면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하여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2019년 세부운영지침과 고용노동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회, 2019년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음.
-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보고함.
 - 그러나, <표2-4-1>에서 부당한 교원연수비 집행(160만원)을 적발하고 환수할 예정임을 밝힌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실습자제 구비, 리모델링 등의 항목은 비용 부풀리기 등의 악용의 소지가 높으므로 별도의 점검 노력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당한 교원연수비 집행 (160만원)을 적발한바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제14조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6개 특성화고등학교(8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19-4)’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천 과제 목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국정과제에는 밀접하게 연관됨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신입학생의 수는 300명 이하로 학생대비 사업비가 과중함.
- 중소기업벤처부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중복 보조의 우려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중소기업부의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사업,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이 우려되는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폐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학생들 선발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훈련수료율 뿐만 아니라, 취업률, 취업 유지율, 임금액 등 직접적인 성과 지표를 중장기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원연수에 예산안의 12.5%가 사용되는 등 그 비중이 높으므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질, 업무 향상도, 교원 유지비율 등 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는 비교적 구체적이며 2019년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다 2020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올해부터 독자적인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 실집행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77,742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2%에 그침. 실집행액의 시계열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조금액이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감축(2021-23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에 있어서 학습근로자수와 주관적인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교육훈련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사업체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계 지표들(예:취업률, 취업유지율, 임금, 사업체 생산 및 매출)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고, 2020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
- 이는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고용보험법 >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0. 2. 8., 2010. 7. 12., 2010. 8. 25., 2012. 1. 13.>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4. 삭제 <2010. 12. 31.>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3.>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 20.>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법령에서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 보조사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비교적 구체적임.
- 동 보조사업이 속한 단위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이며, 세부사업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내역사업은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임.
-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간의 관련성이 비교적 밀접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의 다른 4개 내역사업들 중점 분야가 상의하나, 이는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자의 특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교육대상자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상호 차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지 불분명함.
- 훈련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직업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로인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제고 되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설계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 이 내역사업의 교육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실험군)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대조군)에 대비하여, 또, 해당 교육에 근로자를 파견한 기업(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대조군)에 대비하여, 생산성, 매출, 이익, 성장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를 보여야 함.
- 본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내역사업으로 진행되어 최근 3년간 독자적인 성과지표는 부재함.
 - 다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될 당시, 자체적으로 중도탈락율 및 수료인원을 성과지표로 삼아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부진한 공동훈련센터는 선정을 취소하는 관리 노력을 기울였음.
 - 중도탈락률은 2017년 31.6%에서 2019년 2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훈련 수료인원도 2017년 11,552명에서 2019년 14,04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국정과제 및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위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 다만,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취업 보조가, 현재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지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의 통계에 기반한 실증적인 효과성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연관사업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내일배움카드,’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이 있음.
- 일학습병행지원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현장 훈련(OJT)과 현장외 훈련(Off-jt)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기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지님.
- 동 보조사업은 2019년 현재 21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 센터 이용자는 7,311개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34,365명의 근로자로, 직접수혜자의 범위는 제한적임.
-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 수나 근로자 수를 감안할 때 정책의 최종수혜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서면질의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지원금 지원내역중 인건비의 비중 및 절대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현재 48.6%에 이름.
- 예산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대액이 증가한 이유는 임금인상률 등이 반영되었고, 공동훈련센터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훈련시설장비비 지원이 사업초기 년도에 집중된 후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성격에 기인함.
- 보조사업의 실행행률이 2017년 95%, 2018년 99%였으나, 2019년 예산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실행행률이 85%에 그쳐 재정지원이 실수요자의 니즈에 비하여 과도 책정된 것으로 보임.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1,050백만원으로 책정되어 2019년 실행액 77,742백만원보다 17%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연평균 10% 이상 삭감되었고 2019년의 경우 실행행률이 85%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 재정추계가 이러한 시계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 보조사업의 지원규모가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이 점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특기할 사항은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사업자 자격요건, 공고내용, 신청 방법, 심사기준 등을 운영기준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보조사업은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조금을 용도와 사용한 센터들이 적발되었으며 2017년 국고보조금평가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음.
- 이러한 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이 실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사업 지원을 악용하려는 지원자들을 제대로 걸러내는데 미흡함을 드러냄.
-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어왔던 만큼, 사업 성격이나 집행 상 공통점이 많으므로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현황과 점검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에 따름.
- 현장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진행 중임.
- 2019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집행 불인정 사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재를 가하기 않고 보조금만 환수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음.
- 다만,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만큼, 사업 성격이나 집행상 공통점이 많으므로 부정수급 감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들의 감시 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2019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집행 불인정 사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재를 가하기 않고 보조금만 환수한 문제가 지적됨.
-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사업은 해당 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선제적으로 감시 감독 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이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상 근거는 비교적 구체적인.
- 동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성과지표가 없다고 기초조사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음.
 -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사업에서는 훈련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훈련 수료율 등 투입 지표로만 구성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의 후생과 성과에 직결되는 객관적인 지표들(예:임금, 취업유지율, 매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 엄밀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 동 사업의 참여자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선정하고, 훈련에 참가한 사업체와 근로자들을 실험군(treatment group)으로 분류하여 두 그룹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면 동 훈련사업의 인과적인 효과(causal effect)가 측정 가능함. 연구 분석 과제를 별도로 진행하여 엄밀한 성과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중소기업의 매출, 이익,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동 보조사업이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통계에 기반한 실증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불충분함.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연관사업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내일배움카드,’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이 있으나, 본 사업은 1년간 근무자들을 OJT와 Off-jt를 혼합하여 교육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지금까지의 평가 지표에 더하여 엄밀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임금, 매출 등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을 권고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적절함. · 총 사업비중 인건비의 비중이 65%를 초과하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성격상 불가피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성과평가가 이용자 만족도나 이용자수에 기초하나 이들 지표는 선택편이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외국인노동자 신규 유입수, 구성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해당 보조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사원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과 동법의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동법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와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보조사업내역이 해당 법령의 내용에 부합함.
- 해당 보조사업은 국내 생활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바, 정부 지원이 없이 민간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국정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시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보조사업은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사원관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소지역센터의 경우 인건비 일부(1-3명)와 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비 전체가 외국인노동지원센터에 사용되므로 보조사업과 내역사업 간의 연관성은 높음.
- 동 보조사업의 성과는 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외국인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로 측정되고 있으나, 아래 기술할 한계점도 존재함.
- 만족도의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선택 편이(selection bias)의 문제가 있으며, 설문조사의 문구나 순서에 따라 만족도 정도가 달라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외국인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도, 해당 지역에 신규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신규 이용자 수로 성과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 보조사업이 외국인 노동자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예: 노동자 근무기간, 직장 이탈률, 임금, 고용주의 매출, 이윤 등)를 수집하여 성과 평가에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해당 보조사업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외국인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는 필요함.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는 발견되지 않음.
- 한국은 16개 개발도상국가들과 Bilateral Agreement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총예산 7,025백만원중 인건비(거점센터 3,585백만원과 소지역센터 1,089백만원)는 67%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해당 보조사업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센터 상담원 인당 보수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점센터의 수나 사업관리비, 소지역센터의 수를 교통권을 감안하여 재조정하고, 실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인력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보조금 실집행률이 90%이상이고, 시계열 추세 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한국 사회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상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운영기관 선정은 해당 지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침 제11조에 따라 선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 규정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 다만, 2017년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김해센터는 감사 적발로 인하여 민간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명기되어있으나, 새로운 사업자 역시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 부정수급이 지적된 바, 실제 사업자 선정에서 양질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방법 및 운영, 사후점검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연 2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도점검, 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의 규정이 구비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의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음.
- 2018년과 2019년 부적절한 집행, 부패신고 등으로 환수가 발생하여, 센터별 정보공시를 통하여 현재 및 향후 민간 위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2018년과 2019년 부정수급이 외부 적발(1건)과 자체적발 (4건)이 있음.
- 이중 외부 적발된 김해센터의 경우 2017년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도 김해센터는 업무용 차량 목적 외 사용, 차량 운영일지 허위작성, 출장비 부당지급 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위탁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주체 선정 방식이나, 센터직원 채용 상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사업의 외부 적발은 1건이고, 자체적발은 총 4건으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노력이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성과지표의 일환으로 조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과 동법의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동법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와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보조사업내역이 해당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의 성과는 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외국인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수로 측정되고 있으나, 정책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중장기적으로 최종수혜자 중심의 성과지표로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 센터별로 해당 지역에 신규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를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목표를 설정하거나, 신규 이용자 수로 성과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센터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임.
- 더 나아가, 센터 이용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 구직기간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률, 계약기간 만료후 본국 귀국을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사용에 센터의 성과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연동되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점센터의 수나 사업관리비, 소지역센터의 수를 교통편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대신, 실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사 업 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022년까지만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적격 신청자에 대하여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특기할만한 예산 감축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사업으로 지원받는 노동자 수가 지난 2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지표에 더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엄밀하게 평가할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정수급의 위험이 많은 사업이므로 기존의 현장방문 등의 방법 이외에도,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인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됨.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6 - 11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보조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 보조금 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음.
- 법령상 정부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나 강제사항은 아님.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3.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최저임금법 제24조 >

(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법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동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부사업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뚜렷하며,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정부지원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중복의 우려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지난 2년간 지원대상 노동자가 과소 추정되었고, 실제 집행액도 2019년의 경우 예산액을 초과함.
 - 해당 사업의 보조를 받는 노동자가 2018년 264만명, 2019년 344만명으로 목표치 236만명, 237만명에 대비하여 각각 12%, 45%가 높음.
 - 동 보조사업은 신청자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실 집행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경기 변동 및 신청자 수에 대한 예측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계분석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수)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근로자의 수로 측정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자 수의 감소를 막고자 동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총 근로자의 수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특히, 정책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과(실험군), 적용 대상과 비슷하지만 법령상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들(대조군, 예) 30인 이상 고용기업)과의 고용 차이 역시 성과평가의 지표로 포함시켜야 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등 상위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게 존재하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고용유지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
- 고용노동부가 발주하여 2018년 12월 작성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동 보조사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기 측정하지 못함.
- 인과관계 측정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세사업자(실험군)들이 상용 근로자가 30인을 약간 상회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들(대조군)에 대비하여, 고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Regression Discontinuity 이나 Differences in Differences의 방법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기 보고서는 2017년과 2018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효과를 측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체가 도산하여 고용이 감소하였거나, 보조금 수급을 위하여 고용인원을 3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으로 줄인 사업체들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보조사업과 특별히 중복되는 사업은 없음.
- 동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수령 받는 사업체 (및 해당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 후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와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혜대상 범위는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자인 사업주에게 전액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비)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간 업무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별도 관리 중임
 - 다만, 해당 행정비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사업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경비이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운영비 185백만원,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 운영비 52,891백만원 등 총 53,076백만원.



- 해당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사업은 아님.
 - 사업의 성격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100% 지원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불용액의 경우, 2018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84%이나, 2019년의 경우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6% 초과 집행되었음.
- 기초조사보고서상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은 없음.
 - 동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사업으로 2022년 이후에 대한 추계는 없음.
 - 지난 2년간 지원대상 노동자의 수가 과소 추정된 만큼,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측면에서 관련성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근로복지공단을 보조사업자로 명시
 - 고용보험제도에 기반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이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 현황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집행결과를 사후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구비되어 있음.
 - 매주 1회 근로복지공단이 구축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산망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점검중임.
 - 다만, 아래 기술할 부정수급 관리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외부적발 건수는 없었으나, 총 41건의 자체적발이 있었음.
- 임금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적발하였음.
 - 2018년 10건, 2019년 31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됨.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가 2018년 2,641,575명, 2019년 3,438,857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적발 건수가 적어,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불충분 한 것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탈세 위험군(risk group)을 미리 예측하여 행정력을 고위험군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방법대로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은 대상을 예측모형을 통해 특정하고 행정력을 재배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외부적발은 없었으나, 총 41건의 자체적발이 있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짐.
-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보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 또는 퇴사자를 지연시켜 신고하는 방법 등 부정수급의 위험이 상당히 있음.
 - 현재 월보수 요건의 경우 국세청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정기 점검 주기 및 대상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앞의 소절에 기술하였듯이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험군을 자동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 타게팅(micro-targeting)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연사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됨.
 - 사업 목적상 한시성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나, 2020년에도 보조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보조를 받는 노동자가 2018년 264만명, 2019년 344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치 236만명, 237만명에 대비해서도 각각 12%, 45%가 높음.
 - 이에 실제 집행액이 매년 예산액을 초과하여 상시적인 예산 초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미중무역분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 등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사업여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월평균임금 하락이나, 영세사업자 증가로 인하여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수급대상 및 일인당 지원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예의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년간 지원대상 노동자가 과소 추정된 만큼, 지원자 수 및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함.
- 사업의 성격상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부정수급의 위험군을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예측하여 부정수급 감시감독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행정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피해자지원
건강가정맞다문화가족지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청소년활동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법원·학교폭력위원회 등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및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유사 중복성 없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공익사업임 ·동 사업을 통해 재범확률을 낮추는 것이 폭력예방에 실익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첫째,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행 개선 목표가 친밀한 관계에서 장기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인지 합리적인 목표 설정 필요함. 둘째,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사업은 적정 성과지표 및 목표 산출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함. 셋째, 가정폭력 재범률이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가해자 교육이 재범 방지에 합리적인 구성인지 재평가와 개선 요청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사업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0조6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에 사업 근거가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포괄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0조6항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4항 >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법원·학교폭력위원회 등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및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개의 내역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뚜렷하며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또한,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을 구성하는 두 개의 내역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였으나 교정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음.
- 두 개의 내역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성폭력가해 청소년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혜자수의 합’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 실시 전과 후의 폭력성행 개선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두 개 지표 모두 매년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서 계획한 목표는 적정하게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다소 부족하여 성폭력가해 청소년 교정치료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 실시 전과 후의 폭력성행 개선정도 측정을 반영하여 성과 지표를 관리할 필요 있음.
- 사업은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행은 목표한 만큼 완화시켰지만 사회전체적으로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 가정폭력 재범률(출처 : 경찰청) : ('14) 11.1% → ('15) 4.9% → ('16) 3.8% → ('17) 6.2% → ('18) 9.2%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나,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행 교정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등 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업 관리 주체가 간접 수혜자 규모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움.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재발방지는 공익성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 폐지 시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가해자에게 상담, 교정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위한 강사로 및 상담료,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경상경비(인건비, 임대료 등) 비중이 높은 사업이나 대인 서비스 사업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보조율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임. 자치단체 경상 사업은 서울 50%와 지방 70% 민간경상사업은 100%로 유사 사업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가해자의 재범 방지는 전체 시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치단체 경상 사업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X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 사업비 배정절차와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 등이 제도화되어 있음.
- 사업자 타당성 검증은 시·도의 책무로 되어 있는 바, 시도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질 관리 방안 수립 필요함.
- 내실있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정폭력 및 이주여성 관련 시설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행실태 점검(지원대상 적정성,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 등)내용을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 있음.
- 민간 경상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사업은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심사 계획’에 따라서 운영기관의 제반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등 선정 과정은 합리적인.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의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절차 등을 활용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가 이행되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하고 있음.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사업 부정수급(허위강사 채용)에 따른 적발 및 환수 조치완료 사례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추진현황을 보고 등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로, 특별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폭력행동을 한 가해자가 공공의 책임 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재범확률을 낮추는 사업으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며 예산 지원 근거 또한 있음.
-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이 없으며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공익성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 실시 이후 폭력성행이 목표치만큼 개선되고 있으나 성폭력 가해아동 청소년 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질 관리가 방안 마련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을 통해 재범확률을 낮추는 것이 폭력예방에 실익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행 개선 목표가 친밀한 관계에서 장기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인지 합리적인 목표 설정 필요함.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사업은 적정 성과지표 및 목표 산출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함.
- 가정폭력 재범률이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가해자 교육이 재범 방지에 합리적인 구성인지 재평가와 개선 요청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 방식 변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유사 중복성 없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공익사업임. 필요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혜자 대상 지원 확대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자립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입증할 필요 있음. ·피해자 자립 등의 사업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의 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양질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 평가 방식 개선이 요청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의 ②에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경비의 보조)에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보조 규정은 명시되어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의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에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가정 내 주거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
 -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의 94.4%가 상담소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매우 도움 60.4%, 약간 도움 34.0%)함. 동일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자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56.5%(매우 도움 25.0%, 약간 도움 36.5%)이나 경찰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66.1%(매우 도움 29.2%, 약간 도움 36.9%)보다 상대적인 도움정도가 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의 100.0%는 상담소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매우 도움 69.6%, 약간 도움 30.4%)함.
 - 동일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자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57.7%(매우 도움 30.8%, 약간 도움 26.9%)이나 경찰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61.3%(매우 도움 35.5%, 약간 도움 25.8%)보다 상대적인 도움정도가 큼.
- 최근 2개년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는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 건수를 측정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로 피해자가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 입증 필요함
 - 상담, 보호 및 시설 연계 등 서비스 지원 건수는 사업의 효과성이라기보다는 투입량이며, 사업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인권 보호를 증진시켰다는 척도로는 미비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제공, 폭력으로부터 안전, 치료회복, 자립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되는 재정사업 없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전문인력 강사비 이므로 보조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인건비, 임대료, 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예산 비중은 높지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라 볼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임. 서울 50%, 지방 70% 로 보조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유사 사업 기준 보조율을 참조할 때 합리적인 수준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등 신체적 위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임시보호, 주거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치유와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인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정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관리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함.
- (신규)국비지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시·도가 현장실사,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 국비지원기관 추천함. 기존 상담소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함.
- ※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 및 지원신청.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민간 경상 사업인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관련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금법 제16호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의 사업추진방식과 실적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도입할 필요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별도의 보조사업 집행 규정은 없으며,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집행과 정산, 반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 사회복지시설(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준용하지만 주기적 점검 절차 및 기준,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구비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하였고, '18년, '19년 각 2건씩 총 4건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체 적발 이력이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대상 매년 지자체 자체 점검 및 중앙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부정수급 사례 적발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짐.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제공, 폭력으로부터 안전, 치료회복, 자립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역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전체 사업 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사업이 피해자가 폭력적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이웃 또는 경찰 등의 기관보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사업 운영이 적절함.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운영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집행 규칙을 반영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 관리의 내실화 필요한데, 동 사업 성과목표는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 건수를 측정하고 있음. 상담, 보호 및 시설 연계 등 서비스 지원 건수는 사업의 효과성이라기보다는 투입량이며, 사업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인권 보호를 증진시켰다는 척도로는 미비함.
 -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 설정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여부를 평가·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2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성이 낮은 사업이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여러 개의 내역사업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서울 30%, 지방 50%)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실집행률도 약 98%수준임.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증가는 가족 서비스 확장을 요청하고 있는 바,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을 특정화하고 세밀한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내역사업들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용자수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적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개별 내역사업 (6개)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아이돌봄지원법 >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볼 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별 사업대상이 특정화(공동육아나눔터 : 자녀 양육기 부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동 사업이 정책목표인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부족함
-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자수 목표 달성 여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증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 증가로 가족 기능 강화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지표는 가족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전과 후에 가족 이해도, 가족관계 개선 정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도 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측정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낮은 사업임. 가족 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형태의 정책 수단은 적절함.
-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 및 2차적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결혼이민예정자를 제외하고는 사업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음. 따라서,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을 특정화하고 세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점진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서울 30%, 지방 70%)과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서울 30%, 지방 70%)의 보조율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서울 30%, 지방 50%)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연도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재정추계를 하였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주여성 인권 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분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수요조사 절차 있고, 최종 제출된 보조사업자(수요)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예산,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수정·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사업은 공모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지침에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현장점검 및 평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월간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과 정산보고를 통해서 집행결과를 주기적 점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준, 정보공시 의무 등이 포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가족사업안내 지침(59페이지)에 의거 시군구가 연 1회 현장점검 실시하고 여가부·시도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성이 낮은 사업이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여러 개의 내역사업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서울 30%, 지방 50%)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실행률도 약 98%수준임.
- 다양한 가족의 증가로 가족 서비스 확장이 필요하므로,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화 필요함.
-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집행 관련 사항은 사업 지침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내역사업은 상호 이질적인 사업들로 구성되어, 내역사업별 성과 관리 필요함.
 -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 목표 달성 내용으로 성과 목표 개선 필요.
 -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 성과지표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과목표 또한 부재한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적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최근의 가족 변화들 속에서 출현되는 위기 가구 문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여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을 특정화하고 세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필요.
 - 기본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미혼부모 가족, 돌봄 공백 및 위기 가족, 청년세대, 고령 1인 가구 등을 포함하여 경증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 등에 적합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 점검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7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자활지원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상담소,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구조와 자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단, 성매매 피해자의 내실있는 자립 지원을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적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에 기반하여, 상담, 주거, 의료·법률, 교육·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발굴 필요함. 또한, 집결지 피해여성 뿐만 아니라 기타 유형 피해여성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평가와 개선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내역사업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규정이 있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상담소,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등 필요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7,000여명 내외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위기개입, 보호, 자활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있음
- 최근 2개년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 성과지표는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건수를 합산한 지원 실적과 피해자의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않음.



- 또한,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정책목표는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 재유입을 방지하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 입증 필요함. 또한, 피해여성이 재유입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집결지 피해여성과 기타 유형 피해여성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인지도 평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서비스와 시설 입소, 의료·법률·직업훈련 비용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사·중복성 가능성은 없음.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사업은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 있으며 사업 폐지 시 성매매 피해자 구조의 어려움이 예상됨.
- 하지만, 직접 수혜자 이외에 보조사업 추진의 정책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편익이 생길 수 있는 간접 수혜자 규모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외부효과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성매매피해자지원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기준과 유사하게 서울 50%,지방 70%을 적용함. 자치단체자본보조금(기능보강비)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보조율 별표 1. 91.에서의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규정을 근거로 전국 50%을 적용함.
- ※ 행정비용 측정되지 않음.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로 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기반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사업 관리 지침인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사업 신규 시행 시에는 시행 여부에 관한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한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추가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현장접근성, 활동역량,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 있고 적정성 관련 규정(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등)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행 및 정산 절차가 제시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운영은 없으며,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행정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나라 도움 수시 점검 등을 통한 결과 환류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통제·수행하고 있음
 - 2017년 경기도 인건비보조금 상한기준(60세) 초과 지급 건이 여전히 환수 조치 중으로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납 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매년 지자체 자체 점검 및 중앙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사업 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서비스와 시설 입소, 의료·법률·직업훈련 비용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의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으며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할 공익적 근거가 명확함.
- 내역사업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관련 포괄적 규정이 있으며, 사업 폐지 시 성매매 피해자 구조의 어려움이 예상됨.
- 동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 재유입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여성이 재유입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집결지 피해여성과 기타 유형 피해여성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인지 평가와 내실 있는 추진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목표인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또는 자립 내실화를 위한 질 관리 체계 수립 필요함.
 - 첫째, 지원시설·상담소의 상담 및 지원건수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성과 측정 지표로 부족하므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주거, 의료·법률, 교육·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함.
 - 둘째, 피해여성이 재유입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집결지 피해여성과 기타 유형 피해여성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인지도 평가와 개선 필요.
- 온라인 성매매 관련 대책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의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 관리 역시 내역사업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세부사업 전체로 볼 때 이질적인 목표를 가진 두 가지 내역사업이 병합되어 있는 구조로 사업 체계의 변경이 필요함 ·두 내역사업은 사업 초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다 '16년 통합된 바 있음.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각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역사업간의 연계성이 낮아 전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두 내역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내역사업을 분리,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되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세부사업) 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관련 근거가 있으며,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이질적인 목표를 가진 두 가지 내역사업이 병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각 내역사업별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발달단계별 특성에 맞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에 목표가 있음.
 -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타당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에 목표가 있는 사업임.
- 사업 목적이 명확하며 사업대상자 증가와 함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됨
- 본 사업은 국정과제는 아니나 국정과제 '65-5: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성매매 피해자 치료재활 추진'과 일부 연계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각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임. 그러나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아 전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두 사업은 '15년까지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 후 '16년 예산 편성 시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이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17년 본 세부사업 편성과 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과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 모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연계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진 바 없음. 이렇게 목표가 다른 내역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 각각의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두 성과지표 모두 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다만, 아동·청소년 등 성교육 참여인원 지표는 단순 산출지표이며, 성매매 피해청소년 기본교육 수료자 만족도 역시 적정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19년 평가결과(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위원회)를 반영한 신규 지표임을 고려할 때 추가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성범죄의 증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며, 성매매 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임.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의 수혜자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한 반면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의 수혜자 범위는 광범위하지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보조는 기준보조율 50%를, 민간보조는 100%를 적용하고 있음
 - 보조사업별 실행률은 최근 3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출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가 긴급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통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지자체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운영실적,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선정함. '19년 기준 16개 시도 58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됨.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선정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여짐. 다만, 지난 3년 선정된 교육 위탁기관 11개소가 모두 동일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두 사업의 매뉴얼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관련 법률 및 지침, 매뉴얼 등에 기초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음
- 지난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제시된 사업관리 노력의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제시된 내용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관리방식이므로 평가반영은 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내역사업의 내용 및 목적이 분명함. 성범죄의 증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다만, 내역사업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 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이질적인 목표를 가진 두 가지 내역사업이 병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아 전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두 사업은 사업 초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각 사업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두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함
- 두 사업을 분리할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타 보조사업인 성매매방지 및피해자지원(세부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높은 실집행률, 사업개선 노력 등이 확인됨 ·목표치 상향 설정의 노력이 인정되나 현재 사업 신청률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설정될 필요가 있음 ·사업주체별 역할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접수, 선정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자체 교육 시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관련 규정 ‘청소년 사업안내’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항목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여성가족부의 추가 관리·감독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의2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내역사업 보건위생물품지원은 동법에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바우처시스템 구축·운영은 동법시행령에 근거하나 연계가 약한 편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의2 >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되며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66: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세부과제(66-6: 여성의 건강과 몸에 대한 권리 보장-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 계획 젠더지표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해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보건위생물품지원(지자체경상), ② 바우처시스템구축·운영(민간경상)이며,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예산은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액임
- 바우처시스템구축·운영 사업은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해당 예산은 시스템 운영 비용임.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기준으로 사업 단계 및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규모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됨
- '18년 시작된 사업으로 '19년 성과지표를 신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성과지표 '보건위생물품 신청률(%)'은 지원대상인원 대비 지원신청인원의 비율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사업의 주요 성과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성과지표라 판단됨
- '19년, '20년 목표치가 과도하게 하향 설정되었으나 그 사유 및 이를 개선하려는 관리 노력이 인정됨
- '19년 목표치의 경우 '18년 본 사업의 부처 이관(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및 지원방식 변경(현물 → 바우처)으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20년 목표치의 경우 '20년 성과계획서 수정을 통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타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유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전국적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지역	조례내용	
		지원대상	지원방법
1	서울특별시	여성 어린이 ·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 지원, 위생용품구입비,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	위생용품 지원, 공공시설 비치
4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	위생용품 지원, 공공시설 비치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	위생용품 지원, 공공시설 비치
6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구입비,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7	경기도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지원, 위생용품구입비,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8	경기도 화성시	여성	공중화장실 비치
9	경기도 이천시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 지원, 위생용품구입비,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10	경기도 여주시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 지원, 위생용품구입비,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11	충청남도 서천군	저소득 여성(만 19세~만50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
12	전라북도 순창군	여성청소년(만 11세~만24세) 다자녀가정 여성(만11세~만49세)	위생용품 지원
13	전라남도 구례군	여성청소년(만 11세~만18세)	위생용품지원, 위생용품이용권 지급

- 다만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에 있어 본 사업의 대상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일부 지자체(서울특별시 구로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해당 조례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지자체의 경우 해당 조항이 없어 중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사업수혜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으로 한정되나 수혜 범위는 전국 단위로 비교적 광범위하며 수혜자 인원에 대한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겠으나 청소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과 바우처시스템구축·운영 사업으로 구성됨
 -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은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등의 관리 감독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고보조율 50% 이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운영결과를 보면 '18년 실집행률이 87.8%, '19년 실집행률이 93.4%(부처가 작성한 실집행률 100%로 수정 필요)임.
 - 그러나 '18년의 경우 위생용품 현물 지원 과정에서 대량구매로 인한 구매 단가 인하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바우처시스템구축·운영 사업은 그 내용상 전문 기관에게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율 역시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18년 실집행률이 97.0%, '19년 실집행률이 91.4%(부처가 작성한 실집행률 97.9%로 수정 필요)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 사회적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지자체경상보조 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구성됨
 - 지자체경상보조의 경우 별도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투입인력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의 적정성을 위한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적절한 집행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8년 사업 시행 이후 부정수급 사례가 없으며, 전달경로 등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지자체 보조의 경우 보조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바우처 사용액을 정산한 후 미사용액 및 이자액은 e호조 및 e나라도움시스템에 반납하는 형태임
 - 민간 보조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감사가 시행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 정산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에서 제시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관리방식이므로 평가반영은 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측면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급방식의 변화, 구매편의성 제고, 품목 확대, 자격 지속성 유지 등 사업수혜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
- 실행행률이 높은 편이며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의 성과관리 노력이 인정됨. 다만, 신청률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표치의 상향 설정이 요구됨
- 지원대상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원액 향상 및 신청률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사전에 예산 감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사업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재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지원방식 및 사업 대상 등에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지급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짐. 현재 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을 볼 때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접수, 선정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자체 교육 시 관련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관련 규정 ‘청소년 사업안내’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항목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여성가족부의 추가 관리·감독의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관명	여성가족부
사업명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을 단계적 폐지(2022년말)로 판정함. · 청소년기의 건전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인격 형성과 경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청 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 센터의 기능이 청소년 활동의 요구조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센터에 국 가가 보조하는 것은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 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지역별 여건, 인프라, 요구,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 행하는 것이 사업 효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로의 사업 이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단계적 폐지'로 판정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관련 규정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 국가 지원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원의 타당성은 지원대상인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지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평가,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특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용 지원의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지 의문임.

< 청소년 활동법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2개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은 자치단체 보조사업, 그 밖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지역내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율은 자치단체의 경우 30%로 상대적으로 낮음.
- 먼저 가장 예산비중이 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청소년활동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센터의 기능이 지역내 청소년활동의 요구 조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등으로 청소년활동 관련된 자치단체의 일반적 업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때 시급하거나 우선 순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불균형 해소, 국가-지역사회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이라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나 정보제공건수로 설정하고, 만족도의 경우 '18년부터 제외되어 '19년은 정보제공건수만 성과지표로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 사업의 수행이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불균형 해소와 국가 정책과제의 유기적 수행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없음.
- (부수적 성과로 제시된)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원, 인증프로그램 발굴·유지 건수 등 투입 또는 산출 위주의 실적 평가만 하고 있어 본 사업의 객관적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국가 보조가 없는 경우 동 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질적 저하 등의 우려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가 보조로 동 센터의 성과가 지원받지 않은 시기 또는 지원받지 않은 센터보다 향상되거나 높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제시되지 않음.
- 지역단위별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청소년 활동 시설 및 인프라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상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사업 운영 체계, 사업 성과 관리 체계 등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시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전국단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 인프라 수준, 재정자립도, 시설의 규모, 이용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치단체별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내역사업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공모절차 제외 사유인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교부신청시 공모 절차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 교부 결정시 자치단체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내역사업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한 민간 보조금으로 「청소년활동법」에 따른 동 기관의 기능에 부합하며
 -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도록 하고 있어 센터의 수행활동과 관련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요 사업단계별 추진 현황관리 등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결과 환류 등의 노력은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줌.
-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 조치를 하는 등 사업관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청소년사업 안내 등에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이 정해져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부정수급 관련 규정을 포함한 교부조건이 통지되고 있음.
 - 특히 각 사업 단계별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결과 환류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의 부합 여부 등 사업 통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한 민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시기의 활동이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순기능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기에 건전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인격 형성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어른 세대의 책무이자 국가와 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일 것임. 하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가 시급한지는 의문임.
- 특히, 센터의 기능이 청소년활동의 요구조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임을 고려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역내 여건,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때 시급하거나 우선 순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의 내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경우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 이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년말까지 보조금 사업 운영기간을 확보하되, 올해부터 지방 이양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이 투입되는 2022년까지는 지역별 청소년활동에 대한 투자, 재정여건, 청소년활동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별 청소년활동 불균형 해소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국제교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9.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 사업 이외에 유사·중복 재정사업은 없지만, 특정 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사업의 합리성을 저해함. ·따라서,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스카우트세계야영 사업과 국제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는 2023년 예산부터 지원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국제적 교류활동 기회가 적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지원 비율을 높여서 청소년 교류 활동 참여 기회의 형평성 제고 필요함. 국내 체류 유학생과 대학생 간 교류협력 사업은 전지구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도록 사업 추진 방법 변경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정단체 지원사업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 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보조 등) >

제5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 >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지원) >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참여는 청소년의 경험을 확대시키고 국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부합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카우트 연차회비 지원 사업 같이 국제교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의 내내역 사업을 포괄하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내역 사업 간 관리의 체계화 정도가 불균등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전·후 효과성 차이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매년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민간 청소년 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업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성과 목표의 대표성이 떨어짐. 동시에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라는 동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유사·중복 재정사업은 없음. 내역 사업 중 일부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모든 청소년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소년활동 그룹(스카우트, 아람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광범위하지 않음.
- 물론, 해당 청소년 단체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지원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청소년 역량 강화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사업 참여 기회 균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교류활동 기회가 적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서 행정비용은 17%로 타당한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을 보조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정액보조 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내내역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다소 기여함.

※ 사회적배려계층 참여현황 : ('17) 46.5% → ('18)48.7% →('19)51.9%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은 별도의 사업 시행 공고문 이외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이 추진됨.
- 내내역 사업 중 일부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매년 동일한 청소년 단체가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이 떨어짐.
- 스카우트 활동 지원 및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특정한 법률에 따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 등 절차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 수행되었으며 불성실공시 사항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적발 실적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상/하반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등 사업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업관리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만 15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일 이내의 국가간 교류, 한중교류, 국제회의 파견, 자원봉사단 파견 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함. 지속적인 교류 기반 또는 역량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 내에 특정 청소년활동 그룹(스카우트, 아람단 등) 활동을 지원하는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지원의 합리성을 다소 저해함.
- 별도의 사업 관리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사업 추진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청소년이 여러 국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데에 기여해 왔으므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을 넘어서는 등의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프로그램 개선 요청됨. 교류 자체 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거나, 해외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또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국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변화 요청됨.

<표> 국가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계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기타	캐나다	미국	기타	프랑스	러시아	기타	
2013년	85,923	52,313	4,503	3,904	3,013	11,555	864	3,120	4	823	752	2,198	2,874
2019년	160,165	71,067	4,392	7,381	37,426	25,481	785	2,915	1,325	1,442	1,169	3,701	3,081

주> 외국인 유학생에 재외동포 포함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2013년, 2019년 4월 1일 기준

- ※ ('19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 참여 비율) 국가 간 교류 36.5%, 한중 특별교류 20.9%, 해외자원봉사단 69.6%으로 특정 프로그램에만 치우쳐 있음.
- 국내 체류 유학생과 대학생 간 교류협력 활성화 역시 상호 이해 증진을 넘어서서 SDGs 나 국제규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전지구적 의제에 대한 후기 청소년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국제교류 사업 참여 청소년의 세계 시민 행동의지나 다문화 수용성 등은 이미 상당 수준 이므로, 사전·사후 단계별 자기주도성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의 미래 경력 비전과 연계된 프로그램 기획 강화 요청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8.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3.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2자녀 이상·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대상 방과 후 돌봄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 대한 단계적 공모제도 도입을 통한 선발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소득계층별 차등적 자부담 적용을 고려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기본법」에 방과 후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 근거가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위탁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 「청소년기본법」 >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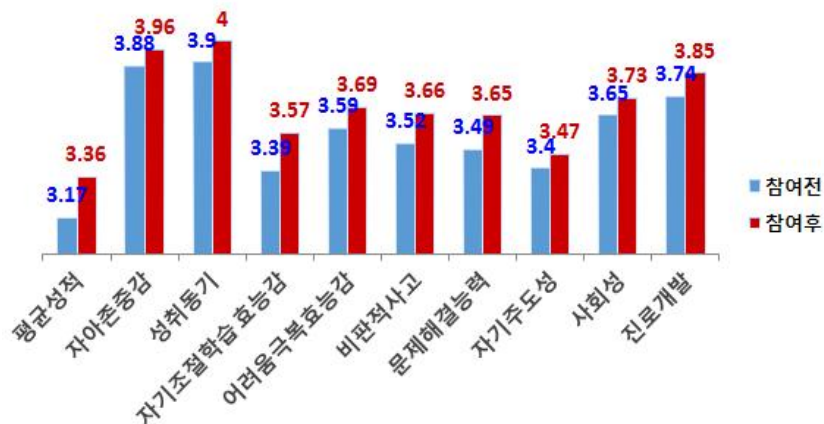
②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저소득·한부모·장애·취약계층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는 국정과제(53)에 명시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두 개 내역사업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운영지원단 사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초4~중3)을 대상 280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기여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청소년의 효과성 증가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목표에 적정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2019년 신규 지표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업이나 활동 및 심리적 적응력 향상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최근 2년 동안 사업 참여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성취동기, 자기주도성 등 핵심역량 배양 효과가 약 22%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어 상위 정책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

※ 11,000명 참여자 중 1,5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 2018년 22.3%, 2019년 22.6%임.



[그림]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참여 전·후 유효성 비교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대상 돌봄 취약계층 청소년에 급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상담, 학습지원, 창의융합적 문화역량개발 및 진로체험활동)를 1일 4시간 이상 상시 제공하는 사업임.
- 방과 후 아카데미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2자녀 이상·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이 주로 참여함.

<표>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구분	저소득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장애 부모· 청소년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조손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사회 추천 돌봄 사각지대등 기타사유	합계
인원수	5,218	678	555	3,089	239	76	839	890	11,584
비율	45.0%	5.9%	4.8%	26.7%	2.1%	0.7%	7.2%	7.7%	100%

-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인적·물적 사업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사업 운영 방식에서는 유사하지만, 두 사업은 사업 대상과 주요 프로그램에서 차별점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종사자 인건비가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 사업은 관리 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임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인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보조율과 동일한 서울 30%, 지방 50%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사업 운영은 점차로 맞벌이 가구 청소년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 사업 참여 청소년은 차상위 가구부터 중위소득 150%가구 까지 광범위함. 다른 돌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상위 이상 가구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차등적인 자부담 고려할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 통합에 다소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자 선정의 제도화 수준 낮음.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는 추진하였음.
- 민간경상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은 공모절차 없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자체사업지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적발 실적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2자녀 이상·맞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대상 방과 후 돌봄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여 청소년의 학업역량, 심리적응 역량, 사고력, 자기주도성, 사회성, 시민성, 진로개발 역량 증가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적정 목표를 달성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운영지원단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서비스 역량을 증진시키고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위탁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공정한 관리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방과후아카데미의 참여자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이상, 맞벌이가정 등의 청소년이 혼재되어 있음. 차등적 자부담의 적용은 이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다른 돌봄 지원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급식비를 제외한 차등적 자부담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시 재료비 등 일부는 최소 범위 내에서 자부담 하고 있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이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역량을 갖추는 것은 프로그램 질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계적 공모제도 도입을 통한 선발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8.8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개입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사 중복 사업은 없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정책 선호도가 높은 사업임에 비해 실집행률이 낮아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향상 방안 필요하며, 1388청소년 지원단의 위기 경험 청소년의 발견과 의뢰 기능 강화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명칭을 청소년사회안전망으로 변경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 구성하는 내역사업들은 다양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단,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과 연계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이슈이나 학교폭력신고센터(긴급전화 설치) 사업*은 전체 사업과 연결고리 명확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음.

* '12년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여가부·경찰청 3개 부처 합동으로 17개 지방 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 인력 180명 중 여성가족부 인력 34명 인건비 포함



- 상담한 청소년의 위기 수준 감소와 위기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또는 사회 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였음.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개입하여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함.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각종 서비스 연계 통해 상담 청소년의 개인 심리와 주변 환경적 위험에 대한 위기수준을 낮추도록 사업 추진하여 서비스 이후 평균적으로 위기 수준을 20.7%p 낮추고 있음.

<표> 청소년 사회 안전망 서비스

단위: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사회적 보호	가정생활 및 경제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지원 및 권리구제	여가및문화 활동지원	합계
2017	1,566,866	84,188	71,396	417,669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2018	1,802,537	103,778	100,715	531,865	12,023	13,170	3,413	413,958	2,981,459

-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의 35.5%가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 하였음.

<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2019)

단위:건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역 특성화 (자기계발)	기타	합계
			경제 교육	사회성 훈련	주거생활 지원	건강 지원			
355,478	265,463	75,676	5,839	20,212	287,037	23,124	97,506	57,413	1,187,748

* 학업복귀는 검정고시·대학진학·학교복귀, 사회진입은 취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임

- 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추진하는 건강검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이나 실집행을 개선이 더디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실집행률 ('17)68.2% → ('18)71.7% → ('19)79.1%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유사 중복 사업은 없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16)47,663명 → ('17)50,057명 → ('18)52,539천명 (교육부 교육통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학교밖청소년지원(민간경상) 사업과 내일이룸학교(민간경상)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지자체경상) 실행행률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 필요함.
- 중장기 재정추계에서 10억씩 증가 근거 제시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사업 규모 및 인건비 상승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위기 진단과 관련된 요인 또한 고려하여 추계될 필요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도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선정 관련 절차는 이행되고 있음.
- 지자체 경상 보조 사업은 가내시를 통해 지방비 확보 등의 수요 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신규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 경상 사업(청소년상담 1388,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대해 매년 사업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사업공고, 심사, 정산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간점검이나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시 환수조치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갖추지 않음.
-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으며,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의뢰 및 환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적발이력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장점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제시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위기청소년은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단일한 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적정히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참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수준을 낮추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청소년안전망 통해 발굴)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지역별로 촘촘히 구성하였으나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1388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먼저 연락해야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으므로 1388청소년지원단의 발견과 의뢰기능 강화 필요
- 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에 성과 지표로 서비스 지원 전·후 효과성(청소년 위기 수준의 변화)을 측정하지만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 가족관계, 친구, 학교 등의 분야별 위험수준이 다를 때 적정 서비스 지원 효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 내역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 필요성 2순위인 사업이나, 실행율은 정책 수요와 격차가 있음. 수검 신청인원 중 수검 받는 인원이 50-60% 수준이므로 신청인원이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감축으로 판정함.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청소년기의 건전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인격 형성과 경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활동이 지자체별, 수련시설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예산상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지자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예산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감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의 경우도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여 우수한 기관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과 같은 보조사업 방식은 타당하지 않음. ·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보조금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으로 감축시기를 조정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과 같이 특정 기관에 대한 독점적 의존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이나, 관련 규정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 국가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판단될 수 있음. 아울러 수련시설 종합평가, 안전·위생점검은 여가부장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따라 타당성이 판단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임.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지역별로 자체수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별 여건, 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의 경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는 보여짐.
- 민간 보조사업인 안전·위생점검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소년 활동법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4개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년지도사 배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그 밖의 3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음. 이들 사업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 제공, 활동프로그램, 청년지도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먼저 가장 예산비중이 높은 청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인력의 인건비 50%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특성과 요구, 여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차별화, 특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추가 배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안전·위생점검과 수련시설 종합평가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 등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경우도 이용 청소년 수, 만족도, 안전점검 적합률 등이나 청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수련시설 종합평가, 협회 운영비 지원 등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인과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과 같이 특정 기관에 대한 독점적 의존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 등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의 경우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운영의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사업 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모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과 규모는 적정하지 않으며, 지역별 인프라, 재정자립도,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고 투입이 필요한 지자체, 수련시설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회 등에 대한 민간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100%인 것은 사실상 위탁사업형태와 차이가 없어, 예산 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법상 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 안전·위생점검, 종합평가 등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다 종합평가사업은 2019년 이후 일반 용역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안전점검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일반 용역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법」 제6조1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목적 사업으로 안전·위생점검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본 사업과 같은 보조사업의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 보다는 위탁용역을 통해 적절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그간의 사업 집행만을 고려하는 경우 주요 사업단계별 추진 현황관리 등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결과 환류 등의 노력은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줌.
- 정보 공시의 경우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청소년사업 안내 등에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이 정해져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부정수급 관련 규정을 포함한 교부조건이 통지되고 있음.
- 특히 각 사업 단계별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결과 환류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과의 부합 여부 등 사업 통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20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제외한 4개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추가 고용에 대한 국가 보조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시됨.
- 청소년기에 건전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인격 형성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어른 세대의 책무이자 국가와 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일 것임.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청소년시설의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임.
- 사업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여건과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의 고용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사업의 형태보다는 지자체의 독자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보조금 사업은 현행 예산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감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감축시기는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 2022년으로 판정함.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의 경우도 전액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보조사업 보다는 현재 보조사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을 통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성과를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사업에서 위탁 용역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감축하도록 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청소년기의 건전한 활동 참여를 통한 인격 형성과 경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의 내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운영하도록 2022년부터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아울러 안전·위생점검사업과 같이 법상 국가의 의무인 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 보조사업이 아닌 공개 경쟁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관리 지표 개선을 통해 보조금 사업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 지표 개발이 필요함(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 등의 개설 실적, 참여 실적 등의 지표화)
-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지역간 불균형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가출 청소년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학업 및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내역사업으로 포함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퇴소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자립율은 33.2%로 매년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출 상태에서 사회적 안전망 외부에 고립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가정복귀나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이라는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또한 법적 근거가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32조 1항, 34조 2항, 40조 >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운영 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국정 과제 53-2)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적시지원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함 영역임.

※ 단, 세부사업보다 내역사업에 개념상 상위의 사업이 배치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및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 사업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가정 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쉼터 사업에 대해서는 퇴소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율(%)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가정복귀(귀가, 기숙학교 연계) 또는 자립(창업, 취업 등)한 청소년은 33.2%이며, 66.8%는 쉼터에 계속 머무르거나 타시설로 연계 또는 군입대 등의 사유로 퇴소함.
- 특히, 일정 기간(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하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단기·중장기 쉼터 청소년의 ‘가정복귀·자립률’은 41.1% 수준임.
- ※ 가정복귀는 귀가, 기숙형 대안학교 연계 등, 자립은 취·창업, 직업훈련, 인턴 등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공간 제공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유사 중복 가능성이 낮으며, 공공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음.
- 가출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고 가출 등 위기 청소년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함.
- ※ 가출청소년(명) : ('16)21,852명→('17)22,354명 → ('18)24,384명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실집행률이 95%를 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 없이 보조율 50%로 운영하고 있음. 일반적인 노유자시설 보조율과 유사한 수준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특히 가출 청소년 및 범죄위험 청소년 등에게 상담·보호·학업지원·취업지원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및 건강한 성장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직접적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도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선정 관련 절차는 이행되고 있음.
 -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2020 단년사업)은 신규기관 선정 시 선정 심사 추진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함.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정 위탁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의 ①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위탁운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의 정책과 사업 개발, 인력양성, 지도·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제를 개정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지원사업 관련업무’를 추가함(‘17.12.2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이 국고보조금 집행과 정산, 반환 업무의 큰 틀은 제시하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음. 청소년 사업 안내 이외의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 관리함.
 - *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17.2.4.)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규정을 병행하여 준용함.
- 국고보조금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 규정,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의무 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또한 없으며,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상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과정 관리함. 현장점검 및 정산과정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3년 주기로 쉼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 관리 노력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단계별로 지원함. 퇴소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자립율은 33.2%로 매년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출 상태에서 사회적 안전망 외부에 고립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 필요함. 또한,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사업에 대한 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가정복귀나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보다 심도있는 상담과 연계를 통해 비행·범죄 노출 여지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필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참여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4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감축과 사업 방식 변경.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유사중복 사업이 없으며 청소년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하지만, 청소년 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사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감소시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등 청소년 참여 지원에 기여도가 낮은 일회성 행사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감축하여 사업 구성 정비함. ·법정 단체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운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입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경비지원 비율 합리적 조정 필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역량 강화 목표에 조응하는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각각의 내역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2조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시행령 제17호.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내역사업인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사업 이외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은 없으나,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은 청소년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은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 행사 및 6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년의 날 기념행사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 참여 지원을 도모하는 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음.
- 동 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만족도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만족도로 구성된 ‘청소년참여활동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참여자들의 ‘활동 만족도’가 목표치를 상회했으나, 사업 참여 만족도에 민주시민 육성이라든지 참여의 효능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없음.
-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거나 청소년 활동을 다각화한다거나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등의 상위 사업 목표 달성에 등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4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특별회의는 15년간(2005~2019) 520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461개(88.6%)의 정책과제가 정부부처에 수용되어 추진되고 있음. 청소년 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급식지원 사업 등임.
- 청소년특별회의 이외의 청소년참여기구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189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305개소) 운영 성과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음.
-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들 모두가 상위 정책목표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 기회와 체험기회 제공”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 높지 않음. 하지만, 청소년참여지원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의 행사 추진 필요성 재검토 필요함. 민간 자생적 네트워크인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의 인건비,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비용 지원 필요성 또한 재검토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자체경상 사업은 지원 비용 대비 관리 등의 행정비용 과다하게 소요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내역사업의 하나인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은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실현을 통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에 직접적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자 선정의 제도화 수준 낮으나, 선정 관련 절차는 이행되고 있음.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은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는 추진하였음.
-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및 청소년의 달 기념식, 성년의 날 주관기관, 지도자대회 주관기관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등이 적용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함.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미집행분에 대해 반납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으나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조항을 명시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 감사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사업관리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은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기획·홍보단계부터 운영·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과정을 청소년이 직접 추진하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두 사업을 통해 ‘인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전‘ 등의 청소년 의제가 정책화되었고 체험활동, 멘토 특강,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동아리경진대회 등 각종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하지만, 청소년 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과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감소됨.
- 별도의 사업 관리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 간의 지역 연계성 강화와 청소년참여포털을 통한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들이 수용자 친화적 정책을 생산하는 경험과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화 탐구 기회, 전문가 및 행정 관리자와 소통 기회, 체계적인 협의 프로그램 활성화 요청됨. 더불어, 청소년특별회의 뿐만 아니라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성과를 포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요청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7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정서·행동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위험 지수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으나 수혜자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요구가 높은 우선 관심군 청소년보다 일반 관심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 사업 대상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개선이 요청됨. ·산간오지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외한 단기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확대 필요. 우선관리군 청소년과 쉼터와 그룹홈 거주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을 우선 선발 필요. 사회적 배려계층을 예외로 하고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도 자부담 부여하여 장기과정 프로그램 참여자와 형평성 갖출 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의 ①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자 위탁할 수 있으나 매년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위탁기간 선정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을 위해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또한 법적 근거가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32조 1항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35조 >

제35조(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쉼터 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서·행동문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생활·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단위사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프로그램사업)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국정과제 53)에 기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난 3년간 입교청소년 심리 검사 시 위험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에게 1~4개월여 간 전문 기숙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정도(위험지수)를 개선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음. 수료후에도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 등이 지속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함.

※ 사후관리 실태조사(2016년, 2019년, 총 127명(수료생 62명, 보호자 65명)를 실시. 수료후에도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 등 치료재활센터 운영 사업의 효과성이 지속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우울·불안·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형 정신건강 치료·재활서비스(상담+치료+활동+교육) 사업으로서 유사·중복 재정사업 없음. '우선관리군'학생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필요성 높음.

※ 2018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 177만899명 중 4.9%인 8만7천333명이 '관심군'으로 분류. 관심군 중 '우선관리군'학생의 비율은 67.9%(5만9천320명)로 자살 생각이 중증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된 학생도 2만3천324명 수준

- 하지만, 장기 과정 프로그램 수혜자는 년 180명 수준으로 장기과정 수료생은 전체 의 20% 수준임. 그 밖에는 단기과정으로 4박5일 힐링캠프(19회), 사후관리 캠프(9회) 참여자들로 '우선관리군' 이외의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 단기과정은 학교별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또래상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청소년(참가인원의 30% 이내)을 함께 참여시킴.

(단위 : 명, 가정)

구분		합계	수료인원					비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189	932	1,037	1,070	1,059	1,091	
장기	소계	838	165	164	168	170	171	
	오름과정	281	56	54	56	58	57	1개월
	디딤과정	557	109	110	112	112	114	4개월
단기	힐링캠프	4,351	767	873	902	889	920	1주 내외
보호자 교육		3,318	482	637	675	718	806	
패밀리 멘토 가정		169		44	35	40	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의 경상경비(주로 인건비) 비율이 높지만 상담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민간 경상 사업으로 100% 보조하고 있음.
-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은 타당하지만 동 사업은 ‘우선관리군’학생 이외에도 (학교단위로 추진하는)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단기과정은 혼합반의 성격을 갖는 바 참가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장기과정은 참가비 있음(일반가정 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참가비 면제)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전체 수혜자 규모에서 배려계층 청소년 비율은 크지 않아 사회적 가치 실현 인정 어려움.
- 장기과정(‘12~19년) 수료인원 1,172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 528명 (45.1%)이며, 최근 3년 동안 장기과정 지원 실적이 감소되고 있음(‘17년 71명→ ‘18년 70명→ ‘19년 54명)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현 보조사업자의 위탁기간은 2016~2021(5년간)이며,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되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의 ①의 예외사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선정은 적정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의 ①의 예외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때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항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청소년 사업 안내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준하는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관련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집행 점검, 정보공시 등은 제도화된 규정 없이 관리되고 있음.
- 정보 공시는 이루어짐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리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사업 안내(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부정수급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위원회 규정 등이 부재하여 보조금 교부 시 부정수급 방지 교부조건 통보 이외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및 부정수급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사업관리 노력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하며 우선 관심군(자살위험 등 긴급조치를 요하는 학생) 청소년 대상 장기과정과 관심군 청소년 및 또래 멘토 활동을 할 청소년을 단기과정으로 정서·행동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위험지수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요구가 높은 우선 관심군 청소년보다 일반 관심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 사업 대상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개선이 요청됨.
- 또한, 참여 청소년의 자부담이 있는 장기과정에 비해 단기과정은 자부담 없이 일반 관심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의 시급성 측면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운영 합리성이 떨어짐.
-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2021(5년간) 보조사업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사업 안내(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의 제도화 수준은 높지 않아 사업 관리의 체계화가 요청됨.

3-2 정책 제언

- 장기숙소(생활시설)와 단기숙소(여럿이 공동으로 쓰는 단순 숙박시설) 규모에 따라서 장기과정과 단기과정 운영 비율이 결정되고 있어 우선 관심군 청소년의 참여가 의도치 않게 제한되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의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어 단기숙소를 사용하면서도 우선관리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요청됨.
- 정서적인 회복 과정은 일정 기간의 시간을 요하므로 단기 과정 운영 운영보다는 중기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 있음. 또한 쉼터와 그룹홈 청소년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본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 및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현재 지원대상이 매년 동일하게 추계되고 있어 청소년 인구의 감소 비율, 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확대 비율 등을 반영한 재정 추계가 요구됨. 또한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의 경우 학습과 관련한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요조사를 통해 학습비 지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제시된 성과지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수(명)는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 청소년한부모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사업의 근원적 목적과 관련된 추가 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7조에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각 내역사업 역시 동법에 근거하고 있음
- * 아동양육비: 제12조제1항, 검정고시학습비: 제17조의2, 자립촉진수당: 제17조의4, 미혼모 초기지원: 제17조의6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사업 목적이 뚜렷함
 -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 지원은 입양 등의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관련 비용 지원은 복지 급여의 성격으로 정부의 지원이 타당함
 - 국정과제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양육 부담 경감'에 해당하며, 국정과제에 따라 '19년부터 아동양육비가 확대되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4가지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청소년한부모로 한정되는 반면 미혼모 초기지원 사업의 경우 연령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단, 출산양육지원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부를 우선 지원함)
- 이런 점에서 미혼모 초기지원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연계성이 낮다고 보여짐. 그러나 실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한부모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역사업의 구성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됨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연령기준) 부 또는 모 24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연간 1인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미혼모 초기지원	미혼모부가구 - 출산양육지원의 경우 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우선적으로 지원	출산양육지원(병원비, 양육용품) 상담, 교육문화프로그램 친자검사비

- 제시된 성과지표(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수(명))는 사업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함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 지원과 자립 지원에 있음. 미혼모 초기지원 사업이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대표하지는 못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부모가족 양육비등 지원’ 사업과 사업 내용(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및 사업 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 일정 부분 유사함
 - 그러나 이러한 유사·중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두 사업이 분리·진행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두 사업의 아동양육비는 상계처리하여 월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의 유사성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생활지원과 연 200만원 내외의 건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월 15만원 이내의 수업료와 월 30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준비 비용이 지원되고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의 중복 수혜가 일정 부분 우려되지만,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재학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출산을 동반한 해당 연령의 청소년한부모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검정고시학습비의 실행행률은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내역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로 '17년 이후 수혜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 * '17년: 2,754명 → '18년: 2,680명 → '19년: 2,549명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내역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은 서울 50%, 지방 80%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혼모 초기지원은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있음. 내역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복지급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의 실집행률이 낮음. 전체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리 노력(예: 지침변경,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은 인정되나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추가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사업대상자인 청소년한부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20년 사업지침변경으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등의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청소년한부모의 규모 감소를 이유로 사전에 예산 감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원대상자가 매년 동일하게 추계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만, 청소년한부모라는 사업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이 인정됨

<연도별 지원대상 인원(추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대상	2,200	2,200	2,200	2,200	2,20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⑤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모니터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관계 자격정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체적발을 통해 지난 3년간(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 2,02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징수가 결정됨
 -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미구성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점검의 성과가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단, 지원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에 대해서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수(명))는 적정하지 못함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 지원과 자립 지원에 있음. 미혼모 초기 지원 사업이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대표하지는 못함
 - 대체지표 혹은 추가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 내역사업 검정고시학습비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학습과 관련한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반영하여 학습비 지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여성가족부
사업명	청소년 활동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청소년활동 지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타당성이 있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으며, 상호 연계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은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통해서 동아리 운영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질관리 내실화 추진할 필요 있음. 또한,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등) 중앙지원기관이라는 실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 개선과 적정 사업관리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외의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② 청소년동아리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지원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타당성이 있으며, 국정과제 역시 청소년 활동 내실화를 포함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프로그램개발(공모사업), 자기 주도적 참여(동아리), 동아리 활동 운영 관리(네트워킹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정해진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단위 사업 수준에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임에도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지표 보완 필요함.



-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자 만족도와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인원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두 지표 모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사업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부족함.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증가나 만족도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증대를 측정하기 어려움으로 활동에 대한 질 평가 체계화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전국의 2,500개 동아리가 126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수혜자 범위가 광범위한 사업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 사업별 경상경비가 산정되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평가는 어려우나, 실집행률이 90%이상임.
- 청소년동아리 1개 당 12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음.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은 없으며,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은 국고 40%, 민간경상보조 100% 비율로 보조되고 있어 국고보조율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 삽입 등 장애청소년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나 장애 청소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도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선정 관련 절차는 이행되고 있음.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사업은 예산에 계상 신청된 17개 시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제반환경, 정책수요 및 방향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증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민간경상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함. 청소년 사업안내에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사업 회계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침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적발된 경우 향후 3년간 어울림마당 운영 주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공고문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제외·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17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운영기관 관련 업무상 횡령 확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리(미교부액 4,800천원)한 사례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청소년 활동 지원의 근거가 있고,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간 연관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지원한다는 사업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지표 보완 필요함.
-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으나, 적정 재정지원 규모 산출의 합리성이 다소 떨어짐.

3-2 정책 제언

- 보조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내역사업인 청소년활동 네트워킹 지원은 청소년활동(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등)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 역할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내역사업명으로 변경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여성가족부
사 업 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8.8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 방식 변경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동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 여성 상담과 보호를 위한 유일한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내역 사업 들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으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프로그램 질 관리 필요함. ·동 사업은 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피해자의 인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 지표 마련 및 관리 필요함. 또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보강할 필요 있으며, 사업 효과 높일 수 있도록 내역사업(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합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으나, 북한이탈여성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①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국정과제 66)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복적인 내용의 내역 사업 간 통합*을 통해 사업 내실화 필요함. 사업의 규모는 예산 대비 합리적임.
 -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과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인권통합교육을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임.
- 성과지표가 지원기관의 지원 실적 건수와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 지표를 새로 설정하였으나 성과 지표와 목표 모두 개선이 필요함.
 - 상담, 보호 및 시설 연계 등 서비스 지원 건수는 사업의 효과성이라기보다는 투입량이며, 사업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인권 보호를 증진시켰다는 척도로는 미비함. 또한, 2019년 성과목표인 70,717건은 최근 사업 실적보다 낮은 수준임.



<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현황

('19.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연 도	지원건수	구분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 지원	수사·법적 지원	직업훈련교육	자립	자립·사후 관리	출국	가해자	동반아동 지원
2017	58,964	쉼터	14,416	12,794	8,109	2,955		2,728		78	1,072	10,168
		그룹홈	521	99	174	51		80				378
		자활센터			388	29	170	2,650	51			2,053
2018	86,467	쉼터	17,164	22,092	10,777	3,606		7,113		79	1,111	15,710
		그룹홈	958	860	225	70		137				730
		자활센터			351	48	347	2,712	608			1,769
2019	81,477	쉼터	18,803	16,146	10,572	3,490		3,839		77	905	15,142
		그룹홈	1,499	1,269	208	423		194				2,689
		자활센터			464	57	350	2,628	729			1,993

-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로 피해자가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적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 입증 필요함

- 북한이탈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 설정 또는 해당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 지표 설정 필요함. 현재로서는 적절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중복되는 재정사업은 없음.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내국인 폭력 피해자와 언어, 법률 구조 등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 사업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경상경비 비중이 높으나, 사업의 특수성 감안할 수 있음.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이나, 통상적인 보조율을 따르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직접적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내역사업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북한이탈여성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침은 예외적으로 선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규)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 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하고 있음.
- 민간 경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함.
※ 2019년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증빙 필요.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 없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 정산 반환, 정보공시 등을 활용하여 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교부조건에 부정수급에 따른 비용환수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내역사업에 대해서 현장 점검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실행한 것은 아님. 가산점 사항은 아님.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동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과 보호를 위한 유일한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사업을 구성하는 폭력 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과 안전 보강비, 상담소 운영,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 건수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피해자 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 있음. 특히, 성과 지표 개선에는 북한이탈여성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또한 포함할 수 있어야 함.

3-2 정책 제언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 지표 마련 및 관리 필요함.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보강할 필요 있으며, 사업 효과 높일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 필요함.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과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탈북과정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 사업으로 단계별 상담과정 운영으로 사업 내실화 필요



평가요약표

기관명	여성가족부
사업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이 요구되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예상되는 바 부정수급과 관련한 현재의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에 마련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부정수급 심의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성과지표 ‘시설입소자 만족도(점)’는 단일지표로 사업 목적 및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지표 설정 및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1항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3호에 의거,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역사업 시설기능보강,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은 동법에 근거하는 반면 시설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원 사업은 「병역법」에 근거함. 또한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내역사업별로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차이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25조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이 분명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은 전액 시설 운영비로 부담,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자체별 재정상태에 따라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 이에 '19년부터 본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정과제 65: 한부모·미혼모부·조손가족 자녀양육 지원 강화와 차별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해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적은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② 입소자의 복지증진 및 자립을 지원함에 있음. 관련 내역사업은 6개임

내역사업명	보조유형	사업목표
시설기능보강	지자체자본	시설 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을 통해 입소자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및 자립기반 조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자체경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기반 강화
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지자체경상	시설 입소자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자체경상	시설 아이돌보미 무상 파견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시설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지원	지자체경상	시설 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해 인력부족 완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민간경상	민간부문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활성화 지원

- 사업에 따라 보조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6개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비교적 연계성을 가지나 다소 세분화되어 있음
- 제시된 성과지표는 ‘시설입소자 만족도(점)’로 사업 목적 및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만족도 지표는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단일지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 성과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실적치 대비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음
 - 현재의 지표 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지표 설정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국가 보조금의 제공이 타당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낮음
 -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은 불가피함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수요가 인정되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음



(단위: 개소, 명)

구분	직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			
	17년	18년	19년	20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설 기능보강(개소)	53	36	52	60	2,366	1,659	2,700	2,700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명)	1,782	1,708	1,700	1,700	-	-	-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명)	-	-	3,150	3,500	-	-	-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명)	153	157	160	189	12	12	13	16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개소)	6	7	7	7	-	-	-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9년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
 - 보조사업 기준 '17년 1,795백만원, '18년 1,404백만원에서 '19년 5,280백만원, '20년 6,602백만원으로 증대됨
 - '19년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편성 시 아이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한 시설까지 예산 산출에 포함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20년 예산 편성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된 것으로 보임
- 보조율은 내역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 특성별로 적정한 수준임
 - 사업 전체의 실효행률은 '17년 87.9%, '18년 87.5%이며,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매우 높은 실효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설기능보강의 실효행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시설기능보강이 가지는 특수성과 유사 사업의 실효행률과 비교할 때 관리를 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신축 시설에 대해서는 2개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인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및 사업추진의지를 고려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임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대상 공모로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심의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음.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시설기능보강’의 실행행렬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6개의 내역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나 다소 세분화된 경향이 있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내역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간 이질성이 커 단기간에 적절한 통합 기준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특성 상 부정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예상되는 바 부정수급과 관련한 현재의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에 마련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부정수급 심의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성과지표 ‘시설입소자 만족도(점)’는 단일지표로 사업 목적 및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역시 요구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토교통부

PSO보상
광역BRT구축
교통사고예방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환승센터구축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PSO보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에 의한 이윤 손실분을 보상하는 정책의 근거가 구체적 이고 명확함. 그러나, 사업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정량화하는 지표가 미흡함 · '19년 대비 '21년 벽지노선 운영손실의 규모는 중앙선, 경전선 등 준고속 철도개통 등으로 약 7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예산 감축이 타당함 · 노선별로 기본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에 의한 이윤 손실분을 보상하는 정책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 32조에서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 공공목적을 위한 운임·요금 감면, 2. 벽지노선 운영, 3. 특수목적사업 수행 비용으로 본 사업의 추진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함
- 그 외에도, 동법 제 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등에서 공공운임 감면 보상의 근거가 마련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 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① 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과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의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음
 - 단일 내역사업으로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특수목적사업 등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명확함
 -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국민 이용도를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로우대 및 국토균형발전, 국민의 복지 증진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특수목적사업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공운임감면 보상(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새마을호 이하의 운임 할인액),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경북선 등 7개 벽지노선 운영), 국가 특수목적사업 보상(VIP 전용열차 등 특별동차 운영 경비)이라는 세 가지 필수 항목으로 적절하게 구성됨
 - 그러나, '05년 이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초기, 중기, 말기 등 기간별 적정 예산 규모 산정이 부재함
- PSO 대상 노선의 운행률 성과지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가 사업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정량화 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벽지노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제공을 측정하는 지표로 PSO대상 노선의 운행률을 지정하고,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사업 내용은 크게 운임할인, 벽지노선운영, 특별동차운영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성과 지표는 벽지노선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성과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움
- ※ '20년 기준 운임할인, 벽지노선운영, 특별동차운영의 예산은 각각 1679억원, 1810억원, 38억원으로 벽지노선 운영 예산은 전체의 51%에 불과함
- 본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보았을 때, 운임 할인과 벽지노선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철도의 공공 서비스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기초 철도서비스 제공관점에서 벽지노선 선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적절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철도 PSO 보상사업은 본 사업이 유일하여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다른 정책수단을 부재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실 수혜자는 철도공사이고, 철도의 공공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교통약자와 교통벽지에 대한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책무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공공운임 감면규모 증가와 벽지노선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 손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실적행율이 100%이며, 연차별 소요예산은 수요증감 및 물가상승률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음
 - 공공운임 감면 보상을 위해서는 N-3년도의 실적에 열차종별 수요증감률, 비용에 대한 물가상승률, 신규노선 추가 및 공사의 공적부담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벽지노선 경영손실액 보상을 위해서는 N-3년도의 노선별 손실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수요증감 및 공사의 경영효율화 유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다만, '19년 대비 '21년 벽지노선 운영손실의 규모는 중앙선, 경전선 등 준고속 철도개통 등으로 약 7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일정수준 예산 감축이 타당함
 - 기존의 운영손실 규모 대신 낙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등 교통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대구선과 동해남부선이 빠지고 새롭게 중앙선(원주~경주)과 장항선(신창~익산) 구간이 포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운임을 감면하여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여 본 사업의 당연사업자임이 인정됨
- 매년 해당 철도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매년 PSO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점검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매년 회계검증을 거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발생이자 반환 조치 등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법령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공모 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특수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음
- '17년의 경우 교부금 일시 집행(총예산의 90%)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통보되었으나, '18년, '19년은 매월 집행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운용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공동으로 '18년 부정승차 1,900여 건을 적발하는 등, PSO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확인되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 모색이 시급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과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의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음
- 그러나, '19년 대비 '21년 벽지노선 운영손실의 규모는 중앙선, 경전선 등 준고속 철도개통 등으로 약 7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일정수준 예산 감축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기본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벽지노선 선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노선 단위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차서비스 단위 철도 PSO 보상방식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권고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광역BRT 구축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BRT 종합계획(10년 단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년단위)’ 등 중기계획 하에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광역단체간 협의를 통한 사업방식 조정으로 2018년 사업을 미추진함 - 예산 실행률은 2017년 100%, 2018년 0%, 2019년 100% 수준임 ※ 2018년 수원-구로 광역BRT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함 · 차년도 내역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과정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설계 종료 이후 사업방식 구체화,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완료한 이후의 사업예산을 반영할 것을 권장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관련한 보조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본 보조사업은 국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BRT 종합계획(10년 단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년단위)’ 등 중기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선정되며, 사업기간 및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BRT노선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중기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
- 단, 보조사업 사업규모를 계획함에 있어서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내부 심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도시BRT 공정률’과 ‘BRT 이용자 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본 보조사업으로 수행된 BRT 노선에 대한 실적위주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중 도시BRT 공정률은 당해연도의 BRT 노선에 대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BRT 이용자 수는 본 보조사업으로 이전연도에 수행된 노선에 한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BRT 공정률의 성과목표 값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2017년, 2018년 성과 달성률이 저조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도시BRT공정률 (세부사업)	단위사업	목표	60	30.6	16.9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실적	50.8	5.2	16.9	
		달성도	84.7	16.9	100	
BRT 이용자 수 (내역사업)	단위사업	목표	신규	2,500	3,000	BRT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실적	신규	2,902	-	
		달성도		116	-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며, 지자체 도시BRT 확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지자체 도시 BRT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으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해당 BRT노선의 버스 이용객이며, 잠재적 수혜자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일반 국민들이 해당됨
 - 실제로 수도권 BRT 시범사업 및 부산 도시 BRT사업 완료 후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증가, 통행속도 증가 등의 가시적 효과가 있음
 - 경기 하남 ~ 서울 천호 : BRT 평균통행속도 9.3% 증가, 버스 이용객수 23.5% 증가 등
 - 인천 청라 ~ 서울 강서 : BRT 평균통행속도 14.3% 증가, 통행시간 단축(4.4~8.9분)
 - 부산 내성 ~ 부산 송정 : 통행속도 증가(버스 20%, 승용차 4%, 대중교통분담율 증가 2%)
- 점진적으로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탄소배출량 감소와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효과도 기대되며, BRT사업 폐지 혹은 축소 시 대도시권 교통난 가중화에 따른 재정적, 사회적 비용 손실이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확하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음
- 도시 BRT의 평균 건설비는 32억원/km 수준으로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및 차량구입비를 포함하고 토지수용비를 제외하여 산출하고 있음(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2018. 6. 국토교통부) 참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기준보조율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예산실집행률이 2018년 0%, 2019년 100% 수준임
 - * 2018년 수원-구로 광역BRT사업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전액 불용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종료 후 사업방식 구체화,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완료한 이후의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이 있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음
 - * 광역교통시설 등 구축 보조사업 세부집행지침 제9조(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철저)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율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본 보조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년단위)’ 및 ‘BRT 종합계획(10년단위)’ 등을 통한 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2018년 내역사업이 전액 불용됨에 따라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부정수급 자체 적발건수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BRT 종합계획(10년 단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년단위)’ 등 중기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이 요구됨
- 광역단체간 협의를 통한 사업방식 조정으로 2018년 사업을 미추진함
 - 예산 실행행률은 2017년 100%, 2018년 0%, 2019년 100% 수준임
 - ※ 2018년 수원-구로 광역BRT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전액 불용함

3-2 정책 제언

- 차년도 내역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 과정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설계 종료 이후 사업방식 구체화,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완료한 이후의 사업예산을 반영할 것을 권장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교통사고 예방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4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2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보조) 20년 사업 수행 후 계획 종료 예정(내역사업 단계적 폐지(20년 말)) -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보조) 감축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지원) 감축 · 본 보조사업 추진을 체계적인 기획 및 운영이 미흡함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로, 주변환경 변화 및 사업주체 간 갈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대응이 미흡함 · 본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46.8%, 2019년 65.3%,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보조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31.7%, 2019년 56.9%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의 적정규모 산정이 미흡함 · 지자체 보조 수요조사를 통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내역사업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7,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주재) 및 ‘사업용 차량 줄임운전 방지대책’(17.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사업용차량에 대한 장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1항4호, 7호에 따라 낡은차량의 대체(代替),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은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 교통안전의 원활한 시책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 본 보조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단위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며, 사업용차량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경감, 줄임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등 국가정책과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교통사고 예방지원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등 필요한 내역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기간 및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46.8%, 2019년 65.3%,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31.7%, 2019년 56.9%로 매우 저조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수요 감소 등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적정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미흡하며, 국회 지적사항(보조 폐지)에 따라 매년 10% 수준의 예산 감축이 진행되고 있음
- 보조사업 사업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행 실적에 제고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피해상담실적(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은 장착대상 차량수 대비 누적 장착대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2018년에는 성과지표가 관리되지 않고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	내역사업	목표	-	-	13	당해연도 장착대수/장착대상 대수
		실적	-	-	12.27	당해연도 장착대수(870)/장착대상 대수(7,092)
		달성도	-	-	94.4%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피해상담실적(건)	내역사업	목표	11,395	11,661	11,925	해당연도 교통사고피해상담실적/ 해당연도 목표건수*100
		실적	11,014	13,257	13,300	
		달성도	96.6%	114%	112%	

- 정책목표인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달성은 교통사고 시 사망자 현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사업의 지원대상인 사업용차량의 사망자수가 '18년(218명)→ '19년(186명)로 감소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연도	사업내용	목표	목표집행액	실제집행액	목표설정 근거
'18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1,700대	2,125	675	수요조사
'19	"	1,400대	1,750	1,028	수요조사
'20	"	1,192대	1,490	-	수요조사
'21	"	1,400대	1,750	-	수요조사
'22	"	1,400대	1,750	-	수요조사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와의 관련성이 높으나, 내역사업별 추진실적이 저조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의 내역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으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내역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사업용차량 운송사업자이고 간접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해당되는데, 보조사업 시행으로 졸음운전 등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되어 대형차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내역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버스운송사업자이고 간접수혜자는 버스 이용자가 해당되는데, 보조사업 시행으로 졸음운전 등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되어 이용자는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의 직접수혜자는 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체험 교육과 교통사고 피해상담을 받은 사람들이며, 간접수혜자는 본 협회 및 산하 지회들의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교통사고 전곡순례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경상경비가 사업비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등 실제 사업예산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
- 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는 대당 50만원(기준보조율 40%),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는 대당 500만원(기준보조율 25%)으로 설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음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율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 추진을 체계적인 기획 및 운영이 미흡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높은 수준의 감축’이 요구됨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2020년 사업 수행 후 종료 예정임(내역사업 단계적 폐지(20년 말))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감축이 요구됨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은 감축이 요구됨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로, 주변환경 변화 및 사업주체 간 갈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대응이 미흡함
- 본 보조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46.8%, 2019년 65.3%,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31.7%, 2019년 56.9%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규모 산정이 미흡함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은 고속버스 보조와 관련한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 노력이 미흡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계획 조정이 미흡함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은 보조 예산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자료가 미흡함

3-2 정책 제언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변화를 감안한 지자체 수요 재조사 및 연차별 사업계획 재수립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 및 예산 실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과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노후공공주택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3.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5.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동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민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 보장과 연계하여 국가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성과지표 등이 포괄적으로 성과 관리하기보다는 개별 지표 관리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과지표는 적절함 - 실집행률에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방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과 집행 규정이 자체 규정이 마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도 적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2 >

- ② 본 계획(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없는 단일 사업임
- 동 보조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통한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와 단지 슬럼화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대통령 공약, 계획사업, 국정과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고사업으로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의 운영이 적절함
 - 법정 기본계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한 세부내역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 적절함
 - 불용액 발생 사유가 추경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언급하였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불용액 발생함. 추계 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하고자 함
- 성과평가는 3개 영역으로 2개 성과지표는 적절함
 - 성과지표는 세부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세부 영역별로 성과 제시 단위나 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해서 현재의 지표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19년 성과지표는 연도별 목표지표는 기본계획 5개년간 물량계획에 따른 총수혜세대 대비 연도별 계획 수혜세대수 비율로 산정하여 적절함(아래는 수혜대상자 선정근거임)

$$\text{시설개선사업 수혜세대수율(\%)} \text{ (물량지표)} = \frac{\text{해당연도 계획 수혜세대수}}{\text{기본계획 5개년간 총수혜세대수}} \times 1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확인되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및 2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선정하고 있어 수혜자 및 수혜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확인함(표 참조)

< 수혜 세대 현황 >

‘2016	영구·50년 임대주택 203개 단지 18.5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7	영구·50년 임대주택 213개 단지 20.1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8	영구·50년 임대주택 234개 단지 24.5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9	영구·50년 임대주택 231개 단지 24.7만호 노후시설 개선

- 2017년도 20.1만호, 2018년도 24.5만호, 2019년도 24.7만호의 노후시설을 개선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혜 범위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계획을 통해서 잠재 수혜자가 확대됨을 알 수 있어 국가보조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규모는 앞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되고 실제 사업비 예산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 규모가 책정되어 적정함
 - 5년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35개 영역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규모를 선정하여 적정함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중장기 재정소요액 추계는 추계근거와 방법은 기본계획 내용에 5년간의 사업량 및 총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소요액 추계가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향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1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기본계획 상으로 보조사업 선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규정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짐
- 사업계획 수립 전 수요조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 회의를 거쳐 지방비 확보 가능성, 확보 금액 및 일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음
-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이 적절함(표 참조)

<영구·50년 임대주택 경과년수 현황>

(단위 : 세대수)

구분	합계	15년 ~ 20년	20년 ~ 25년	25년 이상
계	309,689 (100.0%)	34,970 (11.3%)	73,847 (23.8%)	200,872 (64.9%)
지자체	143,869 (46.5%)	30,063 (86.0%)	39,555 (53.6%)	74,251 (37.0%)
LH	165,820 (53.5%)	4,907 (14.0%)	34,292 (46.4%)	126,621 (6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집행 적정성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매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에 대한 계획은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및 운영 지침 중 별도의 정산 및 반환, 정보 공시 등 집행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사업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실행행위 제고를 위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전수조사하여 보조금사용 내역 및 불용액, 이월액을 확인하고 불용액 환수 조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 완료 후 실적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 등을 환수한 점을 자체 노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가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대상, 사업효과, 향후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의 대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음
-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직접 수혜자가 명확하고 잠재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의 규정이 자체 규정은 적절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추경예산 집행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은 법적근거는 명확하고, 국민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 보장과 연계하여 국가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나 사업효과성(성과지표, 불용액 일부 발생)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사업내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역사업화 할 수 없고, 세분화하게 된다면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세부 내역사업 없이 단일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사업내용이 방대함으로 이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성과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건설·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법 >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동 보조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내역사업 세분화하지 않았으나 내역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낮출 수 있어 현재의 구성이 적절함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을 세분화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본 사업대상인 입주계층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하고 있음
(아래 표 참조)

구분		공급계획	입주대상
계		27,830호	무주택 저소득층
일반	다가구	8,500호	- 수급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주거취약계층 유형 포함)
	원룸형	1,000호	
신혼부부	신혼 I	4,530호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부부
	신혼 II	4,000호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및 혼인가구)
	리츠	1,800호	
청년	청년	3,000호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19~39세)
	리모델링 I	1,000호	
	리모델링 II	2,000호	
고령자	리모델링	1,000호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고령자(만65세 이상)
다자녀	다가구	400호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리모델링	100호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기숙사형		500호	- 대학(원)생, 19~39세 이하
아이돌봄시설		80호 (20개소)	- 신혼부부·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일부 공간을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개조하여 임차

- 동 보조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시행자에게 재정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지원 단위사업에 부합되고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서비스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계획사업은 아니지만,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와 연계됨.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 지원을 함으로 주거비용 지출 부담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과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역사업 분리가 사업효율성을 낮출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실제 계층별·유형별 입주 자격, 물량, 지원단가 등을 구분하여 사업집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단 사업내용이 방대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사업 집행 노력을 하였으나 미임대율이 발생하고 있음
- 미임대율 발생은 사업효과성의 미흡함으로 평가될 수 있고 기매입한 임대주택 비용으로 야기되는 손실이 있으므로 사업효율성을 위한 매입수요 및 공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임대주택지원 전체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어 국고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단위사업 내의 타 내역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크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제시하였으나 간접 수혜범위를 예측하고 잠재적 수혜범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수혜자의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였으나(17년도 2,818세대, 18년도 3,498세대, 19년도 5,624세대) 이에 따른 잠재 수혜범위를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여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규모 배분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산출근거가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여 실효성있게 설정함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중장기 재정소요액 추계는 저소득 주거수요, 물가 인상분, 매입주택 단가 변화 등을 근거로 제시함이 적절함
- 현재 제시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적정하게 수리한 것으로 판단됨(표 참조)



< '19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

구분	LH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전북	제주
계	19,716	6,730	350	430	190	150	40	24	200
다가구	6,210	1,500	250	250	40	100	-		150
원룸형	-	1,000	-	-	-	-	-		-
다자녀	400	-	-	-	-	-	-		-
신혼 I	2,250	2,230	50	-	-	-	-		-
신혼 II	2,970	1,000	-	-	30	-	-		-
리츠	1,800	-	-	-	-	-	-		-
청년	1,486	1,000	50	180	120	50	40	24	50
기숙사형	500	-	-	-	-	-	-		-
리모 델링	청년	3,000	-	-	-	-	-		-
	고령자	1,000	-	-	-	-	-		-
	다자녀	100	-	-	-	-	-		-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불안 취약계층에게 생활터전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주거복지를 향상함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1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사업자 선정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공공사업법 시행령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관리 및 기존주택 매입대상 및 기준 등도 업무처리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비 집행 규정이 명확함
- 매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로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의 사업관리 노력으로 집행잔액 반납 조치를 제시하였으나 자체 노력으로 보기 미흡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등의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가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미임대율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집행률의 일부 미흡이 향후 사업효과성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별 미임대율을 고려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 검토가 필요함
- 사업성과에서 직접 수혜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잠재 수혜범위의 확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의 규정이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관리가 적절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미임대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건설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평가 결과, 즉시 폐지로 판정함 · 본 사업은 광역도로 건설의 국가 보조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공성이 높아 추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단, '20년 준공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후 연장의 필요성은 없음 · '20년 준공을 위한 총사업비(국비 30,463백만원)중 잔여사업비 38억원이 모두 기 반영되어 추가적 예산이 불필요함 · '20년 연말까지 적기 종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관련 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본 사업의 목적(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등) 달성을 위해 광역도로 건설의 국가 보조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대전 남부권 개발, 대둔산·수락계곡·뿌리공원 등 관광명소로 인한 통행량 증가 대비해 대전 남부순환도로(안영IC) 기능 극대화 등 광역도로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아 추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대전 산성-구례 광역도로 추진현황 >

- 시 행 자 : 충청남도 금산군
- 구 간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백암리(지635호)
- 규 모 : 연장 1.04km, 폭 19.5m(4차로) 신설
 - * 광역도로 10km 중 1차 사업 8.96km(대전 3.50/ 충남 5.46)는 기 준공
- 사 업 비 : 65,593백만원 (국 30,463 / 지 35,130)
- 사업기간 : 2010. 12. ~ 2020. 1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지자체도로건설지원 프로그램의 광역도로 단위/세부사업 내의 내역중의 하나로 단위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음
 - * 화명동~양산, 대전산성~구례, 초정-화명, 동부간선도로, 감일~초이, 동김해~식만JCT, 광주송정~나주시계, 태릉~구리, 울산신답교~경주시계, 천왕~광명, 다사~왜관, 서대전IC~두계3가, 계룡신도안~대전세동, 인천서구거점도~경기도김포약암리, 원당~태리, 조야~동명



-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광역도로를 개선하여 광역교통 기능 확보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였으며, '98년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명확함
-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제1.2.3차 광역도로 5개년 계획 사업 72건 대비 당해연도까지 준공 누적 비율'과 '통행시간 단축률'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달성률이 98%이상으로 기대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대전~금산간 통행시간 단축 및 기회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가시적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대도시권의 상생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도간 병목현상 발생 등 국민의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단, '20년 준공사업으로 계획된 공정 단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후 연장의 필요성은 없음
- 본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은 50%로 명시되어 있으며(「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를 준수하고 있음

< 국고 보조율 >

구분	18년	19년	20년	보조율 설정근거 및 변동 사유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건설 (시설비)	50%	50%	5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산성-구례 광역도로 사업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5회계연도의 재정 운용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년 준공을 위한 총사업비(국비 30,463백만원)중 잔여사업비 38억원이 모두 기 반영되어 추가적 예산이 불필요함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건설	3,829	-	-	-	-	-	-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광역도로 개설을 통해 대전과 충남지역간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하는 등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에 기여 가능성이 높음

※ 교통개선효과 : 통행속도 15~20% 향상, V/C 20~50% 감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고, 실제 수행하는 사업자를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절함
-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도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시행주체, 사업규모,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있음
- 또한,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통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제정('15.10월)하여 보조사업 관리 강화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목적외 사용 금지, 중요재산 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정산·기타·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명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국고보조 도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관리를 추진한 점이 적절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관련 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본 사업의 목적(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등) 달성을 위해 광역도로 건설의 국가 보조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공성이 높아 추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20년 준공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후 연장의 필요성은 없음

3-2 정책 제언

- '20년 연말까지 적기 종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열차운행 및 철도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근거가 명확함. 그러나, 성과지표가 미흡하고 예산 계획의 근거가 재정비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정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철도시설 분류체계에 따라 노후시설을 구분하고 개선 대상과 예산운영 항목을 명시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단, 본 사업이 포함된 단위사업 성과지표 ‘당해연도 지하철 수송실적’과 ‘지하철 연장 확충’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본 세부사업의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 고유의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도시철도의 노후 시설 별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킨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과, 이에 기반한 성과 측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과 관련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국고 지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 「도시철도법」에서는 정부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 제22조 >

제2조(정의)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정부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열차운행 및 철도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정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가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노후 SOC 안전 강화(국정과제 32번)’를 강조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명료하며, 추진 내용은 기 확정된 분류체계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명확함
 - 지하철 지속 확충을 통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시철도건설) 및 단위사업(지하철건설지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동 세부사업은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량을 통해 철도안전 확보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것으로 연계성이 높음
 - 철도시설 분류체계에 따라 노후시설을 구분(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 6개)하고, 구조물 보강공사와 내구연한 초과시설물 교체작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과 예산 운영 항목이 명확함
- 본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지하철 수송실적’과 ‘지하철 연장 확충’으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임을 감안하여도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본 사업의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부적절함
 - 본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노후 시설 별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킨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과 이에 기반한 성과 측정이 필요함
- 서울, 부산 도시철도는 대규모 교통수단(8백만명/日)으로, 시설 및 열차 장애, 안전사고 대형 재난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어 노후 시설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시철도 시설물을 개량하는 것으로서, 타 유사사업과 지원의 성격이 차별되는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시설물을 적기·집중 개량하여 열차운행 및 이용객 안전 확보하는 것으로, 동일 프로그램 내 유사사업의 경우 인천, 부산, 광주 등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과 상이하여, 중복의 문제는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함
- 서울과 부산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 기 산정한 매칭 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도시철도 노후시설 매칭비율>

구분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공사
서울	100%	30%	35%	35%
부산	100%	50%	50%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최적의 개량투자 시점, 연도별 투자규모 등을 반영한 「도시철도시설 중장기 개량투자계획('18-'22)」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근거가 확실함

<항목별 필요예산>

(단위:억원)

구분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소방시설)	전기	신호제어	정보통신
합계	392	821	5,755	3,132	3,078	1,593

- '20년(929억) 궤도, 신호분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전년 대비 124%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중장기 재정추계 상 '21년 예산은 더욱더 확대되어(1,278억원) 예산 증가 추세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대상에 대한 검토가 권고됨
- 서울과 부산 도시철도 종합성능평가지수는 C등급(보통)이므로, 분야별로 시설 개량이 시급한 D등급 이하 시설물과 이와 연계되는 시설물에 대해 예산규모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예산규모 산정 시 D등급 위주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C등급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급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예산 규모가 조정되어야 함

<연도별 중장기 계획 예산>

(단위:억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634	1,139	1,089	1,180	1,394		5,436
서울시	447	730	632	740	952		
부산시	187	409	457	440	442		



<중장기 재정 추계>

(단위: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929	1,278	852	722	457
서울시			563	823	388	388	388
부산시			366	455	464	334	69

- 사업의 예산 상황이 연도별 중장기 계획 예산과 이미 차이가 있으므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 수정계획에 따라 예산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응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본 사업의 성과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원대상이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도시철도 관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국비 교부에 앞서 자부담 우선 투입 및 정기적 집행관리 등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수시배정 조건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효과 검증 용역 실시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실적(지자체는 매년 3월까지 실적보고) 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부, 서울·부산시, 교통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활동(분기)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적절함
- 본 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과리를 위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집행실적 점검 및 관리를 시행 중임
- 그러나, 예산을 매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내에 집행되도록 집행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8년 시작된 초기 사업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적발 건수 및 사례, 발생 등이 없으며,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과 심의 위원회를 갖추고 있어 적절함
- 향후 국토부, 지자체 협의체 활동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보조금 주요 점검대상을 점검하며, 집행을 부족시 만회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열차운행 및 철도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근거가 명확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시설 및 열차 장애, 안전사고 대형 재난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한 노후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됨
- 단, 본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지하철 수송실적’과 ‘지하철 연장 확충’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본 사업의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부적절함
 - 현재 제도 상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나, 본 사업의 성과 판단 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야함

3-2 정책 제언

-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 수정계획에 따라 예산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노후 시설 별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킨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과, 이에 기반한 성과 측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국토교통부
사업명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2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본 동서남해안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어 사업의 공공성이 높고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후속공정 지연 사유로 지속적으로 실행행율이 저조하고, 계획수립 시점과 사업추진 시점 간 차이가 있어 그간의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사업은 차년도 예산규모를 감축하고 “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안('20~'30)에 따라 사업체계를 정비 및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동서남해안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해안내륙권발전법」에 근거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 「해안내륙권발전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 제31조 >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해안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됨
- 특히, 「해안내륙권발전법」의 존치기한이 '30년으로 연장되어, 변화된 환경 및 국가차원의 정책을 반영하여 해당 시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남해안권('10.5.), 동해안권('10.12.), 서해안권('10.12.) 발전종합계획('16.6. 변경)에 근거하고 있어 각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며, 나열식 구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 정비를 추진 중으로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단위사업과(초광역개발권시범사업)의 연계성이 높으며, 총 14개의 내역사업*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구성과 추진체계가 직관적임

* 울산진해해양레저클러스터조성, 진도항배후지개발, 고흥우주랜드조성, 거제지세포해양레포츠타운조성, 동해망상웰빙타운조성, 강릉심곡해안단구탐방로조성, 고창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조성, 영덕고래불복합타운조성, 부산그린레일웨이조성, 태안만리포관광거점조성, 남해다이어트보물섬조성, 양양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조성, 설악동재건사업,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 최근 점사업에서 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자원을 융·복합한 경쟁력 있는 전국 8개 권역* 지역계획 수립하고 발전종합 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임은 적절함

* 남해안(시범), 경기남부, 충남, 전북, 전남, 울산·경북, 충북, 강원

- 본 사업의 성과지표(선도사업 공정률과 선도사업 만족도) 목표치의 도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관련 정량지표 발굴이 필요함

- 당초 사업 기간이 '14년~'20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의 공정률 목표치가 '20년 70%로 설정되어 성과지표의 도전성이 낮고, 모든 지표들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목표 수준 재설정이 필요함

※ 부처에서는 '20년 3월 목표치가 80%로 변경되었다고 소명함

- 최근 수행한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실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량 지표 설정이 필요함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당초 계획한 선도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특별법이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20년까지 권역별 선도사업 14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별 산발적인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 특별법의 존치기한이 '30년으로 연장됨(현재 7개 완료, 4개 공사 중)

- 특별법 연장에 따라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관행화된 사업방식 개선과 예산 투입 방지 및 경제적 타당성, 입지 적합성, 정책 부합성 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목적의 유사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활성화기반구축, 의료및웰니스관광육성, MICE산업육성지원,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
공예관광산업육성,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도시관광및산업관광활성화, 관광자원기반조성
해양수산부 : 여촌활력기반구축, 해양관광육성

- 동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지역거주자이며, 2차적으로는 해안권 생태관광 이용자들이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 해안권 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소요 예산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를 적용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율은 동사업의 성격 및 유사사업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도별로 상이('18년 83억, '19년 41억, '20년 74억)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특별법 연장에 따른 중장기적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부재함
 - 계획수립 시점과 사업추진 시점 간 차이가 있어, 그간의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적사항)
-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 사유로 지속적으로 실집행율이 저조('17년 42.5%, '18년 59.3%, '19년 46.3%)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 '19년 누적 실집행율은 97%이나, 이는 사업지연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으로 연도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안가 마을에 웰빙타운, 해양복합타운 등을 조성하여 낙후된 해안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자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서 법적으로 적합하고 사업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중이며, 「해안내륙발전법」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의 행정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조치
- 해안권 발전사업 지원은 낙후된 해안권 지역을 개발하는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보조사업 시행자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법적으로 적합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정한 것은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집행의 적정성이 낮음
- 월별, 분기별 현장점검, 연 2회 집행실적 관련 회의 등을 통해 보조사업대상 지자체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지방비 확보여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집행실적을 매월 말 기준 점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사례가 없으며,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및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를 통하여 각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하고 부적정 집행액은 반납조치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체 국고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이 별도로 제정('15.11.2, 국토교통부 훈령 제605호)되어 보조금 사후 관리를 담보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④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매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집행실적(국비) 결과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독려 조치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하는 등 자체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동서남해안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해안내륙권발전법」에 근거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과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 특히, 당초 유효기간이 '20년이었던 「해안내륙권발전법」의 존치기한이 '30년으로 연장되어, 해당 시점까지 추진동력이 확보되었음
-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당초 계획한 선도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나 특별법이 '3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 사유로 지속적으로 실집행율이 저조('17년 42.5%, '18년 59.3%, '19년 46.3%)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관행화된 사업방식 개선과 예산 투입 방지 및 경제적 타당성, 입지 적합성, 정책 부합성 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3-2 정책 제언

-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예산규모를 일정수준 감축하고 “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안('20~'30)에 따라 사업체계를 정비 및 적정 규모 산정 필요
 - 종합계획 변경을 위해 마련된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안)('19)’의 평가항목 및 지표 예시를 적극 활용하여 내역 사업 간 우선순위, 시급성, 과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수반 될 필요가 있음
 - 선도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 중인 현재 내역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연계·협력형 내역사업을 신설하거나 테마·목적형 추진을 고려하는 등 추진방식의 다변화가 권고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토교통부
사 업 명	환승센터 구축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9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5개년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예산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지자체 환승센터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정확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2019년 예산 실집행률이 84.8% 수준이나 수시배정사업예산(5억원)이 불용됨에 따른 이유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실집행을 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시설에 대하여 보조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제4조의2 제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에 따른 환승시설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 본 보조사업은 주요 환승발생지점에 대중교통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통행 환승시간을 감소시키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과 부합하며,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6~’20년)’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단, 2020년 예산계획 수립 시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태화강역 광역환승센터’ 등은 실시 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 실행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환승센터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이라는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승센터 구축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환승센터 구축지원	세부사업	목표	100	5.7	12.8	(누적 투자액/총사업비) ×100
		실적	99	8.3	22.3	
		달성도	99	100.0	100.0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며, 지자체 도시BRT 확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지자체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으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해당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며, 잠재적 수혜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비용 감소효과를 누리는 국민 전체가 해당됨
 - 환승센터별 연간 이용객 수

구분	직접 수혜자(명)			
	17년	18년	19년	20년
환승센터 구축지원(총계)	2,843,613	235,712	1,215,792	4,371,292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확하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기준보조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에 따른 환승시설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모든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적 근거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음
 - 단, 2019년 보조사업의 예산집행률이 84.8% 수준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함
 - ※ 2017년, 2018년 모두 예산실집행률이 100%이며, 2019년은 수시배정사업인 사상역 환승센터의 예산(5억원)이 불용됨에 따라 예산실집행률이 낮음
- 본 보조사업은 2020년 예산이 200억원을 초과하며, 중기재정소요액이 설정되어 있음
 - 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3차 : 2016~2020)”에 반영,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며, 국토부는 지정 승인된 모든 복합환승센터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기준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다만,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음
 - * 광역교통시설 등 구축 보조사업 세부집행지침 제9조(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철저)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를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의 추진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선정 과정이 체계적이며,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을 위한 관리가 우수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3차 : 2016~2020)’ 수립,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환승센터 내역사업을 선정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6~’20년)’ 하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시 지자체 환승센터사업 실시설계 완료 이후의 정확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2017년, 2018년 예산실집행율은 100%이며, 2019년 예산 실집행률은 84.8% 수준임
 - ※ 2019년 수시배정사업인 사상역 환승센터의 예산이 불용됨

3-2 정책 제언

- 선정된 환승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실시설계 종료) 및 지자체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환승센터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산지유통시설지원
세월호인양및추모사업지원
수산업창업투자지원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연안관리
청년어촌정착지원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해상안전국제협력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사업



평가요약표

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동 보조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훼손되고 오염된 갯벌(328,900㎡)을 복원하고, 갯벌기능(1,570,000㎡)을 개선한 점에서는 높게 평가됨. 또한 해양이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수혜자가 자치단체 주민과 전 국민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정상추진이 타당함 · 사업선정 방식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6조, 7조, 9조, 10조 근거로 승인한 지역에 한해 최종 대상지 선정, 국비 지원, 사전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함에도 실 집행률이 매년 낮음. 이를 해소하고자 '20.1월부터 '갯벌복원사업 토지 수용 갯벌법'이 시행되어,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리강화가 요구됨 · 갯벌복원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추진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며, 전 국민을 포함해 지역주민 및 어업인이 가장 큰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정상추진으로 타당함. 또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형별 갯벌복원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사업 내실화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6조, 「습지보전법」 제17조 및 제22조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해 해양생태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법 2조 갯벌복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 등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 등의 상태로 회복·증진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 이에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 다음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에 본 보조사업 대상인 5곳의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
- * ① 용진군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해수소통시설 설치(320m), ② 서천군 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폐염전(32,900㎡), ③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폐염전(90,000㎡), ④ 보령시 무창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해수소통시설 설치 (150m), ⑤ 고창군 곰소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폐양식장(236,000㎡)
- 동 보조사업 주된 목적은 폐염전·폐양식장·해수단절형 교량 설치 등으로 훼손·방치·오염되어 있는 과거 갯벌지역을 건강한 갯벌로 복원함으로써 해양생태계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목적과도 부합함
- 특히 국정과제 84-6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추진)의 내용과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동 보조사업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해양생물 종다양성 보전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복원지역별로 내역사업을 분류하여,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를 추진 중에 있음. 연차별로 5개 내역사업 추진계획을 달성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지표는 갯벌복원사업 추진율(사업비 집행률)로 설정함. 성과지표 달성도는 ('18년)108%, ('19년)132%로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여 최근 설정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양호함
-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 기본계획 수립·갯벌생태계 조사 → ② 실시계획 수립·갯벌생태계 조사 → ③ 토지보상 → ④ 시설공사·갯벌생태계 조사 → ⑤ 사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순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은 오염되고 훼손으로 방치된 갯벌을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는 것임. 단순 사업 추진율만으로는 건강한 갯벌 복원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복원 측정을 위해서는 사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함.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에 달하며, 갯벌 단위 면적당(1km²) 연간 경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이상인 약 63억 원으로 매우 중요함
- 또한 이외 해수 및 육상 유입수의 오염물질 분해능 가치, 갯벌 및 해양생물, 바닷새 산란장, 보육장으로서 가치, 경관적 가치 등 매우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함
- * 수산물생산(17.5억 원) / 보존가치(17.5억 원) / 서식처 제공(13.6억 원) / 수질정화(6.6억 원) / 재해방지(2.6억 원) / 여가제공(2.5억 원)
- 만약 갯벌복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의 복원 의지 저하는 물론 해수 단절로 갯벌기능 상실과 생태계 파괴 등 갯벌면적 감소 속도의 가속화가 예상됨. 뿐만 아니라 환경·경제·문화까지 피해 확대가 우려될 수 있어 동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타당함
- 우리나라 갯벌면적(2018년 기준)은 2,482km²로 2013년 대비 5.2km² 감소하여 직전 조사결과('08~'13년 2.2km²↓) 대비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오염된 갯벌(328,900m²)과 복원된 갯벌(1,570,000m²)이 전체 갯벌의 1%에도 못 미칠 만큼 적지만, 동 보조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과 가치는 비용 대비 훨씬 크다고 인정됨



<연도별 갯벌 면적 변화 동향>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갯벌면적(km ²)	2,550.2	2489.4	2487.2	2482.0
증감(km ²)	-	-60.8	-2.2	-5.2

-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구분하여 수행함. 이에 동 보조사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에 근거로 추진되어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해양수산부 : 연안습지(갯벌) / 환경부 : 내륙습지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 122 호에 근거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 보조율(70%)을 지원함
 - 매년 보조금 실질집행률이 낮아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는 다소 제한적임. 19년 실질집행률은 최근 3년 간 양호한 86.3%이었으나, 웅진 시모도(70.0%)는 여전히 낮아 귀책 사유 대상임. 이는 전체 집행행률 저하 요인으로 타 지역의 사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해수부는 매년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19.1 갯벌복원 사업의 공익사업 토지 수용 규정을 담은 갯벌법을 제정, 동 법이 '20.1월부터 시행 중임
 - 따라서 동법 제2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는 갯벌복원 사업의 공익사업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부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의 실행 여부와 동 사업의 실질집행률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 연도별 보조금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 백 만원, %

연도	내역사업	지자체						비고
		교부받은 금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	집행률	
2017	태안 근소만 복원	500	0	500	500	0	100.0	
	순천만 복원	1,753	781	2,534	2,212	322	87.3	
	서천 유부도 복원	210		210	30.3	179.7	14.4	
	고창 곰소만 복원	210		210	42	168	20.0	
	서산 고파도 복원	210		210	0	210	0.0	
	웅진시·모도복원	210		210	187	23	89.0	
	연안 및 하구생태계 복원 공동연구							자체사업
	합 계	3,093	781	3,874	2,971.3	902.7	76.7	
2018	태안 근소만	202	0	202	202	0	100.0	
	순천만갯벌	934	322	1,256	630	626	50.2	
	서천유부도	1187	180	1,367	1367	0	100.0	
	고창곰소만	1187	168	1,355	1207	148	89.1	
	서산 고파도	757	210	967	853	114	88.2	
	웅진시모도	1187	23	1,210	0	1,210	0.0	
	연안 및 하구생태계 복원 공동연구							자체사업
	합 계	5,454	903	6,357	4,259	2,098	67	
2019	순천만갯벌	0	625	625	625	0	100.0	
	서천유부도	939	0	939	939	0	100.0	
	고창곰소만	939	141	1,080	1,080	0	100.0	
	서산 고파도	686	114	800	676	124	84.5	
	웅진시모도	1,039	1,209	2,248	1,574	674	70.0	
	보령 무창포	150	0	150	150	0	100.0	
	합 계	3,753	2,089	5,842	5,044	798	86.3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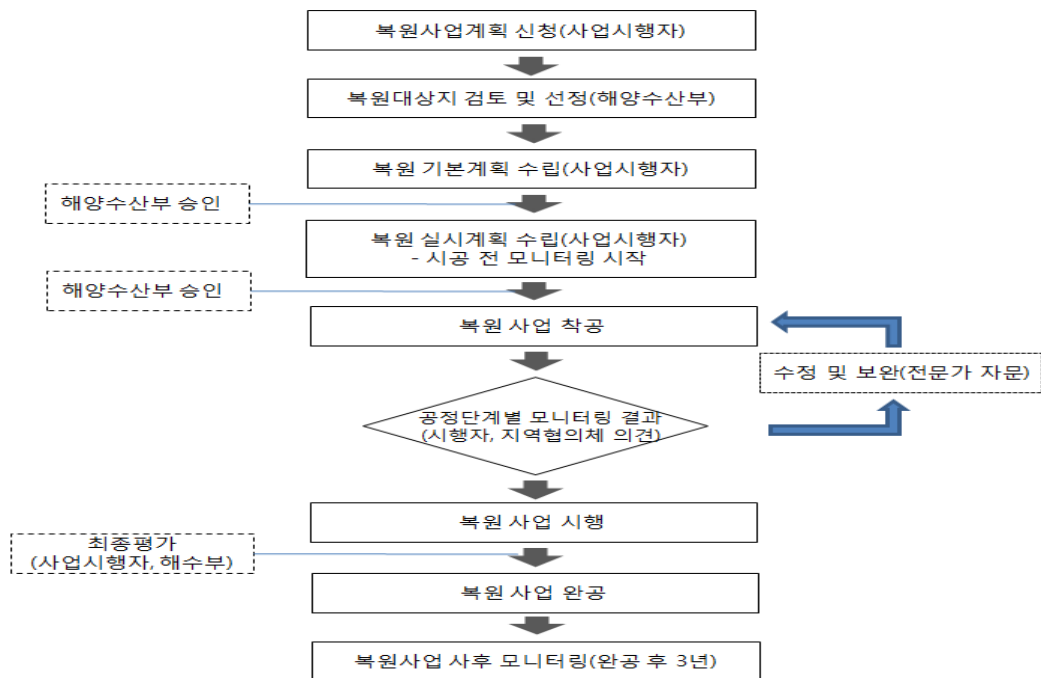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사업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503호)에 따라 선정함
 - 자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적합성, 복원의지, 경제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복원 후보지로 선정,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해수부에서 승인한 지역을 최종 갯벌생태계 복원대상지로 선정함
- ‘17년 보조금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지자체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을 지적함
 - 이에 ‘18년 갯벌복원사업 중기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지 풀(28곳)을 구축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추진의사 있는 지자체에 선 중기계획 수립을 요청했음. 그러나 중기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19년(보령), ‘20년(순천)으로 갯벌복원 자문위원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복원대상 후보지’로 선정함

<갯벌복원 사업추진 절차(지침 제12조)>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됨
- 담당 부처는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을 제정하여,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함
- 보조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함. 개선조치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사업 외 부대사업비(경관개선, 주변 환경정비, 편의시설 설치비 등) 감액 등을 강구할 예정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보조금 반환, 중요 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또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교부 시 해당 내용을 각 내역 사업별로 통보함
- 아울러 보조금사업의 모든 집행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정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함
- 부정수급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실집행률이 낮고 귀책사유가 대부분 토지소유자 민원에 따른 토지보상비 집행 지연으로 결국 보상과 관련된 사례가 대다수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지자체의 제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이외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매년 낮은 점을 보완하기 ‘20.1월부터 시행된 갯벌법 제2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로 갯벌복원 사업의 공익사업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게 됨.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부진 사유인 토지보상비 지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기간 소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또한 갯벌복원사업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503호)을 ‘20년 개정 예정으로 동 지침에 갯벌복원 사업의 진도관리 및 사업관리를 명문화하여 보조금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사업시행('10년) 이후 갯벌복원 1,858,900㎡, 해수 유통(물길 복원) 3,834m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해양생태환경 제공에 상당히 기여하여 사업효과가 인정됨. 동 보조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물론 보조금 지급에 명확한 다수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 본 보조사업은 사업시행('10년) 이후 갯벌복원 1,858,900㎡, 해수 유통(물길 복원) 3,834m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해양생태환경 제공은 물론 특히 해양생태계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세부사업 목적과도 부합함
- 동 보조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에 달하며, 갯벌 단위 면적당(1km²) 연간 경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이상인 약 63억 원으로 매우 중요함. 이외에도 해수 및 육상 유입수의 오염물질 분해능 가치, 갯벌 및 해양생물, 바닷새 산란장, 보육장으로서 가치, 경관적 가치 등 매우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함으로 정상추진이 타당함
 - * 수산물생산(17.5억 원) / 보존가치(17.5억 원) / 서식처 제공(13.6억 원) / 수질정화(6.6억 원) / 재해방지(2.6억 원) / 여가제공(2.5억 원)
- 만약 갯벌복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수 단절로 갯벌기능 상실과 생태계 파괴 등 갯벌면적의 감소 가속화가 예상되며, 환경·경제·문화까지 피해 범위의 확대가 우려되어 동 보조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17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은 인정했지만, 실집행률 저조를 지적하여 사업선정방식을 지자체간 경쟁으로 변경 요청했음. 이에 '18년 갯벌복원사업 중기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지 풀(28곳)을 구축하고, 지자체 간 경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추진의사 있는 지자체에 선 중기계획 수립을 요청했음. 그러나 중기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19년(보령), '20년(순천)으로 갯벌복원 자문위원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복원대상 후보지'로 선정함
- 3년 전보다 실집행률이 개선되었지만, 저조한 이유 대부분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 부진임
- 이에 '19.1 갯벌복원사업의 공익사업 토지 수용 규정을 담은 갯벌법 개정, '20.1월부터 동법 시행으로 개선 여지가 높음. 실집행률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 발생 개연성이 여전히 상존해 방지 대책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며, 현재 복원사업 후보지도 28개소(지자체 : 19개소, 해수부 : 9개소)임.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갯벌관리구역 등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20.1월부터 갯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행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현재 갯벌복원 가치가 상당수 입증된 만큼 복원사업 후보지 중 사업 추진 효과 및 사업 시급성, 갯벌복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또한 사업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형별 갯벌복원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사업 내 실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 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운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이용서비스를 개선함 - 단거리 저임금구간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조정(20→50%), 화물차운임 지원비율 상향조정(20→50%)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2019년 12월) -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도서민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수송실적 감소분을 예산 적정규모 산정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예산 실집행률이 2018년 92.3%, 2019년 94.7% 수준이며, 도서민 수송실적이 2018년 3.61백만명, 2019년 3.56백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 통행수요 및 통행여건 개선 전망 등을 기반으로 보조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이용서비스 개선에 따른 보조예산의 증액과 수송실적 감소에 따른 보조예산의 감축 조정도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해운법」 제44조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함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운임 지원’과 ‘차량운임 지원’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바, 보조사업의 내용이 ‘해운산업 선진화’ 프로그램과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단위사업 간 연관관계가 높음
- 국가적 관점에서의 국토보전 및 균형발전, 국민적 관점에서의 통행기본권 보장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의 운임지원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여객운임 지원’과 ‘차량운임 지원’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2006년부터 수행되어 내역사업의 구성과 사업 수행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 규모는 감축될 필요가 있는 반면,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율의 상향 조정으로 보조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임



- 도서지역 거주주민의 통행여건 및 정주여건 조사를 통하여 여객운임 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도서민 수송실적(명)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도서민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목표달성도가 감소하는 추세임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도서민 수송실적 (천명)	세부사업	목표	3,767	3,767	3,767	도서민 수송실적
		실적	3,716	3,614	3,558	
		달성도(%)	98.6	95.9	94.4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해운산업 선진화 및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에 부합하며, 도서지역 거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항여객선 운임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연륙교 건설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선정된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2019년 12월 개정)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 인구감소, 연륙교 건설 등 여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민 수송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2017년 3.72백만명, 2018년 3.61백만명, 2019년 3.56백만명)하고 있으므로, 도서민 수송실적 전망에 기반한 보조사업 적정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도서민 수송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예산 실효행률이 2018년 92.3%, 2019년 94.7% 수준임



- 내역사업 중 ‘여객운임 지원’의 경우 단거리 저임금구간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조정(20→50%), ‘차량운임 지원’의 경우 화물차운임 지원비율 상향조정(20→50%) 등에 따라, 2020년 보조사업 규모를 증액함
- 본 보조사업의 예산 실행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 통행수요 전망 및 통행여건 개선 전망 등을 기반으로 보조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함
- 도서주민의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해양영토 주권 보호, 도서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잘 준수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갖추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잘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기준 및 정산,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이 잘 수행되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는 해당사항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갖추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정상 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운임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운임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이용서비스를 개선함
 - * 단거리 저임금구간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조정(20→50%), 화물차운임 지원비율 상향조정(20→50%)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2019년 12월)
-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도서민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수송실적 감소분을 보조예산 규모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실집행률이 2018년 92.3%, 2019년 94.7% 수준임
 - 도서민 수송실적이 2017년 3.72백만명, 2018년 3.61백만명, 2019년 3.56백만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 통행수요 및 통행여건 개선 전망 등을 기반으로 보조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도서민의 내항여객선 이용서비스 개선에 따른 예산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반면, 수송실적 감소에 따른 예산규모의 감축도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명	산지유통시설 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은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전 유통 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임.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과 국정과제 사업인 만큼 본 보조사업 필요성은 충분함.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방식 변경(어업, 지역 중심→양식, 품목중심)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수산물은 산지 어획단계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적절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최근 수산식품 소비 중 친환경·윤리, 고품질, 위생·안정을 중시하는 트렌트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제규범, 국가별 규제 및 보호조치 강화, 민간주도 인증 확산 등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나, 우리나라 수산물은 품질·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동 보조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다만 본 보조사업이 '18년부터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3. 시행)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및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에 사업추진 근거 관련 법령이 명확함
- 또한 본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고시 제정을 통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기준」 및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2조 >

제22조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의 주된 목적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임. 대통령 공약사항은 물론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속사업 평가결과, ‘19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보조사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청정위판모델 구축을 통한 산지위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동 보조사업은 필요함. 다만 본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업, 지역중심에서 양식, 품목중심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세부과제 ‘4.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마련’의 핵심과제이며, 84-4에서는 품질위생 제고 및 유통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대를 명시함
- 또한 ‘18년 국무보고에서는 「제1차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18~’22)」수립, ‘19년 경제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에서는 「수산혁신 2030」수립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청정위판장 등 유통인프라 확충 마련 등이 논의됨. 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 수산물은 수분함량이 높고 단순한 근육구조로 인해 다른 식품에 비해 선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수산물 소비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본 보조사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영양관리 강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함
- 국내의 수산물 양륙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은 222개소가 있으며, 이중 30% 이상인 69개소가 20년 초과된 노후화 시설임
- 또한 65%인 144곳에는 선도관리 핵심이자 위생 및 품질관리와 직결되는 냉동·냉장시설이 전무하여,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시설 현대화가 매우 시급함
- 현재 산지위판량 거래량은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함. 산지위판장에서는 주로 대중성 어종(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멸치 등)인 연근해 수산물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82%를 차지함. 이들 대부분이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보조사업 추진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지역지원 균특 지역지원계정 프로그램(수산물유통구조개선) 내 단일 단위사업이며, 산지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유일한 정부 지원사업임. 단일 세부사업인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됨
-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의 TF 구성, 전문가 검증을 위해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함
- 또한 청정위판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우수 위생 위판장 평가·선정 등을 추진함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의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보조사업 예산은 지자체자본으로 국고보조금(40%), 민간 및 지자체 부담(60%)로 추진됨. 동 보조사업은 건축사업으로 환경 영향 평가, 현장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19년 집행액 대비 실집행율이 27.8%에 그쳐,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지속되어야 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산물유통구조 단계(6단계→4단계) 개선에 대한 시정 조치로써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을 통해 기존 유통단계를 축소함
- 그리고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유통경로와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 보조사업 추진 방식을 어업에서 양식수산물로 변경을 제안함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사업 간 유사성이 보이나, 유통시설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 보조율이 상이하여 재정 통폐합은 곤란함
- 본 사업은 소비지시장에 건립되는 유통시설 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며, 산지거점유통센터라는 점임
- 본 사업의 직접보조사업자는 생산자단체인 수협과 어업회사법인이지만, 생산자단체가 산지거점유통센터에 직접 참여·판매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기 유통구조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또한 청정위판모델 구축은 산지 수산물의 고부가치화, 어가소득 향상과 국민식탁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 면에서 보조사업 추진 의의가 큼
- 당초 계획보다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지거점유통센터 4개 소, 청정위판장 1개 소가 추진 중임
- 앞으로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지역중심의 기존 사업방식과 달리 양식 및 품목 중심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 및 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은 「보조금법」시행령 별표 1.122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여 산정함
- 기준 보조율 결정 시, “23. 농산물 유통 개선”의 기준을 고려해 보조율 40%를 설정함.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전국유통망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그러나 '19년에는 군특 세수확보 부족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3,866백 만원-> 68.7%인 2,656백 만원 이월액 발생), 청정위판모델구축 지원사업(1,200백 만원->83.3%인 1,000만 원 이월액 발생)임
- 이러한 실행행위를 저조는 동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동력 저하로 본 사업실적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향후에는 사업 준비 및 집행관리 등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 노력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산지에 시설되는 만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특히 수산물 고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 상품 개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됨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인 기여도는 인정됨
- 그러나 아직 보조사업이 완료 전이고, 참작될 성공 사례가 적어 직접적인 기여 사업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절차는 적정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시행지침」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본 사업의 대상자(지자체,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공동투자법인)로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함
 -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모 및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활용해 3단계(서면·공개발표·현장평가) 평가를 실시함
- '19년 보조사업부터는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동 계획안에 FPC 육성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사업자격이 주어짐
 - 지자체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는 지역 내 수산물 유통시설 역할분담을 통한 유통 효율화 방안, 지역단위 마케팅 지원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설부지 확보(자가 소유 또는 임차 등),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기 재원 확보)이 명확해야 동 보조사업자 선정자격이 주어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을 둠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정산·사후관리까지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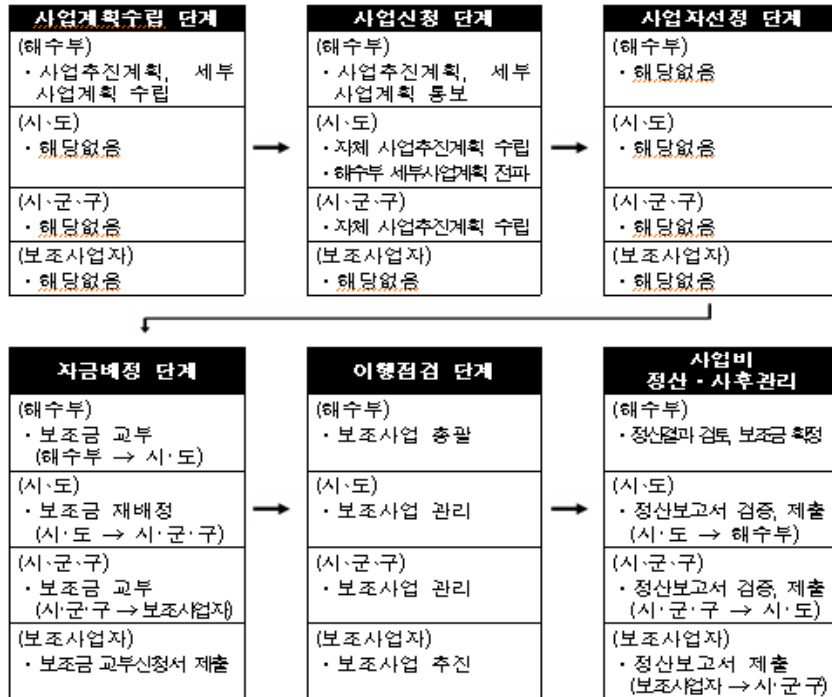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도 해양수산부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히 실시함. 자체 및 외부적발 부정사례는 전혀 없음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월별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조달청 위탁계약, 설계 적정성, 주기적 사업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또한 비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점검함으로써 부정수급 관리를 적절하게 이행 중임



- 그러나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됨

<보조사업 집행 절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법적 근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등 4곳에 명확히 마련됨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청정위판모델구축 사업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 발굴과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전 과정(양륙-선별-위판-배송)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위판장을 조성함
 - 특히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세부과제 '4.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마련'의 핵심과제와도 연계됨
- 동 보조사업은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어업인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양륙, 선별, 위판, 배송 등 유통 전 과정을 위생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산물 산지 유통시설 보조사업임. 이에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어업, 지역중심→양식, 품목중심)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수산식품 소비 중 친환경·윤리, 고품질,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국제규범, 국가별 규제 및 보호조치 강화, 민간주도 인증 확산 등에 따른 대응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물은 품질·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 보조사업은 필히 추진되어야 함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시행령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기준 보조율(40%)을 결정하여 산정함. 그러나 상당수 이월액(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 : 예산의 68.7%인 2,656백 만 원, 청정위판모델구축 지원사업 : 예산의 83.3%인 1,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집행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과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어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행행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양식수산물까지 동 보조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제도권 내 양식수산물의 거래실적 파악으로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과 객관적인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이에 사업방식 변경(어업·지역 중심→양식·품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급선무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세월호 인양 및 추모시설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 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법적근거가 명확함 -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실행행률은 2019년 96.4% 수준임 * 2020년 운영인력 증원으로 예산증액(250→350백만원) : 국회 요구사항 - 19년 ‘4.16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정산 수행(2월말 현재 미완료)중임 ·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4.16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단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바람 - 예산계획 수립 시 이전 연도 내역사업별 실행행률에 기반한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안전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 간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높으며,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등의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4·16 재단 운영지원’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내역사업 모두 법적근거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되어 합리적인
-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건립된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내역사업으로 향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계획’이 의결되어 추진되는 내역사업으로 3년간 계획되어 있음
- 4·16재단 운영 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40조에 따라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4·16재단에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5년간 계획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추진 일정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여부는 2020년 사업부터 수행될 예정으로 있음
- 성과지표로 ‘국고보조금 교부율(%)’, ‘추모시설 공정률(%)’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추모관 방문자 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성 과 지 표	구 분	'16	'17	'18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천추모관, 4·16재단 국고보조금 교부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	○ 측정산식 -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예산 내역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1~'20.12.31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12월	
추모시설 공정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	○ 측정산식 -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x100	예산 내역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1~'20.12.31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1.1월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보조금을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집행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월호피해지원법」 및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세월호 추모사업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 및 4·16 세월호 참사 교훈과 관련된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 외 일반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음
-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통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은 법에 근거하여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은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의 결정(2019.9월)으로 향후 3년간(2020~2022년) 지속 추진하며, ‘4·16재단 운영 지원’은 5년간(2019~2023년) 지원하도록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속 추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관련 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보조율을 적용함
 -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포함된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의 기타(122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18년 예산실집행률 82.7%(불용액 412백만원), 2019년 예산실집행률 98.4%(이월액 26백만원) 수준임
 -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내역사업의 운영인원 증원에 따른 2020년 예산이 증액(250백만원→350백만원)됨
 - 내역사업 중 ‘4·16재단 운영지원’은 인건비 618백만원(14명), 사업비 1,117백만원, 운영비 297백만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 운영목적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부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함
- 2016년 준공·운영되고 있는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경우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방문하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잘 준수하고 있으나,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부재함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사업 신청단계에서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4·16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정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집행, 정산 일원화 및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도 동 사항들을 명기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정상 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법적근거가 명확함
 -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은 2019년 96.4% 수준임
 - * 2020년 운영인력 증원으로 예산증액(250→350백만원) : 국회 요구사항
 - 19년 ‘4.16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정산 수행(2월말 현재 미완료) 중이며, 세부사업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3-2 정책 제언

- ‘4.16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계획 수립 시 이전 연도 내역사업별 실적행률에 기반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지원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른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화 차별화할 필요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창업보육센터-창업컨테스트-사업화자금지원’의 일 반적인 창업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지원 방법론적인 특화도가 크지 않은 편 ·수산업·어촌 지원에 특화된 창업지원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가 낮은 기술사업화 융자는 축소 또는 다른 내역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는 정부가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 보조사업의 내용적 근거가 되고 있음
-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28조의2는 정부가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0조도 정부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동 보조사업과 내용적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용으로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 확산지원을 지향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지원근거로 보기는 무리임.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6조(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 기술과 지식, 경영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모두 동 보조사업과 관련된 추진근거를 선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강행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동 보조사업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과제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핵심 전략인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과 연관되는 과제로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개의 내역사업이 각기 다른 재정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 운영,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를 통한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수산연관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재정지원 방식은 '지역별 창업 투자지원센터'은 지자체경상보조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민간위탁으로,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은 이차보전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19년부터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창업기업수(개수)'와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로 동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15~17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수는 22개로서 예산(국비) 1억원당 0.3개이며, 최근 3년간 동 보조사업을 통한 창업기업수*가 증가추세임.
* ('17) 11개사 → ('18) 33 → ('19) 33
-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수산업 분야의 창업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 동 보조사업의 근거 법령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이 해양수산분야 벤처창업 육성화와 기술사업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동 보조사업의 평가지표는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목표 달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부처 내, 프로그램 내 유사사업은 없으나, 창업성공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유사함.
- 광범위한 대상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와 달리 동 보조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에 특화된 제공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창업보육센터-창업콘테스트-사업화자금지원'의 일반적인 창업지원 방법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과 좀 더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음.



- 해수부의 경우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혁신프로세스와 창업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사업의 성공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발전이 필요함.
- 직접적인 사업수혜 대상은 해양수산 (예비)창업기업 및 기술개발자 등으로 수혜그룹이 명확한 편이며 특정 그룹에 제한되지는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50%~100%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경상보조로 추진되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50%로 나머지는 100%로 추진 중
 - 단,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의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9조가 지원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내역사업명	지원방식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별 창업 투자지원센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민간위탁금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9조
수산업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수협중앙회	이차보전 100	수산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훈령) 제2조

- 동 보조사업의 예산은 지속 증가해 왔으며, ‘18년 불용예산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역 유망기업 성장지원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힘들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자체를 보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 지침(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투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임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 중이며, 기존의 사업자도 연차별로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예산규모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매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을 보조사업자(시·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국민에 공개하고 있음
 - 동 지침서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사업 성과 및 집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통지하고,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리지침 등에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투자지원센터의 경우 수혜기업과 협약체결 시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입상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은 편이며, 우수기술 사업화의 경우에도 인증 기업에 대해 융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인증기관의 기술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과학 기술육성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관련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5년부터 추진되어 왔음
- 동 보조사업은 '창업기업수(개수)'와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사업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편임.
-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창업컨테스트-사업화자금지원'의 일반적인 창업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여타의 창업지원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수산업기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술사업화 융자자금 지원 등의 수요 부족이 우려되는 바 고도화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과의 특화되는 부분은 대상을 제외하고 그리 크지 않은 편임.
- 따라서, 영세·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창업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등 수산업 특화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에 직접 방문, 수산무역엑스포 내 공동관 운영,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들이 방법론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프로그램들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수요가 낮은 기술사업화 융자자금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명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동 보조사업은 추진 근거 법령이 명확하고, '18년 관리시스템 개발 이후 '19년부터 어촌개발사업 관리·평가만으로 구성하여 시스템 운영을 동시 수행함. 특히 동 사업은 3.4억 원 예산으로 보다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속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역 사업에 맞는 지표개발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특히 본 사업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안 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을 관리·평가를 하는 사업임. 이를 통해 전국 농산어촌사업 50%에 해당하는 DB 구축을 하고 있어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큼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활용하기보다 직접적인 동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지원 법적 근거가 「어촌·어항법」 제10조, 제14조, 제49조, 「농어촌정비법」 제75조, 제76조 제108조, 제1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40조, 제41조 등에 명시되어 있음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8년 신규로 시작된 어촌발전 기반조성지원사업임
- 「어촌어항법」 제10조, 제14조, 제49조에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준공 및 시설 목적의 사용 금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필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및 35조의 2제 2항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지 공모 및 선정·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행사업지 이력관리와 사업비 집행점검 등 법률상 업무를 수행함. 그 외에도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및 설명회 개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농어촌산업 육성 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촌개발지원단을 지정·운영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관련 세부 실천과제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달성을 위한 어촌테마마을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전국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기구를 지정·운영하려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8년 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집행관리·성과평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그러나 '18년 관리시스템 개발 이후 '19년부터 '어촌개발사업 관리·평가'만으로 구성하여 시스템 운영을 동시에 수행함
 - 동 보조사업 목적은 특색 있는 어촌발전의 기반조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 지역생활권 활성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 또한 농식품부로 인계 받은 시스템은 사업지구명, 사업시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지원액 표시만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 파악이 불가함
 - 그러나 동 보조사업 시행 후 이력카드(사업개요, 사업비, 조감도, 사업지구 전경, 주요사업 현황, 기대효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사업 효과 및 어촌주민 만족도 제고로 간접 수혜자인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2018년 주요 실적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70~80개 지구 선정·평가, 487개 계속 및 준공 지구 이력카드 작성, 시행 중인 사업지구 집행점검, '20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설명회 개최, 어촌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개발 등임
 - 동 사업 성과지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지 관리 및 평가 지원 만족도'이며, '18년 어촌개발 정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추진함. 당초 목표인 82%를 상회한 87.2%(달성도 106.3%)로 양호했으며, 이에 '20년 성과목표는 이보다 높게 설정함
- 동 사업성과 지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공무원(중앙 및 지자체)으로 동 사업의 직접수혜자인 만큼 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만족도 결과가 높게 도출되는 것이 당연함. 이에 보완책으로 정책지원 효과 및 신규 사업 신청 증가 수, 기여도 등의 추가 성과지표 발굴 등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농림식품부로 '17년부터 이관 받아 농식품부분임재무관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 시·군 포괄보조/650억 원 : 국비 45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연안 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의 관리·평가 사업임



- 이에 동 보조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보조사업은 지자체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절감은 물론 어촌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동 보조사업은 동일 부처 내 유일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으며, 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사업효과 증대가 기대됨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20년 현재 전국 어촌에 487지구가 분포(완료지구 440곳, 예산지원 중인 계속지구 47곳), '20년부터 신규 20개 지구가 추진될 계획임. 이들 사업지에 대한 이력관리, 성과평가, 집행관리 등을 위한 지원기구 운영이 필요함
- 특히 21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대상지 선정, 지자체 사업지 신청(70~80개 소 예상)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 등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 동 보조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만약 동 사업이 중단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기 투자된 시스템 개발비용 5억 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됨
- 또한 70~80개소 신규 사업지 선정 평가, 현재 추진 중인 지구(143개 소)의 집행 관리, 완료된 지구(313개 소)의 이력관리 등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음
- 향후 관리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타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지구 선정평가, 사업 수행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점검·관리, 사업성과 평가 등 국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 중 '122. 기타'에 근거해 집행됨
- 동 보조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어촌개발 사업대상지 선정과 487개 지구 시행상황을 점검·관리하며, 각 지구별 사업내역 등 이력 및 사후 성과관리 등을 위해 5인이 참여함. 이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규모는 적정함
- 보조사업비 편성은 인건비(5인) 127백 만원, 사업비 184백 만원, 일반관리비 29백 만원임. 사업비는 주로 매년 신청되는 70~80개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접수·평가 관리 지원과 487개 지구의 재정집행 점검, 현장점검 등 사업지 모니터링과 사업지 관리카드 작성 등 이력관리, 사후 성과관리 및 분석 등에 사용됨



- 어촌개발사업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은 '18년 신규 사업으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5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나, 8월 초 수시배정 예산으로 승인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실집행률이 58.6%로 저조했음
- 그러나 '19년 국고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4회('19.2.12, 2.20, 10.10, 11.11) 분할하여 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연내('19. 6. 30.) 전액 집행으로 '17년 국회 지적사항 조치는 완료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준하여 어촌개발지원단 선정 평가계획을 수립(어촌어항과-288(2018.1.12.)호)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시스템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선정 공고문을 게시함
- 또한 지원단 운영능력, 참여인력 구성, 운영계획 등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평가와 함께 전문가를 위촉하여 비계량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어촌어항과-720(2018.2.2.)하는 등 적절한 선정절차에 의해 추진됨
- 선정된 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동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승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별도 지침을 재정하여 교부 절차를 마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함. 사업 시행지침의 'Ⅲ-5. 이행점검단계'에 의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확정·통지하며, 부진 사항은 차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
- 동 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부정집행 등에 따른 반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및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보조사업은 시행지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6의 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공시토록 규정함
- 동 보조사업은 추진 중 분기별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실적보고를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적정하게 추진함. '19년 6월 10일 어촌어항과-3289에서는 e-나라도움을 통해 이자발생 분 반납을 완료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관리됨
 - 동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 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함
-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었으며, 동 사업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산하의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8조의 7에 따라 해수부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등을 예방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의 법적 근거로 두며, 지자체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절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어촌개발 사업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임
- 동 보조사업은 3.4억 원으로 매년 예산 대비 200배 가까운 6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 규모의 예산사업(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을 관리함. 만약 동 사업이 중단될 경우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기 투자된 시스템 개발비용 5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됨
 - 특히 신규 사업지인 70~80개 소 선정 평가, 현재 추진 중인 지구(143개소)의 집행 관리와 완료된 지구(313개소) 이력관리 무효화가 예상됨. 향후 관리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함
- 향후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특히 동 사업성과 지표조사 대상인 공무원(중앙 및 지자체)은 직접수혜자인 만큼 높은 만족도 결과는 당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한 성과지표의 추가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지금과 같이 3.4억 원의 보조금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추가 성과지표 발굴이 요구됨
-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 기간은 기존 15일 이상 선정·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홍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연안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및 복구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가 큼. 특히 최근 필(必)환경 시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이 해수부 우수 정책과제로 선정됨. 또한 동 보조사업 수혜자가 전 국민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타당함 · 내역 사업 중 감용기 보급사업은 현재 양식업 활성화로 배출된 다량의 페스티로폼 재활용 면에서 필요하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은 적절치 않음. 앞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확대에 맞춰 친환경부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 개발·보급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인자 책임강화 등 발생 예방 정책 중심으로 추진이 더 바람직함 · 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만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통한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에 초점을 둔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더 중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18조 1항, 119조 1항, 시행규칙 1조 4호 등에 법적 근거 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 연안관리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페스티로폼 감용기 사업,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재해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특히 환경보전(프로그램) 및 연안환경관리(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연안관리는 환경보전 과 목적이 일치하며, 세부사업인 강하구 쓰레기 처리와 페스티로폼 재활용,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등 모두 해양환경 보존에 기여함으로써 연관성이 매우 높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1항, 119조 1항 >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 특히 본 사업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일환인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과 총리주재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조정 회의까지 개최된 점 등 현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이 타당함
- 그러나 연안관리는 해양쓰레기 절감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써 해양 쓰레기 절감에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해수부는 2019년 5월 관계 부처와 함께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등 발생 예방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 12)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 중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연안관리를 위해 연평균 최소 1,500톤 이상의 쓰레기 수거를 통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보전에 기여해 왔음. 이에 2019년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이 해수부 우수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됨
- 다만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방안에 따른 것임. 스티로폼 부표 사용 감소와 친환경 부표 사용 확대를 고려해 앞으로 친환경부표도 처리할 수 있는 감용 기술과 스티로폼을 대체할 소재 개발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또한 ‘21년 다부처 사업으로 대체재 개발도 추진할 예정에 있어 동 보조사업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양호하며,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 양호한 성과를 달성함. 그러나 잦은 자연재해 발생 여지와 랜덤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팽생이모자반 등)의 출현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동 사업효과와 수혜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을 재구성하고 일부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연안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의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모두 사업대상과 목적이 달라 보조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재정지원의 전환이 쉽지 않음
-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17년, UN 오션컨퍼런스)의 80%를 차지하며, 이는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될 정도로 해양 오염의 주된 유발원임.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국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6.7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폐어구·폐부표와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주요 원인임. 특히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의 55% 이상이 스티로폼에서 유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보조사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 만약 보조금 폐지로 해양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해양 축적은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 이에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인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이 제공된다면 국고 보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인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인 쾌적한 환경 제공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필(必)환경 시대가 이슈인 현재 반드시 필요한 보조사업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년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은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편성되어 적정한 수준임
-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전국에 페스티로폼 감용기가 기 41대 보급되어 있으나, 이 중 14대는 내구연안(10년) 도래로 폐기 처리함. 폐어구·폐부표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3.6톤임.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중 국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은 55백 만개로 이 중 41백만 개가 스티로폼 부표임. 이에 감용기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감용기 확대는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절치 않으나, 현재 국내 수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발생하는 대량의 페스티로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원인 감용기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은 재해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의 사회적 가치실현에는 다소 제한적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를 선정·관리함
- 동 보조사업은 별도 보조 사업자선정 절차에 대해 별도의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절차,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 집행과정을 관리 감독함
- 별도의 “이행점검단계”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 집행상황,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을 집행점검 기준으로 명시함
- 집행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취소, 반환, 강제징수, 형사고발까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 합계 3억 원 이상은 회계법인 검증을 받도록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연안관리 사업집행지침에 “사후관리” 규정을 별도로 두어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함
-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특성상 부정수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함. 또한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본 사업 대상이 주로 지자체의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 점검과 업무협의를 정기적(1회/연)으로 실시함
-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20년 1월)하여 주기적으로 합동점검(해수부-지자체)을 추진되고 있으나, 연간 개최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사업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연안관리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토 일부인 연안 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본 보조사업이 갖는 의의가 큼
 - 특히 본 보조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18조 1항, 119조 1항, 시행규칙 1조 4호 등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어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
 - 상기 법령은 본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내용, 법령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음.
 - 동 보조사업은 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안환경관리(단위사업) 목적과 일치하며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강하구 쓰레기 처리”와 “페스티로폼 재활용”,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모두 해양환경보존 기여 측면에서 연계성이 매우 높음
- 특히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일환인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과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까지 개최된 점 등은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이 타당함
 - 그러나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보다 발생원에 대한 책임 강화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생 예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측면에서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매년 해양쓰레기 증감에 따른 수거와 재활용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성과지표를 수립하는데 현실적인 수치 제시가 요구됨. 앞으로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내역 사업 중 감용기 보급사업은 현재 양식어업 활성화로 배출된 다량의 페스티로폼 재활용 면에서 필요하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지원은 적절치 않음
 - 앞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확대에 맞춰 친환경부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 개발·보급 등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인자 책임강화 등 발생 예방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본 보조사업은 유사중복성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 주체와 목적이 달라 보조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재정 지원 전환도 쉽지 않음. 따라서 연안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측면에서 사업관리의 효율화 노력이 요구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1회 사업 점검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관리가 이루어짐

3-2 정책 제언

- 앞으로 필(必)환경 시대에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과도 관련성이 큼.
- 특히 국민의 먹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양쓰레기 저감은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본 사업은 단순 해양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보조금지원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해양쓰레기 증가 소지가 매우 높아 보조금 지원만으로 해양쓰레기 저감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역부족임
- 이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발생 예방, 국민인식 증진, 민간 참여 활성화, 국민 참여형 캠페인, 해변 입양,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해 전 국민이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청년어촌정착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동 보조사업은 어촌 고령화와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귀어귀촌의 우수한 청년인력에게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그러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어업 분야는 농업과 달리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어업행위가 가능한 만큼 귀농에 비해 귀어 수가 현저히 적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이에 해수부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귀어귀촌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8년 귀어 가구 수 1.2%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음 ·다만,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선정이 미달되어 '19년 두 배의 예산 배정에도 실집행율은 76.6%에 그쳤음. 동 보조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국정과제 84번과도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방법 개선 및 관리강화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제21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청년어업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보조사업 목적은 살고 싶은 부유한 어촌조성과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어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에게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심각한 어촌 고령화, 어촌 과소화 및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특히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현 정부 국정과제.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과의 연계성과도 부합함
- 동 보조사업은 대통령공약 사업인 II-1-6-2-3.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직불제 확대에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에 해당됨. 현 정부 국정과제.84 실천과제 중 하나인 어업경영여건 개선과 어촌활력 제고를 위해 만 40세 미만 청년층에게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창업인’ 육성과도 부합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청년어촌정착사업은 청년어업인의 정착지원과 사업운영 및 평가로 구성되며, 청년어업인에게 영어정착자금을 최대 3년 간 지급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현장점검)를 통해 사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및 고령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 동 보조사업 성과지표 단위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실적으로 함. '18년에는 성과목표 100명을 달성했으나, '19년에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연과 사업대상 확대로 목표 200명에 못 미치는 169명(귀어인 122명, 후계자 41명, 현지 청년 5명)으로 달성도는 76.6%에 그침
 - 당초 보조사업 대상자를 귀어인에서 '19년 어업인(귀어인, 후계어업인, 재촌 청년어업인 포함)으로 확대했음에도 목표달성은 다소 부진했음. 그러나 최근 3년 간('16~'18) 만 40세 미만 귀어인 523명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사업 지원자의 증가 가능성이 매우 큼
- 2년 간 추진 성과지표를 근거로 동 사업 효과성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러나 연도별 귀어·귀촌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917명으로 이 중 40세 미만 점유율은 전체의 약 20%인 174명이었음. 이에 '20년 설정한 목표 어업인 (200명, 1~3년차 누계기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홍보방법 개선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동 보조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경우, 청년귀어 포기자가 줄 수 있고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내실화가 요구됨

<연도별 귀농어·귀촌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
2016	929	174	207	314	182	52
점유율	100.0	18.7	22.3	33.8	19.6	5.6
2017	906	182	224	304	155	41
점유율	100.0	20.1	24.7	33.6	17.1	4.5
2018	917	167	218	307	185	40
점유율	100.0	18.2	23.8	33.5	20.2	4.4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임. 어업에도 농업과의 보조사업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함
 - 동 사업은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운영자금은 물론 생활자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함. 이를 통해 어촌의 고령화, 어업인 감소, 도시로의 이탈 방지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동일 프로그램(어촌활력기반구축)과 타 프로그램 내 보조사업(수산업창업투자지원)과의 유사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화지원센터(50%)와 창업지원센터(50%)에 지급함. 그러나 동 사업 보조율은 70~100%로 청년어업인에게 직접 정착자금을 지원함
 - '20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는 264명으로 이 중 207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선정 대기자는 30명임. 그러나 '20년 동 보조사업 지원가능 대상자는 총 237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25.7억 원임. 국고보조금(70%) 기준으로 산정하면 18.0억 원이 필요하며, '20년 사업비(14.4억 원)보다 3.6억 원이 부족함
- 또한 해양수산부(사업수행기관 포함)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컨설팅·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 지역별·업종별 교육(이론·현장실습) 등 맞춤형 지원 확대와 어촌계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신규인력 유입이 가능한 어촌계를 발굴하여 漁울림마을로 지정·지원하는 등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귀어귀촌 활성화)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임
 - '19년 6월 공표('18년 기준)한 “귀농어·귀촌인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17년 대비 2018년의 귀농 가구수 5.3% 감소, 귀촌 가구수 1.7% 감소한 반면, 귀어 가구수는 1.2% 증가함
- 그러나 동 결과는 귀농·귀촌 가구수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귀어수 증가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사성 지원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8년 귀어 가구수가 전년보다 1.2% 증가에 그친 917가구는 동 보조사업 추진 당위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귀어·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최소 기술습득 소요기간은 3~5년임. 이에 어촌으로 유입된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예산은 '20년 1,474백 만원으로 보조사업 유지를 위해 행정비용 37백 만원, 지자체 1개 소당 2.7백 만원(3%), 민간보조인 모니터링 및 평가 비용도 7백 만원(0.5%)으로 편성됨
- 보조금사업 성과는 실집행률과도 관련성이 깊고, 사업 효율성 제고와도 연계됨. 그러나 '19년에는 성과목표 200명보다 적은 169명으로 달성도는 76.6%에 그쳤는데, 이는 일부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과 홍보 부족 때문으로 소명함. 그러나 국가보조금 집행이 지자체의 소극 홍보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수요 부족은 불용 사유로 적절치 않음
- 물론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18.12월 사업시행지침 개선·시달 후, 사업 미인지에 따른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기간을 2개월 이상 부여('19.2월 말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도는 목표치를 하회함
- 최근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귀어수는 평균 160~170명 내외로,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함. 또한 '20년도 사업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40세 미만 귀어인 중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수혜자는 42~45%임. 향후 동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미인지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강화 등 현실성 있는 사업방식 개선이 요구됨

$$* \frac{\text{청년어촌정착지원 신규 선정 인원 (70~80명)}}{\text{40세 미만 귀어가구주 수 (160~190명)}} = 42 \sim 45\% \text{ 수준}$$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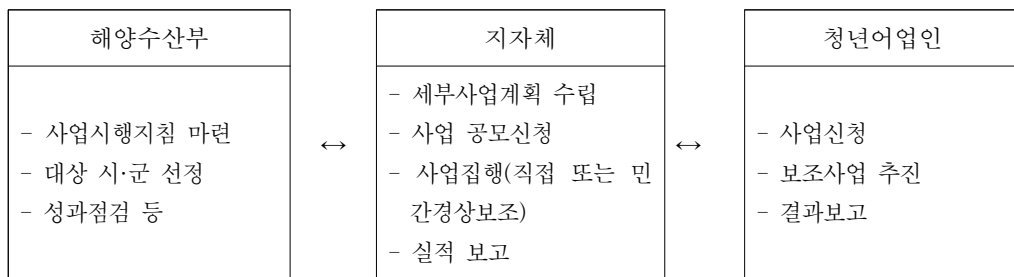
- 해당 사항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자는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창업(예정)자로서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거주하고, 어업 의지가 높은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직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 예정자 순임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함.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2년차(2018.1.1. ~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12.31. 등록자)
- * ‘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함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 보조율 제122호에 근거해 적용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조율은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70:30, 사업운영 및 평가 50:50(민간경상보조 100%) 설정함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함.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으로 집행현황을 점검함
-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적 분기보고를 통해 사업집행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보조사업자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 관련한 내부 규정에 의거해 집행과정을 관리 감독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국고보고금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국고보조금 운영 현황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점검받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대상자 의무사항·제재조치 및 이행점검(사후관리,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보조사업 정산’ 항목에 정산보고, 회계감사, 사용내역을 증명한 필요 서류 구비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이행토록 함. 만약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19년 사업 선정자(169명)가 가장 많은 전남(88명), 충남(28명)을 중심으로 ‘19년에 현장점검각각 1회를 실시한 결과, 부정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청년어업인이 제출한 보고서 및 사업 내역서를 지자체에서 매월 확인, 월별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물품 구매 여부, 지원 목적 부합 여부 등 지원금 적격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므로 부정 수급 가능성이 낮음
- 그러나 청년어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수혜자가 가장 많은 전남과 충남을 제외한 9곳을 포함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과 현 정부 국정과제⁸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과 연계성 등으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함. 이를 통해 어촌의 고령화, 어업인 감소, 도시로의 이탈 방지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어촌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과 제도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어촌정착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에는 아직까지 미흡함
- 다수의 보조금 수혜자 확보를 위해 연령 제한(18세 이상~40세 미만) 확대, 대상자를 귀어인에서 어업인(귀어인, 후계어업인, 재촌 청년어업인 포함)으로 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업 지연과 홍보 부족 등으로 ‘19년도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보다 낮은 76.6%인 169명에 그쳤음
- 동 보조사업은 어촌으로 젊은층을 유인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큼. 만 40세 미만 어업인 수가 전체 귀어가구의 20% 가까이 되고 최근 3년 평균 174명에 육박함
 - 앞으로 귀어준비, 어촌 정착생활 및 귀어 포기자를 줄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본 보조사업은 현재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농업의 경우 유사 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 이후 보조사업이 추진된 것과 달리 어업은 2018년부터 바로 신규 사업에 착수함
 - 한편 사업예산 편성 시 지급률(조정계수)도 농업(100%)과 달리 90%를 적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어업은 농업 청년 창업농(4,800명) 대비 0.04%에 불과하여, 정책 형평성 면에서도 동 보조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은 4,000~5,000명으로 어업종사가구원의 약 5%에 불과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잠재가능성이 큰 인재들임. 이런 측면에서 동 보조사업 지원이 갖는 의의가 상당히 큼



- 특히 어업의 경우 노동 강도가 농업보다 세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귀어인수 증가에는 다소 더딜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잘 활용되고 홍보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어촌에 다재다능한 Talents를 가진 젊은 인적자원 확보에도 좋은 귀감사례가 될 수 있음. 이에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22년 12월 사업종료 예정으로 ‘단계적 폐지(22년 말)’가 요구됨 - 계획종료 이후의 사업추진계획이 부재함 · 본 보조사업은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및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수요조사 기반 목표 설정이 부족함 - 친환경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내역사업은 전체 노후화물선 중 일부인 5년간 50척을 대상으로 건조비를 지원하여 선대효율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며,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내역사업은 전체 노후예선 중 일부인 8척에 대해 지원하여 LNG예선의 성능평가 및 친환경 예선 건조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임 - 전체 노후화물선 및 예선 대비 목표 선박수가 일부에 해당되어 보조사업의 기간 및 규모, 사업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예산 실효행률은 2018년 93.8%, 2019년 100% 수준임 · 본 보조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서의 취지, 필요성 및 효과가 적정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계획종료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해 관련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내역사업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지원 내역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 본 보조사업은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과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지원’으로 구성되는 바,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간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있으며, 국정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
- 본 보조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항만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해운물류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두 내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역사업별로 사업기간, 목표 및 보조사업 규모 등이 전체 수요 대비 일부에 해당됨
-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은 2022년까지 50척 대체 건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6척을 건조 지원하였으며,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은 2019년~2022년(4년간) 8척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내역사업은 전체 약 240여척 중 5년간 50척을 대상으로,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내역사업은 전체 약 950여척 중 8척에 대해 수행할 목적으로 보조사업 추진 중
- 본 보조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별 국가 차원의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보조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기간 및 연차별 보조사업 적정규모를 결정함이 타당함
- 2023년 이후에 대한 사업계획이 부재함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조기폐선 달성률(%)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가 매우 높음
- 조기폐선 달성률(%)은 2018년 203.96, 2019년 408.7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전 연도의 성과실적을 기반으로 차기 연도의 성과목표에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과목표 관리가 필요함



* 성과지표 및 달성도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조기폐선 달성률(%)	단위사업	목표	-	100	100	조기폐선 선박 규모(GT)/ 목표 폐선* 규모×100
		실적	-	203.96	408.7	
		달성도	-	203.96	408.7	

* 목표 폐선 규모는 (해당연도 예산액)/(13만원×0.85)로 산출하는데, 선사의 수요가 충분하고, 노후선 폐선 및 신조계약이 해당연도 내에 모두 이루어져서 반영예산을 100% 집행하여 지원 가능한 폐선의 GT(총톤수)로 설정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선업종 수주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국적선사의 선대 효율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조선업종 수주 확대를 위해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 내역사업의 실수혜자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이며,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내역사업의 실수혜자는 예선업자임
 - 본 보조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운산업 활성화에 따른 외부효과로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일반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잠재적 수혜자는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 폐지 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력을 저해하고 친환경 고효율 선대 전환 지연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와 조선업종의 수주 저하 등이 우려되나, 노후화물선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선박 건조 수요 및 노후예선에 대한 친환경 연료 전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선정된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관리부처의 내부 방침을 통하여 기준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예산실집행률이 2018년 93.8%, 2019년(11월 기준) 80% 수준이며, 2018년 이월액이 1,650백만원 수준임
- 본 보조사업 추진일정 상 매년 연초에 사업공모 및 선정과정을 수행하고 기존 선박의 해체 또는 매각 및 신조계약 체결 시 70%, 기존 선박의 해체/매각작업 혹은 선조작업 착수 증명 시 30%를 지급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임
-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신조선가의 10%이며, ‘노후예선의 LNG 연료 추진 전환’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신조선가의 30% 수준임
- ‘노후예선의 LNG 연료 추진 전환’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19년 20%이었고, 2020년 30%로 상향 조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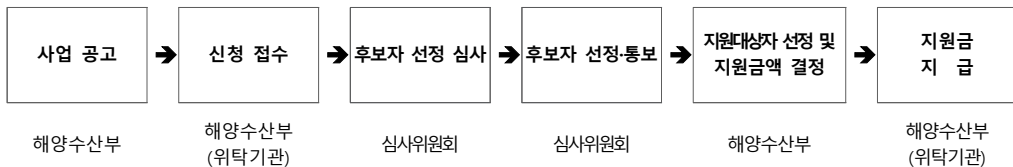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공모절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율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 2018년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공시는 0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적발 또는 외부 적발 실적이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22년 12월 사업종료 예정으로 ‘단계적 폐지(22년 말)’가 요구됨
 - 계획종료 이후의 사업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계획 자연종료로 평가함
- 본 보조사업은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및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요조사 기반 목표 설정이 부족함
 -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내역사업은 전체 노후 화물선 중 일부인 5년간 50척을 대상으로 건조비를 지원하여 정부보조를 통한 선대효율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며,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내역사업은 전체 노후예선 중 일부인 8척에 대해 지원하여 LNG예선의 성능평가 및 친환경 예선 건조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임
 - 전체 노후화물선 및 예선 대비 목표 선박수가 일부에 해당되어 보조사업의 기간 및 규모, 사업목표 및 효과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예산 실행률은 2018년 93.8%, 2019년 80.2%(11월말 기준) 수준임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서의 취지, 필요성 및 효과가 적정함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계획종료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폐업지원금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단계적 폐지('21년 말 폐지) · 동 보조사업은 '20년 일몰되는 사업으로 관련 법에 근거해 '21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로 판정함 · 폐업지원금 사업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2020년 12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이후 폐지해야 하나, 사업 특성 상 전년도 가격분석을 통해 지원대상품을 선정하여 다음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임. 이에 동 사업은 '21년 말까지 추진 후 폐지함이 타당함 · 만약 동 보조사업이 연장되더라도 실행행렬 향상과 수혜자 확대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설사 보조금 지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어가들의 폐업의사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아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21년 말 이후 폐지가 바람직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근거법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서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함
-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 간 시행함
- 또한, 「FTA 농어업법 시행령」 등 근거 법령에서 사업 추진규정(제6조 품목선정기준, 제8조 지급기준, 제8조 산출방법, 제9조 지급절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FTA 농어업법 제9조 >

「FTA 농어업법」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산 등의 품목을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은 피해보전직불금과 같이 FTA 체결로 어업인 피해를 보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과 보조사업 간 연관성이 높음
- 폐업지원금은 「FTA 농어업법」 목적인 농어업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도 부합하는 핵심 지원사업으로 통상조약(FTA 등) 비준동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인 국가 정책사업임. 시장개방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피해산업 지원대책」으로서 의의를 가짐
- 폐업지원금은 「FTA 농어업법」 일환으로 어업인 등이 폐업할 경우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에 목적이 있음. 그러나 매년 보조사업 수혜자 수 0, 실집행률 0%임



- 동 사업은 어업인이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폐업 의사가 없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낮은 집행실적만으로 보조사업의 지원효과를 판단하는데 제한적임. 그러나 최근 5년 간 실적행 실적은 '16년 오징어채낚기어선 2척 사례가 유일해 동 보조사업 목적인 어가안정과 구조조정 사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충분치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그러나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직접적인 동 사업의 정량적 효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
- 폐업지원금은 FTA 대책사업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 대책사업에 내 동일한 성과지표인 피해보전직불금의 가격 지지율을 활용함
- 성과지표는 어업인직접지원사업 수혜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FTA 대책사업 어업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년 목표치의 경우 과거 3년간 평균치 76.5%보다 1.5%로 상향한 78점을 목표로 설정함
- 그러나 현재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한 집행실적이 '16년 오징어채낚기어선 2척에 불과해 성과지표 목표 설정에 대한 정확한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미흡함
- 특히 동 보조사업 특징은 별도 내역사업 없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법에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이 집행되는 구조임
- 이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산출 방법,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모두 근거 법률에 의해 정해짐. 발동요건이 충족된 품목에 한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규모를 정확히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FTA 국내 보완대책 중 동일 품목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직접피해보전' 사업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뿐임. 이에 동 보조사업은 이 외에 동일한 목적의 유사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동일 단위사업 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으며, 「FTA 농어업법」 내 별도 조항에 의해 운영되어 통합은 어려움



- 따라서 농어업 보조금사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동 보조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나, 매년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발동요건에 적합한 수혜자 발굴도 어려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짐
- 특히 동 보조사업은 어업인이 폐업 의사가 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인 어업인이 폐사의사가 없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다만 집행실적률 0%는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없다'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동 보조사업 수요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때 '21년 말 폐지가 바람직함
- FTA 폐업지원금은 '20년 12월 20일에 일몰되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은 전년도 가격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품목 선정 후 다음 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동 사업예산은 '21년까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폐업의사를 밝힐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농어가 경영안정 재해 대책비'와 같이 국비 100%로 운영 중임
- 그러나 매년 어업인 신청이 없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음
- 보조사업 예산은 그 간 집행실적에 근거해 편성하며,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함
- * 예산 내역 : '16년 3,820백 만원 → '17. 1,910 → '18. 1,210 → '19. 1,089 → '20. 900
- 보조사업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감축하여 '20년에는 900백 만원으로 편성됨. 만약 실질적 수혜자의 다수 발생으로 지원금이 전액 부족할 경우는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한 만큼 기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어 동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함
- 동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FTA 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 간 시행으로 '20년 12월 20일 일몰되는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 소요액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함. 특히 지자체에서는 관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임. 그러나 매년 신청자가 없어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미흡함
- 동 보조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공모사업이 아닌 직접 피해품목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기관별(시·도 및 시·군·구)로 사업시행지침서를 규정함
- 동 보조사업도 피해보전직불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도, 시·군·구 등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적절히 교부절차가 수행됨
- 먼저 어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서 현장조사·심사 후, 시·도에서 시·군·구 확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함
- 또한, 시·도에서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 산정, 한도액을 고려한 후 최종 지급액을 확정,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요청함. 해수부에서는 시·도 자금 요청서를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 시·군·구에서는 피해 어업인 계좌로 직불금을 입금함
- 동 보조사업자 선정 실적은 현재까지 '16년 오징어책낚기어선 2척 사례가 유일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매년 '해양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폐업지원금)'을 보조사업자(시·도)에 통보하고, 동 지침서에는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행 점검단계를 두어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 최종 결과는 매년 해수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함
-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조금 금액을 확정·통지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 조치하도록 명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피해보전직불금의 부정 수급 사례는 없음
 - 「FTA 농어업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거짓·부정한 방법 혹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재까지 보조금집행 실적이 '16년 오징어채낚기어선 2척에 불과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법률과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서류 소명이 필요함. 이에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피해 품목 생산 입증은 물론 수협·도매시장 등의 거래 증명서(전산출력물 등)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서류 조작 등이 어려움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수혜 대상자는 매년 해당 품목의 어업인이 8,000명 내외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수혜자가 매년 0으로 보조사업 효과성 평가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동 보조사업은 FTA 대책사업 일환으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의 명확한 법령 근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수혜자는 '16년 오징어채낚기어선 2척에 불과함
 - 동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FTA 농어업법」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 하나로서 국가가 이행할 책무임. 그러나 동 보조사업은 광범위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FTA 체결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충분함
- 또한 동 보조사업은 「FTA 농어업법」 내 농어업 보조금사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동 사업 목적은 어업인 등이 폐업할 경우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 조정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동 사업의 성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음
- FTA 폐업지원금 보조사업은 '20년 12월 20일 일몰되는 사업임. 사업 특성 상 '20년까지 피해 보전으로 '21년까지 사업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21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로 추진이 타당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다수의 수혜자 확보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성과확산이 중요한데, 신청자 수 0과 지급 사례가 '16년 2건에 불과해 폐업 후 어가 경영안정에 직접적인 실효성 제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함. 만약 동 보조사업이 연장될 경우 동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 특성 상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어가에서 폐업 의사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데, 반드시 집행률 저조가 동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을 활용해 사업성과의 추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동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낮은 인지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19년 구축한 수산정보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수혜 대상 어업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피해보전직불금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추진 법령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보조사업 지원이 타당하나,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FTA협정('08~'25, 한중 FTA 발효 일부터 10년 간)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국가 경제정책사업임. 그러나 매년 실집행을 편차가 크고, FTA 피해 발생으로 지원되는 예비비 사업으로 차 년도 수혜자 규모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음. 하지만 그 간 예산지원 규모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타당함 · 만약 지원 요건 충족으로 지원 대상 어업인이 증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감축으로도 추진이 무방함. 또한 동 사업은 시작초와 달리 수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현재 수행 중 인「수산분야 FTA 직접 피해보전 제도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춰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고 매우 구체적인
 - 「FTA 농어업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서는 “정부는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 농어업인 등에게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10년 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FTA 농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사업 추진규정(지급기준, 산출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 「FTA 농어업법」 제6조(피해 보전), 제7조(지급 기준), 제8조(산출 방법)
 -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지원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의2(지급 상한), 제5조(지급 절차)
 - 「FTA 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지급 절차),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 특히 동 보조사업은 당초 한-미/한-EU FTA 체결('07) 시 국내 보완대책으로 시작되었으나, 한-중 FTA('15) 당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업인 지원 대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됨
 - * (당초) '08~'21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 → (연장) '08~'25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
- 「FTA 농어업법」 사업은 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수산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목적과 보조사업 간 연관성이 높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함이 타당함
 - 이는 「FTA 농어업법」의 목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부합하는 핵심적인 정책지원 사업임
- 피해보전직불금은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 정책으로 통상조약(FTA 등) 비준동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시장개방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피해산업 지원대책’**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FTA 대책사업 중 어업인에게 가격하락 일부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사업 구성과 목표 달성도가 대체로 양호함
- 특히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인 어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 3년 간(‘15~’17) FTA 대책사업 만족도 증가율은 연평균 0.75%였음. ‘19년 목표치는 과거 3년 간 평균치 76.5%보다 1.5% 상향한 78점으로 설정해 달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의 가격지지율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가격하락 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100% 이상이면 가격이 지지된 것으로 간주함. ‘18년에는 112.5% 실적 달성으로 다른 피해지원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음

$$* ('19년 사업의 경우) \text{가격지지율} = \frac{2018년 \text{평균가격} - \text{피해보전직불금}}{\text{기준가격}(\text{직전5개년도 중 최솟값} \cdot \text{최댓값 제외한 가격평균})}$$

- 또한 매년 FTA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체 평가도 실시하며, 직접 피해보전직불금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도 활용함
- ‘19. 4월 감사보고서「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부적정(통보)」에서는 실집행률 저조를 지적함. 실집행률 저조의 주된 이유는 해당 어업인의 제도 인지 부족과 소액 지원으로 인한 신청 기피 등임
-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대상 어업인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으로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함. 어업권 자료 및 수산업협동조합 위관실적 자료 등을 연계·활용하여 지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 등을 사전 발굴, 어업인 등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홍보와 지원범위 확대를 제시함
- 그 결과 ‘18년 피해보전직불금 수혜자는 ‘17년(1,575명)보다 29% 증가한 2,033명, 지원금액은 ‘17년 22억 원에서 ‘18년 55.8억 원으로 늘어 권고 조치에 대한 홍보 효과의 근거 자료로 일부 인정됨. 그러나 보조금 전체 지원 대상 중 수혜자 비율이 여전히 20%대인 점을 감안할 경우 동 보조사업에 대한 어업인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국내 유일의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동일 품목 수입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직접 생산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임. 이에 ‘피해산업 지원 대책’으로서 갖는 의의가 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보조사업은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단위사업 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목적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어 재정 통합이 곤란함. 특히 본 사업은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으로 편익을 제공함에 따라 간접 수혜자 및 사회적 가치실현은 낮음
 - 그러나 국내 수산업의 피해 보전을 통한 어가들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큼
- 만약 보조사업이 폐지될 경우 국내보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국가 시장개방 시책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동 보조사업은 보다 더 많은 어업인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근거로 사업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산정함
 - 국가 경제정책인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피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15. 농어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 100, 19. 농어가 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국가관리 : 100) 국고보조 100%로 추진됨
 - 동 보조사업은 어업인에게 편익(직불금)을 지급함에 따라 별도 행정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세부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에 근거한 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됨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어업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사업 특성 상 예산편성시점에 사전 예산규모 파악이 불가능하여 예산규모와 집행실적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예산편성 시점(n-1년)에는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지원대상품목의 경우 매년 분석하여, 확정·고시 후 선정됨에 따라 사업연도(n년) 중 조사 분석을 통해 선정된 대상품목 개수, 시장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와 집행규모가 결정됨



- 보조금 신청은 어업인들에게 절차를 받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어업인의 생산규모를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함. 이에 사전 재정추계가 곤란하여 예산보다 지원규모가 클 경우 예산 전용으로 가능하나, 예산보다 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예산 불용으로 처리됨
- (사업추진절차) ① 지원대상품목 선정(‘법’ 제7조 상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② 어업인 신청·접수 → ③ 현장조사 → ④ 지원대상 확정 → ⑤ 교부
- 동 보조금은 FTA로 인한 피해 발생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사전 목표 설정이 어려움. 보조금지원 규모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여 명에 가까운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됨
- 그러나 이는 전체 지원 대상 어업인의 20%에 해당되며, 법령 상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원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조금 축소로도 추진이 무방함
- * 일정 조건 : ① 투자비용 크고 폐업 시 회수 곤란, ② 양식 기간 2년 이상 ③ 기타 필요성 인정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 추진 목적은 FT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직접 보전하고자 함. 또한 산업계와 농어업계 등 산업 간 갈등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공동체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높음. 그러나 보조사업 수혜자가 제한적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함
 - 동 보조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공모사업이 아닌 직접 피해품목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기관별(시·도 및 시·군·구)로 사업시행 지침서를 규정함
- 국가와 시·도, 시·군·구 등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적절히 교부절차가 수행됨
 - 먼저 어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서 현장조사·심사 후, 시·도에서 시·군·구 확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함
 - 또한, 시·도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 산정, 한도액 고려 후 최종 지급액을 확정,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을 요청하며 해수부에서는 시·도 자금요청서를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이후 시·군·구에서는 피해 어업인 계좌로 직불금이 입금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매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피해보전직불금)’을 보조사업자(시·도)에 통보함. 동 지침서에는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과 절차를 규정·이행하고, 점검단계를 두어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 최종 결과는 매년 해수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함
 - 업무 절차는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② 사업신청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④ 자금요청 및 배정 ⑤ 직불금 지급 ⑥ 이행 점검 및 성과 측정
-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함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조금 금액을 확정·통지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 조치하도록 명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피해보전직불금의 부정 수급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FTA 농어업법」 제21조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을 거짓·부정한 방법 혹은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가 가능함. 이에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본 보조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자 선정과정 없이 어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와 함께 철저히 관리됨. 그러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법률과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서류 소명이 필요함. 이에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피해 품목의 생산 입증은 물론 수협·도매시장 거래 증명서(전산출력물 등) 등의 필수 제출로 서류 조작이 어려움
 - 그러나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적으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수협 등 생산자단체 임직원, 어업담당 기관 종사자,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직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함
 - 우선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는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함. 신청어업인 어업등록 사항, 어선톤수(양식수 면적), 지원대상 품목의 실제 생산·판매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실사를 확인함
 - 그러나 보조사업 집행점검 사후관리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체 노력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됨
 - 동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입은 피해 품목의 어업인들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도모가 주된 목적임. 이에 동 보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편익(직불금)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으로 보조사업 간 연관성이 높아 추진함이 타당함
- 동 보조사업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음. 특히 가격지지율 지표가 100% 이상이면 가격 지지도가 있다고 간주되는데, ‘18년 실적이 112.5%로 다른 피해 지원 방법보다 비교적 효과가 컸음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근거 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전 예산규모 파악은 불가함. 이에 따라 예산규모 집행실적 간 차이 발생으로 실 집행률에 대한 편차가 큰 편임
 - 이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예산이 아닌 수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 감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으로 판정함
- 또한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과제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실에 맞춘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다수의 어업인들이 보조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는 물론 어업인 생산량 및 판매량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요구됨
 - 보조사업 지원이 정책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절차 상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과 다각도 검토가 필요함. 특히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선정 후 재검토와 보완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선정,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에게 직접 보조되는 만큼 부정수급 발생 여지는 여전히 상존함. 이에 따라 상시 관리와 각별한 주의 및 보완책이 요구됨
 - 어가 당 부여된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은 현장 점검 시 가족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함. 면허 임대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아 지원대상의 실제 생산 여부 확인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업인들에게 보조금 혜택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증과 홍보 방법 개선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해상안전 국제협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사업방식 변경(21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해상안전 국제협력을 위한 IMO 전담대응체계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매년 IMO 전담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계속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정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IMO 전담기구인 해사안전연구소의 인건비(4명) 및 운영비 위주의 사업예산으로 예산집행률이 양호함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이 100%임 · 본 보조사업을 정부대행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운영근거 마련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해 관련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해사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해사안전법」 제4조 및 제99조에 관련규정이 있으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대응활동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본 보조사업은 해상안전 국제협력을 위한 IMO 전담대응체계 운영 내역사업으로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프로그램과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단위사업과 관련성이 있음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국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해사분야 규제·규범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약 및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IMO 전담체계 운영’은 단위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본 세부사업 중 보조사업(IMO 전담대응체계 운영)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적정함
- 보조사업을 통하여 IMO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업무 범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부처 내부의 방침 혹은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MO 전담기구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IMO 의제발굴 및 회의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대행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방식 변경 요구(정부보조사업 → 정부대행사업)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IMO회의 대응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목적과 상응하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및 달성도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IMO 회의 대응율(%)	보조사업 (내역사업)	목표	-	100	100	(IMO회의대응건수/IMO 주요회의건수)×100
		실적	-	100	100	→ 주요회의 및 회의대응 상세내역은 추가 제출한 첨부자료 참고
		달성도	-	100	100	

- 본 보조사업은 IMO 전담대응을 통한 해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해사분야의 현안에 대한 대응, 해사동향 분석, IMO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국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전담대응을 위한 연구조직 운영으로 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단, 2020년 예산설명서 상 세부사업 내 'IMO 대응체제 강화' 내역사업에 'IMO 전략 대응 연구' 등의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민간경상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과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해운산업계 종사자, 나아가 일반 국민으로 확대됨
 - IMO 전담대응을 통하여 해운산업계 활성화 및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화 주도, 해사분야 신기술시장 선점 등으로 해운·조선·해양 IT 산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은 'IMO 대응체제 운영'이라는 특성상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전체 사업비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런던사무소 임차료를 반영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예산(560백만원)이 2019년(500백만원) 대비 증액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선정된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IMO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을 지원함
 - 본 보조사업은 예산실집행률이 2018년 72%, 2019년 100% 수준이며, 보조사업이 시작된 2018년 이월액이 140백만원 발생(5월 착수로 8개월만 집행)하였으며, 2019년 이월/불용액은 없음
 - 본 보조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IMO 국제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에 해당되므로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대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운영방침 및 관련법 개정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모절차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금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중요자산을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요재산 6건을 공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적발 또는 외부 적발 실적이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해상안전 국제협력을 위한 IMO 전담 대응체계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방식 변경(21년)’이 요구됨
 - 매년 IMO 전담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계속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정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이 사업계획 수립, 적정 예산규모 산정 및 성과 달성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IMO 전담기구인 해사안전연구소의 인건비(4명) 및 운영비 위주의 사업예산으로 예산실집행률이 양호함
 - 2019년 예산실집행률이 100%임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을 정부대행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운영근거 마련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관명	해양수산부
사업명	해양보호구역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 추진 · 동 보조사업은 국제협약(생물다양성협약)의무 준수(해양의 해양보호구역 10%지정)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지정에 따른 개발·이용 행위 제한 등으로 지정 확대에 장애요인이 있지만,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 가능한 핵심정책 사업임. 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결과, 가시적인 사업성과 확보는 동 보조사업이 유일함 · 동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직접수혜자가 국민인 만큼 정상추진이 타당함 · 다만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범사례, 홍보 및 정책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및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법)에서 지정된 해역의 해양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습지보전법 제12조 및 해양생태계법 제34조>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2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보전 가치가 우수한 갯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해양생태 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공유수면 매립 등 인위적인 개발 사업이 금지되어 본 사업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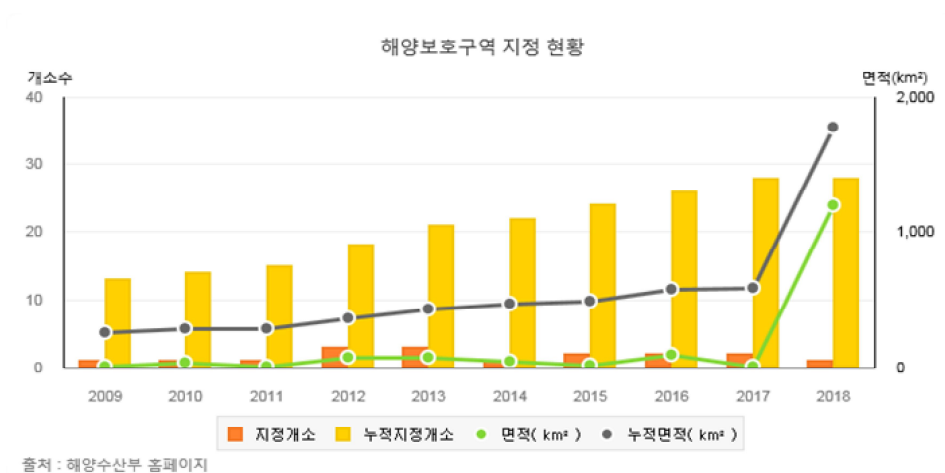


- 또한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실천과제로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강화에 해당됨.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 개발·이용·훼손 행위 제어·관리 차원에서도 동 보조사업 지원 목적과도 부합함
- 해양생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자산 보호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특히 해양생태계를 훼손으로부터 보호·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 제도가 적극 도입되어야 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03년부터 추진된 보조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이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됨
- 특히 성과지표인 해양보호구역지정개수는 매년 100.0% 달성으로 실적이 양호함. '19년 최초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있었으며, 이는 해양자원의 선순환 관리 체계조성에 가시적인 성과로 인정됨
 - * 18년 실적 : 순천 전 세계 최초 모범습지도시 습지보호지역 인증, 서남해안 갯벌 습지보호 지역 서울면적 2배 확대
 - * 19년 실적 : 2곳(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 지실사 완료(순천·고창·신안·보성·서천)
 - * 20년 계획 : 5곳(순천·고창·신안·보성·서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 예정. '20. 8
- 연안습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57%(1,421.7km²)가 이미 보호지역으로 기 지정, 추가 확대되었음. 이에 보호지역 지정이 어려운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19.12.17.) 및 경남 고성군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19.12.31.)은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상당한 사업효과로 인정됨
-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해양보호구역제도(해상국립공원,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보호구역 확대 성과의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동 보조사업이 유일함. 국립공원 관리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임에도 국립공원 수와 면적이 최근 3년 동안 동일하나,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지정면적과 누적면적은 증가세를 보여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큼
- 국립공원의 경우 대규모 관리예산('16년 140,703백 만원, 2017년 94,714백 만원) 투입으로 국민인식 제고와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보조금지원 규모임

-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예산도 적고, 사회경제 활동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식증진도가 매우 부족함
-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주민 요청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면적 확대 사례는 동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간주되며,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임
- 다만 성과지표가 해양보호구역지정개수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정개수 증가에는 제한적임. 이에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이 요구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해양이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국가 보조금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1차적 수혜자가 지자체이고 사업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합의가 필요함. 특히 지정에 따른 개발·이용 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 반대가 지정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됨. 이에 현행 국고보조율(70%) 조정으로 지자체의 책무성 제고가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국정과제(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에 해당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은 해양 보호구역 10% 설정하도록 각 국가별로 권고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률은 2%로 G20 국가 중 최하위 터키 다음으로 낮아 동 사업 추진이 시급함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통해 국가가 지자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해양생태계 보호정책임. 궁극적으로는 바닷가



훼손행위 금지 등을 통해 해양생물의 종다양성을 보전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임

* 해양보호구역 내 동식물 밀도 166%, 어체 크기 28%, 종 다양성 21% 상승효과 발생
(The Science of Marine Reserves [2nd Edition, U.S.ver], 2007, Partnership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Coastal Oceans.22.)

-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편익 연구결과(IVM Institute for Environment Studies, 2015)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10% 확대 지정(2015~2050년) 시 소요 비용은 450~470억 \$이나, 생태계서비스(산호, 맹그로브, 연안습지를 통한 연안보호, 수산, 관광, 레크리에이션, 이산화탄소 저장)는 총 6,220~9,230억 \$로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커 동 보조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동 보조사업은 관할부처가 해수부(연안습지:갯벌)와 환경부(내륙습지)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지정·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지정 대상이 달라 중복사업의 문제 발생 여지가 적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양보호구역 지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반대로 구역별 지원예산은 감소세임. 해양보호구역 지정목적(훼손방지, 지속적 이용) 달성과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계획 이행을 통한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인식 증진, 지자체 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별 최소·적정규모 예산지원이 필요함

- 28개소 22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예산배분을 통해 지원함. 내부적으로 예산 기준안을 마련하여 구역별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지방청,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적절히 수행됨

-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를 제외하고 전부 국가 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전체 예산 중 10~20%인 연평균 8억 원이 편성됨. 여기에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사업, 인식증진, 해양보호 구역 대외협력 사업 등이 포함됨

*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사업 : 구역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비용

* 인식증진 : 지역주민 참여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비,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개최비용(격년 반영)

* 해양보호구역 대외협력 사업 : 란사르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협약의 안건 대응 및 국·내외 여비



- '18년 동 사업에 대한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계획 수립·재수립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 법정계획에 적시 수립하여 국회 증액을 통한 관리 계획비 확보로 후속 조치함

* 국립공원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 비교(2018년 기준) : 14백 만원/km² vs 1백 만원/km²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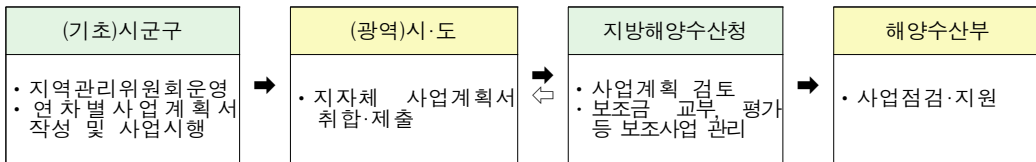
- 갯벌의 탄소흡수가치는 연간 15억 원, 국내 연간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6조 원에 달함.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갯벌(블루카본)이 맹그로브 숲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자 선정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지자체는 해양보호구역 제도 설명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절차는 해수부에서 연도별 예산지원 기준 및 사업평가 기준 마련 → 지역별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의견수렴 → 지자체 예산신청 → 지방해양수산청 예산적정성 검토 → 최종 해양수산부 예산확정 → 지방해수청 교부



-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던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 이후 11개 지방청에 위임하여 보조사업 집행 적정성을 관리·감독함.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함. 집행률 등을 평가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참조해 다다음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지침 해양보호구역관리에 근거해 집행함. 추진실적과 집행점검은 지방해수청을 통해 추진하며, 지자체 공문을 통해 중요재산 정보공시를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공표함
- 보조사업의 집행 문제점 발생 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으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 및 교육함
- 보조금 실행 내역에서 불용액 등에 대한 사유로는 집행 잔액으로 기재됨. 다음 연도 예산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월액으로 인해 실행률이 높은 점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수부는 해양수산지침의 해양보호구역관리에 근거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점검 등 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추진 중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함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집행점검, 정산 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여부, 정산, 사업 지침 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만약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함
 - 부정수급 여부는 지방해수청에서 현장 점검 시 평가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문제는 항상 상존함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보전 가치가 우수한 갯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해양생태 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이를 추진할 근거 법령은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및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법)에 명시되어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연안습지는 전체 면적의 57%(1,421.7km²)가 이미 보호지역으로 기 지정되었고, '19년에 추가 확대 지정이 어려운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19.12.17.) 및 경남 고성군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19.12.31.) 등은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은 국립공원관리 예산보다 훨씬 적은 1백만 원/km²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해양보호구역제도(해상국립공원,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동 보조사업이 유일함.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과 누적면적이 최근 3년 간 증가세를 보여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크다고 인정됨에 따라 동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이 타당함
- 그러나 동 사업성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해양보호구역지정개수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정개수 증가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어가 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추가 개발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해양보호구역관리는 '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모범습지도시 지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5곳) 등 가시적인 사업성가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에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역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관리자 역량 강화,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앞으로 동 보조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2의 순천, 전 세계 최초 모범습지도시 습지보호지역 인증'과 같은 모범사례 발굴이 필요함. 이를 위한 홍보 및 정책 지원, 인지도 향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갯끈풀은 유해해양생물로 '16년 지정, 타 지역으로 전이가 높아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여 동 보조사업이 추진 중임. 지속적인 관리로 최근 3년 간 갯끈풀 서식면적이 30,000㎡ 미만에 그쳤고, 국내에서는 선제적 대응결과 아직까지 어업피해가 없는 점은 동 사업성으로 인정됨. 그러나 사업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갯끈풀 중장기계획('19~'23)목표는 '18년 면적의 50% 감축임. 갯끈풀 99% 이상 강화 지역에 분포하며 타 지역으로 전이 우려가 높지만, 갯끈풀 줄기와 뿌리제거 등으로 서식면적 5.5% 저감의 단기적인 성과를 그침. 이에 '20년부터 갯끈풀 완전 박멸을 위해 사업방식 변경과 동시에 전국단위의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되어야 함 ·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줄기제거와 뿌리제거로 인한 갯끈풀 서식면적 감소, 재번식율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보완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내역사업은 갯끈풀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존하는 것으로 「습지보존법」 제22조 2에 국고보조 근거가 명시됨
 - *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내역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국가보조 근거가 규정됨
- 동 보조사업의 주된 목적은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 것임. 유해·교란 해양생물(갯끈풀)을 제거·관리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로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전이 우려가 높아 '16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 '18년 갯끈풀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이에 근거하여 동 사업은 보조금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유해해양생물 갯끈풀은 갯벌을 사막화(중국 연안침식 방지, 미국 2002년 갯끈풀 서식 면적 37.5배 증가 등)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함. 또한 갯끈풀은 강한 확산력과 재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바람직함
- 갯끈풀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가장 악성 침략적 외래종' 100종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완전 박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거·관리 중임. 이에 국내 확산 시 사회·경제적 피해와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가적 차원에서 '18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임



- 또한 국정과제 84-6 중 2번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포함되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도 부합함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의 경우 해양 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전·복원연구 등은 국가 책무이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설립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국내에는 10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상괘이, 점박이물범 등) 좌초, 어구에 의한 혼획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해안 중심의 신속한 해양동물구조·치료 시스템 구축의 수요증가로 해양동물 보전·복원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동 기관은 해양생태계 교육·홍보 및 해양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함. 또한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및 복원사업 목적인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의의가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갯끈풀의 체계적인 관리로 갯끈풀 확산세 저감 및 제거 면적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 갯끈풀은 생태적 특성으로 보면 유성생식(종자번식)과 무성생식(뿌리성장)으로 구분됨. 열매를 통한 주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줄기제거가 필요하며, 갯끈풀의 원천적인 서식면적 절감을 위해서는 뿌리제거 방법이 더 효과적임
- '17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되면서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특히 '18년부터 갯끈풀의 체계적 관리로 '19년에는 '18년보다 서식면적이 5.5% 줄여 확산 저감 효과를 달성했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그침
- 그러나, 갯끈풀 제거사업이 시행되기 전 갯끈풀의 빠른 자연확산 속도('13~'17년 간 갯끈풀 서식면적 940% 증가)와 재증식률을 감안하면, 제거사업에 따른 갯끈풀 확산 저감은 충분한 성과로 판단하기에 시기상조임
- 또한, 현재 제한적 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갯끈풀에 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확산에 따른 갯끈풀 서식지 확산(면적확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20년부터 기존 연2회(여름철, 가을철) 실시하던 줄기제거를 종자 맺기 전 1회로 축소, 절감된 예산은 전년도 뿌리제거(갯벌뒤집기) 구역 사후관리(재증식 개체 제거) 및 당해 연도 추가 뿌리제거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필요함
- 또한, 인천권역으로의 갯끈풀 확산 경향*, 갯끈풀 완전 제거를 위한 갯벌뒤집기 구역의 재증식, 개체 제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갯끈풀 제거구역의 사후관리 및 타 지역 모니터링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갯끈풀 서식면적 감소가 예상됨

* 갯끈풀 서식면적 증감 : ('18년) 3,1180㎡ → ('19년) 29,472㎡

<연도별 갯끈풀 제거 현황>

구분	2018	2019
서식면적(㎡)	31,180	29,472
줄기제거 면적(㎡) * 연2회 실시	41,430 (1차: 31,180, 2차: 10,250)	57,860 (1차: 29,472, 2차: 28,388)
뿌리제거 면적(㎡)	2,423	10,100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은 해양동물 보전·복원 전문기관 설립, 해양생태계 교육·홍보 및 해양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을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사업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음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지연 없이 과학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갯벌의 파괴자'로 불리는 갯끈풀은 다년생벼과인 기수성 식물로, 강한 생존력과 빠른 확산으로 인해 갯벌을 육지화시킴. 뿐만 아니라 토종 염생식물(칠면초, 지채 등) 및 갯벌 생물(조개, 게 등)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해양생태계 교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또한 유해해양생물 갯끈풀은 완전 퇴치가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빨라 타 지역으로 확산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국내 갯끈풀은 강화도지역에 집중(99%)되어 있으나, 최근 인천권역으로 확산세(기존 1개소 → 3개소 확대)임. 또한 경기 안산(대부도), 충남(서천), 전남(진도) 등에도 분포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음



- 이에 강화권역 집중제거와 동시에 전국단위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규 서식지 조기 발견, 신속 제거는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 인천권역 갯끈풀 서식지 : (~17) 영종도→('18) 영종도·신도→('19) 영종도·신도·장봉도 확산
- 갯끈풀의 생태적 특성(빠른 확산, 강한 생존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제거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가는 기존 대규모 서식지의 단계적 제거, 신규 서식지 조기발견, 신속 제거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침입외래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여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은 서해 북부권역에 대한 해양동물구조·치료 거점 마련에 의의가 있음. 또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해양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 기능이 가능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과학관 조성지역인 경기도 시흥시는 인근 지역과의 교통 편의성,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국민들이 해양생태계 교육·홍보, 해양생태 문화 체험 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함.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부합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금은 「보조금법 시행령」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matching)으로 국비보조율(70%)을 지원함
- 매년 갯끈풀의 분포 면적을 조사하여 목표량을 설정, 갯끈풀의 효율적인 제거방법, 생태특성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업비가 산정되어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구성됨
- '20년부터 연 2회(여름철, 가을철) 실시하던 줄기제거를 종자 땃기 전 1회 제거로 축소하고, 절감된 예산은 전년도 뿌리제거(갯벌뒤집기) 구역 사후관리(재증식 개체 제거) 및 당해 연도 추가 뿌리제거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20년부터는 강화도 갯끈풀 전 서식면적에 대한 줄기제거 1회 실시 후 서식면적 감소가 큰 뿌리제거로 사업변경이 요구됨
- 갯끈풀 서식면적(30,000m²)을 뿌리제거(갯벌뒤집기 방식)로 제거할 경우 소요비용은 384백만원/30,000m²으로 줄기제거 비용(54백만원/30,000m²) 대비 7배 이상 소요됨
- 특히 '18년 테스트베드 이후 '19년 처음으로 갯벌뒤집기 방식에 의한 뿌리제거가 도입됨
-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년(금년) 상반기 자연상태에서 갯벌뒤집기 구역의 재증식률 확인이 가능함. 금년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실험연구 대비 재증식률이 높게 나타날 경우 갯벌뒤집기 구역의 재증식 개체 제거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의 추가 발생도 우려됨
- 또한, 갯끈풀 사업은 단순 줄기·뿌리제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갯끈풀 제거 중장기적 사회·환경적 효과 분석도 포함함. ①갯끈풀 갯벌뒤집기 구역 사후관리(4~11월/재증식 개체 인력활용 뿌리 뽑기), ②드론 영상 촬영으로 갯끈풀 분포면적 산출(6~7월) 및 연차별 제거효과 분석(11~12월), ③갯끈풀의 갯벌생태계 미치는 영향(퇴적환경, 생물종다양성 등)연구(4~11월), ④시민단체를 통한 인천권역 갯끈풀 모니터링 및 제거(4~11월), ⑤ 강화·인천권역 이외 전국 갯끈풀 서식지 모니터링 및 제거(상시) 등 동시 추진함
- 줄기제거를 하지 않은 채 갯벌 뒤집기를 할 경우 제거효과가 낮음. 반드시 줄기제거(9~10월) 이후 뿌리제거가 가능하며, 특히 제한된 작업시간(간조 시에만 작업 가능)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에 따라 '23년까지 강화권역 갯끈풀 서식면적 50%('18년 기준) 감축 목표 달성 및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조사에 근거해 갯끈풀 재증식 여부와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생태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 수준 예산지원이 요구됨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여 국비보조율(50%)에 근거해 산정함
- 총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에 근거, 건축비는 해양생태과학관 목적에 맞게 산정해 적절함. 특히 동 사업목적과 규모를 유사시설(인천해양박물관 593만원/m², 청주해양과학관 782만원/m², 시흥 해양생태과학관 402만원/m²)과 비교한 결과 적절히 산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갯벌 사막화 주범인 유해해양생물 갯끈풀이 해양생태계 교란을 시킬 수 있으나, 신속한 제거와 관리를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이 인정됨
- 갯끈풀 제거작업 시 지역 어촌계 인력 100% 활용, 지역사회 일자리(724명 고용) 및 부가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임
- 또한 강화도뿐만 아니라 인천, 진도, 서천, 안산 등 전국 대상으로 갯끈풀 모니터링 및 제거, 교육·홍보물 배포, 발견 신고 전화 운영 등 침입외래종으로부터 국민 삶의 질적 제고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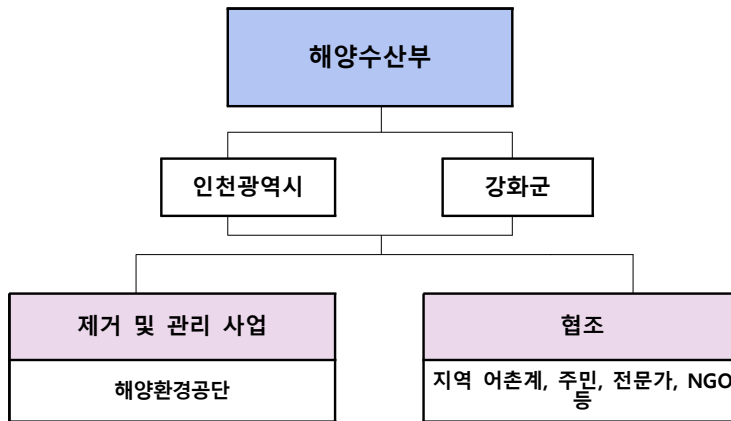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점검 등을 수행함
- 동 보조사업 추진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갯끈풀 분포현황 파악 및 면적산출, 갯끈풀 제거 (줄기, 뿌리제거), 갯끈풀 서식지 생태조사, 교육·홍보 순으로 추진됨

<사업추진 절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집행정산을 보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보고에 따른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을 통지함
- 보조금사업 모든 집행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정산하며, 연 1회 이상 상시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함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책임 하에 운영·관리되나, 부정수급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춰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집행함



- 보조금 교부 확정 시 해당 내용이 규정된 각 내역사업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송부하고, 보조금사업의 모든 집행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정산, 상시 모니터링함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은 2019년 863백 만원 수시배정사업으로 ‘19.5~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19.10월 기획재정부 승인(지출 전 사전협의)을 받아 경기도로 교부(‘19.10.31.)함. 연내 실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리가 요구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점검 등을 수행함. 부정수급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집행정산을 보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보고에 따른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 통지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연 2회(‘19.5월/10월)에 걸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갯끈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갯끈풀에 대한 원천적 확산방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갯끈풀 제거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서식면적의 저감 효과가 있었음.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현재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자체 사업관리 노력으로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갯끈풀은 해양수산부에서 '16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전이 우려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또한 갯끈풀의 주요 서식지역인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확산저감 및 갯끈풀 서식면적 감소 효과가 확인됨
- 특히 국내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최근 3년 간 갯끈풀 서식면적이 줄었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동 보조사업 효과로 인정됨
- 국내 갯끈풀 99% 이상이 강화지역에 분포하며 타 지역 전이 우려가 높지만, 최근 3년 간 서식면적 30,000㎡ 이하, '19년 갯끈풀 서식면적(29,472㎡, 5.5%↓) 저감의 단기적인 성과가 있었음. 갯끈풀의 강한 확산력과 재번식력을 고려할 때 완전박멸을 위해서라도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갯끈풀의 줄기제거(유성생식 방지)와 뿌리제거(무성생식 방지)를 매년 실시, 제거구역 사후관리(재증식 개체 제거) 및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방식 제고가 요구됨
- * 사업방식 변경 내용 : 줄기제거(2→1회/연) 축소, 뿌리제거 단계적 확대, 제거구역 사후관리 및 전국 모니터링 강화
- 국내의 경우 '18년 처음으로 갯벌뒤집기 방식에 의한 뿌리제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동 사업 효과는 '20년(금년) 상반기에 자연상태의 재증식 여부 확인이 가능함. 더구나 뿌리제거 방식의 소요예산은 384백만원/30,000㎡으로 줄기제거(54백만원/30,000㎡)보다 7배가량 많고, 연 1회 이상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23년까지 '18년 갯끈풀 서식면적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책임 하에 운영·관리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인천시·강화군)로 부터 분기별 실적보고를 제출받음. 해양수산부·인천시·강화군 공동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외부전문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 경과, 예산집행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함
- 그러나 부정수급 가능성은 항상 상존함으로써 이를 위한 방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또한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을 위해 수시배정 예산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863백 만원 이월되었는데, 조속한 조기 집행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향후에는 과학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 과학관의 설립목적인 해양생태계 교육·홍보 및 해양생태 문화의 체험 장으로써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성과지표 추가 개발이 필요함. 단지 갯끈풀 제거면적 감소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한 갯끈풀 재증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조사 등을 통한 해양생물의 개체수 증가, 해양생태계 개선효과 등 종합적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성과지표 개발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창업인프라지원(세종)
창업인프라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구인기업 관점의 성과지표의 개발과 해당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요구됨 ·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낮은 선호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보조사업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난과 구직난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직자뿐만 아니라 구인기업 관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해당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요구됨 · 구인난 해소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구인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내용 보강 및 수혜 구인기업에 직무교육 비용 부담을 일부 설정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보조사업의 사업추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 74조 >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동 보조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는 중소기업부장관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청년구직자 등 구직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구인수요를 발굴하여,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함으로써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상위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이 인정됨
 - 프로그램(‘중소기업인력지원’)의 목적은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함
 - 단위사업(‘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의 목적은 청년장병 등 청년 구직자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을 통해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성이 있고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과도 연관되므로,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함으로써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취업자 수’, ‘취업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난과 구직난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현행 성과지표는 구직자 관점의 성과만을 측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구직자 및 구인기업 각각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기 시행 중이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낮은 선호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기업 관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해당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보강이 요구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수: (단위: 명)	세부사업	목표	신규	2,500	2,600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청년 구직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수
		실적	-	2,657	3,520	
		달성도	-	106%	135.4%	
취업만족도: (단위: 점)	세부사업	목표	신규	70.0	73.5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 은 취업자 대상 만족도 점수
		실적	-	79.0	81.9	
		달성도	-	113%	111%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확대라고 할 때,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상 해당 정책목표에의 기여도는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 중소기업은 노동시장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애로를 겪고 있고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민간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청년장병 포함)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자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중소기업 이외 일자리창출 유공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DB를 확보하여 취업매칭에 있어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사업은 발견되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훈련수당 및 코칭비를 수령하는 구직자와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역량이 강화된 구직자를 채용하게 되는 구인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청년일자리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따른 간접적 혜택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율 100%로 지원하고 있지만, 구인난 해소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구인기업에게 직무교육 비용 부담을 일부 설정하는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⑫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조금 교부조건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내역사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0조에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공고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갖추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한 1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갖추고 있음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2차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집행 점검표를 통해 기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내역사업의 경우,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추진지침 제7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 등 적정한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갖추고 있음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추진지침 제9조에 따라 관리기관 임직원 3명과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한 총 8인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1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갖추고 있음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추진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2차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집행 점검표를 통해 기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정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갖추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대중소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0·11장 및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 추진 지침 제5·6·7장에 따라 수시·최종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산정, 관리 및 정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음
 - 대중소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1장 및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 추진지침 제7장 등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정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회계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점검 가이드라인(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34조,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침,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의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분기별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하여 지원금 이력조회 등 지원금 DB를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대체로 적정히 갖추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청년구직자 등 구직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구인수요를 발굴하여,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함으로써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 취업자 수’, ‘취업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난과 구직난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성과지표는 구직자 관점의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낮은 선호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기업 관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적 반영과 해당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보강이 요구됨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적정한 보조율(100%)로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구인난 해소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구인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내용 보강 및 수혜 구인기업에 직무교육 비용 부담을 현물 등의 방식으로 일부 설정하는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창업생태계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재조정을 통한 실질행률 제고, 내역사업간 체계적 연계·통합 등을 통한 사업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방식변경 필요 ·‘19년 실질행률이 크게 저조했던 ‘스타트업파크’ 내역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지연 등 대상 지자체 일정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종료시점(‘20.4)에는 양호한 실질행률이 예상되는 바 예산감축 사유는 크지 않지만, ‘21년 사업추진시 상기 현실을 고려한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조정 등 실질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 필요. 창업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7개 내역사업간 큰 틀에서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내역사업간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변경 필요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기부의 ‘창업인프라지원’ 사업과 일부 유사성 및 연계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사업 간의 연계·협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보조사업의 추진내용은 이에 대체로 부합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3항에서는 상기 중소기업창업 지원 사업에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제시되어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에 대체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스타트업파크’, ‘소셜벤처육성’ 등의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에 제시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사업의 포괄적인 범주를 통해 찾을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1인창조기업활성화’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공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

-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지역 창업 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체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상위 프로그램(‘창업환경조성’) 및 단위사업(‘창업생태계기반조성’)과의 연계성 및 목적부합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38-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과 일부 연계성이 있고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과도 연관되므로,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1인창조기업활성화’, ‘스타트업파크’, ‘소셜벤처육성’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업생태계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창업 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7개 내역사업간 큰 틀에서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내역사업간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혁신센터 육성 창업기업 수’, ‘예산투입대비 메이킹 경험자 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동 보조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내역사업 각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짐
 - 현재 설정된 두 가지 성과지표가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개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은 이해되나, 그 외 5개 내역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대표성이 다소 부족함
 - 예를 들어, ‘소셜벤처육성’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달성도를 현행 성과지표 하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혁신센터 육성 창업기업 수(개)	세부사업	목표	신규	828	869	17개 혁신센터별 육성 창업기업 수 (19년은 6월 기준)
		실적	-	1,796	780	
		달성도	-	217%	89.8%	
예산투입대비 메이킹 경험자수(명)	세부사업	목표	-	신규	4.1	해당연도 메이킹 경험자 수 / 해당연도 사업예산 (백만원)
		실적	-	-	4.11	
		달성도	-	-	100%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창업환경조성이라고 할 때,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상 해당 정책목표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문제를 민간 시장 자체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창업생태계기반조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기부의 ‘창업인프라지원’ 사업과 일부 유사성 및 연계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사업공간, 교육 및 컨설팅,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 창업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간접적 혜택은 일자리를 비롯한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9년 실집행률이 크게 저조했던 ‘스타트업파크’ 내역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지연 등 대상 지자체 일정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종료시점(‘20.4)에는 양호한 실집행률이 예상되는 바 예산감축 사유는 크지 않음
- 다만, ‘21년 사업추진시 상기 현실을 고려한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조정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2019년 (실적)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창업존 운영 (민간경상보조)	6,164	6,164	6,164 [5,137]	-	-	83.3%
스타트업파크 (민간경상보조)	500	500	500 [299]	-	-	59.8%
스타트업파크 (민간자본보조)	12,077	12,077	12,077 [8,453]	-	-	70%

-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액의 추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 확대 방안 및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면밀한 전망과 근거를 토대로 추계액을 조정할 필요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내역사업별 상이한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갖추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4조의 4)에 근거하여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지정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 중이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대응 예산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2차레(1차 총 예산의 70% → 점검 → 2차 잔여 30% 금액)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음
 - 메이커 활성화 지원의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경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지원중이며, 보조금 교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2차레(1차 70% → 중간점검 → 2차 30%)로 나누어 교부함
 -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내부규정(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공모)하고 있음
 - 1인창조기업활성화의 경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스타트업파크의 경우 보조사업자 공모는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공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대상으로 신청하며, 선정평가는 민간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1차(서류)평가, 2차(현장)평가, 3차(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선정 후 보조금 교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2차레(1차 70% → 점검 → 2차 30%)로 나누어 교부함
 - 소셜벤처육성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내부규정(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공모)하고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조금 교부조건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또한 내역사업별 근거 법령에 맞게 적정히 갖추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사업별 운영·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점검, 관리, 정산하고 있으며, 집행 점검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제재 및 환수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적정히 갖추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침, 예산관리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점검, 정산, 환수 등을 적정하게 운영 중임
 - 메이커 활성화 지원의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점검, 정산, 환수 등을 적정하게 운영 중임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경우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부관리기준, 창업사업화통합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보고, 정산, 환수 등을 적정하게 운영함
 - 1인창조기업활성화의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보고, 정산, 환수 등을 적정하게 운영 중임
 - ‘창업존 운영’, ‘스타트업 파크’, ‘소셜벤처육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제24조, 제26조 등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점검, 정산, 환수 등을 적정하게 운영 중임
- 보조금법에 따라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을 공시하도록 명시(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관리기준 제29조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 등)되어 있으며, 절차,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사항도 보조금법에 따라 적정히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침 제41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항에 따라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여부 확정 및 제재 등급을 심의하고 있음
 - 메이커 활성화 지원의 경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 내 부정수급 발생 시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12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 확정 및 제재등급 심의하고 있음



- 1인창조기업활성화의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9조(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 및 결정을 심의하고 있음
- ‘창업존 운영’, ‘스타트업 파크’, ‘소셜벤처육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관리규정 제33조, 제34조 등 부정수급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중임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지역 창업 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체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1인창업기업활성화’, ‘스타트업파크’, ‘소셜벤처육성’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업생태계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창업 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7개 내역사업간 큰 틀에서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내역사업간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혁신센터 육성 창업기업 수’, ‘예산투입대비 메이킹 경험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동 보조사업에 포함한 다양한 내역사업 각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짐
- ‘19년 실집행률이 크게 저조했던 ‘스타트업파크’ 내역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지연 등 대상 지자체 일정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종료시점(‘20.4)에는 양호한 실집행률이 예상되는 바 예산감축 사유는 크지 않지만, ‘21년 사업추진시 상기 현실을 고려한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조정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기부의 ‘창업인프라지원’ 사업과 일부 유사성 및 연계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창업인프라지원(세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창업지원 관련 타 유사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창업보육센터 자립형 전환 유도 등 사업효율화를 위한 사업방식변경 필요 ·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및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타 사업들(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형 전환 유도 및 재정자립도를 적극 반영한 신규 창업보육센터 선정 필요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서는 정부가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동 보조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창업보육센터지원’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비교적 명확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보조사업의 추진내용(‘창업보육센터지원’)은 이에 대체로 부합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3항에서는 상기 중소기업창업 지원 사업(‘창업보육센터지원’)에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 6조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각종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환경조성,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상위 프로그램('창업환경조성') 및 단위사업('창업인프라지원')과의 연계성 및 목적부합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를 세종시 등 지역으로 확산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계획' 상 '지역경제를 견인할 新 주체 육성'과 관련성이 있어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창업보육센터지원'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에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영세기업 포함) 지원 등 건강한 창업인프라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지난 3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가 필요함
- 자체평가로 별도의(‘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지표를 두어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있음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생존한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이므로 사업의 성과가 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단위사업	목표	6.5	32.4	35.7	계속 입주기업의 (Σ당해 연도 매출액 - Σ전년도 매출액) * 100 / Σ전년도 매출액
		실적	20.3	42.6	-	
		달성도	312.3	131.4	-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점)	세부사업	목표	90	91.5	88.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적	87.6	91.4	87.5	
		달성도	97.3	99.9	98.7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창업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라고 할 때,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상 해당 정책목표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인프라 조성 문제를 민간 시장 자체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창업인프라조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1인창조기업활성화’, ‘스타트업파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또 다른 보조사업인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 지원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사업공간,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 창업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창업인프라 조성에 따른 간접적 혜택은 일자리를 비롯한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규모 대비 행정비용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운영비 단가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가치 중 ‘⑧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동 보조사업으로 인해 실현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정도를 성과지표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음
- BI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은 통합운영지침 “II. 경영평가”에 따라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정량평가(서면) 및 정성평가(발표)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 시 7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최고, 최저점을 배제하여 평점을 산출후 평점 60점 이상 BI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역별 BI 수를 기준으로 지역예산을 배정하고 지역별 예산 내에서 주관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는 관련 규정에 맞게 경영평가 및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관리시스템(K-Startup)을 통해 주관기관에 배정하는 등 적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II.8.경영평가 계획 및 대상·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IV. 15. 16.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사업비관리시스템(k-start up)을 통해 협약체결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37조(전문기관)에 따라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사업자 평가 및 예산 교부, 집행점검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하여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간·수시·최종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산정, 관리 및 정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기간, 정보공시 사항, 재재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점검 가이드라인(기재부), BI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20. 제재 및 환수관리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간점검, 수시점검,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각종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환경조성,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지난 3년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가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또 다른 보조사업인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 지원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생존한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이므로 사업의 성과가 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명	창업인프라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 사업효과성 제고 및 실집행을 향상을 위해 ‘지식산업센터건립’의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 예산감축, 사업일정 및 예산계획 재조정이 필요함 · 창업지원 관련 타 유사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창업보육센터 자립형 전환 유도 등 사업효율화를 위한 사업방식변경 필요. · 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및 보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타 사업들(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형 전환 유도 및 재정자립도를 적극 반영한 신규 창업보육센터 선정 필요. ‘지식산업센터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효과성 및 실효성을 확인해 가며 건립 일정계획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집행률(특히 지식산업센터건립)이 매년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감축을 비롯해 예산계획 조정 및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실집행률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지식산업센터’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 필요. ·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고, 사업내용과 성격이 상이한 ‘창업보육센터지원’과 ‘지식산업센터건립’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서는 정부가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동 보조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창업보육센터지원’,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비교적 명확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보조사업의 추진내용(‘창업보육센터지원’)은 이에 대체로 부합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3항에서는 상기 중소기업창업 지원 사업(‘창업보육센터지원’)에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 지원사업(‘지식산업센터건립’)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 6조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각종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환경조성,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상위 프로그램('창업환경조성') 및 단위사업('창업인프라지원')과의 연계성 및 목적부합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비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계획' 상 '지역 경제를 견인할 新 주체 육성'과 관련성이 있어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창업보육센터지원',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에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영세기업 포함) 지원 등 건강한 창업인프라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자체평가로 별도의('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지표를 두어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있음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생존한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이므로 사업의 성과가 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기 구축완료되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세부사업	목표	40.3	39.9	35.7	계속 입주기업의 (Σ당 해연도 매출액 - Σ전년 도 매출액) * 100 / Σ 전년도 매출액
		실적	40.5	35.9	40.9	
		달성도	100.4	89.9	114.6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점)	세부사업	목표	87.3	87.7	88.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적	87.4	87.1	87.0	
		달성도	100.2	99.3	98.3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창업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라고 할 때,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상 해당 정책목표에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인프라 조성 문제를 민간 시장 자체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창업인프라조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존 운영’, ‘1인창조기업활성화’, ‘스타트업파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또 다른 보조사업인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 지원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사업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 창업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창업인프라 조성에 따른 간접적 혜택은 일자리를 비롯한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식산업센터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그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효과성 및 실효성을 확인해가며 건립 일정계획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집행률(특히 지식산업센터건립)이 매년으로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감축을 비롯해 예산계획 조정 및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실집행률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사업추진 준비도를 반영하여 신규 지식산업센터건립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진척도를 평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을 감축할 여지가 있고,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조정 및 수시점검 강화 등 사업관리 강화로 실집행률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액의 추정 근거가 미약하므로, 보다 면밀한 전망과 근거를 토대로 조정할 필요 있음



(단위: 백만원)

2019년 (실적)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창업보육 센터지원	20,275	20,275	14,875 [13,875]	5,258	142	93.3%
지식산업 센터건립	40,056	40,056	33,397 [14,120]	6,659	-	42.3%
사유	(불용) 창업보육센터(동대구벤처밸리건립)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42백만원 발생 (이월) 균특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세입재원없는 세출예산 11,917백만원 이월 (실집행) 지자체의 건립부지 미확보 및 설계, 건물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 부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가치 중 '⑧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동 보조사업으로 인해 실현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정도를 성과지표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지정(고시 제4조)하여 매년 사업공고 및 경영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운영지침 “II. 주관기관(BI) 선정”에 따라 중기부 및 비아이넷(BI-Net) 홈페이지, K-Startup을 통하여 공고하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표평가 시 7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최고, 최저점을 배제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예산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BI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은 통합운영지침 “II. 경영평가”에 따라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정량평가(서면) 및 정성평가(발표)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 시 7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최고, 최저점을 배제하여 평점을 산출후 평점 60점 이상 BI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역별 BI 수를 기준으로 지역예산을 배정하고 지역별 예산 내에서 주관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네트워크형 BI 지원사업은 “III. 12. 네트워크형 BI 연차평가”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평점에 따라 70점 이상 고득점 주관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는 관련 규정에 맞게 경영평가 및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관리시스템(K-Startup)을 통해 주관기관에 배정하는 등 적절한 보조금 교부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신규지정 포함) 지원사업 운영지침 “II.8.사업공고 및 신청·접수”에 따라 신청자격 및 기간,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요건검토,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관리시스템(K-Startup) 통해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신규지정 포함) 지원사업 운영지침 III.13.14.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비관리시스템(k-start up)을 통해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짐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II.8.경영평가 계획 및 대상·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IV. 15. 16.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사업비관리시스템 (K-Start up)을 통해 협약체결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37조(전문기관)에 따라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사업자 평가 및 예산 교부, 집행점검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하여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집행지침(2018.11.28.)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간·수시·최종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산정, 관리 및 정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기한, 정보공시 사항, 재재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집행지침(2018.11.28.)에 명시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점검 가이드라인(기재부), BI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20. 제재 및 환수관리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총 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 하였으며, 규정 및 지침의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를 미 준수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6,238,377원)을 환수 처리한 바 있음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BI(주관기관) 협약 설명회, 중간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상담으로 관리하고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가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집행지침(2018.11.28.)에 명시되어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1건 있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간점검, 수시점검,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각종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환경조성,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보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난 2년간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기 구축완료되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부의 또 다른 보조사업인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과 지원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및 보육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식산업센터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그 효과성이 불투명하므로, 효과성 및 실효성을 확인해가며 건립 일정계획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행행위(특히 지식산업센터건립)이 매년으로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감축을 비롯해 예산계획 조정 및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실행행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사업추진 준비도를 반영하여 신규 지식산업센터건립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진척도를 평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을 감축할 여지가 있고,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조정 및 수시점검 강화 등 사업관리 강화로 실행행위 개선이 필요함



- ‘창업보육센터지원’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가 확인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생존한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이므로 사업의 성과가 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졸업기업의 일정 기간 생존률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사업내용과 성격이 상이한 두 내역사업 ‘창업보육센터지원’과 ‘지식산업센터건립’을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병원재활센터확충
재향군인회지원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지방보훈회관건립
참전유공자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국가유공자등 위로 격려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	
총 평	· 단계적폐지(22년말),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 사업 성과목표 및 결과가 미흡하고, 부처 내 타 세부사업과 유사함 ·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봉사 활동 위축 및 대학재학 보훈 자녀 수의 점진적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부처 내 타 재정사업(보훈정신 계승발전사업)과 유사함. · 본 사업을 일반회계사업인 보훈정신 계승발전사업으로 통합함. 사업성과지표도 개선 하도록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보훈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보훈기금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은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게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동아리 “호우회”가 국가유공자등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 등 복지서비스 및 나라사랑 활동 등 선양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호우회 건전활동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72.2%, 91.7%, 100%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학생인 회원 가입과 활동 참여 열의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없음
 - 2017년 호우회 회원의 자부담률 20%를 적용한 결과 회원의 참여 저조로 예산 실적행률이 72.2%로 급격하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2018년부터 자부담 기준 비율을 폐지하여 예산 실적행률이 회복되었음
 - 대학생인 회원 가입과 활동 참여 열의 감소 추세는 호우회 가입 보훈대상자 수가 2017년 68명, 2018년 52명, 2019년 2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됨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36	36	26 (26)	-	10	72.2%
2018년 (결산)	36	36	33 (33)	-	3	91.7%
2019년 (실적)	34	34	34 (34)	-	-	100%

- 본 사업의 성과지표(호우회 가입 보훈대상자 인원)의 목표 및 성과 결과가 저조하여 근본적인 사업 구조개선이 필요함
 - “호우회 가입 보훈대상자 인원” 지표의 목표를 2017년과 2018년 각각 7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목표 달성률이 같은 기간 동안 97.1%에서 74.3%로 하락하였고, 이후 2019년 성과목표를 52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하였음에도 해당 연도 달성률이 39.5%로 급격히 하락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악화되고 있음
 - 성과목표 및 결과 부진의 원인으로는 대학생의 동아리 가입 수요 자체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해 대학재학 보훈자녀도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의 대상자 풀(pool)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보다 직접적인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호우회의 연간 활동 계획 대비 달성수준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호우회가입 보훈대상자 인원(명)	보조사업(내역)	목표	70	70	52	대학에서 제출한 호우회명 단 중 보훈대상자 수
		실적	68	52	20	
		달성도	97.1	74.3	38.5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호우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무부처의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과 유사성이 확인됨
 -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일반회계사업으로 보훈정신함양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데, 내역사업 중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사업(청소년들의 국가유공자를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사업 내용의 유사성이 있음



구 분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보훈정신 계승발전
예산구분	보훈기금	일반회계
프로그램명	보훈의료복지	보훈선양
단위사업명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보훈정신함양
세부사업명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보훈정신계승발전
내역사업명	호우회 건전활동 보조금 * 20년 예산 : 34백만원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 20년 예산 : 104백만원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대부분의 대학생 동아리 봉사활동은 외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동아리인 “호우회”의 봉사활동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나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보훈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 및 일반 대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해 대학재학 보훈자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사업 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호우회 건전활동)은 2017년 26백만 원에서 2020년(계획) 34백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1,045	998	1,297	1,173
운영비	571	632	775	768
업무추진비	67	70	71	72
기타보전금	381	263	417	299
호우회건전활동 (보조사업)	26	33	34	34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나름의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집행률이 72.2%, 91.7%, 100%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학생인 회원 가입 규모 등에서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 하락 우려가 상존함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보훈대상자 자녀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처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중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위한 국가 의무임
- 대학생 동아리 단체가 해당 사회적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9년 호우회 활동지원 계획」을 시달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는 등 소정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8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동아리 “호우회”가 국가유공자등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 등 복지서비스 및 나라사랑 활동 등 선양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훈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이 부처 내 타 사업인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과의 유사성이 확인됨.
- 성과지표인 “호우회 가입 보훈대상자 인원”의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 결과가 저조하여 근본적인 사업 구조개선이 필요한데,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해 대학재학 보훈자녀 감소 등의 외부 여건에 의한 것으로 현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 추가적으로 최근 일반학생의 가입을 허용하여 당초 국가 유공자 자녀로 구성된 “호우회”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전체 호우회 인원 892명 중 유공자녀 회원 비중이 2.2%에 불과)

3-2 정책 제언

- 지원대상 단체인 호우회가 45년의 긴 역사를 가짐을 인정하지만,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봉사 활동 위축 및 대학재학 보훈 자녀 수의 점진적 감소 등의 외부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본 사업을 부처의 일반회계사업인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으로 통폐합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성과지표는 목표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성과지표를 호우회의 연간 활동 계획 대비 달성수준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최근 국내장학사업의 집행률이 미흡(2019년: 66%)하므로, 해당 예산 감축과 함께 장학사업의 현실화 및 수요자 발굴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보조사업은 2020년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타당성이 인정됨. ·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중 국외장학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어 관련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신규 도입된 국외장학사업은 계획대로 운영하되, 수요자 발굴 및 집행률 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노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성과지표로 현재 지표에 더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지금까지는 본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4.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규정에 포괄적으로 근거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2(사업)‘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규정에 포괄적으로 근거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4조‘2.(유엔군 참전의 날).‘국가는 유엔참전국과 참전 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와 ‘4.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규정은 보조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 연계성이 미흡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2(사업)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 강화’규정은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내용이 대체로 일치함.
- 그러나 2020년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 본 보조사업은 국내외 6.25 전쟁 참전용사, 그 후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본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국내외 6.25전쟁 참전용사(국내 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와 유엔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참전기념행사 등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라 수혜자의 범위가 비교적 협소함.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수혜자 범위가 협소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 참전국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바, 특별한 우려점은 발견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 강화,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보훈 외교 강화라는 정책 목표하에 수행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유엔참전국후손장학사업, 유엔참전용사평화음악회, 창군및참전원로지원, 유엔참전용사국내기념행사의 4가지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유엔참전국후손장학사업은 2019년까지 한국내 유학중인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내장학사업만을 예산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거주중인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외장학금사업이 추가됨.
- 국외장학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민간 기업 및 공무원들(공무원 봉급 우수리)로부터 모금 활동을 벌여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 참전국 4개국(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의 후손을 지원하였으나, 모금액 감소 등으로 2020년부터 예산사업으로 편성됨.
- 내역사업은 모두 6.25 참전용사 (및 가족)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활동임.
- 6.25가 발발한지 이미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수가 매우 적고, 장학금 수혜대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후손의 수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내역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장기적으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행사의 “참여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선택 편이(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음.



- 즉, 해당 내역사업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문에 응답하더라도 설문조사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6.25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은과 명예선양사업은 국가보훈처 고유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과 유사성과 중복성이 없음.
- 창군 및 참전원로 지원은 대한민국 창군에 기여하고 6.25에 참전한 창군원로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가 1명임.
- 현재 참전용사 후손 국외장학금 지원 대상자들은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등 모두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에게 한국정부가 ODA를 제공하고 있으나, ODA는 일반적인 개발 협력 사업이므로 참전용사 후손 등에 특정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본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다만, KOICA 등 ODA 특화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국외장학금 수혜 대상자 파악, 장학금 전달의 효율적 체계 구축, 국외장학사업이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으로 이어지도록 홍보 전략 구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중 국외장학사업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①국내장학사업(학습장려금), ②국외장학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구성됨.
- 국내장학금은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66% 머물고 있음.
- 2020년 예산액도 2019년과 동일한 90백만원이 책정되어 실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혜 대상자 발굴 등 집행률 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한편, 국외장학금 사업은 2010년부터 민간과 공무원 모금활동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모금액 감소와 대통령의 장학사업 확대 강조(2018.6.4. 한-필리핀 정상회담 등) 따라 2020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함
- 최근 3년간 국외장학사업의 지출액은 2017년 424백만원, 2018년 360백만원, 2019년 275백만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대상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기 보다는, 모금된 재원이 감소하여 사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 2020년 국외장학사업의 예산액은 306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금액인 353백만원보다 낮은 수준임. 상기 설명한 집행금액 감소사유가 재원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예산액의 과대 계상의 위험은 없다고 예상됨.
- 보조금 시행령에서 기준보조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민간기관에게 직접 지원하는데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생계가 곤란한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사회적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급여형 보조사업과 행사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후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제출된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당 보조사업을 위한 별도 규정 제정을 진행중임.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의 경우 재향군인회, (사)유엔한국참전국협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위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유엔군초전기념관 등 국내 참전기관 관련단체가 있음. 이는 매년 1월 행사지원소요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을 참전기관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한국전쟁기념재단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향후 보조사업자의 선정시 신청자격을 명시하여 공모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집행사항 및 행사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집행잔액 또는 이자액을 반환 조치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1조, 34조, 35조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국고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지속적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고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불분명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들 중에서 고령의 6.25참전용사와 경제력이 낮은 후손들에 한정된 사업들은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음.
- 최근 3개년간 예산의 실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장학사업 개편 등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 수립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최근 3개년간 예산의 실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장학사업 개편 등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 수립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참전용사 후손 국외장학금 지원 대상자들은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 모두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에게 한국정부가 ODA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KOICA 등 ODA 특화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참전용사 후손 파악 및 장학금 전달의 효율성 제고, 또 국외장학사업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우호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홍보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내역사업 평가시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추가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국가보훈처
사업명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7.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만으로는 사업 효과 및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함 ·보훈단체 선양활동만으로는 고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기존 성과지표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참가인원)는 사업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타 세부사업(보훈단체 운영)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하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2018년부터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세부사업이 분리되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각종 추모·선양·기념·홍보 행사 등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존경받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시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해당되나, 대통령 공약 사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보훈단체 선양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나, 본 사업이 2018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보훈단체 운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약화되어 사업 효과가 반감됨
 - 사업 분리 이후에도 동일한 부처 담당자가 2개로 분리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지원(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중 85%)이 민간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도 유사한 상황임
- 본 사업의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98.8%, 98.4%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다만 연도별로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 행사의 미개최 등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보훈단체의 예산 사용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	-	- ()	-	-	%
2018년 (결산)	3,009	3,009	2,974 (2,939)	-	35	98.8%
2019년 (실적)	3,763	3,763	3,701 (3,639)	-	62	98.4%

- 본 사업의 성과지표(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참가인원)는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기존 성과지표 결과 계측 방식은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선양 활동에 대한 참가인원 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실제 참가 가능 회원 인원(단체 회원 수 등) 중 실제 참가율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양활동의 최종 목표는 “국민에게 존경받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는 것이기에 해당 목표에 대한 사업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계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보훈단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론 노출 건수, 보훈단체 호감도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참가인원	세부사업	목표	-	13,930	23,530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선양 활동 참가인원 합산(결과보고서)
		실적	-	14,500	23,700	
		달성도	-	104.1	100.7	

-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단의 장례지원 대상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 요구가 있었는데, 적절한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지방의 무공지부 장례의전 선양단을 확대하여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의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운영지침을 마련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각종 추모·선양·기념·홍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으나, 2018년 상호 분리된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부처가 제시한 보훈단체의 국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사례(강원도 산불 및 태풍피해 복구 활동,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 수중 정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는 “보훈단체 운영지원사업”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20년(계획) 4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보훈단체선양행사 지원(320-01)	-	2,974	3,701	3,989
국외전적지탐방 (210-14)	-	676	684	684
국외여비 (220-02)	-	3	4	4
① 보훈단체 선양활동등	-	3,653	4,389	4,677
② 보훈단체 선양활동등 (보조사업만)	-	2,974	3,701	3,989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집행률은 매우 우수하나 불용액이 35백만 원과 62백만 원 발생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책 강화가 필요함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 3섹터의 지원 및 육성을 하기 위한 국가의무임
- 보훈단체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특임), “학교폭력예방활동”(고엽),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활동”(광복회, 미망인회)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되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에 있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매 분기 정산서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의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민에게 존경받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기 위해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각종 추모·선양·기념·홍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이 기존 사업인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타 세부사업(보훈단체 운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반감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본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참가인원”은 사업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을 “보훈단체 운영” 사업과 통합하여 사업 관리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 및 사업의 종합적인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보훈단체 운영” 사업은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지원(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중 85%)이 민간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도 유사한 상황임
 - 또한 기존 사업(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1개의 내역사업(보훈단체 선양활동 등)만으로는 성과 창출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함
- 사업 예산의 불용액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보훈단체의 예산 기획 및 사용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 사업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함
- 기존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에 현재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투입 예산에 대한 사업 효과가 정확하게 증빙되지 못하면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없게 됨
 - 기존 지표를 실제 참가 가능 회원 인원(단체 회원 수 등) 중 실제 참가율 지표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선양활동의 최종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을 제시하기 위해 신규 지표(보훈단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론 노출 건수, 보훈단체 호감도 등)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훈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각종 단체 활동의 자유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기부금 조성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보훈단체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7.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만으로는 사업 효과 및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함 ·보훈단체 운영만으로는 고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기존 성과지표(보훈단체에 대한 국민호응도)는 사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사업 노력 결과에 따른 성과 반영 수준이 낮음 ·타 세부사업(보훈단체 선양활동 등)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성과지표를 신규 지표로 대체하도록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13개 보훈단체(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 유족회, 4.19 공로자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해당되나, 대통령 공약 사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보훈단체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나, 본 사업이 2018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약화되어 사업 효과가 반감됨
 - 사업 분리 이후에도 동일한 부처 담당자가 2개로 분리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지원(보훈단체 운영 중 99.7%)이 민간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도 유사한 상황임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99.2%, 99.6%, 98.6%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다만 연도별로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훈단체의 인건비 또는 경비 미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지원 대상 보훈단체의 예산 사용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20,821	20,663	20,663 (20,505)	-	158	99.2%
2018년 (결산)	17,900	17,900	17,827 (17,754)	-	73	99.6%
2019년 (실적)	24,990	24,990	24,635 (24,280)	-	355	98.6%

- 본 사업의 성과지표(보훈단체에 대한 국민호응도)는 사업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져서 사업에 대한 성과 결과 및 효과성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렵기에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단체의 운영 자체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보훈단체의 선양 활동 등의 결과로 시현되는 국민호응도 지표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는데, 담당 부처에서도 자체 노력으로 결과 개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음
- 특히, 2017년 일부 단체의 잘못된 운영문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발생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 호응도 감소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원 대상 보훈단체 회원의 만족 수준과 보훈단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론 노출 건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호응도	보훈단체운영 (프로그램)	목표	62	64	65.1	5점 척도를 이용 하고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호국영웅인지도 조사보고서(가중치50%) +자체설문보고서(가중 치50%)]
		실적	62.0	64.1	65.3	
		달성도	100.0	100.2	100.3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보훈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으나, 지원 대상 보훈단체의 사업 중 복지회관 등 운영사업(2020년 계획 예산 29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함
 - 광복회의 독립유공자복지회관과 상이군경회의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지방보훈회관이 대신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보훈회관의 공간 협소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기예 향후 지방보훈회관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 내용 수행에도 한계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기부금 조성 등의 활동을 장려하여 보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발달하고 있기에, 미국 등 선진국의 재향군인회(Veterans association) 등이 기부금을 조성하여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정부 예산 보조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여, 담당 부처가 2018년부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207억 원에서 2020년(계획) 44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보훈단체운영 (320-01)	14,518	14,901	21,725	28,121
보훈단체선양활동 (320-01)	3,284	-		
보훈단체운영 (320-07)	-	-	-	16,200
보훈단체운영 (240-01)	-	-	95	5
복지회관등 운영 (320-01)	2,861	2,890	2,910	2,941
수익사업 관리 (110-03)	-	30	39	40
수익사업 관리 (210-14)	-	-	-	50
수익사업 관리 (320-09)	-	6	7	7
① 보훈단체운영	20,663	17,827	25,131	44,423
② 보훈단체운영 (보조사업)	20,663	17,791	24,635	44,321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은 매우 우수하나 매년 불용액이 7천만 원 ~ 3억 6천만 원 발생하고 있어, 보훈단체 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 본 사업은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제시되어 있고,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목표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 3섹터의 지원 및 육성을 하기 위한 국가 의무임
- 보훈단체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특임), “학교폭력예방활동”(고엽),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활동”(광복회, 미망인회)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되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13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에 있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매 분기 정산서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3개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이 기존 사업인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타 세부사업(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반감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본 사업 자체적인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호응도”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져서 성과 결과와 효과성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움
 - 지원 대상 보훈단체의 사업 중 복지회관 등 운영사업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심분 공감되나, 보훈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을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과 통합하여 사업 관리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 및 사업의 종합적인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은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지원(보훈단체 운영 중 99.7%)이 민간이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도 유사한 상황임
 - 또한 기존 사업(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서 분리된 이후, 1개의 내역사업(보훈단체 운영)만으로는 성과 창출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함
-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대비 사업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 일부를 감축하도록 함



- 기존 성과지표를 지원 대상 보훈단체 회원의 만족 수준과 보훈단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론 노출 건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들로 대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광복회의 독립유공자복지회관과 상이군경회의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지방보훈회관이 대신할 수 있기에 통합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훈단체의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각종 단체 활동의 자유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기부금 조성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연계되는 성과지표 결과와 괴리가 있음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함 반면에 예산 투입 실적으로 계측되는 성과지표 목표는 100% 달성되고 있어 예산 실집행률과 차이를 보임 ·진행 중인 사업과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을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함 성과지표와의 괴리 문제도 보완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따라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조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4개 병원의 전문 재활센터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해당되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를 위해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내역사업별 사업기간(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18년 ~ 2020년,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18년 ~ 2021년,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20년 ~ 2021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21년 ~ 2022년)을 달리해서 사업의 순차적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26.9%, 49.1%로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성을 보임



- 연구 용역 후 설계, 공사 등의 사업 단계가 지연되어 설계비(2018년)와 공사비(2019년) 등의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추후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과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	-	- (-)	-	-	-
2018년 (결산)	1,650	1,650	1,650 (444)	(1,206)	-	26.9%
2019년 (실적)	12,778	12,778 (13,984)	12,778 (6,870)	(7,025)	(89)	49.1%

- 본 사업의 성과지표(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정율)는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목표와 예산 실집행률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해당 성과지표는 전형적인 시설 건립 공정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데,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 비중으로 계측되는 2018년과 2019년 실적이 해당연도 목표(2.4%, 21.1%)를 100%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실제 예산의 실집행율은 해당 기간동안 각각 26.9%, 49.1%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지표 측정산식의 “누적투자액”이 실제 센터 건설에 투입된 금액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을 보훈공단에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인데, 설정된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 본 상립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신설 센터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성과지표를 추후 도입하여야 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정율	보조사업(내역)	목표	-	2.4	21.1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실적	-	2.4	21.1	
		달성도	-	100	1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지방 4개 병원의 전문 재활센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움. 다만 4개 재활센터를 국고 보조 100%를 통해 현재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총 66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300여 병상을 설립하는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타당성 분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2018년 제출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 등)
 - 또한 기존 보훈병원의 유휴 공간을 재활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인근 민간 재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훈병원 인근(대구보훈병원의 경우 3 ~ 12km 이내,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16 ~ 20km 이내)에 대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건설 예정인 보훈병원의 재활 서비스 수요 일부를 민간 재활센터가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 보훈병원을 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나 실제 이용 비중은 7.0% 수준으로 낮은 편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8년 17억 원에서 2020년(계획) 18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320-07)	-	852	7,738	13,643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320-07)	-	798	5,040	4,879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320-07)	-	-	-	310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320-07)	-	-	-	-
일반연구비 (260-01)	-	77	-	-
①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	1,650	12,778	18,832
②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	1,650	12,778	18,832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성과 창출을 위해 대체로 적절한 사업 규모를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26.9%, 49.1%로 매우 낮은데, 이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50억 원 ~ 2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각 보훈병원별 재활센터 확충에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에 대한 적정 예산을 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지방보훈병원의 전문 재활센터를 확충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되나, 대상이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가치 중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되,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자 선정 시 보훈병원 재활시설 확충 적격성 심사를 통한 공모를 진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보훈병원의 전문 재활 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의 예산 실행행률 실적과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최근 2개년(2018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은 26.9%, 49.1%로 매우 낮은 반면,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 비중으로 측정되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해당 기간 동안 100%로 제시되어 있음

3-2 정책 제언

- 예산 실행수준이 낮은 문제 등이 있으나, 지역별로 재활센터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남은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별 사업기간(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18년 ~ 2020년,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18년 ~ 2021년,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20년 ~ 2021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2021년 ~ 2022년)이 다른 상황에서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 예산만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집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선제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예산 실행행률 실적과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신설 센터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성과지표를 추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현재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누적투자액”이 국가 보조금을 보훈공단에 지급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은 사업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기에 보훈공단 지급금액 대신 실제 사업 집행 금액 등으로 수정하도록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재향군인회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 재원 등에서 보조사업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고, 사업의 성과 측정에 문제가 있음 ·사업 재원이 순수 국고가 아닌 재향군인회 출자회사가 기부한 성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흡함 ·장기적으로 사업의 구조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과 『보훈기금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훈기금법』 제1조, 제3조제2항 제7호,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기부한 보훈성금을 재원으로 회원의 권익 향상, 호국 정신 함양 등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공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향군인의 복리 증진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재향군인회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2017년 평가 결과에서 “회원복지 증진비”, “제대군인 취업지원비”는 각급회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실질적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전체 보조금 대비 복지활동 사업비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만들어 중점 관리”로 제시되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97.6, 98.7%, 9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사유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체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보훈성금 납부액 감소와 재향군인회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예산 긴축 운영으로 확인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10,341	10,341	10,091 (10,091)	-	250	97.6%
2018년 (결산)	9,307	9,307	9,183 (9,183)	-	124	98.7%
2019년 (실적)	8,376	8,376	8,280 (8,280)	-	96	98.9%

- 본 사업의 성과지표(재향군인회 지원사업 만족도)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만족도”의 세부 설문조사 항목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아닌 기본적인 사항(재향군인회 인식, 복지지원,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족도 지표 외에 각종 행사 등 활동 참여율 등의 정량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재향군인회지원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보조사업)	목표	82.1	82.1	82.8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재향군인회 사업 수혜대상자 중 무작위 추출·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적	82.3	82.8	82.4	
		달성도	100.2	100.4	99.5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은 보조금의 재원이 순수 국고가 아닌 재향군인회 출자회사 등 관련 수익사업체의 기부금(보훈성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보기 어려움
- 본 사업의 재원은 재향군인회의 직영사업체 3개소(종합사업본부, 향군타워사업본부, 휴게소사업본부)와 산하기업체 7개소(중앙고속,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 충주호 관광선, 향군상조회)의 수익사업 전입금, 보훈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재원을 단체운영비(41 ~ 43%), 복지비용(21 ~ 22%)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가의 개입 없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함



- 현행 “재향군인회지원” 사업의 보조방식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 출자회사가 보훈성금 기부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세제를 감면받고 있어 이를 탈법의 일환으로 지적받고 있음 (재향군인회 자체 수익을 보훈성금 형태로 국고로 납입한 다음 다시 사업비를 받고 있는 구조인데, 국고 납입 과정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 일종의 탈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2002년부터 꾸준히 제기)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제대군인 등 재향군인회 회원(134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의 규모가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101억 원에서 2020년(계획) 84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재향군인회지원(320-01)	10,091	9,183	8,280	8,376
① 재향군인회지원	10,091	9,183	8,280	8,376
② 재향군인회지원	10,091	9,183	8,280	8,376

- 본 사업의 사업 규모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10 개의 수익업체의 수익금 규모에 따라 증감을 하고 있음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97.6, 98.7%, 98.9%로 높은 편인데, 불용액은 실제 불용된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절감에 따라 예산액 대비 보훈성금 납부액과의 차액으로 보훈성금 미납부·미집행액임
- 본 사업은 50억 원 ~ 2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재향군인회 출자회사의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부한 보훈성금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재향군인회의 수입계획(기부성금)과 지출계획(사업비)을 기초로 보훈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후 확정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나 부처 통합 규정 또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없는데, 이는 재향군인회지원 사업 예산의 재원이 순수한 국고가 아닌 재향군인회 출자회사가 기부한 성금이기에 별도 규정 없이 재향군인회의 계획대로 편성·보조되고 있기 때문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 재향군인회 보조금 정산시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매월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목적외 사용, 개인성 경비, 비목 초과 사용, 목 신설 및 임의 집행, 증빙자료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기부한 보훈성금을 재원으로 회원의 권익 향상, 호국 정신 함양 등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공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보훈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보조금의 재원이 국고가 아닌 재향군인회 출자회사 등 관련 수익사업체의 기부금(보훈성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보기 어려움
- 본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
 - 2017년 평가 결과에서 “회원복지 증진비”, “제대군인 취업지원비”는 각급회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명확하지 못함
 - 사업 성과지표가 단순한 만족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 성과 측정이 한계를 가짐
 - 보조사업 관리 규정이 일반 보조사업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재원 구성 및 사업 관리 내용이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이 100% 기부금(보훈성금) 형식으로 국고로 납입되고 있는데, 국고 납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재향군인회 자체사업 또는 기금사업으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함
-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보조사업 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성과지표를 기존 만족도 지표 외에 각종 행사 등 활동 참여율 등의 정량 지표를 추가하여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금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보조금 사업의 법령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나, 사업의 수혜자가 제대군인이라는 한정된 집단에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에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라는 의미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위탁교육운영, 제대군인수업료보조, 무료법률구조지원 세 가지 세부사업은 제대군인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음. ·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보훈처가 프로그램별, 위탁교육 제공기관별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인과관계에 기반한 위탁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운영, (2)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3)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세 가지 내 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본 사업과의 연계성도 비교적 뚜렷하나 법령상 강제사항은 아님.
 - <위탁교육 운영>과 관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에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에게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와 관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지원)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지원>과 관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법률구조지원)에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동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수업료보조,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제대군인 위탁교육 운영사업은 1인 2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제대군인 선호도 및 취업연계성이 높은 과정 등을 고려하여 공모로 선정하고 있음.
 - 2019년 현재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탁교육은 58개 과정이 있으며, 853명을 교육하였음.
 - 58종의 프로그램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과 크게 차별성을 보이지 않으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제대군인의 특수성과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시설관리전문가 등의 프로그램은 군시설관리분야 근무경험자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며, 경비지도사, 학교보안관 및 라이프코칭지도사과정은 제대군인 우대 채용과 연관된 과정이고, 공무원 시험과정, 해양경찰공무원 과정, 소방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되는 1종대형면허취득 및 연수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훈련 지원자수와 집행금액, 직업훈련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치에 대비하여 성과가 양호함.
 - 다만, 위탁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입위주의 지표나, 주관적인 만족도에 더하여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동 교육을 받지 않은 제대군인들(대조군)의 취업률, 취업까지 걸린 구직기간, 취업 후 임금액 등을 조사하여, 교육을 받은 제대군인이 이들에 대비하여 얼마나 좋은 성과를 보이는지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대조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위탁교육의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 이에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위탁교육과정 시행 기관별로 교육생수, 수료율, 취업률 등의 결과물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물이 보훈처에서 매년 위탁교육사업의 사업 설계시 프로그램 종류나 사업 시행기관의 선정 및 배분에 환류(feedback)되는 과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수업료보조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8%를 상회하고 있어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없음.
 - 다만,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560백만원, 2018년 548백만원, 2019년 444백만원으로 시계열 추세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 추계시 이러한 추세를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는 있음.
- 무료법률구조지원의 경우 100%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동 서비스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함.
 - 2017년 보조사업평가에서 법률지원서비스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이나, 2020년부터 제대군인의 만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할 계획인 사항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제대군인이지만, 그 수가 년 7000명대로 협소하고,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군인지원알선센터 8개소가 직접적인 수혜자이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다만, 제대군인의 경우 근무당시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 차원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7년 보조사업평가의 권고에 따라 예산액 총액은 감소하였음.
 - 2018년 1,330백만원에서, 2019년 1,266백만원, 2020년 1,078백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전년대비 각각 5%, 15% 축소됨.
 - 예산 집행률은 최근 3개년간 90%를 초과함.
- 위탁교육시 보조율은 90%, 제대군인수업료 보조율은 50%-100%, 무료법률지원 보조율은 100%로 책정됨.
 - 위탁교육의 자가부담율 (10%)은 2017년 국고보조금 평가시 수익자 원칙에 따라 자가부담을 증가시키라는 권고를 반영하여 적절함.
-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예산액을 다시 증가시킬 계획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위탁교육운영 (320-01)	772	858	944	1,030	1,030	1,030	1,030
제대군인수업료 보조 (320-01)	286	267	248	229	210	191	172
무료법률구조지원 (320-01)	20	20	20	20	20	20	20
총액	1,078	1,145	1,262	1,279	1,260	1,241	1,222



- 위의 재정추계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될 경우, 2017년 권고에 따른 예산감축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판단됨.
- 위탁교육비 지급액 현실화 등이 재정추계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의 증가에 앞서, 상기한 객관적인 통계 지표에 따른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여성제대군인을 위한 여성 전담 상담사 고용, 직업훈련과정 발굴 등의 계획이 있음.
- 다만, 2019년 현재 여성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여군특성화온라인쇼핑몰마케팅” 1개만 존재하며, 취업률과 취업유지율, 임금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군에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가 필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대군인 위탁교육은 공모제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적정함.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대군인 대학·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계획, 제대군인 대학·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모, 선정위원회, 교부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특기할 사항은 없음.
 - 교육기관 선정 시 위탁교육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령상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특기할 문제는 없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절차는 계획이나 단계, 관리감독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인원미달로 예산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경우 존재함.
 - 보조금 사용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집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적 보고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운영지침에 집행기준, 결과 보고,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보고 등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과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집행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음.
 - 위탁교육운영과 무료법률구조지원은 100% 집행되었으나, 수업료 보조는 당초 대비 예산 집행률이 2017년과 2018년 98%에서 2019년 96%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격의 사업임.



- 현재까지 위탁교육운영, 제대군인수업료 보조 및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부정수급 발생 사실 없음.
-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학업중단 등 취학변동사항 발생시 해당학교로부터 그 내용을 제출 받아, 이미 지원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이 종료한 때 정산 및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회계증거서류와 보조금 통장 사본 등 확인하고 있음.
 - 수업료 보조의 경우, 교육지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무원연금공단 조회 등을 통하여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 조사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 적용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지원의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회계증거서류와 보조금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위탁교육운영 현장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생들은 교육 종료 후 1년간 교육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고, 사업운영 및 관리과정에서도 특기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다만, 성과평가 지표가 투입이나 주관적인 만족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17년 보조사업평가의 결과로 예산액이 감축되었으나, 장기적인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상충됨.

3-2 정책 제언

-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훈련의 성과가 대조군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객관적인 지표상에서 (예: 취업률, 임금, 취업유지율 등)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지가 성과평가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보훈처 차원에서 통합하여 평가하고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프로그램 편성이나 교육기관의 공모단계에서 이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에게 더 많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타 부처에서 구축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서비스 (예: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가 있음.
-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위탁교육운영비가 2020년 772백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030백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예산 증액에 앞서, 장기 기술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입증할 통계적인 분석 결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사업방식 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예산 실행행렬이 저조하고, 현행 사업에 대한 점진적 수요 감소가 예상됨 · 당초 지자체 전담 사업이던 것을 13년의 기간 동안 국가 보조가 진행되어 상당한 수의 지방보훈회관이 설립되었는데, 유공자 고령화 등으로 수혜자 감소가 예상됨 ·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노후회관 개선 및 통합회관 기능 부여 등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보훈단체의 복지증진, 국가유공자의 위상제고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건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와의 연계성이 있음
 - 보훈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활동에 기여하고, 애국심 함양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보훈회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립 및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난 13 년의 기간 동안 국가적 지원이 충분히 이미 이행되었기에 추후 사업 지속을 통한 효과 창출의 폭이 제한적임
 - 2007년 이전에는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을 전액 지원하다가 이후부터 보조사업이 시행되어왔는데,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45개 지방보훈회관(30년 미만 회관 187 개소)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되어 보조사업 시행을 통한 효과가 반감됨
 - 우리나라 광복활동,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등 주요 보훈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방보훈회관 수요자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대대적인 지방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이 낮음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77.6%, 72.7%, 72.4%로 미진한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행 수준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건립부지 변경, 착공 전 실시설계, 인허가 심의기간 소요, BF(장애시설 인증) 등 건립 준비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전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실행액)			
2017년 (결산)	3,250	3,250	3,250 (2,521)	-	729	77.6%
2018년 (결산)	4,125	4,125	3,625 (2,635)	-	990	72.7%
2019년 (실적)	3,250	3,250	3,250 (2,353)	-	897	72.4%

- 본 사업의 성과지표(지방보훈회관 개선율)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현 성과지표는 단순 지원대상 확대 수준을 계측하고 있기에 지방보훈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신규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2017년 평가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 향후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보훈회관 전환 등의 사업 개편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표를 도입하여 지표 평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지방보훈회관 개선율	지방보훈회관 건립(세부)	목표	80.0	85.8	95	[지원한 보훈회관 수(누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지원대상 보훈회관수]×100
		실적	77.6	91.8	98.8	
		달성도	97	106.9	104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다만 본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회관의 건립 및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2007년 이후 13년의 기간 동안 정부 보조사업이 시행되어 왔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성은 높지 않음
 - 전국적으로 245개의 지방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이 중 30년 이상 노후 지방보훈회관은 전체의 9.8%(24 개소)에 불과하여 대대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이 낮음
 - 지방보훈회관의 입주 대상인 13개 공법 보훈단체(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 유족회, 4.19 공로자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중 4개 이하 단체가 입주한 지방보훈회관의 비율이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어, 실제 보훈회관의 활용도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나 그 범위가 크지 않고 향후 범위 축소가 예상되기에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낮음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공자의 노령화 진행 등으로 전체 규모의 감소가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33억 원에서 2020년(계획) 23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330-03)	3,250	3,625	3,250	2,250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	3,250	3,625	3,250	2,250
②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조사업만)	3,250	3,625	3,250	2,250

- 본 사업의 사업규모는 2017년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실 사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인 감축이 필요함
 - 사업 예산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률은 77.6%, 72.7%, 7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현재의 예산 감축 수준으로는 사업 예산의 실행 미흡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 국가 유공장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지역 주민에 제공하는 가치 실현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기에 부처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실현(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부분은 높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중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선정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침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지방보훈회관 건립 진행상황을 월 1회 점검(월 1회)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를 받는 등 규정에 따른 관리를 진행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건립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보훈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립 및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 지원이 충분히 이미 이행되었기에 추후 사업 지속을 통한 효과가 높지 않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가 크지 않고, 앞으로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성과지표(지방보훈회관 개선율)의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성과 대표성이 미흡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이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현재의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만으로는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기에 사업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함
- 사업 내용 보완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보훈회관 전환 등 중점 사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후시설 개선의 경우 이용자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선대상 시설 및 규모를 사전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 통합보훈회관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보훈단체 운영 사업 중 복지회관 등 운영사업 (2020년 계획 예산 29억 원 등)을 본 사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과지표가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성과지표의 폐지 및 신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현 성과지표(지방보훈회관 개선율)는 단순 지원대상 확대 수준을 계측하고 있기에 노후시설 개선 수준, 통합보훈회관 전환 수준 등으로 지표 평가의 구체성을 높이도록 함
 - 지방보훈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신규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국가보훈처
사 업 명	참전유공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 사업방식 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일부 내역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고,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인 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 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며, 성과지표는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지원 행사의 참석 규모와 참석 계획 대비 실 참석율 등으로 대체하도록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6.25 참전 등 관련 민간/공법단체의 참전 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국가 안보 유지 노력의 가치를 알리는 관점에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민간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참전 유공자 등 전적지 순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절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92.3%, 98.9% 97.0%로 높은 수준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음
 - 다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면밀하고 선제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결산)	750	750	692 (692)	-	58	92.3
2018년 (결산)	713	713	705 (705)	-	8	98.9%
2019년 (실적)	471	471	457 (457)		14	97.2%

- 본 사업의 성과지표(참전 기념행사 지원 만족도)는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설문조사를 통해 계측되는 “참전 기념행사 지원 만족도” 지표의 경우 대표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행사 주관 단체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본 사업의 성과를 계측하기에 문제가 있음
- 기존 지표 대신 지원 행사의 참석 규모와 참석 계획 대비 실 참석율 등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하도록 하여 본 사업의 취지인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일반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참전·제대군인 단체 주관 참전 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	단위사업	목표	83.2	83.9	84.0	전문조사 기관 의뢰 행 사 참여자 중 무작위 추출하여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83.9	83.9	84.0	
		달성도	100.8	100	1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참전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역사업 일부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단체인 6.25참전 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가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의 수혜자에 해당되고, 기념행사가 선양활동에 포함되기에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사업은 보조금 외의 모금·기부금 사업을 통해 유지할 수 있기에 재향군인회 등의 관련 단체가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발달하고 있기에, 미국 등 선진국의 재향군인회(Veterans association) 등이 기부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정부 예산 보조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다만 현 상황에서 보조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수혜단체의 존립 및 행사 추진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중기 로드맵(road-map)을 구축하여 단계적 지원 규모 절감 및 모금 행사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범위가 일정한 점이 인정됨
-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참전 민간단체와 행사 참석시민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사업 예산은 2017년 7억 원에서 2020년(계획) 6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예산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 민간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민간경상보조)245	·(민간경상보조)242	·(민간경상보조)211	·(민간경상보조)225
▪ 공법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민간경상보조)243	·(민간경상보조)283	·(민간경상보조)246	·(민간경상보조)246
▪ 참전유공자 등 전적지순례	·(민간경상보조)204	·(민간경상보조)180	·(일반용역비) 170	·(일반용역비) 170
① 참전 유공자지원	692	703	627	641
② 참전 유공자지원 (보조사업만)	692	703	457	471

- 본 사업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나 관리 대상 사업수가 많은 특성을 가짐
- 연간 사업 예산 규모가 6억 원 ~ 7억 원 수준이지만, 관련 행사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참전행사 등을 지원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호국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인정됨
- 사회적 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부처의 규정(민간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추진계획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선정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해당 과정에서의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의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6.25 참전 등 관련 민간/공법단체의 참전 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이 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고 보조사업 대신 모금·기부금 등의 재원 마련이 가능함.
- 본 사업의 최근 3개년(2017년 ~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은 높으나, 성과지표가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참전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이 필요함.
 - “공법단체주관 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지원단체인 6.25참전 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사업의 수혜자이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기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진행되도록 함
 - 그 외에도 정부 예산 보조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벗어나 기부금이나 모금 운동을 자립적으로 진행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임
- 본 사업의 성과지표(참전 기념행사 지원 만족도)는 대표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행사 주관 단체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본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계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지원 행사의 참석 규모와 참석 계획 대비 실 참석율 등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영양안전관리
식중독예방및관리
위생용품안전관리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국민영양안전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2021년) ·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나트륨 저감사업은 '12년부터 추진되어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수준(2,000mg)의 1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당류 저감사업은 '16년부터 추진되어 초기단계로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 있으나, 학생들의 당 섭취 및 비만률이 높아 보조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인정됨. · 본 보조사업은 위해가능영양성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현재 예산규모에 따라 법적근거에 따른 주요업무 1)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에만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주관기관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저감제품구매 활성화, 실천사업장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식품위생법」에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 제70조의 7>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식품위생법」 제70조의 8>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구체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식품의 나트륨, 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등을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는,
- ‘나트륨 저감화 종합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16~20)’에도 반영된 내용이므로 법적 근거는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보조 사업은 국정과제는 아니나 국정과제(57-7.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먹거리 복지 구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며, 국민의 식생활 변화유도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소비자 적정섭취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소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저감 인식 및 실천정도, 저감 식품 인지율, 섭취빈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 나트륨 저감 인식도(%) 증가 : ('16)56.1→('17)59.8→('18)61.1→('19)62.6
 - * 당류 저감 인식도(%) 증가 : ('16)42.4→('17)43.0→('18)51.2→('19)53.3
 - * 나트륨 섭취 저감 실천 노력 정도: ('16) 44.5% → ('17) 49.8% → ('18) 48.1% → ('19) 52.0%
 - * 당류 섭취 저감 실천 노력 정도: ('16) 36.4% → ('17) 36.8% → ('18) 44.1% → ('19) 45.2%
 - * 국민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지속 감소: ('16) 3,669mg → ('17) 3,478mg → ('18) 3,244mg
 - * 국민 1일 평균 당류 섭취량 지속 감소 : ('16) 73.6g → ('17) 64.7g → ('18) 60.2g
- 본 보조사업의 예산내역이 소비자 교육·대중매체 홍보 등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어 저감 인식 개선을 주로 추진함.
 - 다만, 국민영양안전관리 전체사업은 영양성분 표시 컨설팅 및 실태조사, 식습관 개선, 가공식품·외식·급식 등 분야별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 지원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은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한 주관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 섭취를 관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처 고유의 업무로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고, 일정부분 필요성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보조율은 국고보조 100%이며, 보조율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산정함.
- 우수제품 사례선정 및 홍보, 대중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 다양화로 인한 상시 노출, 교육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의 방식은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등, 당류 과잉섭취는 비만, 당뇨 등의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 동 사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기준,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집행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에 보고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38조(부정수급 점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분기별 운영방안에 맞게 본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정 수급 현황 없는 것으로 나타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100억원 미만, 공모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연간 집행점검 계획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을 적절성 및 부정수급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되며, 외부 및 내부 부정수급 적발 실적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나트륨 저감사업은 '12년부터 추진되어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수준(2,000mg)의 1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당류 저감사업은 '16년부터 추진되어 초기단계로 섭취량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학생들의 당 섭취 및 비만률이 높아 보조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나트륨 저감인식도 개선을 지속 확대하여 입맛·식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가 요구되나, 홍보 사업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건강위해가능영성분(당,나트륨등)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예방하는 것으로 수혜자(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국민 전체) 중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외식·급식·식품업체 등)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은 위해가능영양성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현재 예산규모에 따라 법적근거에 따른 주요업무 1)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에만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주관기관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저감제품구매 활성화, 실천사업장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방식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식중독예방및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4.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정상추진(2021년) ·식중독균 추적을 통해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음. ·추적관리사업은 '12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은 '13년부터 실시(환자수와의 상관관계) 식중독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는 경로와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수의 감소 효과가 있었음. ·정책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보다 상위에 두거나 지속적인 예산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됨. ·여러 감염병을 비롯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지속적인 예방,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식품위생법」에 식중독 원인조사,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관련 시험검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식중독의 원인 조사)에서 비교적 타당하게 제시됨.
- 또한,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식중독원인조사)에 따른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지자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 관련 시험검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함으로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식중독균 추적 관리 검사 건수로서 반기별 결과보고 및 식중독 균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두 가지로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71백만원) : 지하수 320건 검사
 - ('17) 341건 → ('18) 345건 → ('19) 320건 검사
 - * 식중독균 추적관리(568백만원) : 식중독균 12,000건 검사 등 분석
 - ('17) 13,415건 → ('18) 14,261건 → ('19) 13,150건 검사
- (수혜자)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밝혀 원인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식중독의 피해당사자인 시민(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배제하여 추가 피해 방지
 - 2018년 ‘초코블라썸케익’ 집단식중독 발생 후 5일내 환자, 유통식품, 섭취식품에서 분리한 살모넬라 톱슨이 모두 동일한 유전자형임을 확인하고 원인균을 확정
- (환자수와의 상관관계) 식중독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는 경로와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수의 감소 효과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민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독, 혹은 지자체에서만 생산되는 자료로는 큰 기대효과를 내기 어렵고 전국 범위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부처-지자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일정부분 타당하고 판단됨.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과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의 대상 시료와 대상균주는 유통·수입 식품 유통의 식중독균을 분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영역으로 타부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식중독균 전체 검사건수를 12,000건에서 13,000건으로, 노로바이러스 전체 검사건수를 320건에서 340건을 확대할 계획임.
-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 규모, 즉, 검사건수를 조정해 볼 수 있음.
- 검사 대상 균주는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4호, 2019.10.22.)」에 식중독 원인조사 항목으로 명시한 식중독 세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밝혀 원인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식중독의 피해당사자인 시민(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배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건복지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선정을 관리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33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조사업 집행과정을 관리 및 감독 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보고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38조(부정수급 점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운영방안에 맞게 본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정 수급 현황 없는 것으로 보여짐.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100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은 없으나 연간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 보조금 사용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 및 내부 부정수급 적발 실적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추적관리사업은 '12년,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은 '13년부터 실시(환자수와의 상관관계) 식중독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는 경로와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수의 감소 효과가 있었음.
- (수혜자)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밝혀 원인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식중독의 피해당사자인 시민(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배제하여 추가 피해 방지.
 - 2018년 '초코블라썸케익' 집단식중독 발생 후 5일내 환자, 유통식품, 섭취식품에서 분리한 살모넬라 톱슨이 모두 동일한 유전자형임을 확인하고 원인균을 확정.
- (바이러스관리) 현재 국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호흡기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중간숙주)를 확인하는 방법이 환자-동물(중간숙주) 유전자일치도(예, 천산갑 99%)로 판정하며,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원의 접근 차단으로 관리하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식중독 원인조사기술 향상을 위하여 유전체 분석기술(차세대염기서열분석) 도입, 미생물 동정장비 현대화 및 신규 보건환경연구원(세종시) 참여확대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명	위생용품안전관리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2021년) ·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중앙에서 위생용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민간에서 수행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함. · 신종감염병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예산에 비해 정책적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에 국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지원 업무로 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여비 및 위생용품 검체 수거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음.
- 「위생용품 관리법」은 2017년 4월 18일에 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에 시행된 법으로서 국민의 보건·위생·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개 위생용품을 관리하고 있음.
 - 올해는 법 시행 후 3년차로 사각지대에 있던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18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체의 지도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로 부적합 위생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인정됨.
- 시민들은 이 사업으로 어떤 혜택을 보았는지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를 통해 부적합 위생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자 않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됨.
 - 보조사업이 폐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위생용품(일회용 손가락·젓가락·컵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상시적인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위반율 감소 : ('18) 7.5% → ('19) 6.4%



-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세척제(주방세제) 유통, 취약계층인 노약자나 유아가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의 VOCs의 안전성, 나무젓가락의 포름알데히드검출, 세균범벅 일회용 면봉 등, 일상에서 국민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자체 기초위생관리 등 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준·규격 등 선진화, 기준·규격 등 선진화,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위생용품 전산환경 구축 등의 세부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방자치단체의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이슈에 따라 지자체에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지시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인정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등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재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지지단체보조사업 중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에 따라 최소 2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의 적정성 확보됨.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함께 반납 받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보조사업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모든 절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100억원 미만, 공모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간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 보조금 사용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 및 내부 부정수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중앙에서 위생용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민간에서 수행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함.
- 신종감염병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예산에 비해 정책적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3-2 정책 제언

- 신종감염병과 위생용품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평가요약표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지표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율은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2018년 13%, 2019년 15%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내역사업은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전수조사(17년, 19년 격년실시) 및 방송 중계설비가 기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상태가 불량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18년, 19년 각 200개소)은 실패 조사와 기술지원 사업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되어야 함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또한 사업명이 실제 사업 내용을 대표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중계시설연구용역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1항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등 및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명시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위탁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터널·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방송 수신용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 파악, 시설관리기관 대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터널·지하공간 등 재난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유도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계시설연구용역은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기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과지표는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율이며, 당해연도 기술지원 터널 수, 15년도 수신환경 조사시 라디오중계설비 설치된 수신불량 개소 등이며,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2018년 13%, 2019년 15%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는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실적 달성은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지 않음.
 - 따라서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야 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 사업은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상태가 불량한 터널(1,479개소, '17년도 조사결과)에 대해 매년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2024년까지 100% 기술지원 완료율 목표치로 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목표치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성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과지표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율'의 목표값을 상향 조정하고, '기술지원 만족도', '음영지역 개선(계획)율' 등 신규 성과지표를 신설·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내역사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전수조사(17년, 19년 격년실시) 및 방송 중계설비가 기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상태가 불량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18년, 19년 각 200개소)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음
 - 내역사업인 중계시설 연구용역은 성과목표치가 낮아 가시적 성과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사업 내용이 재난방송 음영지역 조사와 기술지원 성격을 가지는 연구용역 사업이므로 사업 규모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보조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수행이나 개별 민간 수행 등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사업과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일반국민이며, 수혜 내용은 방송수신 음영 지역 해소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안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자 및 내용이 광범위하고 정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행물은 대체로 양호함
- 내역사업은 예산 규모는 행정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불분명함
 - 중계시설 연구용역 사업은 일반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예산편성액은 690백만원, 인건비는 예산액의 15.1%인 104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반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전파관련 측정사업 및 방송기술 기준 재개정 사업 등의 다년간 수행으로 경쟁력 및 사업 노하우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제3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적정하게 사업 관리를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보조금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계시설연구용역은 재난방송 음영지역 전수조사 및 기술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목표와 내용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국가 지원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지표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율은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2018년 13%, 2019년 15%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성과목표는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실적 달성은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지 않음.
 - 따라서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내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전수조사(17년, 19년 격년실시) 및 방송 중계설비가 기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상태가 불량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18년, 19년 각 200개소) 등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치가 낮아 가시적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됨
 -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존 성과지표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률’의 목표값을 상향 조정하고, ‘기술지원 만족도’, 음영지역 개선(계획)율’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신설·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사업 개선을 통해 사업성과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규모 대비 사업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세부 내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 사업명이 실제 사업 내용을 대표하지 않다고 판단됨. 사업명은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이지만 실제 내역사업명은 ‘중계시설연구용역’이며, 이로 인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내역사업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됨.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명 변경을 필수적으로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온라인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관련 방문상담 및 워크숍)은 지속적으로 수요와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방문상담의 경우 연도별 방문상담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온라인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제한된 상주상담인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 중심의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 경우 방문상담 중심의 성과지표(만족도) 역시 개선이 필요함,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 중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동 사업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필요 시 온라인 이후 오프라인 상담을 추가하고 이를 만족도에 반영))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동 법적 근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근거는 비교적 구체적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3조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기반 조성, 이용환경 조성 등을 실시 가능한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상기 법적 근거와 동 사업의 목적 간 연계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목적은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동 사업은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와 비교할 때, 동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간에는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음
- 다만,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구속력 측면에서 명확성은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환경 구축을 위해선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과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관련 법·제도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동 사업은 국가적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존재함
- 그러나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관련 방문상담 및 워크숍임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통합 사업자 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방문상담 등을 포함한 내역사업 구성의 합리성은 일부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대다수 예산(약 82%)이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상담을 추진하는 상주 인력 인건비로 계상되고 있어, 내내역사업별 산출내역을 도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선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은 보조사업 성과지표로서 '18년 '방문상담건수'와 '19년 '사업자 상담 만족도'를 활용하였으며, 당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동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단위 성과계획서에서는 보조사업 성과지표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 세부사업 단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만족도, 앱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율, 위치정보 사업 합리화 추진율
 - 주관부처는 '18년 '방문상담건수' 지표의 경우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동 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 상담 만족도'를 활용하였음을 밝혔으며, 향후 만족도를 지속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 다만, 현행 만족도 지표 역시 방문상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즉 '19년 33개 방문상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2점으로 도출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와 같은 방식에선 방문상담건수가 실제 만족도의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담자가 대상 기업에게 면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 따라서 방문상담 사업자 이외에 동 사업의 만족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표본집단의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설문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함
- 성과지표 개선과정과는 논외로 '방문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마지막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었던 '17년부터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18년 및 '19년까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방문상담 및 워크숍의 예산은 60백만원이었음
 - * '20년의 경우 53백만원으로 예산 감축
- 그러나 연도별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방문상담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음
 - * 연도별 방문상담 실적: 66건('15년) → 80건('16년) → 75건('17년) → 42건('18년) → 33건('19년)
- 즉 연도별 방문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관련 예산은 거의 유사한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상담 및 워크숍'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지원상담 수요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내역사업 간 통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동 사업은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로 하여금 법제도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상위 사업인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 구축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내 위치정보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허가·신고와 같은 진입규제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별성을 지님
- 다만, 동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단위에서 살펴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교육과 일부 유사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의 경우 국내 위치정보 산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자의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상담·안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데 반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위치정보 보호교육의 경우 허가·신고 등 일반적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 산업 동향, 실무교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을 확인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예비 위치정보 사업자임



- '19년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28개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208개사 등 총 236개사가 동 사업을 통해 허가·신고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동 사업의 주요 수혜자임
- 또한 허가·신고의 경우 '19년 수혜실적은 '18년 대비 25.5% 증가('18년도 188개사)하였고, 온라인 상담건수는 '18년 4,343건에서 '19년 4,744건으로 약 400건(약 10%)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연도별 총 예산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의 경상경비 등 관련 행정비용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다만, 동 사업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상담 관련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10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님
- 그러나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개인정보보호협회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음
 -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원활한 진입규제 (허가·신고)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 다만, 현행 민간보조사업인 개인정보보호협회는 '11년도 이후부터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에서 기관의 전문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됨
- 개인정보보호협회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한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를 추진하였음을 확인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추진하며, 연초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동 사업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진 않음
 -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매년 7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최종보고서의 경우 차년도 1월에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상 명시하고 있음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등



-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서면 집행점검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교부 신청정보 및 사업계획 등의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을 확인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는 보조금 교부 조건내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을 통해,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 위배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18년부터 연 1회 사업담당자의 부정수급 자체 모니터링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부정수급이 발견되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을 확인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방식변경(온라인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을 권고함
 -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방문상담 및 워크숍'의 경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연도별 방문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이와 달리 온라인 상담건수의 경우 '18년 4,343건에서 '19년 4,7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즉 지원상담에 대한 수요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약 2.3명의 상담상주인력이 온·오프라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수요가 낮은 오프라인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지원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사업방식변경과 함께 동 사업은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은 방문상담에 따른 만족도를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만족도 지표 역시 방문상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 즉 '19년의 경우 33개 방문상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2점으로 도출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와 같은 방식에선 방문상담건수가 실제 만족도의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담자가 대상 기업에게 면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지원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방문상담 사업자 이외에 동 사업의 만족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동 사업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공정거래위원회
사 업 명	소비자권익증진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0.8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 전체와 내역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사업 목적은 적절함 · 동 보조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의 대표성 부족으로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광역 소비생활센터 지원> 내역사업의 인력수급방식 변경이 원인으로 대면심사에서 인력수급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여 실행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내역사업 중 <광역 소비생활센터 지원>의 사업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명에서 인력지원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칭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소비자소송지원>은 국고보조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현재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사업성과에만 해당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 제6조 >

국가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비자의 조직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7조 >

지자체의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민간전문가 파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은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등의 근거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내역사업 모두는 「소비자기본법」의 법적 근거(제6조, 제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에 기초하고 있음
 - 내역사업 중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은 「방문판매법(30조)」, 「할부거래법(41조)」, 「전자상거래법(33조)」과 연계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제활동을 하며 특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선진적 소비정책 추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하고자 하는 상위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되어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대통령 공약이나 계획사업은 아님.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 「25: 공정거래 감시역량 및 소비자피해구제강화」의 실천과제와 연계되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과 지방행정조직의 소비자권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내역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광역 소비자생활센터지원>는 사업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사업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소비생활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 예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명칭과 차이가 크지 않아 명칭 개선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의 문제에 대한 원인 확인함. <광역 소비자생활지원센터 지원> 내역사업의 2개 지역(대구와 인천)의 인력 채용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는 내역사업 전체를 포괄하여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제시되고 있는 4개의 성과지표는 <소비환경개선>, <광역소비생활센터지원>을 측정한 결과이며 나머지 2개 내역사업(소비자소송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운영 지원)의 성과 측정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소송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내역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내역사업별 성과를 제시하는 세부화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자적 사업영역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낮고 내역사업 내의 중복가능성도 크지 않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소비자소송지원사업>은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 권익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일정 수준 감축이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민간이 주도하여 해당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검토를 권고함
-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관련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피해 구제 요청자, 분쟁 조정 요청자 등이 해당되며 정량적 수치 제시를 통해서 수혜자를 명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간접수혜자는 행복드림 포털을 이용한 일반 국민에 해당하여 수혜범위가 광범위함으로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상호보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적절함
 - <광역 소비생활센터지원>사업은 해당 센터의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인력채용 방식 변경이 발생할 시 불용액 발생하였음.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인력채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불용액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 재정추계는 연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타당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중 5, 9에 관련됨
 - 사회적가치실현 5(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와 연계될 수 있고, 사회적가치실현 9(윤리적 생산,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와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기업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기업의 올바른 기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 사회적가치 실현 2, 7, 13 항목과 동보조사업은 관련성이 낮아 관련성을 가지다고 적시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내역사업 중 <소비자환경개선사업>, <소비자소송지원사업>은 소비자기본법령과 보조금 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내부 경문 결재로 공고문을 게재하고 사업심사를 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은 등록 소비자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이 수행됨
- 보조금 교부절차는 「보조금 관리법」을 준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음.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공문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사업보조자인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소비자 권익증진 지침 등에 보조금 집행원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규정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주요 예산 편성기준, 집행원칙,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매 회기년도 경과 후 1개월 내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 집행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의 사업관리 자체노력을 적시된 내용은 독자적 노력이기보다는 사업관리 전반에서 규정에 준한 관리로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소비자기본법」 외 관련법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25와 관련되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적극적 조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성과지표가 단위사업과 연계되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일부 내역사업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명과 성과지표 대표성 및 사업내용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역사업 구성을 조정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금융위원회

금융관련국제협력및금융중심지추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금융위원회
사 업 명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 지속적으로 낮은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90%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17: 90.7%, '18: 88.4%, '19: 83%)하고 있고,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정부 신청소요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증액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실 지출소요 규모에 맞게 축소할 필요 있음 · 현행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불과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최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 방지 관련 사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4항은 동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 및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03년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선정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입법이 2008년에 이루어지면서 동 보조사업이 시작되었으며, '08년부터 '19년까지 4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등 국가정책과의 연관성이 확인됨
- 다만, 현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정과제들 중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간접적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 연관성은 미약함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통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세부사업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에 해당하며, 해당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사업 각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역사업에 포함되는 전문통역 인건비, 해외 금융사 국내진입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 경상경비(IR, CEO 간담회 등), 금융중심지 컨퍼런스 등은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범위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임이 인정됨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건수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는 있으나, 현행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불과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최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IR개최(20%), 외국계금융사간담회(20%), 해외금융당국 초청세미나 등(30%), 업무만족도조사(30%)로 구성되는 종합조사 결과로 측정되고 있어, 대체로 단순 업무건수에 기반한 산출지표에 해당함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진입 및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인지도 제고, 국내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및 정책개선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동 보조사업의 기여도는 대체로 명확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근거 법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추진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및 경영·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음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반 지원업무를 민간 자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금융 관련 전문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금융사로서,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는 명확하나 그 범위가 특정 산업으로 국한되므로 타 보조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함
 - 상위 세부사업인 금융중심지 추진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국경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됨으로써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아져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적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나, 이에 대한 동 보조사업의 기여도 정도는 명확하지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90%를 하회하여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 일부 인건비 불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상경비 예산 집행률 또한 90% 정도에 불과하고, 이 같은 상황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17년	493	493	447	-	46	90.7%
2018년	493	493	436	-	57	88.4%
2019년	525	525	436	-	89	83%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율 100%로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항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명확함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최종 선정 의결한 바 있고,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근거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조사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선정은 그 법적 근거는 명확함
-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 이전 업무보고, 반기별 업무보고 및 집행내역 등을 사전 검토 후 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을 통해 동 보조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매년 1.31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운영규정 제3조)
 -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운영규정 제4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음(운영규정 제4조제2항)



- 사전에 제출한 보조금 집행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위원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매 분기마다 운영실적과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한 후 분기별로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음
- 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유선연락, 대면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등 적절한 보조사업 규정준수 점검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집행 규정준수 점검 관련 사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 제8조에서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에 대해 보조금 관련 규정 등으로 적정하게 보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보조금 지출 시 금융감독원 총무국 재무회계팀의 점검 및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지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조사업자 자체적인 지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직원 인건비, 해외 IR 개최 등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항목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사항은 없음
- 해외 IR,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시 금융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행사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시 前 분기 실적보고서를 함께 받아, 집행의 적정성에 따라 現 분기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 방지 관련 사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 및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률이 90%를 하회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건수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는 있으나, 현행 성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불과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최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 방지 관련 사항들이 대체로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소방청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보조)
의용소방대및소방의날기념행사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소방청
사 업 명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동 보조사업은 법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근거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수혜범위르 구체화하고 성과지표가 내역사업과 관련성이 있음. 또한 사업자선정 및 사업관리방식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동 보조사업 내용은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며, 직접적, 간접적 수혜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으로 통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관리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사업으로 소방청 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이 있는 특서임 있음. 보조금 집행 규정 및 자체 관리를 통해서 보조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고 있으며 사업목적과 내용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

- 동 보조사업은 국민들의 여름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119 수상구조대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역사업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으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아님. 그러나 동 보조사업이 국민의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충원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119 수상구조대 지원을 위한 직접적으로 관련사업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됨
 - <유니폼·모자 지원>, <급식비 지원>, <텐트·운영물품 지원> 3개의 내역사업 모두가 119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지원함으로써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위의 단위사업의 목표인 국민의 물놀이 안전에 직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임
 - 각 세부사업의 실적이 구조대 배치 장소에서의 사망자수와 구조, 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내역사업 내용과의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절함
- 동 보조사업은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현행 성과지표에 더불어 수상구조대원들의 활동 만족도, 활동 편의성 등을 포함하는 지표로서의 추가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에 기여하는 목적 달성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며 내역사업 내용과 성과는 사업목적 간의 정합성이 높아 국가 보조사업지원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으로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구조, 구급, 안전 조치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경인력 감소로 인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므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소방 인력 투입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119 수상구조대 운영 지원은 적절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 제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사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됨
- 본 보조사업을 통해서 구조 및 구급, 안전 조치한 인원은 동 보조사업의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상위사업(119 수상구조대 운영)에 포함되며 아래의 표를 통해서 직·간접수혜자 수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시되어 있음으로 향후 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7년	‘18년	‘19년
구조: 945명 구급 : 625명 안전조치 : 69,657명	구조: 1,125명 구급 : 560명 안전조치 : 59,344명	구조: 1,011명 구급 : 564명 안전조치 : 67,092명

- 추가적으로 동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가 119 수상구조대원이 포함될 수 있음으로 매년 이들에게 해당 물품을 지원 양상의 추이 등을 제시하는 것도 사업성과 및 재정 추계 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실행행률은 적절한 수준이며, 내역사업별 보조율은 2017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음
- 각 내역사업별 국고보조율을 50%로 조정하는 사업방식변경 지적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중요성에 따라 지방비 예산편성 비율은 2019년 기준 국고보조금 대비 83%의 비중을 차지함. 지방자치단체들은 동 보조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필요성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119 시민수상구조대 보조율을 50%로 규정하여 운영한 것은 최근 2년('18년, 19년)이며, 국고보조금 예산 절감으로 '17년 대비 '19년 배치장소는 9군데 감소되었으며, 배치인원은 2,774명 감소한 상황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과 연계되어 사회적 가치 중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인정됨. 물놀이 사고 특성상 수난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즉각적인 병원이송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보조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모가 불필요한 사업임. 매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개소수, 배치인원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 선정이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사후관리는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법률 규정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은 지자체 경상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공로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 전체 점검을 매년 7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119시민구조대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 집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적 집행 관리 및 근거자료 구비를 제안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함. 현재까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호조, e-나라도움을 통해 중간점검과 정산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사후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짐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현재 제시된 사업관리 내용은 119수상구조대 운영관리 내용으로 부정수급 적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님으로 자체 사업관리 노력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평가됨
- 동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며, 내역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지원이 적절함
- 동 보조사업은 직·간접 수혜자와 수혜범위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내역사업과 성과 지표의 관련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됨
- 동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대체로 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가 매칭으로 편성되는 사업이고, 국고 보조 비율이 지역별 차이고 있으며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사업수행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내용을 명료화하고 구체적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고가 사업내용과의 관련성을 재고하는 방안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소방청
사 업 명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은 법적근거는 명확하나 내역사업의 부적절성, 사업효과성 미흡함 · 해당사업 중 일회성, 행사성 내역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자체 노력이 있음. 내역사업명이 내내역사업명과 혼란스럽게 제시되어 있어 검토 필요함 · 2020년부터 국고보조비율을 축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이 있음 · 현재 제시한 성과(실적)지표가 내역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검토를 통해서 사업지표 개선이 필요함 · 사업관리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사업비 관리 감독이 적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소방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 사업 전체로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5개 내역사업 중 일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공약사업,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간 차원에서 실시할 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함은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일부 내역사업별 수위 조정이나 검토가 필요함
 - <전국의를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샵>,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대원 표창 사업>, <대구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참석 및 홍보사업>은 일회적이고 행사성이 강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 사업>은 동 보조사업보다 큰 범주로 판단되며 내역사업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0년부터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전면 개편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가 의용소방대 참여율로 제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내역사업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상위목표달성과는 관련성이 있으나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성과로 제시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화재건수(건)	43,413	44,178	42,338	40,100
인명피해(명)	2,024	2,197	2,594	2,514(감소)

- 내역사업 내용을 반영할 때 의용소방대 활성화 내역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증가 비율, 대국민 안전캠페인 전개 내역사업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진 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국민들이 화재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초동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역사업 내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보조사업 지원이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량화된 수치로 직접, 간접 수혜자와 범위 확대 가능함
 - 직접 수혜자와 범위 제시에서 내역사업별 연합회 회의 참여자 수, 연합회 설립 수의 증감 비율 등이 추가적 수혜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간접수혜자 및 수혜 범위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실행행률은 적절한 수준이며, 국고보조율은 2017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5% 낮추어 사업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재정 규모의 적절성 재고가 필요함
 - 일부 내역사업(대구행사 지원, 의용소방대 표창이나 워크숍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다하여 재정 규모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자부담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지자체 또는 해당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지역행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20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 운영 예정임



구분	18년	19년	20년	보조율 설정근거 및 변동 사유
330-01 (민간경상보조)	85%	85%	85%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자부담 비율검토(11%~17%) 반영(평균 15%)

- 중장기 재정 추계는 향후 의용소방대 확대에 따른 예산설정으로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의용소방대활성화)	180	180	180	270	270	270	27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초동 대응에 국민 참여를 증진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중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계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관리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기준에 명시 없이 보완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집행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전국의 용소방대연합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등을 준용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사업단계별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에서부터 집행,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 보고를 소방청에 보고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현재까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연간 상하반기 집행교육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적극적 사업관리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내역 사업 일부는 법적 근거가 크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비율 하향 조정을 지적받았으며 이를 조치로 국고보조 비율을 낮추어 운영함.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보조사업으로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내역사업의 통합 및 일회성·행사성 사업에 대한 조정과 사업방식 변경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명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직접 수혜자 및 범위가 내역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조정이 필요함.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재청

무형유산원운영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재청
사 업 명	무형유산원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간접 수혜자의 범위 지정과 성과평가 지표 보완 필요 ·간접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간접 수혜자로 무형유산 전시·공연 등의 관람객 및 학술대회 참여자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범위가 좁다고 판단됨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성과 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함.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37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제2항, 전수교육학교의선정및평가에관한규정 제16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둠
- 하지만, 본 보조사업과 직접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계승, 무형문화재의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전수교육대학의 선정·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계승, 무형문화재의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짐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2개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전승지원, 진흥활성화)
 - 본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무형문화재 지원 수혜자 실적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 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무형유산의 계승, 무형문화재의 보존 등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간접 수혜자로 무형유산 전시·공연 등의 관람객 및 학술대회 참여자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범위가 좁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실집행률이나 불용액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년 지자체 보조 예산이 500 백만원으로 '19년의 100 백만원에 비해 5배 증가
 - 이는 1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에 기인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공모계획 수립,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결과 알림, 보조금 교부의 절차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재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 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장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공시대상 보조사업 모두가 공시되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 단, 현장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계승, 무형문화재의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지는데, 본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간접 수혜자의 범위 지정과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간접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함
 - 하지만, 간접 수혜자로 무형유산 전시·공연 등 관람객과 관람객 및 학술대회 참여자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범위가 좁다고 판단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무형문화재 지원 수혜자 실적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현장컨설팅지원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기술자문위원 등과 관련하여 성과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안전분석실 1개소 당 5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검사장비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산정의 객관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이 미흡함 ·현장컨설팅지원단은 운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분석실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법령과 사업 내용이 대체로 일치함
 - 종합분석실운영의 경우 농촌진흥법 제15조,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거 직접적으로 종합분석실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능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촌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의 경우 농촌진흥법 제15조, 농촌진흥법 제19조,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서 의하여 타당성 인정되며, 농촌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의 경우 농촌진흥법 제15조,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와 제68조에 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농촌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법 >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2조(지역특화작물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에 기반한 영농기술 확산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하는데 있음. 이는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종합분석실운영은 종합검정실, 과수과학영농실 등 화학비료의 적정투입, 고품질 과일생산, 바이러스가 없는 종자 생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과학영농실증포운영은 지역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시군에 시험재배용 온실 등을 조성하여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지역적응성 시험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은 잔류농약 부적합 기준 강화(0.05 → 0.01mg/kg) 및 지역단위 농산물 유통시스템 설치·확대에 따라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분석 컨설팅으로 안전농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동 보조사업은 종합분석실운영,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과지표가 2가지에 불과하여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내역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건수와 토양관리서비스 농가참여율은 계획상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새롭게 도입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잔류농약 검사시설의 부족이라는 현장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그 효과성이 클 것을 판단됨
- 과학영농기반조성을 통한 정책지원 및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다양한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목표	과학영농기반조성을 통한 정책지원 및 과학영농 실현				
방향	농업환경개선	실용기술지원	농산물품질관리	신기술현장 실증·확산	농산물안전관리
역할 분야	종합 검정실 *토양/중금속/수질검사 *GAP, 직불제 지원	과수과학 영농실 조직배양실 *과수영양진단, 꽃가루 공급 *특화작목 대량생산 *정밀기술 지원	쌀품질관리실 친환경축산실 *쌀 품위검사 *미생물보급 *가검물진단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신기술실증시험 *신기술 지역적응 *신기술확산 모델 *농업인 현장교육 *현장 단기과제 해결	농산물안전분석 실 *잔류농약 분석 *농약안전사용 교육
사업명	① 종합분석실운영			②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③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FTA확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분석실 운영은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비료시비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영안정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
 - 과학영농실증포운영은 신품종,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재배기술 습득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농산물 유통전 안전성을 검정하여 국민의 후생 증진을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과 목적에 있어서 일부 내역사업이 유사하나 실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통합운영은 어려움
- 2018년부터 기술자문위원(5인)을 고용하여 식량작물 현장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기술자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따라 2018년 6,110백만 원에서 2020년 11,611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예산이 2019년 2,500백만 원에서 2020년 6,250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1개소 당 5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예산 제안시 1,3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제시하였고, 검토결과 500백만원(국비) 반영됨.
- 기술자문위원 운영 예산은 2018년 166백만 원에서 2020년 177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처방, 과수착과 및 생리장해예방 등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 해결지원과 영농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 개발된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과학영농실증포운영, 친환경농업 지원 등 과학영농에 기반한 영농기술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선정단계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성과측정단계』 등 단계별 지침을 구비하여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전년도 3~4월)를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종합분석실 운영은 전년도 토양검정실적을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에서 집계하여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을 이용하여 예산의 계획수립, 집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사업계획(3월), 사업예산(3월), 예산집행실적(분기별), 사업결과보고(11월)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사업진행 현황의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도원 또는 시군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실적은 97%~95.6%로 집행실적율이 높음
- 미집행액은 사업비 집행절차에 따른 낙찰차액 및 부과세환급금 등 소액의 집행 잔액으로 별도 패널티 적용사례는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사후관리 등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제외되어 있어 2019년까지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등을 D/B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분기별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추진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운영·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담당자 협의회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FTA확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식량작물 현장컨설팅지원단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맞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활동의 내용을 개편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중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지표 개발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성과지표로 제시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건수와 토양관리서비스 농가참여율 외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식량작물 현장컨설팅지원단 운영은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수정하고 운영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의 경우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업진흥청
사 업 명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농업기계교육) ·유사한 과목을 중복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생이 많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교육 방식 변경이 필요함. ·과정별 교육대상 인원을 특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실질적 수요에 맞게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본 기계에 대한 교육은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기존 농민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계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농촌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이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농촌진흥법 제19조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촌진흥법 제25조 2항은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의 3항은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 영농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1항과 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기본 계획에는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2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음. 동법시행규칙 제19조는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약사업들과 상기의 법령에서 제시하는 목적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함
 - 상기의 법령이 본 보조사업의 시행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아님



< 농촌진흥법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 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며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 국정과제 (81), (82), (83)과의 연계성도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농업기계교육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실시하는 농업기계 기술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함
 - 교육용농업기계지원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관리운영 기술 능력배양을 위해 실습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며, 계획상의 목표 달성도가 양호함.
 - 수혜자 만족도에서 2018년은 97.9% 달성하였지만 2017년과 2019년은 100%를 초과함.
 - 기술수준향상도에서 3개년도 모두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보조금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수료자 수도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점검정비, 안전교육의 추진은 본 보조사업이 유일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에서 추진되기 어려움으로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 농업기계 사용과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농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 농가가 증가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농업기계와 관련된 안전사용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교육대상자 수와 단가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산정함
- 농업기계교육의 교육대상 목표 인원 및 단가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체 농업인구 규모를 고려한 농업기계안전교육 대상자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에서 교육 현장을 가보면 동일한 농업인이 매년 유사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강 인원을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따라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교육 대상 인원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화 영농사 양성 교육 역시 매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함

○ 계층별 수요에 맞는 교과편성 전문화 및 교육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구분	2020년	2021년
교육과정 전문화	▶ 농업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 기초이론 및 농작업 실무, 자가정비(2주) ▶ 여성친화형농업기계교육 - 운전 및 안전기술 배양(1~3일) ▶ 농업기계안전교육 - 농업기계 활용 교통법규 준수 등(1~2일)	▶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교육 - 과정명 변경 및 참여식 실무교육 강화 ▶ 농업기계실용전문교육 - 계층별 전문 교과 편성 및 교육일수 변경 * 여성·청년농업인, 귀농인으로 확대(5일) ▶ 농업기계안전교육 - 발표식 현장문제해결 및 실무 중심 교과편성
교육대상의 명확화	▶ 농업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 청년농업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영농4H회원 등 ▶ 여성친화형농업기계교육 - 여성농업인 ▶ 농업기계안전교육 - 농업기계신규구입자,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보유농가 등	▶ 농업기계전문인력양성교육 - 신규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 ▶ 농업기계실용전문교육 - 청년농업인과정, 여성농업인과정, 귀농·귀촌인과정(과정별 전문내용 편성) ▶ 농업기계안전교육 - 농업기계 신규구입자 및 보유농가
과정운영 효율화	▶ 매년 동일인 교육과정 이수 - 자체기준 2~3년 주기로 교육 ▶ 일부 교육과정 출결확인 미비 - 자체기준으로 운영(75% 이상)	▶ 동일인 2~3년 1회 교육으로 제한 - 수료생 관리 철저 등 시행지침 명시 ▶ 수료 처리 강화(이수시간 80% 이상) - 출결 관리 철저 등 시행지침 명시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과 근로조건의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며, 보다 안전한 영농을 통하여 지역 소득이 증대된다면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산업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도원 및 시군센터에 사전에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년도 3~4월에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신청단계→사업자 선정단계→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자금교부 및 집행단계→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성과측정단계 등 단계별 지침을 구비하여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교육훈련 사업계획 확정지원, 모니터링, 평가, 환류, 협력체계 구축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도, 시군센터 수요조사, 교육, 사업실적 보고 등은 도 농업기술원이, 교육계획 수립보고, 교육훈련, 사업실적보고 등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 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금 관리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을 이용하여 예산의 계획수립, 집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사업계획(3월), 사업예산(3월), 예산집행실적(분기별), 사업결과보고(11월)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사업진행 현황의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전년도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 미집행액은 사업비 집행절차에 따른 낙찰차액 및 부과세환급금 등 소액의 집행 잔액으로 별도 패널티 적용사례는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연도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이행점검 및 사후 관리 단계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사후관리 등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제외되어 있어 2019년까지 부정수급 발생이 없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분기별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추진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운영·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담당자 협의회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농촌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은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가지고 있음
 - 농업기계교육, 교육용농업기계지원 등 내역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단순히 교육 인원 수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본 수업이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 및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새로운 기계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용 기계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교육대상자 인원을 실질적 수요에 맞게 축소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본 기계에 대한 교육은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기존 농민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계 교육에 집중
 - 계층별 수요에 맞는 교과편성 전문화 및 교육방식 변경하고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효과성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농업 관련 기계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촌진흥청
사 업 명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보조)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구축)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구축 사업과 기존의 스마트팜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구축은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있으며 필요성도 인정되나,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여타 지원사업이 다수 존재하기에,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상당수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측정이 필요하며, 경영체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설치장소, 운영 방식 등의 기준에서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 차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촌진흥법에 있음
 - 농촌진흥법 제12조에서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법 제15조에서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법 제1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스마트영농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농촌진흥법 제1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법 제25조에서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법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



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은 개발된 과학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농촌진흥법과 국정과제(83-③ 기술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에 의거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은 충분함
 - 2018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스마트팜 확산 방안」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 내역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및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 구축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스마트팜 R&D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교육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첨단 교육장 조성함으로써 기술 확산을 지원함
 -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는 스마트팜 R&D 결과를 실증함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고 실용화하는 것을 지원함
- 보조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나,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며, 아직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은 실적이 없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만 진행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상당수가 시행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측정이 필요함
- 성과지표인 시범농가 생산성 향상률, 시범농가 비용절감률,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률은 달성률이 100% 이상이나 본 사업 시행 전 지표로 아직은 사업의 성과로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차이, 지역의 차이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정과제와의 밀접성,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팜 교육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차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교육 비교 >

구분	스마트팜 실습형 교육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사업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명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확산교육 지원 (현장실습형 교육)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목적	품목별 스마트팜 전문가 육성 및 학습조직화를 통한 주변농가로의 스마트팜 기술 전파 및 확산	스마트농업 기술소개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보급
추진방향	스마트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 해외연수 교육과 국내 학습조직 중심 운영	지역의 품목 및 재배유형 등을 적용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의 기술수용 기회 제공
사업수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전문기관 위탁)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접수행)



구분	스마트팜 실습형 교육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수혜대상	스마트팜 농가 또는 예정 농업인, 농업마이스터, 후계농업인 (전국 단위)	스마트팜 농가 또는 예정 농업인, 귀농인, 일반인 등 (시군 지역 단위)
사업비 ('20, 국비)	민간경상보조(교육운영비) 360백만원 * 인당 4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교육장 조성비) 2,884백만원 * 개소당 103백만원
사업내용	- 교육 품목 : 지정된 4품목 - 딸기, 파프리카, 낙농, 양돈 - 교육내용 - 품목별 스마트팜 실습교육 - 국내 : 120시간 - 해외 : 7박9일 유럽 견학 - 학습조직 : 3회 - 교육비 : 유료 - 4백만원(국비 50%, 자부담 50%)/인 - 운영현황 : ('19) 80명	- 교육 품목 - 원예분야 지역 대표 품목 - 교육내용 - 테스트베드 교육장 활용 스마트팜 기본교육 - 농업인대학, 품목별연구회, 귀농귀촌 교육과 연계 - 교육비 : 없음 - 지자체 예산·비예산 운영 - 운영현황 : ('19) 2,884명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도 국정과제와의 밀접성,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타 스마트팜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 사업 비교 >

구분	스마트팜	수직형 스마트팜(수직농장)
개념	농장주가 원격 제어하여 재배하는 시스템	인공광을 활용하여 날씨나 계절변화에 무관하게 농산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장소	시설하우스(농촌지역)	유희시설 건물 (도시의 지하철, 농촌의 페터널, 창고 등)
지원사업 여부	농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율사업 등 다수	'20년 시범사업 외 현재 지원사업 없음
효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토지·물 절약 등 자원효율성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스마트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해당되며 기준보조율 50%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은 70%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정부예산안 편성(안)에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 과제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업소득과 타산업소득과의 차이가 증가하고 농촌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스마트농업의 육성은 산업간 융복합으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으며, 국정과제(83)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 절차, 여건 등을 검토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함
- 보조사업자 특징이 본 사업의 차별성에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영체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본 사업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정 경영체 현황 >

구분	경영체	경영체 특징
대규모 (3개소)	진OO	○ 200m ² 의 실내농장에 엽채류 생산 운영중 ○ 초기 자체 판매유통망 확보는 모기업(식품용 얼음제조)과의 연관성이 있어 향후 유통에 유리한 점이 있음
	지OO	○ 충남대에 별도의 재배실험실 운영으로 실내농장 기술력 검증 ○ 모기업(범우화학)의 사업부지 확보 및 실내농장 공간기획, 설비투자, 생산·유통 등 사업계획이 체계적임
	넥OO	○ 유희부지인 페터널(3,150m ²)을 활용한 생산시설과 LED의 자체설비를 통해 사업비 절감 가능
중규모 (3개소)	로OO	○ 폐광산 유희건축물 활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기술력 등이 확보 ○ 지역특산물 고추냉이 재배기술 확보와 경제성이 있음
	위OO	○ 유희부지인 폐교의 활용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함 ○ 향후 전남·광주 거점지역(호남권)으로 확대 발전 가능성이 높음
	라OO	○ 농촌의 유희창고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 ○ 사업추진 의욕이 높고, 단체급식, 샐러드 확대 등 유통분야 전문경영체로 수익성 확보에는 유리해 보임
소규모 (2개소)	호OO	○ 무병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확보한 판매·유통망으로 안정적인 사업 가능 ○ 조직배양 무병묘를 실내농장 적용으로 새로운 모델 구축
	해OO	○ 기존 4단 실내농장(새싹삼)에서 연중 24만뿌리를 생산하고 있음 ○ 한식전문점 등 판매·유통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기대되며 취약계층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상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단계별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자금교부 및 집행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성과측정으로 명시하여 사업을 관리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수립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신기술보급사업(단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7호)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방지제도, 회계정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 지자체 신기술보급사업 담당을 대상으로는 부정수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적당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분기별 현장점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정보 공유회,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 양성,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실무운영지원을 통하여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아직 내역사업의 상당수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음
- 스마트팜 육성 교육과 관련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의 경우에도 여타 스마트팜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은 민간이 참여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사업대상과 지역의 차이 등 기관별 차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의 경우에도 경영체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설치장소, 운영 방식 등의 기준에서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 차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산림청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산림휴양등산증진
지진및해일대응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산림공간정보 기반 조성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 중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인건비지원(지자체 경상보조)은 지속 추진이 요구되며, 산림경영데이터구축 지원은 올해 종료(자연 종료)되는 사업으로 즉시폐지가 요구됨 - 예산 실행률은 2018년 91.5%, 2019년 93.2% 수준임 - 지자체는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 인력 교체기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 누수에 따른 예산실행률 저하가 주요 요인임 (정책제언) 국가온실가스DB 구축의 의무이행, 지자체 전문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사유림 실제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온실가스DB 구축을 위한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의 의무가 있으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온실가스통계DB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1.>

- 본 보조사업은 ‘사유림 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인건비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 위탁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경영관리 지원’으로 구성되는 바,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간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일부 있으며, 국정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
- 단, ‘사유림 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인건비 지원’은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나,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근거할 때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유림의 경영정보DB 구축의 의무가 있으며, 산림청장은 지자체의 장에게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 중 ‘사유림 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의 현 여건을 감안할 때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DB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정부 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사유림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는 국가 온실가스DB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인 사유림경영정보DB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장기적으로 정부보조사업보다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하여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지자체별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인건비 지원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나, 적절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
 - 본 보조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91.5%, 2019년 93.2% 수준으로 매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 지자체는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 인력 교체기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 누수에 따른 예산실집행률 저하가 주요 요인임
 - 성과지표로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2019년 모두 1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률(%)	내역사업	목표	신규	100	100	Σ (분야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상 사업실적 / 연간 산림사업 실적)
		실적	-	100	100	
		달성도	-	100	100	

- 본 보조사업은 상위 정책목표인 산림행정 효율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기초통계 구축에 기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 보조금 이외의 지자체 협조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사유림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 정보DB를 구축하는 사업인 반면, ‘산림 탄소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보조사업은 민간기관인 산림탄소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소요인력 인건비의 70%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현재의 여건 상 지자체가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의 채용을 위한 예산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표(‘16.11) 이후 우리나라도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본 세부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온실가스 통계DB 구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해당됨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은 탄소흡수원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사유림의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활동의 효율적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건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은 산림흡수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산림경영 데이터구축 지원(지자체 자본보조)은 2020년 계획 완료됨에 따라 즉시 폐지(2020년 말)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의 특성 상 예산의 대부분이 소요인력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 온실가스통계 DB 구축 : 999백만원 (115백만원 중)
 - 사유림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인건비
 - (지자체 보조) 인건비 $8,590\text{원} \times 34\text{명} \times 209\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70\% = 699\text{백만원}$
 - * 인건비 : 직접인건비+ 출장여비(시·군 출장에 따른 비용)
 - * 9개 특·광역시 및 8개도 각 2~3명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 위탁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경영관리 지원
 - (공간정보 관리 보조) 산림경영관리 고도화 1식 300백만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선정된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임
-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이력관리체계 부족으로 국고 70%, 지방비 30%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보조 인건비가 소규모에 해당되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유림 경영정보DB를 구축하는 업무로 기준보조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이 없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고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명확함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부재함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결정,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있으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단 운영요령」에 따라 연중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사업정산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국고보조를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액 등을 포함하여 반환함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정보공시 적용을 제외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건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과 산림경영데이터구축 지원(지자체 자본보조)으로 구성되는 바,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이 요구됨
 - 산림흡수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림경영정보DB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경영데이터구축 지원사업은 2020년 계획 완료될 예정으로 즉시 폐지(2020년 말)토록 함
- 예산실집행률은 2018년 91.5%, 2019년 93.2% 수준임
 - 지자체는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 인력 교체 기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 누수에 따른 예산실집행률 저하가 주요 요인임

3-2 정책 제언

- 국가온실가스DB 구축의 의무이행, 지자체 전문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사유림 실제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온실가스DB 구축을 위한 사유림경영정보DB 구축의 의무가 있으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산림청
사업명	산림휴양등산증진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응급산악구조대 지원에 대해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 감축이 필요함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일부는 별도 위탁 사업인 등산·트레킹체험, 숲길 운영·관리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응급산악구조대 지원의 경우 차량교체 수요에 따라 완료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활동에 있어서 공익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교육이 직접적 수혜자의 후생은 증진하나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가치까지 양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일반 등산 및 트레킹 수요자 및 단체에 대한 기존 체험홍보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노령자·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등산·트레킹시설 등의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산림휴양등산증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 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사업의 법적 근거로 들 수 있음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에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5항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의 업무를 수행에 대한 수당·구조물품과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 산림기본법 >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을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요자 맞춤형 등산·트레킹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함으로써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증가하고 있는 산행수요에 따른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민·관 합동 응급구조체계 구축·운영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임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복합재해로부터 다중이용 시설인 자연휴양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에서는 등산·트레킹 교육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숲길체험서비스를 제공함
 - 응급산악구조체계 구축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응급구조차량 20대를 교체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산행활동 지원함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서는 조성 후 10년 경과한 공립자연휴양림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산림휴양등산증진(보조사업)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산림치유 및 교육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명확한 편이나, 성과 지표가 국립산악박물관 이용객 수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현 지표의 달성률은 99~107%로 높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는 모든 국민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사업이며, 민간에서 지원 받기 어려운 성격이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연1회 이상 산행하는 인구수는 '15년 기준으로 3천 2백만 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등산·트레킹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한산악구조협회는 전국 17개 지부 700명의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안전시설물 점검, 산행안전 캠페인 등 안전한 산행문화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100여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를 위해 필요한 구조차량의 지원은 필요함
 - 공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용객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산림휴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자연·인공 재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
 - 다만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일부는 별도 위탁 사업인 등산·트레킹체험, 숲길 운영·관리 사업과 중복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세부사업 예산은 감축이 필요하거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함
 - 산림휴양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센터의 고유사업인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 운영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일부는 별도 위탁 사업인 등산·트레킹체험, 숲길 운영·관리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위탁사업 비교표 >

사업명 구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등산·트레킹체험	숲길 운영·관리
법적근거	산림휴양법 제27조의2 제5항	산림휴양법 제27조 제2항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호
예산과목	320-01 (민간경상보조)	210-14 (일반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사업목적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청소년, 사회적약자 등을 대상으로 등산·트레킹 체험프로그램 운영	숲길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 및 다양한 산행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대상) 일반국민 (예산)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비 (220백만원) * 숲길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	(대상)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 (예산) 등산·트레킹 체험프로그램 운영비(263백만원) * 백두대간생태탐방 등 6개 프로그램	(대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길(14개) (예산) 숲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2,730백만원) * DMZ편치불 둘레길 등 14개 숲길



< 한국등산·트레킹지원 지원사업 >

번호	사업명	사업 실적
1	대한민국 숲길 걷기 원정대	○ 참여인원: 988명 ○ 숲길에서 국민들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숲해설)
2	등산·트레킹문화 개선 경진대회	○ 참여인원: 7,730명 ○ 산악 관련 단체 대상으로 우리 명산 클린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건전한 산행문화 우수사례 선정
3	등산·트레킹 공익활동 지원	○ 참여인원: 924명 ○ 숲길에서 위험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등산·트 레킹 활동
4	숲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운영·관리 숲길 대상으로 10개 코스북 전수 인증 하는 상위 코스북 개발·구축 ○ 숲길등산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숲길등산지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5	숲길 타당성 조사 및 예약탐방제 기준마련	○ 숲길조성 사전 타당성 평가비용 산정, 숲길 조성 사전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제작, 예약탐방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마련
6	숲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분석	○ 금강소나무숲길과 DMZ편치불둘레길을 모델로 삼아 합리성 분석 및 종합평가 분석 실시 - 금강소나무숲길 32억원, DMZ둘레길 15억원의 편익 창출
7	맞춤형등산·트레킹 정보안내	○ 백두대간 코스정보(24개 구간 기준), 광역시 대표숲길 추가 구축 (7개), 코스별 거리, 소요시간, 경사도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 공

- 대한산악구조협회 노후차량 교체 예산도 교체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나 차
량 교체가 2022년에 완료되는 만큼 2022년 말을 기한으로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차량 현황 및 교체 예정 연도 >

구입연도	품명	보유구조대	교체예정연도
2019	그랜드스타렉스	대한산악구조협회	-
2019	그랜드스타렉스	서울산악구조대	-
2019	그랜드스타렉스	강원산악구조대	-
2019	그랜드스타렉스	경북산악구조대	-
2019	그랜드스타렉스	제주산악구조대	-
2011	그랜드스타렉스	인천산악구조대	2020년
2011	그랜드스타렉스	대전산악구조대	2020년
2011	그랜드스타렉스	광주산악구조대	2020년
2011	그랜드스타렉스	경남산악구조대	2020년
2011	그랜드스타렉스	세종산악구조대	2020년
2012	그랜드스타렉스	부산산악구조대	2021년
2012	그랜드스타렉스	대구산악구조대	2021년
2012	그랜드스타렉스	충남산악구조대	2021년
2013	그랜드스타렉스	울산산악구조대	2021년
2013	그랜드스타렉스	경기산악구조대	2021년
2013	그랜드스타렉스	전북산악구조대	2022년
2013	그랜드스타렉스	전남산악구조대	2022년
2014	그랜드스타렉스	전북(대둔산)산악구조대	2022년
2014	그랜드스타렉스	강원(남설악)산악구조대	2022년
2014	그랜드스타렉스	경북(구미)산악구조대	2022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사업의 수혜대상과 조건이 명확함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복수급자에 대한 점검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1조, 제12조>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산림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부서에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교부 신청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 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



비 부담 능력,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집행점검 대상사업, 점검기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28조(보조사업 집행 점검)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 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 점검 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 징수, 제재 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① 산림청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넓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나 국립산악박물관 방문자 수만으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산정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산·트레킹서비스의 공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 사업과 위탁 사업이 일부 중복됨

3-2 정책 제언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성 높은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일부 폐지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일부는 별도 위탁 사업인 등산·트레킹체험, 숲길 운영·관리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응급산악구조대 지원의 경우 차량교체 수요에 따라 완료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림청
사 업 명	지진 및 해일대응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 ·2013년 수립된 중장기 사업이 완료되어 2020년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하에 사업 시행이 필요함 ·현재는 해안방재림 규모와 침식방지공사 규모에 대한 설정 없이, 그동안의 사업규모 그대로 매년 이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연간 사업 규모를 획일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필요 사업 면적을 우선 검토하고 이에 따라 연간 사업 규모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지진 및 해일대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사망사업법 제1조에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망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고 명시함
- 내역사업에 대한 주체와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사망사업법 제5조에서 사망사업은 국가 사업임을 명시함
 - 사망사업법 제7조에서 사망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명시함

< 사망사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망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망사업의 시행) ① 사망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망사업(이하 “국가사망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망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넓은 반면에 민간에서 시행할 유인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정부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해안방재림의 경우 해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생태울타리(鎗)를 조성하는 사업임
 - 해안침식방지의 경우 해류 변화에 따른 해안지역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해안방재림 사업의 경우 4단계의, 해안침식방지의 경우 5단계의 단계별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나, 목표가 양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지진·해일·태풍 등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표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민유림 해안방재림 조성면적’으로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 지표의 달성률은 100%로 높음.
- 다만 2020년도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전의 2017년도 대비 2019년도의 ‘기상특보 횡수당 산사태 피해면적’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조금의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항만 및 어항 건설, 해안도로 건설, 무분별한 하구 골재채취 등 개발로 인한 해안침식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태풍 및 파랑 강도의 증가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어 적극적인 침식방지 사업이 필요함 또한 해안침식으로 인해 해안방재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며, 해안방재림 보존과 신규 조성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안침식방지 사업이 시급함
- 지진 및 해일대응은 해안지역의 해일·해풍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목표인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이 높으며, 사망사업법 제7조에서 사망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음
- 2018년, 2019년, 2020년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 70%로 적절함
- 해안가 수목식재와 해안침식방지 공사의 경우 해안가 수목식재와 해안침식방지 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규모가 획일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의 전체 목표가 우선 수립되어야 함
- * 현재 사업기간 : '18년~계속사업
- * 현재 사업규모 : 12km/년 (보조사업11km/년, 직접사업 1km/년)

< 해안사망사업 추진계획 수립('20년) >

구 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해안침식방지(km) ('13년 ~)	69.5	12	12	12	12	12	12



- 직접적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며,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수혜자부담 원칙과 관리 책임 증대를 위해 유지 관리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음.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안가 수목식재와 해안침식방지 공사의 경우 보조사업의 특성 상 공사에 소요되는 단가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음
- 국가 중장기 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인 해안가 수목식재와 해안침식방지 공사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단가 산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적절한 규모로 판단됨

< 해안침식방지 단가 산출내역(단가표) >

해안침식방지 : 318,202천원/km (보조금 222,741천원/ha, 70%금액)

구분	공정	단가	금액	산출근거
1. 재료비			78,810,676	
○ 석재(m ³)	1,909.9	19,758	37,735,804	
○ 막자갈(m ³)	931.52	12,000	11,178,240	
○ 시멘트(kg)	218,367	60	13,102,020	
○ 모래(m ³)	466.54	12,000	5,598,492	
○ 친자갈(m ³)	933.01	12,000	11,196,120	
2. 노무비			133,876,489	
○ 직접노무비	2,658.10		118,474,769	
- 석공(인)	210.09	70,740	14,861,767	
- 콘크리트공(인)	893.32	59,980	53,581,334	
- 보통인부(인)	1,526.5	31,860	48,634,290	
- 특별인부(인)	28.19	49,570	1,397,378	
○ 간접노무비	13%		15,401,720	
3. 경비			53,976,778	
○ 자재운반비(kg)	218,367.6	20	4,367,352	
○ 장비임차료(시간)	923.0	35,860	33,098,780	
○ 산재보험료			3,748,542	(직노+간노의 2.9%)
○ 안전관리비			4,892,679	(직노+재의 2.48%)
○ 기타경비			7,869,425	(노+재의 3.7%)
4. 일반관리비			15,999,836	(노+재+경의 6%)
5. 이윤			20,385,310	(노+경+일의 15%까지)
6. 부대비			15,152,911	5%
7. 사업비합계			318,202,000	
8. 예산편성기준			318,202,000	



해안침식방지 타당성평가 : 3,922천원/km (보조금 2,745천원/ha, 70%금액)

구 분	소 요 기 술 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1. 현 지 조 사	0.13 인	0.25 인	0.54 인	0.83 인	0.75 인	0.98 인
2. 현지조사후 자료검토	0.19 인	0.38 인	0.75 인	0.75 인	0.75 인	0.94 인
3. 검토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0.10 인	0.10 인	0.25 인	0.50 인	0.45 인	0.63 인
계	0.42 인	0.73 인	1.54 인	2.08 인	1.95 인	2.55 인
구 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1,239,196			
1) 기 술 사	0.42 인	270,525	113,620			
2) 특급기술자	0.73 인	217,535	158,800			
3) 고급기술자	1.54 인	180,902	278,589			
4) 중급기술자	2.08 인	150,970	314,017			
5) 초급기술자	1.95 인	108,805	212,169			
6) 보 조 원	2.55 인	63,530	162,001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171,407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3.48 인	9,255	32,207	현장조사 인원, 100km까지 적용		
2) 식비,일비(공무원여비규정)	3.48 인	40,000	139,200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5%	1,239,196	1,425,075	직접인건비의 110~120%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7%	2,664,271	730,01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위탁수수료 10~15% 포함)		
마.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3,565,688			
바. 부가가치세	10%		356,568			
사. 합 계			3,922,000	천원단위 절사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최근 한반도 주변해역의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태풍의 위력이 커지면서 지진과 해일에 대응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토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에 부합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선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결정,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있으며, 연중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을 통하여 부정수급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하고 있음
 - 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2회 이상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적정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국토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함
- 성과 지표가 해안방재림과 해안침식방지의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필요함
 - 현재 평가항목은 사업의 양적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지진과 해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감소 정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으로 조성된 방재림과 침식방지시설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 지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안가 수목식재와 해안침식방지 공사의 경우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며, 실제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일부 문제도 발견되었던 바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진도에 따른 점검 결과 일부 사업에서 조림목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간척지에 대한 물빠짐 시설 재점검을 지적하고 조치사항 결과를 받음

3-2 정책 제언

- 2013년 수립된 중장기 사업이 완료되어 2020년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하에 사업 시행이 필요함
- 단순히 연간 사업 규모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필요 사업 면적을 우선 검토하고 이에 따라 연간 사업 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특허청
사 업 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동 사업은 사업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로서 'IP 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및 '지식재산거래건수' 등은 단순히 '건수' 중심의 지표이며, 실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거래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실제 기업의 매출증가액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거나, '거래 건수 대비 지식재산 중개 수수료' 등과 같은 성과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특허청의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보조사업은 「발명진흥법」을 사업 추진의 주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음
- 특허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 사업과 「발명진흥법」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함
- 동법 제4조에서 발명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발명의 평가지원,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됨

< 발명진흥법 >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와 그 승계인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다만, 상기 법적 근거는 반드시 동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구속력 측면에서 명확성은 일부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학·출연연 및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상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역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상위 사업은 물론 국가 정책적 목표와 연관성을 가짐
- 주관부처가 제시하고 있는 동 사업과 국정과제 간에는 연관성이 일부 인정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국정과제로 ‘18번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음
- 국정과제 18번 과제를 살펴보면, 동 국정과제는 청년 및 고령자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특허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청년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 및 노동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18번 국정과제와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공공 및 민간 IP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특허거래전문관·특허 거래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거래 지원’, 사업화연계 평가 및 금융연계 평가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평가 지원’ 내역사업 등임
- 특허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IP의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 IP 이전 및 민간의 IP 거래·평가 등 3가지 요소가 공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3가지 내역사업의 구성은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는 비교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확인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소요되는 인건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단가, 구체적 근거를 통해 산출내역을 제시하였음
- 다만, 자료조사, 마케팅전략 수립 등 세부활동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보조사업 성과지표로서 ‘IP 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지식재산 금융규모’, ‘지식재산거래건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설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대다수 지표들은 금융규모를 제외하고 ‘건수’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산출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함
 - 주관부처는 ‘IP 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및 ‘지식재산거래건수’ 등의 성과지표가 동 사업의 최종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나, 단순히 ‘건수’ 중심의 지표만으로 실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거래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측면에서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실제 기업의 매출증가액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기업의 매출액을 실제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 소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성과지표를 고려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지식재산거래 지원’의 경우 특허거래전문관이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향후 민간 거래기관과의 협력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될 예정임
 - 이 경우 ‘거래 건수 대비 지식재산 중개 수수료’ 규모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서비스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한 경우 지불된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서 의의가 존재함
- 동 사업은 사업화 및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용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위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이미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특허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특허청 내 타 사업 및 타 부처 사업과 비교할 때, 동 사업의 차별성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허청이 주관하는 타 사업으로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특허바우처’ 사업,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 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해 위탁수행·관리되고 있는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IP-R&D 전략지원’, 대학·공공연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지식재산권 중심의 상품개발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시된 ‘스타트업특허바우처’ 사업과 ‘IP-R&D 전략지원’ 사업의 경우 국내외 IP의 권리화, IP획득전략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 평가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를 주로 지원하나, 동 사업의 경우 추가 기술개발 측면이 아닌 특허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차별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 금융기관 등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연간(’17~’19년) 약 2,100개의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동 사업은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폐지 시 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정부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보유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 활용을 도모하여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일부 동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며, 100% 국고보조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상기 법적 근거에서 발명 진흥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는 없음



- 주관부처는 100% 보조율 적용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으나,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 동 사업 지난 3년간('17~'19년) 실행행률은 99%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보조금 실제 집행 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예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장기 재정추계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관련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정성적 근거 중심의 추계 근거가 제시되어, 현행 중장기 재정추계액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증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인정됨
- 즉, 동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회적가치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2개 기관으로 구성됨
 -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 형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지정
 -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이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역시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동 기관들의 전문성은 일부 인정됨
 - 다만, 지정을 통해 동 사업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을 2개의 기관(직접보조사업자)이 나누어 추진하는 형태이나,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는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직접보조사업자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 및 내용이 전혀 다르고,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역시 다르므로 별도의 기관이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바 있음
 - 다만, 보조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수행경험, 회원사 네트워크의 다수 보유 등이 동 사업에 있어 보조사업자를 구분하여 내역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타당한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관리지침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관리함
 - 또한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 해당 사업별 운영관리지침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이 관리되고 있음
 -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지식재산중개소 운영지침,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운영지침, 발명인터뷰 공공 IP활용 지원 운영지침 등
 - 주관부처는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목적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판단하여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사업수행을 관리함



- 또한 주관부처는 실집행현황에 대해 매분기 보조금 교부 시 교부검토 및 교부조건 명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을 추진함
- 보조사업자는 특허청 자체감사규정에 의해 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국고보조사업 감사 등 실지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교부 신청정보 및 사업계획 등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을 확인하였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특허청 국고보조금 총괄관리지침 및 사업별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부정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주관부처 총괄관리지침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별 운영관리지침에 선정취소, 참여제한, 사업의 협약변경 및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환수 등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부정수급 발생 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또한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실태조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실적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주관부처는 동 사업 보조사업자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운영을 통해 사업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에 대해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동 사업은 지식재산 사업화·거래·평가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내역사업 구성 역시 비교적 합리성이 인정됨
 -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 사업 취지 및 목표 달성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개선을 통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대다수 지표들은 금융규모를 제외하고 ‘건수’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산출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실제 기업의 매출증가액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이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민간 거래기관과의 협력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거래 건수 대비 지식재산 중개 수수료’ 규모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서비스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한 경우 지불된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서 의의가 존재함
- 또한 동 사업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2개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나누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왜 2개 기관이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와 사유는 향후 보완이 필요함
 - 특히 동 사업이 2개 보조사업자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지식재산 사업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근거 제시가 필요함